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1583-01

조선왕조 궁중음식 고문헌 아카이브 구축

조선왕조 궁중음식 고문헌 자료집 29
조선왕조실록 기사자료집 (19)

2012. 9.

농림수산식품부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한식재단
KOREAN FOOD FOUNDATION

- 목 차 -

1. 고종실록 <2> 기사자료집 : 고종 28년 1월 ~ 고종 44년 2월 ····· 1

2. 순종실록 기사자료집 ····· 165

1. 고 종 실 록 <2> 기 사 자 료 집

고종실록 <2> 기사자료집 : 고종 28년 1월 ~ 고종 44년 2월

출처	내용	원문
고종 28권, 28년 (1891 신묘 / 청 광서(光緖) 17년) 1월 1일 (병인) 1번째기사 효모전에 나아가 삭제 겸 정조제와 조상식과 주다례와 석상식을 행하다	【고종 통천 융운 조극 돈륜 정성 광의 명공 대덕 요준 순휘 우모 탕경 응명 입기 지화 신열 외훈 홍업 계기 선력 건행 곤정 영의 홍휴 수강 문헌 무장 인익 정효 태황제 실록(高宗統天隆運肇極敦倫正聖光義明功大德堯峻舜徽禹謨湯敬應命立紀至化神烈巍勳洪業啓基宣曆乾行坤定英毅弘休壽康文憲武章仁翼貞孝太皇帝實錄) 제28권】 효모전(孝慕殿)에 나아가 삭제(朔祭) 겸 정조제(正朝祭)와 조상식(朝上食)과 주다례(晝茶禮)와 석상식(夕上食)을 행하였다. 왕세자가 따라 나아가서 예를 행하였다.	初一日, 丙寅。 詣孝慕殿, 行朔祭兼正朝祭、朝上食、晝茶禮、夕上食。王世子隨詣, 行禮。
고종 28권, 28년 (1891 신묘 / 청 광서(光緖) 17년) 1월 1일 (병인) 5번째기사 권농 윤음을 팔도와	권농 윤음(勸農綸音)을 팔도(八道)와 오도(五都)에 내렸다.	下勸農綸音于八道五都。

오도에 내리다		
고종 28권, 28년 (1891 신묘 / 청 광서(光緖) 17년) 1월 1일 (병인) 6번째기사 노인들에게 옷감과 음식물을 내리고 이어 위로하게 하다	노인들에게 옷감과 음식물을 내리고 이어 위로하게 하였다.	賜老人衣資食物, 仍爲存問。
고종 28권, 28년 (1891 신묘 / 청 광서(光緖) 17년) 1월 2일 (정묘) 2번째기사 응자노인 100세 이상에 하비하다	응자노인(應資老人) 100세 이상에 하비(下批)하였다. 김취우(金就佑) 등 8인이었다.	應資老人百歲以上下批, 金就佑等八人。
고종 28권, 28년 (1891 신묘 / 청 광서(光緖) 17년) 1월 15일(경진) 1번째기사 효모전에 나아가 망제와 조상식, 주다례와 석상식을 행하다	효모전(孝慕殿)에 나아가 망제(望祭)와 조상식(朝上食), 주다례(晝茶禮)와 석상식(夕上食)을 행하였다. 왕세자가 따라 나아가서 예를 행하였다.	十五日。 詣孝慕殿, 行望祭、朝上食、晝茶禮、夕上食。 王世子隨詣, 行禮。
고종 28권, 28년 (1891 신묘 / 청 광서(光緖) 17년) 2월 1일 (을미) 1번째기사 효모전에 나아가 삭제	효모전(孝慕殿)에 나아가 삭제(朔祭)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初一日, 乙未。 詣孝慕殿, 行朔祭、晝茶禮。

와 주다례를 행하다		
고종 28권, 28년 (1891 신묘 / 청 광서(光緖) 17년) 2월 3일 (정유) 1번째기사 오늘은 부대부인의 생신이니 도승지에게 문안하고 오라고 명하다	전교하기를, “오늘은 부대부인(府大夫人)의 생신이니 도승지(都承旨)를 보내어 문후하고 오게 하라.” 하였다.	初三日。 敎曰:“今日府大夫人晬辰。令都承旨問候以來。”
고종 28권, 28년 (1891 신묘 / 청 광서(光緖) 17년) 2월 8일 (임인) 3번째기사 왕세자의 탄신일에 여러 대신들에게 사찬하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봉조하(奉朝賀), 시임 각신과 원임 각신, 빈객(賓客), 종친(宗親), 내아문(內衙門)과 외아문(外衙門)의 당상(堂上), 6조(六曹)와 양사(兩司)의 장관, 종정경(宗正卿), 2품 이상, 승지(承旨)와 사관, 홍문관(弘文館), 세자시강원과 세자익위사에게 명하여 사찬하였다. 왕세자의 탄신이었기 때문이다.	命時原任大臣、奉朝賀、時原任閣臣、賓客、宗親、內外衙門堂上、六曹、兩司長官、宗正卿、二品以上、承、史、玉堂春桂坊, 賜饌。 以王世子誕辰也。
고종 28권, 28년 (1891 신묘 / 청 광서(光緖) 17년) 2월 15일(기유) 1번째기사 효모전에 나아가 망제와 주다례를 행하다	효모전(孝慕殿)에 나아가 망제(望祭)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十五日。 詣孝慕殿, 行望祭、晝茶禮。
고종 28권, 28년		

(1891 신묘 / 청 광서(光緖) 17년) 2월 28일(임술) 1번째기사 효모전에 나아가 한식제를 지내고 이어 주다례를 행하다	효모전(孝慕殿)에 나아가 한식제(寒食祭)를 지내고 이어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二十八日。 詣孝慕殿, 行寒食祭, 仍行晝茶禮。
고종 28권, 28년 (1891 신묘 / 청 광서(光緖) 17년) 3월 3일(정묘) 1번째기사 효모전에 나아가 주다례 겸 삼일 별다례를 행하다	효모전(孝慕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 겸 삼일 별다례(別茶禮)를 행하였다. 왕세자가 따라 나아가서 예를 행하였다. 이어 전 전라 감사(全羅監司) 김규홍(金奎弘)을 소견(召見)하였다.	初三日。 詣孝慕殿, 行晝茶禮兼三日別茶禮。 王世子隨詣, 行禮。 仍召見前全羅監司金奎弘。
고종 28권, 28년 (1891 신묘 / 청 광서(光緖) 17년) 3월 11일(을해) 3번째기사 시임 대신과 원임 대신, 각신 등에게 사찬하도록 명하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각신(閣臣), 빈객(賓客), 내무부(內務府)의 당상과 낭청, 승지(承旨), 사관, 홍문관(弘文館),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와 세자익위사(世子翼衛司)의 관리에게 사찬(賜饌)을 명하였다.	命時原任大臣、閣臣、賓客、內務府堂·郎、承、史、玉堂、春桂坊, 賜饌。
고종 28권, 28년 (1891 신묘 / 청 광서(光緖) 17년) 3월 15일(기묘) 1번째기사 효모전에 나아가 망제와 주다례를 행하다	효모전(孝慕殿)에 나아가 망제(望祭)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十五日。 詣孝慕殿, 行望祭、晝茶禮。

고종 28권, 28년 (1891 신묘 / 청 광서(光緖) 17년) 4월 1일 (갑오) 1번째기사 효모전에 나아가 삭제와 주다례를 행하고 석상식을 올리다	효모전(孝慕殿)에 나아가 삭제(朔祭)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고 석상식(夕上食)을 올렸다. 왕세자도 따라 나아가서 예를 행하였다.	初一日, 甲午。 詣孝慕殿, 行朔祭、晝茶禮、夕上食。 王世子隨詣, 行禮。
고종 28권, 28년 (1891 신묘 / 청 광서(光緖) 17년) 4월 10일(계묘) 1번째기사 대원군의 혼인 예식 60돌을 기념하는 물건을 운현궁에 실어 보내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대원군(大院君)이 혼인 예식을 거행한 지 60돌이 되는 날이 가까워 오니, 나 소자(小子)의 기쁜 마음은 비길 데 없다. 지금은 연회를 차리고 기뻐할 때가 아니지만 기념하는 물건을 갖추어 드리지 않을 수 없으니, 돈 1만냥(兩), 정주(鼎紬) 3동(同), 목(木)과 포(布) 각각 10동, 백미 100석(石), 진말(眞末) 10석, 진유(眞油) 30두(斗), 백청(白淸) 30두를 탁지부(度支部)로 하여금 운현궁(雲峴宮)에 실어 보내게 하라.” 하였다.	初十日。 敎曰:“大院君卺禮載回之日隔近, 予小子欣祝之私, 無以爲喩。 今非燕喜之時, 志物不可不備, 錢一萬兩、鼎紬參同、木布名十同、白米一百石、眞末十石、眞油參拾斗、白淸參拾斗, 令度支輸送本宮。”
고종 28권, 28년 (1891 신묘 / 청 광서(光緖) 17년) 4월 15일(무신) 1번째기사 효모전에 나아가 조곡을 행하다	효모전(孝慕殿)에 나아가 조곡(朝哭)을 행하고, 이어 망제(望祭)·조상식(朝上食)·주다례(晝茶禮)·석상식(夕上食)·석곡(夕哭)을 행하였다. 왕세자가 따라 나아가서 예를 행하였다.	十五日。 詣孝慕殿, 行朝哭。 仍行望祭、朝上食、晝茶禮、夕上食、夕哭。 王世子隨詣, 行禮。
고종 28권, 28년 (1891 신묘 / 청 광서	효모전(孝慕殿)에 나아가 조상식(朝上食)·주다례(晝茶禮)·석상식(夕上食)을 행	十六日。 詣孝慕殿, 行朝上食、晝茶禮、夕上食。 仍詣齋殿, 親押孝慕殿

(光緖) 17년) 4월 16일(기유) 1번째기사 효모전에 나아가 조상식과 주다례, 석상식을 행하다	하고, 이어 재전(齋殿)에 나아가 효모전의 연제(練祭)에 쓸 축문(祝文)에 친압(親押)하였다. 이어 광화문(光化門) 안에 나아가 연주(練主)를 효모전에 봉인할 때에 지영(祗迎)하였다. 왕세자가 따라 나아가서 예를 행하였다.	練祭祝文。 仍詣光化門內, 練主奉安于孝慕殿時, 祗迎。 王世子隨詣, 行禮。
고종 28권, 28년(1891 신묘 / 청 광서(光緖) 17년) 4월 21일(갑인) 1번째기사 대원군과 부대부인이 혼례를 거행한 지 60돌을 맞아 도승지에게 문안하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오늘은 바로 대원군(大院君)과 부대부인(府大夫人)이 혼례를 거행한 지 60돌이 되는 날이니, 도승지(都承旨)를 보내어 문후하고 오게 하라.” 하였다.	二十一日。 敎曰:“今日卽大院君、府大夫人巹禮載回之日也。 令都承旨問候以來。”
고종 28권, 28년(1891 신묘 / 청 광서(光緖) 17년) 4월 28일(신유) 2번째기사 왕세자에게 건원릉에 나아가 제사를 섭행하라고 명하다	왕세자에게 건원릉(健元陵)에 나아가 제사를 섭행(攝行)하도록 명하였다.	命王世子行健元陵攝行祭。
고종 28권, 28년(1891 신묘 / 청 광서(光緖) 17년) 5월 1일(갑자) 2번째기사 효모전에 나아가 삭제	효모전(孝慕殿)에 나아가 삭제(朔祭)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詣孝慕殿, 行朔祭、晝茶禮。

와 주다례를 행하다		
고종 28권, 28년 (1891 신묘 / 청 광서(光緖) 17년) 5월 1일 (갑자) 3번째기사 익종 대왕의 승하 60돌에 수릉과 산릉의 작헌례를 대신을 보내 섭행하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지난해는 곧 우리 익종(翼宗)이 세상을 떠난 지 60돌이 되는 해였다. 사모하는 마음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대왕대비의 국상(國喪) 중이라 정성을 베풀지 못했는데, 올해 또 이달이 되고 보니 비통한 생각이 더욱 간절하며, 또한 우리 자전(慈殿)의 슬픈 생각은 이날에 배나 더 할 것이다. 이달 6일에 수릉(綏陵)과 산릉(山陵)의 작헌례(酌獻禮)를 대신을 보내어 섭행(攝行)하게 하여 미치지 못한 소자의 미처 다하지 않은 정성을 펴도록 할 것이다.” 하였다.	敎曰: “昨年卽我寧考賓御週甲之歲也。 不洎之思, 曷有其極? 而巨創之中, 未得展誠, 今年又當是月, 慟慕彌切。 亦惟我慈聖愴感之懷, 宜有倍於是日。 今初六日綏陵、山陵酌獻禮, 遣大臣攝行, 以伸小子靡逮之忱。”
고종 28권, 28년 (1891 신묘 / 청 광서(光緖) 17년) 5월 6일 (기사) 1번째기사 효모전에 나아가 주다례를 행하다	효모전(孝慕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初六日。 詣孝慕殿, 行晝茶禮。
고종 28권, 28년 (1891 신묘 / 청 광서(光緖) 17년) 5월 11일(갑술) 1번째기사 결소읍 파주에 신묘년분의 전세와 대동미를 3분의 1로 견제하도록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행행(幸行) 때에 일체 백성들을 동원시킨데 대해서는 언제나 돌보아 주었는데 이번에는 더욱 여느 때와 다른 만큼 본목(本牧)과 결소(結所)였던 고을의 전세(田稅)와 대동미(大同米) 그리고 잡역(雜役)을 적당히 견감(蠲減)하는 것을 묘당(廟堂)에서 기영(畿營)에 분부(分付)하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十一日。 議政府啓: “傳曰‘幸行時, 凡係役民事, 每加存恤, 而今番尤異於他時, 本牧與結所邑田稅、大同及雜役, 量宜蠲減事, 自廟堂分付畿營事’, 命下矣。 深診民力之勞苦, 特頒恩旨之懇惻, 瞻聆攸暨, 曷任攢頌? 楊州兩稅, 永劃本牧, 恒定代錢, 俾爲邑用,

하다	백성들의 노고를 깊이 염려하여 특별히 간곡한 명령을 내렸으니 보고 듣는 사람치고 어찌 찬양하고 칭송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양주(楊州)의 전세(田稅)와 대동미(大同米)는 영원히 획하(劃下)하여 본 고을에서 항상 대전(代錢)을 정하여 고을의 비용으로 삼도록 한다면 일관되게 세를 징수하는 데 의논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 1년분의 호포(戶布)와 환곡(還穀)의 이자에 대해서만 모두 완전히 탕감하겠습니다. 결소읍(結所邑) 파주(坡州)는 신묘년(1891) 분의 전세(田稅)와 대동미(大同米)의 3분의 1로 견제(蠲除)하고, 두 고을에서는 그 밖의 잡역(雜役)도 도신(道臣)에게 적당히 덜어주게 하여 전례 없는 조정의 고마운 뜻을 보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則益稅一款, 恐難議到, 就一年條戶布與還耗, 竝爲全蕩。 結所邑坡州辛卯條田稅、大同三分一蠲除, 而兩邑外他雜役, 亦令道臣酌量減給, 以示朝家曠絶之德意何如?” 允之。
고종 28권, 28년 (1891 신묘 / 청 광서(光緖) 17년) 5월 1일 (갑자) 3번째기사 익종 대왕의 승하 60돌에 수릉과 산릉의 작헌례를 대신을 보내 섭행하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지난해는 곧 우리 익종(翼宗)이 세상을 떠난 지 60돌이 되는 해였다. 사모하는 마음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대왕대비의 국상(國喪) 중이라 정성을 베풀지 못했는데, 올해 또 이달이 되고 보니 비통한 생각이 더욱 간절하며, 또한 우리 자전(慈殿)의 슬픈 생각은 이날에 배나 더 할 것이다. 이달 6일에 수릉(綏陵)과 산릉(山陵)의 작헌례(酌獻禮)를 대신을 보내어 섭행(攝行)하게 하여 미치지 못한 소자의 미처 다하지 않은 정성을 펴도록 할 것이다.” 하였다.	敎曰: “昨年卽我寧考賓御週甲之歲也。 不洎之思, 曷有其極? 而巨創之中, 未得展誠, 今年又當是月, 慟慕彌切。 亦惟我慈聖愴感之懷, 宜有倍於是日。 今初六日綏陵、山陵酌獻禮, 遣大臣攝行, 以伸小子靡逮之忱。”
고종 28권, 28년		十五日。 詣孝慕殿, 行望祭、晝茶

(1891 신묘 / 청 광서(光緖) 17년) 6월 15일(정미) 1번째기사 효모전에 나아가 망제와 주다례를 행하다	효모전(孝慕殿)에 나아가 망제(望祭)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禮。
고종 28권, 28년 (1891 신묘 / 청 광서(光緖) 17년) 7월 25일(정해) 4번째기사 세자의 탄신일에 여러 대신들에게 사찬하도록 명하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봉조하(奉朝賀), 시임 각신(時任閣臣)과 원임 각신(原任閣臣), 빈객(賓客), 종친(宗親), 종정경(宗正卿), 내아문(內衙門)·외아문(外衙門)의 당상(堂上)과 낭청(郎廳), 6조(六曹), 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의 장관, 2품 이상, 승지(承旨)와 사관(史官), 홍문관(弘文館),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과 세자익위사(世子翼衛司)에게 사찬(賜饌)하도록 명하였는데, 탄신일이기 때문이었다.	命時原任大臣、奉朝賀、時原任閣臣、賓客、宗親、宗正卿、內外衙門堂郎、六曹、兩司長官、二品以上、承、史、玉堂、春桂坊, 賜饌。 以誕辰也。
고종 28권, 28년 (1891 신묘 / 청 광서(光緖) 17년) 8월 9일(경자) 2번째기사 이달 11일에 양주의 사서인에게 쌀을 하사하도록 명하다	전교하기를, “이달 11일에 양주(楊州)의 사서인(士庶人)에게 쌀을 하사할 것이니, 나누어 주는 절차는 호조(戶曹)와 선혜청(宣惠廳)에서 거행하게 하되, 쌀을 줄 때 나이가 많아 대령하지 못할 사람들과 부녀자들은 그 자손이 대신 대령하도록 분부하라.” 하였다.	敎曰: “今十一日, 楊州士庶當賜米矣。 分給之節, 令戶惠廳擧行。 賜米時, 年老未及待令者與婦女, 以其子孫替待事分付。”
고종 28권, 28년		議政府啓: “全羅監司金奎弘, 以靈光

(1891 신묘 / 청 광서(光緖) 17년) 8월 28일(기미) 2번째기사 영광군의 불모지 700결에 다시 3년 동안만 조세를 면제하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전라 감사(全羅監司) 김규홍(金奎弘)이 영광읍(靈光邑)의 진결(陳結)에 대한 조세(租稅)를 정지하는 일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의정부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해읍(該邑)은 병술년(1886)과 정해년(1887)의 큰 흉년을 겪은 다음부터 700결(結)이 한결같이 황폐화되어 곧 영원히 묵히게 되었으므로 여러 해 동안 조세를 감면하여 왔는데, 이제 갑자기 불모지에 대해 조세를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실로 거북의 등에서 털을 깎는 격입니다. 백성을 돌보아주는 정사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혜택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경인년(1890) 조(條)부터 3년에 한하여 특별히 조세를 정지하도록 하며, 내년 가을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점차 조세총액을 회복하도록 신칙하여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경상 감사(慶尙監司) 이헌영(李헌永)이 보고한 바를 보니, ‘영일현(迎日縣)은 작은 고을인데 여러 해 누적된 포흠(逋欠)을 받아들일 방도가 없어 민읍(民邑)을 지탱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으니, 각 아문(衙門)에 바칠 각 연도 분의 목변(木邊 : 무명 이자) 중에서 기축년(1889) 이전의 조(條)는 매 필에 경전(京錢) 12냥을, 신묘년(1891)에 바쳐야 할 조는 매 필에 경전 16냥을 특별히 대납(代納)하도록 허락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고을은 쇠잔한데 폐단이 많은 지 여러 해가 되어 폐단이 더욱 커져서 처리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극진히 보살펴 주고 널리 혜택을 베풀지 않는다면 포흠난 것을 완전히 청산할 가망이 없고 고을은 보존할 수 없게 될 한탄이 있을 것이니, 특별히 보고한 내용대로 대납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陳結停稅事, 已有連次報府矣。 該邑自經丙丁大荒, 七百結一望鹵莽, 便成永陳, 許多年蠲免之餘, 今忽責徵於不毛之地者, 實是龜背之括也。 其在懷保之政, 合有終始之惠, 自庚寅條, 限三年特令停稅, 明秋則築底査執, 漸次復總之意, 申飭行會何如?” 允之。 又啓: “卽見慶尙監司李쉬永所報, 則‘迎日縣, 以斗小之邑, 年久積逋, 徵刷昧方, 至於民邑難支之境。 各衙門各年木邊中, 己丑以上條則每疋以京錢十二兩, 辛卯當納條則每疋以京錢十六兩, 特許代納’爲辭矣。 局殘弊鉅, 歲年寖久, 將至尾大難掉之境。 然而苟非曲軫而廣施, 則逋無可完之期, 邑有莫保之歎。 特依報辭許代何如?” 允之。

고종 28권, 28년 (1891 신묘 / 청 광서(光緖) 17년) 9월 7일 (무진) 3번째기사 호조와 선혜청에서 양주의 사서와 부녀자에게 쌀과 여비를 주었다고 보고하다	호조(戶曹)와 선혜청(宣惠廳)에서, '삼가 하교 하신 대로 양주(楊州)의 사서(士庶)와 부녀자로서 나이 80세 이상 되는 277명에게 각각 쌀 4말과 돌아갈 때의 여비로 돈 5냥씩을 주었으며, 나이 70세 이상 되는 1,095명에게는 각각 쌀 3말과 돌아갈 때의 여비로 돈 5냥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라고 아뢰었다.	戶惠廳以"謹依下敎, 楊州士庶及婦女年八十以上二百七十七人, 各賜米四斗, 回糧錢五兩, 年七十以上一千九十五人, 各賜米三斗, 回糧錢五兩式頒給"啓。
고종 28권, 28년 (1891 신묘 / 청 광서(光緖) 17년) 10월 4일(을미) 2번째기사 내일부터 상선을 회복하라고 명하다	내일부터 상선(常膳)을 회복하라고 명하였다. 예조(禮曹)에서 아뢰었기 때문이다.	命自明日復膳。 因禮曹啓請也。
고종 28권, 28년 (1891 신묘 / 청 광서(光緖) 17년) 10월 16일(정미) 3번째기사 정공을 진배하는 것과 현방에 판매하는 것 외에 소의 도살을 금지하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근년에 소의 돌림병이 돌지 않는 해가 없었지만 올해처럼 심한 적은 없었습니다. 곳곳에서 상하고 축이 나 거의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때 전적으로 소의 힘에 의지하는데 심한 경우에는 농사꾼이 사람의 힘으로 소를 대신하기까지 한다고 하니, 내년 농사에 대한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더구나 또 여항(閭巷)과 촌리(村里)에서는 소가 병에 걸렸다고 빙자하여 마구 도살하는데 만일 서울과 지방의 법을 맡은 관리들로 하여금 규정에 따라 처	議政府啓: "挽近, 牛疾無年無之, 而未有甚於今年, 在在傷縮, 殆不可數計。 凡民耕作, 專藉牛力, 而甚至服田者, 以人代畜云, 嗣歲農憂, 靡有止屆。 況又閭巷村里之間, 憑藉病牛, 爛漫宰屠, 苟使京外掌法之臣按典從事, 則全無畏憚, 豈至於此? 此, 不可不嚴加防禁。 自今內而正供進排與貿易懸房外, 一竝使之撤屠, 外而官庖、

	리하게 하였다면 전혀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어찌 이런 지경에까지야 이르렀겠습니까? 그래서 금지하는 규정을 더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안으로는 정공(正供)을 진배(進排)하는 것과 현방(懸房)에서 판매하는 것 외에는 모두 도살을 금하고 지방에서는 관포(官庖)나 장시포(場市庖)도 일일이 철폐하게 하여 한 마리의 소라도 마음대로 도살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위반하는 자가 있으면 체포하는 대로 형배(刑配)하도록 형조(刑曹)와 한성부(漢城府), 좌포청(左捕廳)과 우포청(右捕廳), 팔도(八道)와 오도(五都)에 신칙하여 일체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이어 전교하기를, “요즘 듣건대 소의 돌림병이 아직도 성해서 열에 하나도 완전한 것이 없고, 마을의 외양간이 거의 비어서 전야에서 소가 경작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하니 내년 봄철 농사를 어찌 걱정하지 않겠는가? 돌아보건대, 지금 날씨가 점점 추워지니, 소의 병이 멎을 수도 있는데 저 어리석은 백성들은 겁이 앞서 설사 병들지 않은 소가 있어도 번번이 또 푸줏간에 싼 값으로 팔아버리니, 계속 이렇게 가다간 남아 있는 것이 없게 될 것이다. 도신(道臣)과 수재(守宰)가 만일 만물을 사랑하고 농사를 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조령(朝令)을 기다릴 것 없이 응당 엄하게 금지하는 규정을 세워야 할 것인데 어찌하여 한결같이 내버려 두고 있단 말인가? 지금부터는 사전(祀典)에 쓰는 것과 현방에서 판매하는 것 외에는 서울과 지방을 막론하고 모두 도살을 금지하라. 이렇게 신칙한 후에도 혹 위반하는 자가 있으면 곧 엄히 형신(刑訊)하고 원배(遠配)하도록 형조, 한성부의 낭청(郎廳), 좌포도청과 우포도청의 종사관(從事官)에게 발패(發牌)하여 전교(傳敎)를 듣게 하라.” 하였다.	場市庖, 亦令一一撤罷, 俾不得擅屠一牛。 如有冒犯者, 隨捉刑配事, 申飭刑、漢兩司、左右捕廳、八道五都, 一體行會何如?” 允之。 仍敎曰: “近聞牛疾尙熾, 十無一完, 村里之廐養殆空, 田野之犂耕將廢, 嗣歲東作, 寧不憂悶? 顧今天氣漸寒, 迄可止熄, 而彼愚夫愚婦先生恐怯, 設有不病之牛, 輒又斥賣於庖肆, 若此不已, 其將無遺。 道臣、守宰苟有愛物重農之, 心必不待朝令, 自當嚴立防禁, 而亦何可一向抛置乎? 自今祀典所用與貿易懸房外, 無論京外一竝撤屠。 如是提飭之後, 或有冒犯者, 則直爲嚴刑遠配事, 刑曹、漢城府郎廳、左右捕廳從事官, 發牌聽傳敎。”

고종 28권, 28년 (1891 신묘 / 청 광서(光緖) 17년) 11월 22일(임오) 1번째기사 효모전에 나아가 동지제를 행하다	효모전(孝慕殿)에 나아가 동지제(冬至祭)를 행하였다. 이어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왕세자(王世子)가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올리는 전문(箋文)과 표리(表裏)를 받았다.	二十二日。 詣孝慕殿, 行冬至祭。 仍御勤政殿, 受王世子率百官進箋文表裏。
고종 28권, 28년 (1891 신묘 / 청 광서(光緖) 17년) 12월 5일(을미) 1번째기사 효모전에 나아가 조상식과 주다례, 석상식을 행하다	효모전(孝慕殿)에 나아가 조상식(朝上食), 주다례(晝茶禮), 석상식(夕上食)을 행하였다. 왕세자(王世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初五日。 詣孝慕殿, 行朝上食、晝茶禮、夕上食。 王世子隨詣, 行禮。
고종 28권, 28년 (1891 신묘 / 청 광서(光緖) 17년) 12월 18일(무신) 1번째기사 목화농사가 흉작이 들어 충청의 각 읍에는 환곡을 정퇴하고 모조만 받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충청 감사(忠淸監司) 조병식(趙秉式)이 장계(狀啓)하여 아뢰기를, ‘목화농사가 몹시 흉작이 된 도내(道內)의 각읍(各邑)에서 병조(兵曹) 및 각 영문(營門)에 바치는 각 군포(軍布)를 목(木)으로 바칠 몫을 금년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절반을 대전(代錢)하고, 서천(舒川) 등 7개 고을에서 바치는 각 군포를 저(苧)로 바치는 것도 내년 가을까지 전(錢)으로 대전하게 하며, 그 다음으로 우심(尤甚)한 다음 각 읍에서 받을 환곡(還穀)은 우선 정퇴(停退)하게 하고, 단지 모조(耗條)만 받고 내년 가을에 준봉(準捧)하도록 모두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병조(兵曹) 및 각영(各營)에 바치는 것은 4분의 1만 대납하게 하고, 7개 읍에서 저포(苧布)로 바치는 것은 청한	十八日。 議政府啓: “忠淸監司趙秉式狀陳‘綿農慘歉, 道內各邑各軍布之兵曹及各營門所納, 以木上納條, 自今年十月至明年九月限, 折半代錢, 舒川等七邑各軍布, 以苧上納者, 亦許限明秋以錢代納, 尤甚之次各邑捧還, 姑令停退, 只捧耗條, 待明秋準捧事, 竝令廟堂稟處’矣。 兵曹及各營所納, 限四分一許代, 七邑苧布, 依請施行。 糴法, 雖有攸重, 民情實所當恤, 依狀辭許施, 俾爲紓力之意分付何如?” 允之。

	대로 시행할 것입니다. 환곡(還穀)이 비록 중요하기는 하지만 백성의 사정을 실로 돌보아주어야 할 것이므로 장계의 내용대로 시행하여 백성들의 힘을 펴게 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고종 28권, 28년 (1891 신묘 / 청 광서(光緖) 17년) 12월 28일(무오) 1번째기사 봉보 부인의 상에 쓸 물자를 후하게 주도록 명하다	전교하기를, “봉보 부인(奉保夫人)의 상(喪)에 쓸 관판(棺板) 1부(部)를 골라 보내고 행해야 할 여러 일은 한결같이 전례(典禮)대로 하되 전례(前例)를 참고하여 될수록 후하게 하도록 호조(戶曹)와 예조(禮曹)에 분부하라.” 하였다.	二十八日。 敎曰:“奉保夫人喪棺板一部, 擇送。 應行諸事, 一依典禮, 參考前例, 從厚擧行事, 分付戶禮曹。”
고종 28권, 28년 (1891 신묘 / 청 광서(光緖) 17년) 12월 30일(경신) 1번째기사 효모전에 나아가 조상식, 주다례, 석상식을 행하다	효모전(孝慕殿)에 나아가 조상식(朝上食), 주다례(晝茶禮), 석상식(夕上食)을 행하였다. 왕세자(王世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三十日。 詣孝慕殿, 行朝上食、晝茶禮、夕上食。 王世子隨詣, 行禮。
고종 28권, 28년 (1891 신묘 / 청 광서(光緖) 17년) 12월 30일(경신) 9번째기사 각 도의 재결을 준획	의정부(議政府)에서, ‘각도(各道)에서 재결(災結) 2만 342결(結)을 특별히 준획(準劃)하도록 허가하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政府以“各道災結二萬三百四十二結, 特許準劃”啓。

하도록 허가하다		
고종 28권, 28년 (1891 신묘 / 청 광서 (光緖) 17년) 12월 30일(경신) 10번째기사 태복시에서 말의 수효를 보고하다	태복시(太僕寺)에서 '각도(各道) 목장(牧場)에 있는 말의 수가 5,646필(匹)입니다.'라고 아뢰었다. 【고종 통천 융운 조극 돈륜 정성 광의 명공 대덕 요준 순휘 우모 탕경 응명 입기 지화 신열 외훈 홍업 계기 선력 건행 곤정 영의 홍휴 수강 문헌 무장 인익 정효 태황제 실록(高宗統天隆運肇極敦倫正聖光義明功大德堯峻舜徽禹謨湯敬應命立紀至化神烈巍勳洪業啓基宣曆乾行坤定英毅弘休壽康文憲武章仁翼貞孝太皇帝實錄) 제28권 끝】	太僕寺以"各道牧場馬畜數爻五千六百四十六匹"啓。 【高宗太皇帝實錄卷之二十八終】
고종 29권, 29년 (1892 임진 / 청 광서 (光緖) 18년) 1월 1일 (신유) 1번째기사 효모전에 나아가 정조제, 조상식 등을 행하다	【고종 통천 융운 조극 돈륜 정성 광의 명공 대덕 요준 순휘 우모 탕경 응명 입기 지화 신열 외훈 홍업 계기 선력 건행 곤정 영의 홍휴 수강 문헌 무장 인익 정효 태황제 실록(高宗統天隆運肇極敦倫正聖光義明功大德堯峻舜徽禹謨湯敬應命立紀至化神烈巍勳洪業啓基宣曆乾行坤定英毅弘休壽康文憲武章仁翼貞孝太皇帝實錄) 제29권】 효모전(孝慕殿)에 나아가 정조제(正朝祭), 조상식(朝上食), 주다례(晝茶禮), 석상식(夕上食)을 행하였다. 왕세자(王世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高宗太皇帝實錄卷之二十九】 初一日, 辛酉。 詣孝慕殿, 行正朝祭、朝上食、晝茶禮、夕上食。 王世子隨詣, 行禮。
고종 29권, 29년 (1892 임진 / 청 광서 (光緖) 18년) 2월 8일 (정유) 1번째기사 세자의 탄신일에 여러 대신들에게 사찬하라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봉조하(奉朝賀), 종친(宗親), 시임 대신(時任閣臣)과 원임 대신(原任閣臣), 빈객(賓客), 내외 아문(內外衙門)의 당상(堂上)과 낭청(郎廳), 종정경(宗正卿), 육조(六曹),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의 장관, 2품 이상의 승지(承旨), 사관(史官), 홍문관(弘文館), 세자	- 初八日。 命時原任大臣、奉朝賀、宗親、時原任閣臣、賓客、內外衙門堂郎、宗正卿、六曹、兩司長官、二品以上承、史、玉堂、春桂坊, 賜饌。

고 명하다	시강원(世子侍講院)과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에게 사찬(賜饌)하라고 명하였다. 왕세자(王世子)의 생일이었기 때문이다.	以王世子誕辰也。
고종 29권, 29년 (1892 임진 / 청 광서(光緖) 18년) 2월 9일 (무술) 1번째기사 의정부에서 해주부의 청산 등 9개 방의 연을 캐는 것으로 인해 폐기된 전답에 대해 조세를 감면하여 줄 것을 아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황해 감사(黃海監司) 이경직(李耕稙)의 보고를 보니, ‘해주부(海州府)의 청산(靑山) 등 9개 방(坊)이 계미년(1883)에 연(鉛)을 캐기 위한 전(廛)을 열기 시작한 때부터 구덩이를 파서 폐기된 전답(田畓)이 도합 1,272결(結) 37부(負) 8속(束)이나 됩니다. 그런데 경작하지 못한 땅에서 조세를 받기 때문에 고장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꼬리를 물고 있으며 남아 있는 백성들도 보존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렀으니, 송화(松禾)의 전례대로 조세를 감면하여 주소서.’ 하였습니다. 근래에 광물(鑛物)의 채굴로 인하여 폐단이 많다는 소문이 이미 자자합니다. 그런데 아깝게도 비옥하고 평탄한 땅까지 결국 깊은 구덩이를 이루어 백성들은 근심에 싸여 아우성치고 조세는 징수할 곳이 없습니다. 이것은 숨은 고통과 관계되는 만큼 응당 불쌍히 생각하여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읍(邑)에서 이미 시행한 전례가 있으니, 특별히 3년간 조세를 면제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의 토지는 본래 소중한 것이므로 다시 경작하도록 장려하는 일을 조금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감영(監營)과 고을에서 충분히 토의하고 신칙하여 점차 일구도록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初九日。 議政府啓: “卽見黃海監司李耕稙所報, 則‘海州府靑山等九坊, 自癸未創開鉛店, 畎畝掘坎, 廢棄田畓, 合爲一千二百七十二結三十七負八束。 白地徵稅, 流離相繼, 餘存之民, 亦至莫保。 依松禾例減稅’爲辭矣。 近來鑛採之許多爲弊, 已有傳聞之狼藉。 而可惜沃衍之壤, 遂成深窅之坑, 民情愁嗷, 責徵無處。 此係幽隱, 合存矜念。 且有他邑已施之例, 特許三年蠲稅, 而國結本有攸重, 勸起不容少忽, 營邑爛商董飭, 期圖漸次耕墾事, 行會何如?” 允之。
고종 29권, 29년 (1892 임진 / 청 광서		初一日, 己未。 詣孝慕殿。 行朔祭, 仍行晝茶禮。

(光緖) 18년) 3월 1일 (기미) 1번째기사 효모전에 나아가 삭제를 행하고 이어 주다례를 행하다	효모전(孝慕殿)에 나아가 삭제(朔祭)를 행하고, 이어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고종 29권, 29년 (1892 임진 / 청 광서 (光緖) 18년) 4월 8일 (병신) 1번째기사 효모전에 나아가 하향 대제, 주다례와 석상식을 행하다	효모전(孝慕殿)에 나아가 하향 대제(夏享大祭), 주다례(晝茶禮), 석상식(夕上食)을 행하였다. 왕세자(王世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이어 친히 봉심(奉審)하였다.	初八日。 詣孝慕殿, 行夏享大祭、晝茶禮、夕上食。 王世子隨詣, 行禮。 仍行親奉審。
고종 29권, 29년 (1892 임진 / 청 광서 (光緖) 18년) 4월 16일(갑진) 2번째기사 효모전에 나아가 조상삭과 주다례와 석상식을 행하다	효모전(孝慕殿)에 나아가 조상식(朝上食)과 주다례(晝茶禮)와 석상식(夕上食)을 행하였다. 왕세자(王世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詣孝慕殿, 行朝上食、晝茶禮、夕上食。 王世子隨詣, 行禮。
고종 29권, 29년 (1892 임진 / 청 광서 (光緖) 18년) 4월 17일(을사) 1번째기사 효모전에 나아가 상제를 행하고 이어 별다례를 행하다	효모전(孝慕殿)에 나아가 상제(祥祭)를 행하고, 이어 별다례(別茶禮)를 행하였다. 왕세자(王世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十七日。 詣孝慕殿, 行祥祭, 仍行別茶禮。 王世子隨詣, 行禮。

고종 29권, 29년 (1892 임진 / 청 광서(光緖) 18년) 5월 14일(신미) 3번째기사 창녕의 오래된 환곡의 이자를 돈으로 대납하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경상 감사(慶尙監司) 이헌영(李씨永)의 보고를 보니, ‘창녕(昌寧)에서 예전에 거두어들이지 못한 목(木)은 38동(同) 33필(疋), 전(錢)은 6만 5,800냥(兩) 남짓, 미(米)는 591석(石)이며, 사천(泗川)에서 거두어들이지 못한 목은 31동 34필, 미는 63석입니다. 그런데 두 고을은 모두 피폐한 지방이어서 징수할 방법이 없으니, 목에 대한 이자는 인동(仁同)과 영일(迎日)의 전례대로 대전(代錢)하게 하고, 미에 대한 이자는 기축년(1889) 전례대로 대전하도록 허락하며, 모두 전에 대한 이자와 함께 계산하여 납부하도록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두 고을이 여러 해 동안 쌓인 폐단으로 지탱하기 어렵다는 것은 방금 암행어사의 보고에서도 나열하여 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고을에 이미 베푼 은전을 이 고을에서는 입지 못한다면 장차 황급하여 어찌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를 것이니, 청컨대 모두 보고한 내용대로 허락하여 주어 근원을 깨끗이 하고 후일의 좋은 성과를 기약할 대책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수원 유수(水原留守) 민영상(閔泳商)의 계본을 보니, ‘원군(園軍)의 군사들이 일으킨 소란을 맨 처음 제창한 자를 사핵(査覈)하여 남김없이 논하였으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맨 먼저 제창한 자에 대해서는 죄수들의 공초(供招)에서 명백히 지적하였으므로 특별히 판부하였는데, 감영(監營)에서 조사하여 다시 보고를 올린 것입니다. 김용규(金容圭)는 사족(士族)으로서 시골에 내려가 살지만 자신의 처신을 잘 하였더라면 누가 감히 모욕하며, 어찌 어리석은 무리들이 격분하여 나온 말을 믿어 마침내 고약한 무리들의 주장에 빠지겠습니까? 재앙은 스스로 취한 것	議政府啓: “卽見慶尙監司李씨永所報, 則‘昌寧舊未收木三十八同三十三疋, 錢六萬五千八百兩零, 米五百九十一石, 泗川未收木三十一同三十四疋, 米六十三石零, 兩邑俱以弊局, 指徵無處。 木邊則依仁同、迎日例許代, 米邊則依己丑例許代, 竝與錢邊計納’爲辭矣。 兩邑積弊難支, 纔有繡單臚陳, 而未蒙他邑已施之典, 將至遑汲末如之境。 請竝依報辭準許, 俾圖淸源善後之策何如?” 允之。 又啓: “卽見水原留守閔泳商啓本, 則‘園軍作鬧首倡, 査覈論跋, 請令廟堂稟處’矣。 首倡所歸囚供指的, 特判乃降, 營覈更徹。 金容圭, 士族落鄕, 而苟善飭躬, 人誰敢侮, 奚信愚蠢之激發? 竟陷悖類之主張, 孼由自取, 情節已露, 嚴刑遠惡島限己身定配, 勿揀赦前。 尹興萬之脅逼, 馬希孫、李元用之手犯, 干分蔑紀, 胡至此極? 竝嚴刑島配。 朴振尙昨年覆啓, 勘以島配, 依此施行。 朴允石參酌懲勵, 其餘竝放送事, 分付守臣何如?” 允之。

	이고 죄상이 이미 드러난 이상 엄히 형신(刑訊)하여 종신토록 원악도 정배(遠惡島定配)하여 물간사전(勿揀赦前)해야 하겠습니다. 남을 협박한 윤흥만(尹興萬)과 남에게 손찌검을 한 마희손(馬希孫), 이원용(李元用)은 본분을 어기고 윗사람을 침해하고 규율을 무시하기를 어찌 이렇듯 극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한단 말입니까? 모두 엄히 형신하여 도배(島配)해야 하겠습니다. 박진상(朴振尙)은 작년에 거듭 심리하고 보고를 올려 도배로 처벌하였으니 그대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박윤석(朴允石)은 참작하여 징계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방송(放送)하도록 수신(守臣)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고종 29권, 29년 (1892 임진 / 청 광서(光緖) 18년) 윤6월 1일(정사) 2번째기사 기우제를 날을 받지 말고 설행하라고 명하다	기우제(祈雨祭)를 날을 받지 말고 설행하라고 명하였다. 예조(禮曹)에서 계품(啓稟)하였기 때문이다.	命祈雨祭不卜日設行。 因禮曹啓稟也。
고종 29권, 29년 (1892 임진 / 청 광서(光緖) 18년) 윤6월 1일(정사) 1번째기사 종묘에 나아가 전알하다	종묘(宗廟)에 나아가 전알(展謁)하였다.	初一日, 丁巳。 詣宗廟, 展謁。
고종 29권, 29년 (1892 임진 / 청 광서		初三日。 行初次祈雨祭于三角山、木覓山、漢江。

(光緖) 18년) 윤6월 3일(기미) 1번째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에 첫 번째 기우제를 지내다	삼각산(三角山), 목멱산(木覓山), 한강(漢江)에서 첫 번째 기우제(祈雨祭)를 행하였다.	
고종 29권, 29년 (1892 임진 / 청 광서 (光緖) 18년) 윤6월 6일(임술) 1번째기사 용산강, 저자도에서 재차 기우제를 행하다	용산강(龍山江), 저자도(楮子島)에서 재차 기우제(祈雨祭)를 행하였다.	初六日。 行再次祈雨祭于龍山江、楮子島。
고종 29권, 29년 (1892 임진 / 청 광서 (光緖) 18년) 윤6월 11일(정묘) 1번째기사 두 번째 기우제를 지낼 때의 헌관에게 포상하다	전교하기를, “목마르게 기다리던 끝에 이렇게 단비가 내렸으니 모든 농사를 생각하면 진실로 천만 다행한 일이다. 두 번째로 기우제(祈雨祭)를 지낼 때의 헌관(獻官)에게는 녹피(鹿皮) 1령(令)을 사급(賜給)하고, 집사(執事)들에게는 모두 아마(兒馬) 1필(匹)씩을 사급하라.” 하였다.	十一日。 敎曰: “渴望之餘, 得此甘澍, 爲念三農, 誠爲萬幸。 再次祈雨祭獻官, 鹿皮一令賜給, 諸執事, 竝兒馬一匹賜給。”
고종 29권, 29년 (1892 임진 / 청 광서 (光緖) 18년) 7월 4일(기축) 1번째기사 진찬소 당상을 불러들	진찬소 당상(進饌所堂上) 김영수(金永壽)·민영준(閔泳駿)·박정양(朴定陽), 사옹원 제조(司饔院提調) 민영달(閔泳達)을 소견(召見)하였다. 하교하기를, “세자의 정성을 기특하게 여겨 진찬연(進饌宴)에 대해 비록 하는 수 없이 윤허하였으나 재정형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제반 의절(儀節)은 되도록 간	初四日。 召見進饌所堂上金永壽·閔泳駿·朴定陽、司饔提調閔泳達。 敎曰: “嘉乃東宮誠忱, 進饌雖已勉循, 度支事勢, 不可不念。 諸般儀節, 務從省略, 體予克軫貢弊、民事之至意。 儀

여 진찬연의 제반 의절을 간소하게 하라고 명하다	소하게 하여 공물(貢物)로 인한 폐단을 염려하고 백성의 사정을 걱정하는 나의 지극한 뜻을 헤아리도록 하라 의절 중에서 계본(啓本)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외의 사소한 문제들은 세자에게 보고하고 거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節中不得不啓本者外, 細瑣等事, 達于東宮擧行可也。
고종 29권, 29년 (1892 임진 / 청 광서(光緖) 18년) 7월 16일(신축) 1번째기사 호조에서 의화군에 바치는 공상과 유모 이하에게 내리는 음식에 소용되는 물품의 조달 방법을 별단에 적어들이다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의화군(義和君)에 대한 공상(供上) 및 유모(乳母) 이하에게 음식을 차려 주는데 에 쓸 각사(各司)의 원공(元貢) 가운데 부족한 물종(物種)은 전례(前例)를 참고하여 각도(各道)에 분담하여 마련하게 한 다음 별단(別單)에 적어들입니다. 그리고 올해 정월 18일 것부터 값을 지급하도록 선혜청(宣惠廳)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十六日。 戶曹啓:“義和君供上及乳母以下宣飯所用各司元貢不足物種, 參考前例, 分道磨鍊, 別單書入。 而自今年正月十八日爲始, 給價之意, 分付宣惠廳何如?” 允之。
고종 29권, 29년 (1892 임진 / 청 광서(光緖) 18년) 7월 25일(경술) 3번째기사 탄신일을 맞이하여 여러 대신들에게 사찬하도록 하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봉조하(奉朝賀), 종친(宗親), 시임 각신(時任閣臣)과 원임 각신(原任閣臣), 빈객(賓客), 내외 아문(內外衙門)의 당상(堂上)과 낭청(郎廳), 종정경(宗正卿), 육조(六曹), 양사(兩司)의 장관(長官), 2품 이상의 승지(承旨)와 사관(史官),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과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관리들에게 사찬(賜饌)하였다. 생일이었기 때문이다.	命時原任大臣、奉朝賀、宗親、時原任閣臣、賓客、內外衙門堂郎、宗正卿、六曹、兩司長官、二品以上承史、玉堂、春桂坊, 賜饌。 以誕辰也。
고종 29권, 29년		侍講院以“謹依下令, 特下錢十五萬兩,

(1892 임진 / 청 광서(光緖) 18년) 8월 17일(임신) 3번째기사 세자가 특별히 돈 15만 냥을 내려 보내어 각 전민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다	시강원(侍講院)에서, '삼가 하령(下令)대로 특별히 내려 준 돈 15만 냥을 각 전민(廛民)에게 적당히 나누어 주어 백성들을 돌보아 주는 뜻을 보였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量宜分劃於各廛民, 以示顧恤之意" 啓。
고종 29권, 29년 (1892 임진 / 청 광서(光緖) 18년) 9월 10일(을미) 1번째기사 북관왕묘에 나아가 전작례를 행하다	북관왕묘(北關王廟)에 나아가 전작례(奠酌禮)를 행하였다. 왕세자(王世子)가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初十日。 詣北關王廟, 行奠酌禮。 王世子隨詣, 行禮。
고종 29권, 29년 (1892 임진 / 청 광서(光緖) 18년) 9월 10일(을미) 2번째기사 북관왕묘에 작헌례를 행할 때 찬례 이하에게 시상하다	북관왕묘(北關王廟)에 작헌례(酌獻禮)를 행할 때의 찬례(贊禮) 이하, 배종(陪從)한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과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이하, 동관왕묘(東關王廟)와 남관왕묘(南關王廟)의 향관(享官) 이하에게 차등있게 시상(施賞)하였다. 예방 승지(禮房承旨) 이용직(李容稙), 예모관(禮貌官) 민영규(閔泳奎), 상례(相禮) 김교헌(金敎獻), 대축(大祝) 김성규(金成圭)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北廟奠酌禮時贊禮以下、陪從春桂坊以下及東南廟獻官以下, 施賞有差。 禮房承旨李容稙、禮貌官閔泳奎、相禮金敎獻、大祝金成圭, 竝加資。
고종 29권, 29년		

(1892 임진 / 청 광서(光緖) 18년) 9월 24일(기유) 1번째기사 근정전에 나아가 외진찬을 행하다	근정전(勤政殿)에서 외진찬(外進饌)을 행하였다. 【상(上)이 익선관(翼善冠)과 곤룡포(袞龍布) 차림으로 자리에 오르니 왕세자(王世子)와 종친(宗親), 문무 백관들이 예를 행하였다. 사옹원 제조(司饔院提調)가 주기(酒器)를 올리고, 이어 찬안(饌案)을 올리니 음악을 연주하였고 별행과(別行果)를 올리니 음악을 그쳤다. 근시(近侍)가 화반(花盤)을 봉진(俸進)하고 전악(典樂)이 '천추만세악장(千秋萬歲樂章)'을 창(唱)하니 왕세자가 첫 잔을 올리고 치사관(致詞官)을 대신하여 치사(致詞)를 읽었다. 이어서 상이 잔을 들자 전교관(傳敎官)이 선교(宣敎)하기를, "술잔을 들어 축수(祝壽)하는 때이니 왕세자와 경사를 함께하라." 하였다. 등가(登歌)가 '수요남극(壽曜南極)'을 연주고 무동(舞童)이 들어와 '헌선도(獻仙桃)'를 추었다. 염수(鹽水)를 올리고 탕(湯)을 올리고 아울러 미수(味數)를 올리니 음악을 연주하고 대선 만두(大膳饅頭)를 올리니 음악을 그쳤다. 반수(班首) 영의정(領議政) 심순택(沈舜澤)이 두 번째 잔을 올리고 치사를 읽으니 상이 잔을 들고 전교관(傳敎官)이 선교하기를, "경들의 술 잔을 삼가 들라." 하였다. 등가가 '풍운경회(風雲慶會)'를 연주하니 무동이 들어와 초무(初舞)를 추었다. 왕세자 이하 종친(宗親), 문무 백관이 세 번 머리를 조아리고 산호 천세(山呼千歲)하였다. 음악을 연주하자 왕세자가 자리에 나아갔다. 사옹원 부제조(司饔院副提調)가 찬안을 올리고 별행과를 올리니 음악을 그쳤다. 궁관(宮官)이 화반을 봉진하고 왕세자가 잔을 받아들고 마시자 등가가 '수연장(壽延長)'을 연주하고 무동이 들어와서 '만수무(萬壽舞)'를 추었다. 종친(宗親)과 문무 응참관(文武應參官)의 찬탁(饌卓)을 차려주고 이어 꽃을 뿌렸다. 의화군(義和君) 이강(李堈)이 세 번째 잔을 올리고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김홍집(金弘集)이 네 번째 잔을 올렸으며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김병시(金炳始)가 다섯 번째 잔을 올리고 판중추부사 조병세(趙秉世)가 여섯 번째 잔을 올렸으며 우의정(右議政) 정범조(鄭範朝)가 일곱 번째 잔을 올리고 완평	---------- ---------- ---------- -- 二十四日。 御勤政殿, 行外進饌。 【上具翼善冠、袞龍袍, 陞座, 王世子及宗親、文武百官行禮訖。 司饔提調進酒器, 仍進饌案, 樂作, 進別行果, 樂止。 近侍捧進花盤, 典樂唱'千秋萬歲'樂章, 王世子進第一爵, 代致詞官讀致詞訖。 上擧爵, 傳敎官宣敎曰: "稱觴之辰, 與王世子同慶。" 登歌作'壽曜南極'之曲, 舞童入作'獻仙桃'。 進鹽水, 進湯兼進味數, 樂作, 進大膳饅頭, 樂止。 班首領議政沈舜澤進第二爵, 讀致詞, 上擧爵, 傳敎官宣敎曰: "敬擧卿等之觴。" 登歌作'風雲慶會'之曲, 舞童入作初舞。 王世子以下宗親、文武百官三叩頭山呼千歲, 樂作, 王世子就位, 司饔副提調進饌案, 進別行果, 樂止。 宮官捧進花盤, 王世子受盞擧飮, 登歌作'壽延長'之曲, 舞童入作'萬壽舞'。 設宗親、文武應參官饌卓, 仍散花。 義和君堈進第三爵,

	군(完平君) 이승응(李昇應)이 여덟 번째 잔을 올렸으며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김영수(金永壽)가 아홉 번째 잔을 올렸는데 모두 위의 절차와 같이 하였다. 등가가 '천하태평(天下泰平)'을 연주하니 무동이 들어와 '몽금척(夢金尺)'을 추었다. 찬안을 거두고 세자 이하 종친, 문무 백관이 예를 행한 뒤에 의식이 끝났다.】 첫 번째 잔을 올릴 때의 치사문(致詞文)에, "지극한 덕은 이름할 수 없고 큰 공적은 더할 나위 없이 빛나니, 어찌 하늘과 같이 큰 공덕을 이루 다 칭송할 수 있겠습니까? 보산(寶算)이 51세가 되고 3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으며 한해에 두 가지 경사를 맞게 되니 하늘이 복을 주었습니다. 술을 올리며 남두성(南斗星)의 축수(祝壽)하오니 은혜를 널리 베풀며 만년토록 장수하시어 해와 달처럼 밝게 빛나시옵소서." 하였다.【세자가 지은 것이다.】	判府事金弘集進第四爵, 領敦寧金炳始進第五爵, 判府事趙秉世進第六爵, 右議政鄭範朝進第七爵, 完平君李昇應進第八爵, 知中樞府事金永壽進第九爵, 竝如上儀。 登歌作'天下泰平'之曲, 舞童入作'夢金尺'之舞。 撤饌案, 王世子以下, 宗親、文武百官行禮訖, 禮畢。】 第一爵致詞文曰: "至德難名, 洪功莫尙, 曷以頌之如天蕩蕩? 寶算望五, 州載治象, 一歲兩慶, 天心克享。酌以南斗, 恩波施廣, 長祝於萬, 日月炳朗。" 【睿製也。】 【원본】 33책 29권 63장 A면
고종 29권, 29년(1892 임진 / 청 광서(光緖) 18년) 9월 25일(경술) 1번째기사 강녕전에 나아가 내진찬을 행하다	강녕전(康寧殿)에 나아가 내진찬(內進饌)을 행하였다.【상은 익선관(翼善冠)과 곤룡포(袞龍布) 차림을 갖추고 왕비는 수식(首飾)을 갖추고 적의(翟衣) 차림을 갖추었다. 자리에 오르자 음악을 연주하고 사창(司唱)이 '준명악장(濬明樂章)'을 창(唱)하니 왕세자(王世子), 왕세자빈(王世子嬪), 좌명부(左命婦)와 우명부(右命婦), 종친, 척신(戚臣), 진찬소(進饌所)의 당상(堂上)과 낭청(郎廳)이 예(禮)를 행하였으며 이어 음악을 그쳤다. 상식(尙食)이 어찬(御饌)을 올리니 등가(登歌)가 '만수장락(萬壽長樂)'을 부르고 무동(舞童)이 들어와서 '헌선도(獻仙桃)'를 추자 여집사(女執事)가 화반(花盤)을 봉진(俸進)하였다. 왕세자가 첫 번째 잔을 올리고 여집사가 치사문을 읽기를 마치자 상과 왕비가 잔을 들었다. 상궁(尙宮)이 선교(宣敎)하기를, "술잔을 들어 축수(祝壽)하는 때이니 왕세자와 함께 경사를 즐기라." 하자, 음악을 연주하였다. 염수(鹽水)를 올리고	二十五日。 御康寧殿, 行內進饌。【上具翼善冠、袞龍袍, 王妃加首飾具翟衣, 陞座, 樂作, 司唱唱'濬明樂章', 王世子、王世子嬪、左右命婦、宗親、戚臣、進饌所堂郎行禮, 樂止。尙食進御饌, 登歌作'萬壽長樂'之曲, 舞童入作'獻仙桃', 女執事棒進花盤。王世子進第一爵, 女執事讀致詞訖, 上與王妃擧爵。 尙宮宣敎曰: "稱觴之辰, 與王世子同慶", 樂作。 進鹽水, 進湯, 仍進大膳饅頭。 樂作, 王世子

	탕(湯)을 올리고, 이어 대선 만두(大膳饅頭)를 올렸다. 음악을 연주하자 왕세자빈이 두 번째 잔을 올렸다. 여집사가 치사문을 읽기를 마치자 상과 왕비가 잔을 들었다. 상궁이 선교하기를, "술잔을 들어 축수하는 때이니 세자빈과 함께 경사를 즐기라." 하니, 이어 음악을 그쳤다. 미수(味數)를 올리고 차(茶)를 올리고 등가가 '천보구여(天保九如)'의 악곡을 연주하니 무동이 들어와 '포구락(抛毬樂)'을 추었다. 좌명부의 반수(班首) 정경 부인(貞敬夫人) 이씨가 세 번째 잔을 올리고 우명부 반수 정경 부인 김씨가 네 번째 잔을 올리고 의화군(義和君) 이강(李堈)이 다섯 번째 잔을 올리고 종친의 반수 완평군(完平君) 이승응(李昇應)이 여섯 번째 잔을 올리고 척신의 반수 겸 공조 판서(兼工曹判書) 조경하(趙敬夏)가 일곱 번째 잔을 올렸는데 모두 위와 같은 의식 절차대로 하였다. 등가가 '성수 무강(聖壽無疆)'을 연주하고 무동이 들어와 '장생 보연(長生寶宴)'을 추었다. 음식상을 거두고 음악을 연주하자 왕세자, 왕세자빈, 좌명부와 우명부, 종친, 척신, 진찬소의 당상과 낭청이 예를 행하니, 이어 음악을 그쳤다. 헌가(軒架)가 '무녕(武寧)'을 연주하고 무동이 들어와 검무(劍舞)를 추었다. 여집사가 의식이 끝났다고 알렸다.】 대전(大殿)에 올리는 치사문(致詞文)에, "덕은 천지와 같고 어질기는 당요(唐堯)나 우(禹) 순(舜)과 같아 억만년 터전을 잡았으니 이제 복이 날마다 더 커질 것입니다. 30년 동안 정사를 잘하고 연세가 51세가 되셨으니 성대한 잔치를 드리고 장식하는 것은 나라의 예법을 따른 것입니다. 중궁전의 덕화가 똑같이 훌륭하여 기쁜 명절이 왔으므로 춤을 추며 술잔을 들어 장수를 축하드립니다." 하였다. 중궁전(中宮殿)에 올리는 치사문에, "임금의 공으로 만물이 시작되고 건곤(乾坤)이 자기 자리를 제대로 잡아 태평세상을 이루었으며 아름다운 덕이 하늘에 알려져서 복록이 계속되옵니다. 상서로운 빛은 하늘에서 내려주고 감례(甘醴)는 땅에서 솟아나니 장수를 축하하	嬪進第二爵, 女執事讀致詞訖, 上與王妃擧爵。 尙宮宣敎曰: "稱觴之辰, 與王世子嬪同慶", 樂止。 進味數, 進茶, 登歌作'天保九如'之曲, 舞童入作'抛毬樂'。 左命婦班首貞敬夫人李氏進第三爵, 右命婦班首貞敬夫人金氏進第四爵, 義和君堈進第五爵, 宗親班首完平君李昇應進第六爵, 戚臣班首兼工曹判書趙敬夏進第七爵, 竝如上儀。 登歌作'聖壽無疆'之曲, 舞童入作'長生寶宴'之舞。 撤饌樂作, 王世子、王世子嬪、左右命婦、宗親、戚臣、進饌所堂郎行禮, 樂止。 軒架作'武寧'之曲, 舞童入作'劍舞'。 女執事告禮畢。】 大殿致詞: "德配天地, 聖侔堯、舜, 萬億基今, 福日方進。 卅載致治, 五旬肇啓, 豐享賁飾, 式遵邦禮。 壼化齊隆, 慶節是屆, 斑舞奉觴, 眉壽以介。" 中宮殿致詞: "聖功開物, 乾坤以位, 陰化助深, 昇平寔致。 馨德升聞, 福祿川至, 瑞曜垂天, 甘醴出地。 岡祝彌切, 慶節又値, 臣民忭蹈, 醇醲旣醉。" 大殿進饌箋文: "至治屆必世之仁, 聖壽肇大衍之數。 兩慶竝湊, 九爵恭陳, 伏以開萬世泰平之基,

	는 마음이 더욱 간절한데 경사스러운 명절을 또 만났습니다. 신하와 백성들이 기뻐서 뛰며 행복에 이미 취하였습니다.” 하였다. 대전에 올리는 진찬 전문(進饌箋文)에, “정사를 잘하여 필시 세상에 인정(仁政)을 이루고 성상(聖上)께서 장수하여 크게 번영할 운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가지 경사가 동시에 겹쳤으므로 아홉 잔을 삼가 올리니 만세 태평할 기초를 열고 더욱 큰 복을 맞이하기 바랍니다. 열조(列祖)에 보기 드문 훌륭한 일을 만나 성대한 의식을 행하니 기쁨이 종묘(宗廟)에 넘치고 먼 시골에서도 같이 즐깁니다. 생각건대 거룩하고 신기하며 문명하고 용감하며 슬기롭고 총명하며 좋은 일을 하여 복이 내리니 하늘이 밝게 하고 길하게 하며 임금이 되어 복록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큰 덕을 지닌 분은 반드시 그에 따르는 장수를 얻고 이름을 얻는 것입니다. 아, 보산(寶算)은 51세가 되고 등극하신 지 30년이 되었으므로 여러 번 간청하여 비준을 얻으려고 하였으니 이것은 자식으로서 마땅히 할 일이고 기쁜 일을 만나 정성을 다하려고 하는 것도 우리의 예법에 있는 것으로 다행히 성충(聖衷)의 사양하시는 마음을 돌려 성대한 의식을 훌륭하게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신은 세자의 자리를 이어 은덕에 보답하려는 정성은 주(周)나라 문왕(文王)을 배우고 본받아서 하루에 세 번씩 문안드리며 〈천보(天保)〉에서와 같이 만년 장수를 칭송하려고 합니다.” 하였다. 중궁전에 올리는 진찬 전문(進饌箋文)에, “금인장(金印章)과 옥책문(玉冊文)이 두 가지 경삿날에 동시에 빛나고 탄신일에 술을 바치는 떳떳한 절차를 따름으로써 적은 정성이나마 드립니다. 나라를 태평하게 하고 사람들이 화목하게 하니 큰 복을 주었고, 하늘과 같이 높여 큰 경사가 넘치니 장수를 비는 잔을 올리며 9월에 무지개가 흐르니 온	益迓景命。 値列祖罕有之盛, 賁飾縟儀, 慶衍宗祊, 歡均陬澨。 恭惟聖神文武, 睿智聰明, 作善降祥, 上天所以命哲命吉, 膺圖受籙。 大德必其得壽得名。 猗! 寶籌肇啓五旬, 迺御極適當卅載。 屢懇而期獲準, 是子職當爲; 遇喜而欲展忱, 亦我禮則有。 幸回聖衷之謙挹, 誕擧晟典之豐享。 伏念臣繼照忝叨, 報暉誠悃。 周文願學, 效問寢於三朝; 《天保》陳詩, 迺善頌於萬壽。” 中宮殿進饌箋文: “寶冊竝闡於兩慶之辰, 瑤觴誕擧於千秋之節, 式遵彝典, 庸效微誠。 伏以撫升平而導人和, 周貺景籙; 儷乾尊而衍天慶, 齊獻壽觴。 九月虹流, 八域鼇忭。 恭惟厚德載地, 順道承天。 所助者深, 王道以《二南》基本; 其名必得, 大德體萬物資生。 猗! 是慶去年今年, 更遐祝千歲萬歲。 連年之懇幸格, 勉回謙衷; 愛日之忱粗伸, 載擧賁典, 是禮則瓊漿、玉饌, 其頌也北斗、南山。 伏念臣繞膝歡供, 介眉誠切, 鷄鳴問寢, 效周孝而止於兕觥, 躋堂頌豳壽, 而稱彼先唱樂章, 兕罇挹彼金莖露, 算珠花千數。 聖人大德壽無量, 與泰盤鞏固,

	나라가 기뻐합니다. 삼가 생각건대, 후한 덕으로 땅을 덮어주듯 백성을 사랑하고 도(道)에 순응하여 하늘의 명을 받드니 도운 바가 크며 왕도(王道)는 〈주남(周南)〉, 〈소남(召南)〉을 기본으로 하니 그 이름은 반드시 큰 덕을 얻을 것이며 만물이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아! 이 경사는 작년과 금년에 거듭 천 년 만년토록 장수하시기를 축원하기를 해를 이어 계속 간청하여 다행히 사양하는 마음을 돌리시도록 하였으니, 자식의 심정이 조금 풀려 이에 성대한 의식을 거행하며, 경장(瓊漿)과 옥찬(玉饌)으로 예를 갖추고 북두 남산(北斗南山)처럼 끝없는 장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삼가 생각건대, 신은 무릎을 꿇고 기쁨을 드리며 정성껏 장수를 축하하며 새벽에 문안하여 주 문왕(周文王)의 효성을 본받고 술잔을 올리고, 당에 올라 장수를 칭송합니다.” 하였다. 선창 악장(先唱樂章)에, “술잔에 술을 부으니 주화(珠花)가 천수(千數)를 헤아리게 됩니다. 성인의 큰 덕으로 장수가 한량없이 태산 반석과 같이 튼튼하고 태평 세상에 해마다 풍년이 드니 풍년 노래가 빛나며 제때에 비가 와서 풍년이 들어 거문고 소리가 들리고 우아한 음악이 울리니 봉래(鳳來) 깊은 곳에 있던 봉황새가 와서 춤을 춥니다.” 하였다. 후창 악장(後唱樂章)에, “용의 못에 가을 하늘이 맑고 나뭇잎 위에 천년 장수를 그리고 번영하던 당요(唐堯), 우(禹) 순(舜)의 세상을 오늘 즐겁게 만난 훌륭한 때에 모든 관리들이 절하며 춤을 추니 금궁 천줄에 옥으로 만든 패물이 빛나고 일제히 만세를 부르는 소리에 오색구름이 하늘높이 솟아오릅니다.” 하였다. 야진찬(夜進饌) 때의 선창 악장에, “옥전(玉殿)에 불빛이 반짝거리고 백보등(百寶鐙)이 붉은 계단에 빛나며 머리	時平年稔熙穰樂庶見需雲豐豫, 鏗鏘雅樂鳳來儀, 在蓬萊深處。 後唱樂章, 龍池秋霽, 葉上龜千, 歲壽域烟, 花堯、舜世。 今日欣逢盛際, 簪紳拜舞金宮, 千行玉佩玲瓏, 齊唱山呼聲裏, 五雲捧出靑嵩。 夜進饌時, 先唱樂章, 玉殿照熒煌, 百寶鐙光彤墀。 拜稽奉瑤觴, 錦拂纔回牙板響, 夜未渠央。 聖德天同, 大申降休祥, 吾君萬歲壽而昌, 兩慶今年尤罕覩, 至樂堂堂。 後唱樂章, 壽曜祥光連紫極, 龜甲屛風掩暎南山, 碧花繞紅欄呈百劇。 萬年長願如今夕, 仙醞千觴擎玉液, 羞以瑤桃金, 母曾留核, 餘瀝更將均八域, 太和醲郁沾仁澤。【竝睿製。】 【원본】 33책 29권 63장 A면

	를 조아려 절하며 구슬잔을 올리니 비단옷을 흔드는 소리가 겨우 상아판자를 돌아 울리는데 밤은 아직 깊지 않았습니다. 성인의 덕이 하늘과 같아 큰 복을 거듭 내리니 우리 임금이 만년 장수하고 번창할 징조이고 두 가지 경사가 금년에 있는 것은 더욱 보기 드문 일이니 지극한 즐거움이 있는 것은 당당한 일입니다.” 하였다. 야진찬 때의 후창 악장에, “장수가 빛날 상서로운 빛이 자극(紫極)에 잇닿고 거북의 껍데기로 만든 병풍이 남산을 가리며 푸른 꽃이 붉은 난간을 둘렀습니다. 만년토록 오늘 저녁과 같이 장수하기를 축원하여 신선술을 드리고 여러 가지 광대놀이를 하며 옥술을 들고 요도(瑤桃)를 연주하니 서왕모가 씨를 남겼으며 남은 술을 다시 온 나라에 고루 퍼주니 태평한 기운이 어진 혜택에 젖었습니다.” 하였다.【모두 세자가 지은 것이다.】	
고종 29권, 29년 (1892 임진 / 청 광서(光緖) 18년) 9월 26일(신해) 1번째기사 강녕전에 나아가 회작연을 행하다	강녕전(康寧殿)에서 회작연(會酌宴)을 행하였다. 선창 악장문(先唱樂章文)에, “하늘에서 큰 복을 주어 모든 복록(福祿)이 날로 새로워지고 장수(長壽)를 주어 우리 임금을 축하하네.” 하니, 후창 악장문(後唱樂章文)에, “잔치를 차린 기쁨이 더욱 즐겁고 부부가 화락하니 크게 기쁘며 하늘에서 받는 복으로 우리 나라를 보전하리라.” 하였다.【모두 세자(世子)가 지은 것이다.】	二十六日。 行會酌于康寧殿。 先唱樂章文曰: “景貺自天, 百祿日新, 錫以黃耇, 祝我聖人。” 後唱樂章文曰: “燕喜湛, 琴瑟孔嘉, 受天之祜, 保我邦家。” 【竝睿製。】
고종 29권, 29년 (1892 임진 / 청 광서		初四日。 詣毓祥宮、延祐宮、宣禧宮、景祐宮, 展拜。 王世子隨詣, 行

(光緖) 18년) 10월 4일(무오) 1번째기사 육상궁, 연호궁, 선희궁, 경우궁에 나아가 전배하다	육상궁(毓祥宮), 연호궁(延祜宮), 선희궁(宣禧宮), 경우궁(景祐宮)에 나아가 전배(展拜)하였다. 왕세자(王世子)가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禮。
고종 29권, 29년 (1892 임진 / 청 광서 (光緖) 18년) 10월 17일(신미) 1번째기사 강녕전에 나아가 재차 회작연을 행하다	- 강녕전(康寧殿)에서 재차 회작연(會酌宴)을 행하였다.【의식은 위와 같다.】	十七日。 行再會酌于康寧殿。【儀上同】
고종 29권, 29년 (1892 임진 / 청 광서 (光緖) 18년) 11월 3일(정해) 1번째기사 왕대비전이 국모로 책봉된 지 50년이 되는 것을 축하하는 의식에 대해 대신과 의논하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들, 예조 당상(禮曹堂上)을 소견(召見)하였다. 하교하기를, “전례(典禮)에 대하여 경들에게 문의하려고 한다. 우리 왕대비전(王大妃殿)은 보령(寶齡)이 매우 높고 내년은 국모로 책봉된 지 50년이 되는 경사스러운 해이므로 과인 모자가 기뻐하며 송축하는 마음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경사를 만나 기쁨을 표하는 것은 본래 이전(彝典)이 있는데 매번 겸손하게 사양하시니 따르면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인정과 예절을 다하지 못하여 섭섭하기 비길 데 없다. 내년 정월 초하룻날에 친히 치사(致詞)와 전문(箋文), 표리(表裏)를 올려 조금이나마 정성을 펴고자 해서 경들에게 문의하는 것이다.” 하니,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김병시(金炳始)가 아뢰기를, “내년의 이 경사는 실로 우리 왕조에 드문 경사입니다. 우리 왕대비 전하의 온순하고 인자하며 공손하고 공검한 덕과 장수하고 건강한 복은 마땅히 하늘의 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미 행하였던 예식을 따라 성대한 의식을 거행하려는 한다는 전하의 하교를 받으니 신은 기쁘고 송축하는 심정을 금할 수 없	初三日。 召見時原任大臣、禮堂。 敎曰:“有典禮之欲與卿等詢議矣。 惟我王大妃殿寶齡彌邵, 明年屆母臨五十年慶會也。 予小子歡忭頌祝之忱, 曷有其極? 遇慶識喜, 自有彝典, 而每承謙挹, 縱宜將順, 未盡情禮, 悵缺無比。 欲於來歲元朝, 親上致詞箋文、表裏, 少伸微忱, 所以召詢卿等矣。” 領敦寧金炳始曰: “明年此慶, 實國朝罕有之慶也。 我王大妃殿下溫仁恭儉之德, 壽考康寧之福, 宜其有受天之祜。 而今伏承聖敎, 爰循已行之禮, 將擧賁飾之典, 臣不勝欣歡忭祝之至。 伏願亟下明命, 俾卽擧行焉。” 右議政鄭範朝曰: “猗! 我王大妃殿下仁孝勤

	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속히 밝은 명을 내리시어 곧 거행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우의정(右議政) 정범조(鄭範朝)가 아뢰기를, “우리 왕대비 전하의 인자하고 효성스러우며 근면하고 검박한 지극한 선과 훌륭한 덕은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송축하며 영원토록 칭송하는 말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국모로 임하신 지 50년이 되는 경사스러운 때를 당하여 우리 성상께서 이장(彝章)에 따라 장차 성대한 의식을 거행하려고 하니 신들은 송축하며 찬양하고 싶은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직 속히 명을 내리기를 삼가 기다립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국모로 임하신 지 50년이 되고 춘추 또한 높으시니 실로 드문 경사이다. 아름답게 꾸미는 밝은 법규를 행함에 있어 마땅히 마음을 극진히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내(自內)에서 우러러 청하면 겸손하게 사양하시며 자처(自處)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정성을 다 할 수 없으니 매우 섭섭하다.” 하였다. 김병시가 아뢰기를, “겸손하신 가운데 아름다운 본보기를 드러내시어 더욱 왕대비전의 덕을 송축하고 이전을 상고하여 절충하고자 하시니 더욱 뜻을 순종하시려는 성상의 훌륭함을 우러르게 됩니다.” 하니, 정범조가 아뢰기를, “우리 왕조에서 드문 경사를 만났는데 더욱 겸손하시는 진심을 송축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왕조에서 이미 행하였던 예를 참작하여 뜻을 받들어 순종하시는 훌륭한 덕행을 더욱더 우러르게 됩니다.”	儉之至善盛德, 八域咸頌, 千秋有辭。 今當母臨五十年之慶會, 我聖上率循彝章, 將擧賁典, 臣等不勝欽頌攢祝之忱矣。 惟伏俟亟降成命焉。” 敎曰: “母臨已屆五十年, 則春秋亦隆邵, 此實罕有之慶也。 賁飾晠典, 宜其靡不容極, 而自內仰請, 謙挹不居, 無以盡誠, 甚庸缺然矣。” 炳始曰: “著徽範於謙牧, 愈頌含章之德。 稽彝典而折衷, 益仰將順之盛矣。” 範朝曰: “遭値國朝罕有之慶, 益頌謙挹之衷。 參酌我家已行之禮, 愈仰將順之盛矣。”
고종 29권, 29년 (1892 임진 / 청 광서(光緖) 18년) 11월 3	전교하기를, “우리 왕대비전의 보령(寶齡)이 더욱 높아지시고 내년은 국모로 임하신 지	敎曰: “惟我王大妃殿寶齡彌邵, 明年卽屆母臨五十年, 此實罕有之慶也。 予小子歡忭頌祝, 曷有其極? 而飾喜之

일(정해) 2번째기사 예조로 하여금 왕대비전이 국모로 책봉된 50년을 축하하는 의식을 마련하라고 명하다	50년이 되는 해이니 이것은 실로 드문 경사이다. 과인 소자가 기뻐 송축하는 마음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기쁨을 표시하는 행사 또한 우리 왕조에서 이미 행하였던 예가 있다. 이에 동짓날에 예조 당상(禮曹堂上)을 불러 묻고 의논하였는데 의견이 일치하여 마땅히 내년 정월(正月) 초하루에 치사(致詞)와 전문(箋文)을 친히 올려 작은 정성을 펴고자 한다. 고포(告布)하는 절차는 예조(禮曹)로 하여금 규례에 따라 마련하게 하라." 하였다.	擧, 亦有我家已行之禮。 玆於亞歲之日, 召見大臣、禮堂, 詢議僉同。 當於月正元日, 親上致詞箋文, 庸伸微忱。 告布之節, 令儀曹依例磨鍊。"
고종 29권, 29년(1892 임진 / 청 광서(光緖) 18년) 12월 9일(계해) 3번째기사 기근을 구제하기 위해 충청도에 사환미 중 6,000석을 분배하여 나누어 주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금 충청 감사(忠淸監司) 조병식(趙秉式)이 보고한 것을 보니, 흉년이 들어 매우 급박한 상황을 자세히 진달하고 이어서 청하기를, '사환곡(社還穀)으로 창고에 남아 있는 쌀 1만 2,000석(石) 가량을 진자(賑資)로 획급하도록 허락해 주시되, 3,000석을 내년 봄에 싼 값으로 발매하였다가 풍년들기를 기다려서 상정가(詳定價)로 입본(立本)하여 도록 원곡(元穀)을 충당하게 해 주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본도(本道)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의 사정이 황급하므로 도신(道臣)이 보고하여 기근을 구제하는 정사를 실시할 것을 청하였으니 지체할 수 없습니다. 우선 사환미(社還米) 중에서 6,000석(石)을 진자로 획하(劃下)하고 추후에 본량을 충당하는 문제는 잘 헤아려 선처하고, 분배하여 나누어 주는 일은 철저히 감독하도록 별도로 열읍(列邑)에 신칙하여 한 사람이라도 굶주려 죽는 폐단이	議政府啓: "卽見忠淸監司趙秉式所報, 則'備陳歉荒急切之狀, 仍請社還留庫米假量一萬二千石, 以賑資許劃三千石, 明春輕價發賣, 待年豐, 以詳定立本還, 充原穀'爲辭矣。 本省告饑, 民情遑汲, 乃有道臣請報賙救之政, 不宜虛徐。 先以社米中六千石賑資劃下, 從後充本, 量宜善處, 而排巡派給之節, 築底董檢, 另飭列邑, 無至有一民捐瘠之患事, 行會何如?" 允之。 又啓: "會寧民擾事, 未知其間究竟如何, 而第聞所犯請漢, 擧多知機逃躲云。 覈使之因此久淹, 貽弊可念, 先以就捕

	없도록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회령(會寧)의 백성들이 소요를 일으킨 사건은 그 사이에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다만 듣건대 죄를 범한 여러 놈들이 모두 기미를 알아차리고 도망쳤다고 합니다. 안핵사(按覈使)가 이 일로 인해 오래 체류하여 폐단을 끼칠까 염려되니 우선 잡은 몇 놈을 구핵(鉤覈)하여 조사한 것으로 조리 있게 수계(修啓)하고 이어 즉시 관청으로 돌아오도록 하고, 도망친 죄인은 안무사(按撫使)로 하여금 엄히 규찰하여 붙잡은 후에 상황과 경위를 등문(登聞)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幾漢, 鉤覈者論理修啓, 仍卽還官。漏網罪人, 令按撫使嚴加詞捉後, 形止登聞事, 分付何如?” 允之。
고종 30권, 30년 (1893 계사 / 청 광서(光緖) 19년) 1월 1일 (을유) 1번째기사 왕대비전이 국모로 책봉된 50년을 경축하여 진하를 받고 대사령을 반포하다	【고종 통천 융운 조극 돈륜 정성 광의 명공 대덕 요준 순휘 우모 탕경 응명 입기 지화 신열 외훈 홍업 계기 선력 건행 곤정 영의 홍휴 수강 문헌 무장 인익 정효 태황제 실록(高宗統天隆運肇極敦倫正聖光義明功大德堯峻舜徽禹謨湯敬應命立紀至化神烈巍勳洪業啓基宣曆乾行坤定英毅弘休壽康文憲武章仁翼貞孝太皇帝實錄) 제30권】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왕대비전(王大妃殿)에 치사(致詞)와 전문(箋文)과 표리(表裏)를 친히 올렸다. 왕세자(王世子)가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국모(國母)가 된 지 50년이 되는 것을 경하한 것이었다. 이어 진하를 받고 대사령(大赦令)을 반포하였다. 반교문(頒敎文)에, “해가 바뀐 새해에 천재일운(千載一運)이 통하고 50년을 임어(臨御)하시었다. 이에 법도를 살펴 널리 경하한다. 생각하건대, 명헌 숙경 예인 정목 홍성 장	【高宗太皇帝實錄卷之三十】 初一日, 乙酉。 詣勤政殿, 親上致詞箋文、表裏于王大妃殿。 王世子隨詣, 行禮。 母臨五十年稱慶也。 仍受賀, 頒赦。 敎文若曰: 玉曆之歲籥載新, 千一運亨泰; 璇閨之寶筭彌卲, 五十年光臨。 爰稽弊章, 用覃廣慶。 恭惟明憲淑敬睿仁正穆弘聖章純貞徽莊昭端禧粹顯懿獻王大妃殿下, 稟姿淵靜, 秉德柔嘉。 奉純元而逮我神貞, 徽音克嗣; 配憲廟而位乎壼極, 內助者深。七廟潔蘋藻之供, 夙夜靡懈; 六宮頌樛

	순 정휘 장소 단희 수현 의헌 왕대비(明憲淑敬睿仁正穆弘聖章純貞徽莊昭端禧粹顯懿獻王大妃) 전하(殿下)는 천품이 깊고 조용하며 덕성을 지님이 부드럽고 아름다웠다. 순원 왕후(純元王后)를 섬기다가 우리 신정 왕후(神貞王后)를 모시어 아름다운 말을 능히 이었다. 헌종 대왕(憲宗大王)의 배필로서 중전(中殿) 자리에 있으면서 내조(內助)한 것이 종묘의 칠묘(七廟) 제사 장만을 밤낮으로 게을리 하지 않았고 육궁(六宮)에 울려 퍼지는 규갈(樛葛)의 송축은 풍화(風化)의 근원이다. 시례(詩禮)를 가정에서 배워 익혀 옛 교훈으로 타이를 것이 없었다. 말소리가 규문을 넘지 않으니, 실로 삼가 단속한 평소 규범이었다. 7순에 이르렀으니 후비(后妃)들 중에 이렇게 성대한 이는 없었다. 높은 칭호를 받은 것이 10책(冊)이니, 여사(女史)가 편집에 다 써넣지 못할 것이다. 과인(寡人)이 외람되이 왕업을 이어받고 두터운 보살핌을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선군(先君)을 사모하여 힘써 받들어 옛 법도를 따라 어긋나지 않게 하였다. 지극히 훌륭함을 잊을 수 없어 늘 보답하려 함은 끝이 없다. 새해 삼원(三元) 가절을 경축하니, 왕비로 오른지 50년의 성대함이다. 하늘의 아름다움이 거듭되어 복의(伏義)가 역(易)을 풀이한 수에 합치되고, 세차(歲次)가 사년(巳年)이어서 요순(堯舜)이 들에서 물었던 해와 부합된다. 만년 아름다운 명운(命運)의 기틀이 보배로운 왕대비에게서 빛을 더한다. 새해 삼시(三始)의 아름다운 기회가 이르러 교화가 빛나 점점 퍼진다. 드물게 보는 성대한 의식이니, 어찌 아름다움을 장식하는 구전(舊典)을 느슨히 하랴! 빛나는 법도를 고사에서 찾아보니, 인원왕후(仁元王后)의 아름다운 전례가 있다. 기쁨은 이 때에 갑절이지만 신해년(1731) 봄의 성대한 예의를 따라야 할 것이다. 그때도 햇볕이 따뜻한 봄날이었고 그 예의는 대궐 붉은 섬돌에서 천세(千歲)를 불렀다. 채색 종이에 만수(萬壽) 축원의 전문(箋文)으로 기뻐하고 창표(蒼	葛之什, 風化攸原。 詩禮佩服家庭, 無待箴誡乎古訓; 敎令不出閨闥, 實由謹約之素規。 鳳曆已屆七旬, 后妃以來未有盛; 鴻號丕闡十冊, 女史之編, 不勝書, 顧寡昧叨承丕基, 荷厚庇式至今日。 先君之思以勖, 無愆舊章之率由; 至善之不能忘, 每切崇報之靡極。 爲新祝騰三元之節, 廼寶籙綿五紀之隆。 天休用申, 叶庖羲衍易之數; 歲德在己, 符陶唐問野之年。 萬年之景命攸基, 寶婺增彩; 三始之嘉會載屆, 化旭漸舒。 肆乃罕覯之盛儀, 詎緩飾喜之舊典熙章? 謹稽於古事, 旣有仁元后徽規。 懽忱倍切於此時, 宜遵辛亥春縟禮。 是時也靑陽回泰, 其儀則彤階呼嵩。 進彩箋而頌禧, 蒼杓住長春之景; 拚玄篚而獻悃, 紅椒奉祥雲之光。 登淸廟而薦犧樽, 莅昕庭而宣鳳綍。 物采必備於是日, 禮所當行; 制度自有於我家, 情亦允叶。 自本月一日昧爽以前, 雜犯死罪以下, 咸宥除之。 於戲! 柔化如雨露涵育, 囿萬品於德海恩山; 景籙與天地靈長, 躋一世於春臺壽域。 故玆敎示, 想宜知悉。 【弘文提學李淳翼製。】

	杓)가 봄날의 경치에 어울린다. 대나무 그릇에 예물을 담아 바치고 홍초(紅椒)는 상서로운 광채를 받든다. 종묘(宗廟)에 올라 술잔을 올리고 조정의 뜰로 나와 교서(敎書)를 반포한다. 찬란한 물건을 오늘 갖추는 것이 예에 행해야 할 바이고, 제도가 우리 왕가에 있어 정리에도 진실로 맞는다. 이달 초하룻날 새벽 이전의 잡범으로서 사형수 이하는 모두 용서한다. 아! 덕화는 비와 이슬의 양육과 같아서 만물을 은덕의 산과 바다로 감싼다. 복록은 하늘 땅과 같이 장구하여 온 세상 사람들을 화목하고 장수하는 경지로 올린다. 그래서 이렇게 교시하니 모두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고종 30권, 30년 (1893 계사 / 청 광서(光緖) 19년) 1월 1일 (을유) 3번째기사 노인에게 옷감과 음식물을 내리다	노인에게 옷감과 음식을 내렸다.	賜老人衣資食物。
고종 30권, 30년 (1893 계사 / 청 광서(光緖) 19년) 1월 1일 (을유) 4번째기사 권농 윤음을 팔도와 오도에 내리다	권농 윤음(勸農綸音)을 팔도(八道)와 오도(五都)에 내렸다.	下勸農綸音于八道五都。
고종 30권, 30년 (1893 계사 / 청 광서(光緖) 19년) 1월 22일(병오) 1번째기사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난번에 충청 감사(忠淸監司) 조병식(趙秉式)의 장계(狀啓)와 관련하여 사미(社米) 가운데 6,000석(石)을 진자(賑資)로 획하(劃下)하도록 복계(覆啓)하여	二十二日。 議政府啓:“頃因忠淸監司趙秉式狀啓, 則社米中六千石, 賑資劃下之意, 覆啓行會矣。 卽見該道臣狀

의정부에서 충청도에 기근 구제용으로 사미를 더 내려 줄 것을 아뢰다	행회(行會)하였습니다. 방금 해도(該道) 도신(道臣)의 장계를 보니, 흉년이 들어 절박한 상황을 다시 진달하고, 이어 진자하는 데 부족한 쌀 9,000석을 더 획하하도록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지난 날 복계는 우선 먼저 헤아려 분배해서 그런 것이므로 열읍(列邑)의 굶주린 수에 이렇게 획하한 것은 너무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뜻에 있어서 어찌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도신이 거듭 아뢴 것이 이와 같이 절실하니 3,000석에 한하여 더 획하해주고 마음을 다해 구활하게 하여 한 명의 백성도 유리걸식하는 한탄이 없게 하도록 행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啓, 則‘復陳歉荒切急之狀, 仍請賑資不足米九千石加劃事, 令廟堂稟處’矣。 向日覆啓, 以其姑先量排而然也。 列邑抄飢之數, 以此劃下, 太不稱停, 則其在若恫之義, 何所靳許? 道臣荐啓, 如是切至, 限三千石加劃, 使之悉心救活, 無或有一民顚連之歎事, 行會何如?” 允之。
고종 30권, 30년(1893 계사 / 청 광서(光緖) 19년) 1월 27일(신해) 3번째기사 의정부에서 전라도의 부안 등 14개 고을에 환곡 중 절미를 내려 줄 것을 아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전라 감사(全羅監司) 이경직(李耕稙)의 장계(狀啓)를 보니, ‘도내(道內) 부안(扶安) 등 14개 고을 농사가 매우 흉작이어서 백성들의 사정이 황급합니다. 굶주린 백성들에 대한 진휼을 그만둘 수 없는데, 본 도의 곡식은 다 떨어졌고 도움을 청할 데도 없습니다. 호서(湖西)의 환곡(還穀) 가운데 절미(折米)를 3,000석(石)에 한하여 특별히 이획(移劃)하도록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도신(道臣)의 계사(啓辭)에서 진휼에 대해 논의하였으니,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보살피는 조정의 정사이고 더구나 곡식을 옮겨 서로 도와주는 것은 옛날부터 당연히 행해 오던 상규였습니다. 특별히 이획하도록 허락하되, 수송하는 일은 호서(湖西)의 도신과 상의하여 편리하고 마땅하게 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議政府啓: “卽見全羅監司李耕稙狀啓, 則‘道內扶安等十四邑農形慘歉, 民情遑汲, 抄飢賙賑, 有不可已, 而本道倉廒匱竭, 藉手無所。 湖西還穀中折米限三千石, 特爲移劃事, 請令廟堂稟處’矣。 道啓議賑, 在朝家憫恤之政。 而況移粟相資, 古昔應行之規乎? 特許移劃, 運輸之節, 與湖西道臣, 往復使當事, 分付何如?” 允之。

	하니, 윤허하였다.	
고종 30권, 30년 (1893 계사 / 청 광서 (光緖) 19년) 2월 8일 (신유) 4번째기사 세자의 탄신일을 맞이하여 조관으로 나이 80세와 20세 이상이 된 사람을 포상하고 공인에게 휼전을 베풀다	전교하기를, “매번 이 날을 맞을 때마다 그 기쁨을 어찌 이루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마는 더구나 금년은 다른 해와는 더욱 다르니 어떠하겠는가? 신하와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짐작할 만하다. 지금 기쁨을 기념한 뒤에 마땅히 경사를 널리 미치게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니, 조관(朝官)으로서 나이 80세 된 사람들에게는 각각 한 자급씩 올려주고, 나이가 20세 된 사람들에게는 각각 내하표리(內下表裏) 1차(次)를 제급(題給)하며, 사서인(士庶人)으로서 나이가 80세 된 사람들에게는 한성부(漢城府)로 하여금 호적(戶籍)을 살펴 옷감을 해조(該曹)에서 제급하게 하고, 나이 20세 된 사람들에게는 각기 명주 1필을 하사하라. 이에 내탕전(內帑錢) 30만 냥을 특별히 내리니, 공인(貢人)에게 10만 냥을, 시민(市民)에게 20만냥을 내무부(內務府)에서 적절히 헤아려 나누어 주고, 현방(懸房)의 요역(徭役)은 30일에 한해 탕감해 주어 널리 은혜를 베푸는 나의 뜻을 보이라.” 하니, 또 전교하기를, “조관인 노인에게 가자하는 것은 단지 일찍이 정직(正職)을 거친 사람에게만 시행하도록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에 통지하라.” 하였다.【조관으로서 나이 80세 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자한 사람은 행 대호군(行大護軍) 박홍수(朴弘壽) 등 81인이었다.】	敎曰: “每遇是日, 嘉喜何量? 而況今年之尤異於他年乎? 亦可想臣民大同歡情。 今於識喜之餘, 宜有覃慶之擧。 朝官年八十, 各加一資; 年二十人, 各內下表裏一次; 士庶年八十人, 令京兆考籍, 竝資令該曹題給; 年二十人, 各賜絹一疋。 特下內帑錢三十萬兩, 貢人十萬兩、市民二十萬兩, 自內務府, 量宜分給。 懸房徭役, 限三十日蕩減, 以示予廣惠之意。” 又敎曰: “朝官老人加資, 只以曾經正職人施行事, 知委吏兵曹”。【朝官年八十覃恩授資, 行大護軍朴弘壽等八十一人。】
고종 30권, 30년 (1893 계사 / 청 광서 (光緖) 19년) 2월 10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양로 외연(養老外宴)의 길일을 오는 3월 10일로 택한 데 대해 계하(啓下)하	禮曹啓: “養老外宴吉日, 來三月初十日推擇啓下。 而伊日幸行相値, 故更以同月二十二日推擇矣。 外宴定行於

일(계해) 2번째기사 예조에서 양로연의 외연과 내연의 날짜를 아뢰다	셨습니다. 그런데 그 날은 행행(幸行)과 상치(相値)되니 다시 같은 달 22일로 택하였습니다. 외연은 20일로 정하여 행하고, 내연(內宴)은 22일로 정하여 행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 날로 정하여 행하라." 하였다.	二十日, 內宴定行於二十二日乎?" 敎曰:"以此日定行。"
고종 30권, 30년(1893 계사 / 청 광서(光緖) 19년) 2월 26일(기묘) 2번째기사 예조에서 양로연에 음악을 연주하는 절차를 문의하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이번 양로연(養老宴) 때 음악을 연주하는 절차는 삼가 각년(各年)의 전례를 참고해서 마련해야 하나, 순전히 아악(雅樂)만 쓴 예도 있고 아악과 속악(俗樂)을 겸해서 쓴 예도 있으며 순전히 속악만 쓴 예도 있으니,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속악으로 마련하라." 하였다.	禮曹啓:"今此養老宴時用樂之節, 謹當參考各年例磨鍊, 而有全用雅樂之例, 有雅俗樂兼用之例, 有全內俗樂之例。 今番則何以爲之乎?" 敎曰:"俗樂爲之。"
고종 30권, 30년(1893 계사 / 청 광서(光緖) 19년) 2월 27일(경진) 1번째기사 회례연을 진찬연이나 회작연의 규례대로 할	전교하기를, "양로연(養老宴)을 행한 뒤에 회례연(會禮宴)이 있어야 하는데 일을 크게 벌이게 되므로 의식 절차를 진찬연(進饌宴)이나 회작연(會酌宴)의 규례대로 마련하며 동궁(東宮)도 회작연에 참석하도록 하라. 의식 절차는 이대로 마련하되, 회작연을 배설(排設)할 때 용교의(龍交椅)로 하고 이튿날에는 교의(交椅)	二十七日。 敎曰:"養老宴後, 宜有會禮宴, 而事涉張大, 儀節依進饌、會酌例磨鍊, 東宮亦當會酌矣。 儀節, 依此磨鍊, 會酌排設, 以龍交椅, 翌日以

것을 명하다	로 거행하며, 임금이 글을 짓고 세자가 글을 지을 때 선창 악장(先唱樂章)과 후창 악장(後唱樂章)은 여령(女伶)으로 하여금 연습하게 할 것이며 이틀 동안 쓸 찬품(饌品)을 적당히 마련하도록 분부하라.” 하였다.	交椅擧行。 御製睿製先後唱樂章, 令女伶肄習, 兩日饌品, 量宜磨鍊事, 分付。”
고종 30권, 30년 (1893 계사 / 청 광서(光緖) 19년) 3월 7일 (기축) 1번째기사 대보단에 친제하다	대보단(大報壇)에 친히 제사를 지냈다.	初七日。 行大報壇親祭
고종 30권, 30년 (1893 계사 / 청 광서(光緖) 19년) 3월 20일(임인) 1번째기사 근정전에 나아가 양로연 외연을 행하다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양로연(養老宴) 외연(外宴)을 행하였다. 왕세자(王世子)가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장수(長壽)를 축하하여 일곱 잔을 올리니, 기로소(耆老所)의 신하들과 여러 노인 이하가 술잔을 일곱 순배 돌렸다. 예식이 끝난 다음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을 인견(引見)하였다. 하교하기를, “오늘 이 행사는 바로 300년 동안 이어온 왕업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노인을 우대하는 전례(典禮)로써 이보다 성대한 것은 없다. 그리고 조야(朝野)의 기구(耆耉)들이 다같이 모임에 참가한 것을 보니 더욱 희귀하므로, 어진 덕을 지닌 사람들이 장수를 누리는 나라라고 말할 만하다.” 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심순택(沈舜澤),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김홍집(金弘集),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김병시(金炳始), 좌의정(左議政) 조병세(趙秉世),	二十日。 御勤政殿, 行養老外宴。 王世子率百官, 獻上壽七爵, 耆社諸臣及群老以下, 行酒七遍。 禮畢, 引見時原任大臣。 敎曰:“今日此擧, 卽三百年繼述之初有事也。 優老曠典, 莫此爲盛。 而見朝野耆耉之同爲會參, 尤庸稀貴。 可謂仁壽之域矣。” 領議政沈舜澤、判府事金弘集、領敦寧金炳始、左議政趙秉世、右議政鄭範朝等曰:“參宴群老, 幾爲千數, 可爲壽域矣。 統計群老之年, 將近十萬。 以此年數, 獻于聖上, 又獻于東宮, 卽今日, 臣民區區之祝也。” 敎曰:“養老本太

	우의정(右議政) 정범조(鄭範朝) 등이 아뢰기를, “연회에 참가한 노인들이 거의 1,000명이 되니, 장수하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노인들의 나이를 합쳐 계산하면 거의 10만에 가까운데, 이 나이 수만큼 성상께서 장수하시기를 바라고 또 동궁(東宮)에게 바라는 것이 곧 오늘날 신하와 백성들의 간절한 축원입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노인들을 봉양하는 것은 본래 태학(太學)의 예(禮)이다.” 하였다. 김홍집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지당합니다. 《예기(禮記)》에, ‘순(舜) 임금은 국가 원로를 상상(上庠)에서 대접하고 일반 노인은 하상(下庠)에서 대접하였다.’는 말이 있는데, 상(庠)이라는 것은 봉양함을 뜻합니다. 삼왕(三王) 시대에도 노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면서 좋은 말을 청한 예가 있었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국초(國初)에도 학궁(學宮)에서 노인들에게 음식을 대접한 예가 있었다.” 하였다. 이어 전교(傳敎)를 쓰라고 명하고 하교하기를, “연회에 참가한 노인 중에서 나이 90세 이상 되는 사람에게는 모두 각각 한 자급(資級)을 더하고 나이 100세 이상 되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를 제수하되, 정관(政官)을 패초(牌招)해서 개정(開政)하여 모두 오늘 중으로 하비(下批)하도록 하라.” 하니, 심순택이 아뢰기를, “우리 성상께서 학문을 높이는 정치를 하시어 유술(儒術)을 숭상하고 장려하며 인도하는 방도에 대하여 여러 번 특별 하교를 내리셨는데, 심지어 성균관(成均館)에서 월과(月課)를 설행하고 절목(節目)을 계하(啓下)한 경우도 있습니다. 월과의 형식은 점차 쉬운 것에서 힘든 것으로 나아가게 하였고 공부하는 방법은 널리 해박하게 알도록 하였습니다. 착실하게 학문을 익히고 훌륭하	學之禮也。” 弘集曰: “聖敎至當。 《禮》‘有虞氏養國老於上庠, 養庶老於下庠’, 庠者, 養也。 三王亦有養老乞言之禮矣。” 敎曰: “國初亦嘗行養老禮於學宮矣。” 仍命書傳, 敎曰: “陪宴耆老人民中, 年九十以上人, 竝各加一資; 百歲以上人, 特授知中樞。 政官牌招開政, 皆令今日下批。” 舜澤曰: “我聖上右文爲治, 敦尙儒術, 導率之方, 屢煩特敎, 至有國子月課節目之啓下者。 課式則欲有漸次, 工業則欲其博通。 肄習之篤, 培養之厚, 將有以儲他日朝廷之需用。 凡在靑襟之列, 孰不鼓動而興起也哉? 人才之作成, 文風之彬蔚, 可復見成周造秀之盛、大漢貢擧之美, 臣不勝欽仰攢頌之至。 第其科規, 酌古參今, 其必有一定者, 然後國學州縣, 皆可以依此知委擧行矣。 臣意則每於歲終, 月課計劃人及各道被薦人, 咸聚于明倫堂, 時原任文衡中, 自政院, 臨時稟旨牌招, 與泮堂偕往面試。 考其能否, 定其等第, 就式年東堂會試, 原額中除出九窠, 移付月課, 每年取優等三人, 付之式年會試榜末。 統計三年入格九人, 與式年

	게 배양하여 장차 조정에서 필요한 인재를 많이 길러낼 수 있게 되었으니, 선비의 반열에 있는 사람치고 누군들 고무되어 흥기하지 않겠습니까? 인재가 양성되고 문풍(文風)이 번창하여 주(周) 나라 때의 많은 뛰어난 조사(造士)와 한(漢) 나라 때의 훌륭한 공거(貢擧)를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으므로, 신은 지극히 흠모하여 칭송하고 싶은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과거 시험의 규정은 옛 것과 지금 것을 참작하여 반드시 일정한 규례를 만든 다음에 성균관과 주현(州縣)에 모두 이에 따라 통지하여 거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의 의견에는 매년 연말의 월과에서 정해진 점수를 얻은 사람과 각 도에서 추천받은 사람을 모두 명륜당(明倫堂)에 모아 놓고 시임과 원임 문형(文衡) 중에 승정원(承政院)에서 임시하여 품지(稟旨)하여 패초(牌招)하고 성균관 당상(成均館堂上)과 함께 가서 면대하여 시험을 보여서 그들의 능력을 살피고 그 등급을 정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식년(式年) 동당회시(東堂會試)의 원액(原額) 가운데 아홉 자리를 덜어내어 월과에 옮겨 붙이고, 해마다 우등(優等) 세 사람을 뽑아서 식년 회시(會試)의 방목(榜目) 끝에 붙여 3년 동안 입격(入格)한 9명을 통틀어 계산하여 식년 회시의 원래 방목에 참여한 사람과 함께 일체 전시(殿試)에 나아가게 하여 33명의 본액(本額)을 채운다면, 과거의 인원수는 증가되는 일이 없고 선비들은 위로를 받고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이 과거 제도를 변통하는 문제와 관계되므로, 시임 대신과 원임 대신, 예조 당상(禮曹堂上)에게 하순(下詢)하고 참작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시임 대신과 원임 대신, 예조 당상의 의견은 어떠한가?" 하니, 김홍집, 김병시, 조병세, 정범조, 예조 판서(禮曹判書) 민영달(閔泳達) 등도 영의정과 의견을 같이 하였다. 하교하기를, "이것은 학문을 일으키고 장려하는 방도가 될 수 있는데, 일이 매우 편리할	會試原榜, 一體赴殿, 以充三十三人本額, 則科無增數, 士有慰望。 而事係科制變通, 下詢時原任大臣、禮堂, 參酌裁定, 恐好。 敢達矣。" 敎曰: "時原任大臣、禮堂之意何如?" 弘集、炳始、秉世、範朝, 禮曹判書閔泳達等, 與領相議同。 敎曰: "此可爲興勸之道, 而事甚便宜, 大臣、禮堂之意又如是。 依所奏施行。" 仍命耆社堂上進前。 上護軍徐衡淳·尹宇善·朴弘壽、行大護軍張錫龍·金益容·南廷順、申獻求、慶尙監司李容直, 進前。 敎曰: "此宴適追列祖善養之晠典, 而慰饗群耆者也。 扶杖進參, 得無筋力之勞乎?" 衡淳曰: "臣等以太馬之齒, 幸際睿孝及老之養, 特蒙聖德優老之盛, 旣醉且飽, 伏不勝蹈忭之至。 而將此耆社諸壽, 獻于聖上。 是卽臣等之願祝矣。" 敎曰: "大小耆耇之同參, 已極慰喜, 而卿等齊祝, 亦曠世稀事。 更以此壽, 獻于東宮也。" 又敎曰: "予今有所製詩。 卿等須各賡進, 獻壽東宮。" 仍命司謁, 扶諸耆堂先退, 又命司謁, 引九十以上人, 使之進前。 司謁引黃基常一人進前。 敎曰: "年幾

	뿐 아니라 대신들과 예조 당상의 의견도 이와 같으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이어 기로소의 당상(堂上)들을 앞으로 나오라고 명하였다. 상호군(上護軍) 서형순(徐衡淳), 윤우선(尹宇善), 박홍수(朴弘壽), 행 대호군(行大護軍) 장석룡(張錫龍), 김익용(金益容), 남정순(南廷順), 신헌구(申獻求), 경상 감사(慶尙監司) 이용직(李容稙)이 앞으로 나아왔다. 하교하기를, “이번 연회는 열조(列祖)에서 노인을 잘 봉양한 훌륭한 규례를 따라서 여러 노인들에게 위로하는 음식을 차려준 것이다. 지팡이를 짚고 와서 참가하였으니, 힘들지 않았는가?” 하니, 서형순이 아뢰기를, “신들은 헛되이 나이만 먹은 몸으로 다행히 세자의 효성이 노인을 봉양하는 데까지 미친 때를 만나 특별히 성덕(聖德)으로 노인을 우대하는 성대한 은혜를 입어 취하도록 마시고 배불리 먹었으니, 더없이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기로소 여러 노인들의 합한 나이만큼 성상께 헌수(獻壽)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신들의 축원입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높고 낮은 노인들이 같이 참가한 것은 이미 매우 기쁜 일이고 경들이 다같이 축원하는 것도 세상에 희귀한 일이다. 다시 그만큼 장수하기를 동궁(東宮)에게 축원하라.” 하니, 또 하교하기를, “내가 지금 시를 지은 것이 있으니, 경들도 각기 화답하여 올리고 동궁에게 헌수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어 사알(司謁)에게 기로소 당상을 부축하여 먼저 물러가라고 명하고, 또 사알에게 90세 이상 되는 사람을 인도하여 앞으로 나오라고 명하니, 사알이 황기상(黃基常) 한 사람을 인도하여 앞으로 나아왔다. 하교하기를, “나이는 몇이며 어느 곳에 사는가?”	何, 居何地乎?” 基常曰: “臣居在水原, 而年今九十一歲矣。” 敎曰: “此慰耆耇之讌也。 爾能瞻盛儀而受宣饌乎?” 基常曰: “特蒙盛德, 善爲醉飽矣。” 命司謁曰: “乃子若隨入, 則使之扶挾其爺。” 基常之子鍾成進前, 扶其父。 敎曰: “耆老人黃基常, 今日政, 都事擬入, 加資下批。” 基常曰: “以臣之壽, 願上于聖上矣。” 上曰: “此尤貴矣。 將爾黃耇壽, 進祈于東宮也。” 基常獻壽東宮。

	하니, 황기상이 아뢰기를, “신은 수원(水原)에 사는데 나이는 91세입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이것은 노인을 위로하는 연회다. 그대는 성대한 의식을 보고 베풀어주는 음식을 받았는가?” 하니, 황기상이 아뢰기를, “특별히 훌륭한 은덕을 입어 한껏 취하고 배불리 먹었습니다.” 하였다. 사알에게 명하기를, “자식이 만약 따라 들어왔으면 그의 아버지를 부축하게 하라.” 하니, 황기상의 아들 황종성(黃鍾成)이 앞으로 나아와서 그 부친을 부축하였다. 하교하기를, “노인 황기상을 오늘 정사에서 도사(都事)로 비의(備擬)하여 들이고 가자(加資)하도록 하비(下批)하라.” 하였다. 황기상이 아뢰기를, “신의 장수(長壽)를 성상께 올리기를 원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은 더욱 귀한 일이다. 황노인의 장수를 동궁에게 올려 축원하게 하라.” 하였다. 황기상이 동궁에게 헌수하였다.	
고종 30권, 30년(1893 계사 / 청 광서(光緖) 19년) 3월 22일(갑진) 1번째기사 흥복전에 나아가 양로	흥복전(興福殿)에 나아가 양로연(養老宴)의 내연(內宴)을 베풀었다.	二十二日。 御興福殿, 行養老內宴。

연의 내연을 베풀다		
고종 30권, 30년 (1893 계사 / 청 광서(光緖) 19년) 3월 22일(갑진) 2번째기사 서울과 지방의 나이든 부녀자들에게 선온하도록 사옹원에 명하다	전교하기를, “듣건대, 서울과 지방의 나이든 부녀자들이 대궐 밖에 이르렀다고 하니, 대궐 뜰에 불러들여 선온(宣醞)하도록 사옹원(司饔院)에 분부하라.” 하였다.	敎曰: “聞京鄕耆老婦女, 到闕下云。 使之招入, 殿庭宣醞事, 分付廚院。”
고종 30권, 30년 (1893 계사 / 청 광서(光緖) 19년) 4월 13일(을축) 1번째기사 《양로연의궤》의 수정은 진찬의궤의 규례대로 하라고 명하다	《양로연의궤(養老宴儀軌)》의 수정은 일체 진찬의궤(進饌儀軌)의 의식 절차 규례대로 하도록 예조(禮曹)에 분부하라고 명하였다.	十三日。 命養老宴儀軌修正, 一依進饌儀軌例爲之事, 分付禮曹。
고종 30권, 30년 (1893 계사 / 청 광서(光緖) 19년) 5월 13일(갑오) 1번째기사 문묘와 북관왕묘에 나아가 전배하다	문묘(文廟)에 나아가 전배(展拜)하고 이어 북관왕묘(北關王廟)에 나아가 전배하였다. 왕세자(王世子)가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이어 삼선평(三仙坪)에 나아가 왕세자가 시좌(侍座)한 가운데 서총대 시사(瑞葱臺試射)를 행하였다.	十三日。 詣文廟, 展拜, 次詣北關王廟, 展拜。 王世子隨詣, 行禮。 仍御三仙坪, 王世子侍座, 瑞葱臺試射。

고종 30권, 30년 (1893 계사 / 청 광서 (光緖) 19년) 8월 28일(정축) 4번째기사 회작연과 동궁이 참가하는 두 번째 회작연의 시기와 절차를 정하라고 명하다	전교하기를, “회작연(會酌宴)과 동궁(東宮)이 참가하는 두 번째 회작연의 의절(儀節)은 다 금년 봄 양로연(養老宴) 때의 규례대로 마련하며, 명부(命婦), 호조(戶曹) 주원(廚院), 이원(梨園)의 당랑(堂郞)의 치사(致詞)와 선후창 악장(先後唱樂章)은 내각(內閣)에서 만들어 올리도록 하라.” 하였다.	敎曰: “會酌、東宮再會酌儀節, 一依今春養老宴時例, 磨鍊。 命婦及戶曹、廚院、梨園、堂郞致詞及先後唱樂章, 令內閣製進。”
고종 30권, 30년 (1893 계사 / 청 광서 (光緖) 19년) 9월 4일(계미) 1번째기사 육상궁, 연호궁, 선희궁, 경우궁, 북관왕묘에 나아가 전배하겠다고 명하다	전교하기를, “이달 11일에는 육상궁(毓祥宮), 연호궁(延祜宮), 선희궁(宣禧宮)에 나아가 전배(展拜)하고, 이어 경우궁(景祐宮)에 나아가 전배할 것이며, 15일에는 북관왕묘(北關王廟)에 나아가 전배하고, 이어 삼선평(三仙坪)에 나아가 서총대과(瑞葱臺科)를 행할 것이다.” 하였다.	初四日。 敎曰: “今十一日, 當詣毓祥宮、延祜宮、宣禧宮展拜, 仍詣景祐宮展拜。 十五日, 當詣北關王廟展拜, 仍御三仙坪, 行瑞葱臺矣。”
고종 30권, 30년 (1893 계사 / 청 광서 (光緖) 19년) 9월 11일(경인) 1번째기사 육상궁, 연호궁, 선희궁, 경우궁에 나아가 전배하다	육상궁(毓祥宮), 연호궁(延祜宮), 선희궁(宣禧宮), 경우궁(景祐宮)에 나아가 전배(展拜)하였다. 왕세자(王世子)가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毓祥宮、延祜宮、宣禧宮、景祐宮, 展拜。 王世子隨詣, 行禮。

고종 30권, 30년 (1893 계사 / 청 광서(光緖) 19년) 9월 22일(신축) 1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고 방곡을 단속하는 것, 진찬연의 절차에 대해 명하다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왕세자(王世子)가 따라 나아가 예(禮)를 행하였다. 예가 끝나자,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들이 앞으로 나가서 문후(問候)하였다. 하교하기를, “방곡(防穀)에 대한 일을 그동안 과연 신칙(申飭)하였는가?” 하니, 영의정(領議政) 심순택(沈舜澤)이 아뢰기를, “각도(各道)에 그동안 관문(關文)으로 신칙하였고 각관(各館)에 조회(照會)하였지만, 아직 결말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방곡은 한 달 전에 알려야 한다는 것이 또한 장정(章程)에 실려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10월 이후에야 막을 수 있으니 좀 늦지 않겠는가? 일찍 도모하는 것만 못할 것이다.” 하니,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김홍집(金弘集)이 아뢰기를, “한 달 전에 알려야 한다는 것은 과연 장정에 실려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때가 늦었지만 내년 봄 얼음이 풀린 후에는 실효(實效)가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내달 진찬(進饌)은 계사년(1773)의 고사(故事)를 따른 것이다. 종친부(宗親府)에서도 역시 진찬연이 있어야겠지만 따로 마련한다면 일이 매우 커지게 될 것이므로 정부(政府)의 진찬 때에 합쳐 설행하여 거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을 예조(禮曹)에 분부하라.” 하였다.	二十二日。 詣眞殿, 行茶禮。 王世子隨詣, 行禮。 禮畢, 時原任大臣進前問候。 敎曰: “防穀事, 間果申飭乎?” 領議政沈舜澤曰: “各道間有關飭, 而各館照會後, 尙無究竟矣。” 敎曰: “防穀, 前期一朔爲之, 亦載章程云。 然則十月以後, 始可防禁, 得不稍晩乎? 不如早圖也。” 判府事金弘集曰: “前期一箇月知照, 果載章程, 今雖時晩, 而明春解氷後, 將有實效矣。” 敎曰: “來月進饌, 卽遵癸巳故事者也。 宗親府亦當有進饌, 而若另爲磨鍊, 則事甚張大。 政府進饌時, 合設擧行爲宜, 以此分付禮曹也。”
고종 30권, 30년 (1893 계사 / 청 광서	내 진찬연(內進饌宴)을 행하였다.	初六日。 行內進饌。

(光緖) 19년) 10월 6일(갑인) 1번째기사 내 진찬연을 행하다		
고종 30권, 30년 (1893 계사 / 청 광서 (光緖) 19년) 10월 7일(을묘) 1번째기사 각 전과 궁의 내 진찬연을 행하다	각 전(殿)과 궁(宮)의 내 진찬연(內進饌宴)을 행하였다.	初七日。 行各殿宮內進饌。
고종 30권, 30년 (1893 계사 / 청 광서 (光緖) 19년) 10월 26일(갑술) 1번째기사 호조와 선혜청으로 하여금 고양군의 사서인과 부녀자에게 쌀을 나누어 주라고 명하다	경기 감사(京畿監司) 이경직(李耕稙)이 아뢰기를, “서릉(西陵)에 행행(幸行)할 때 고양군(高陽郡) 경내의 사서인(士庶人)과 부녀자들에게 쌀을 주라고 한 명을 즉시 거행하여야 하겠으나 해당 군(郡)의 저치미(儲置米)는 이미 상대(詳代)에 들여 전부 썼고, 또한 그 밖에 유용해다 쓸 공곡(公穀)이 없으니 무슨 곡식으로 거행해야 할지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저치미가 없다고 하니 양주(楊州)의 전례대로 호조(戶曹)와 선혜청(宣惠廳)의 쌀을 절반씩 획송(劃送)하여 될수록 빨리 나누어 주도록 하라.” 하였다.	二十六日。 京畿監司李耕稙啓:“西陵幸行時, 高陽境內士庶及婦女賜米, 卽當擧行, 而該郡儲置米, 旣入詳代盡用, 亦無他公穀挪用, 以何穀擧行? 請令廟堂稟處。” 敎曰:“旣無儲置米云, 依楊州例, 戶惠廳米, 分半劃送, 從速頒米。”

고종 30권, 30년 (1893 계사 / 청 광서(光緖) 19년) 12월 30일(무인) 2번째기사 의정부에서 각 도의 재결에 대해 준획하였다고 보고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각도(各道)의 재결(災結) 2만 4,500결(結)에 대하여 특별히 준획(準劃)을 허락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議政府以"各道災結二萬四千五百結, 特許準劃"啓。
고종 30권, 30년 (1893 계사 / 청 광서(光緖) 19년) 12월 30일(무인) 3번째기사 각 도의 목장에서 말을 바치다	각도(各道) 목장(牧場)에서 말을 바쳤다.【〖바친 말의 수는〗 생략한다.】 【고종 태황제 실록(高宗太皇帝實錄) 제30권 끝】	高宗太皇帝實錄卷之三十終】
고종 31권, 31년 (1894 갑오 / 청 광서(光緖) 20년) 1월 1일(기묘) 2번째기사 동궁의 나이가 스물 한 살이 되는 것을 기념하는 잔치를 준비하라고 명하다	전교(傳敎)하기를, "동궁(東宮)의 나이가 점점 들면서 복록이 한창 많아지니 나의 마음이 기쁘다. 어느 해인들 그렇지 않겠느냐마는 올해는 바로 스물 한 살이 되는 해이므로 더욱 기쁘다. 오는 2월 8일에 기쁨을 기념하여야 하겠는데 왕세자(王世子)의 생신 진연(生辰進宴) 절차, 내전(內殿)과 외전(外殿)의 회연(會宴) 의식이 원래 예전(禮典)에 실려 있으니 의조(儀曹)로 하여금 그 규례대로 참작하여 마련하게 하라." 하였다.	敎曰: "東宮年紀漸盛, 第祿方進, 予心欣喜。 何歲不然, 而今年卽望三旬之年也, 尤庸嘉悅。 將於來二月初八日, 當有識喜, 而王世子生辰進宴之節, 與內外殿會儀, 自有禮典所載, 令儀曹依此例參酌磨鍊。"

고종 31권, 31년 (1894 갑오 / 청 광서(光緖) 20년) 1월 1일 (기묘) 3번째기사 노인에게 옷감과 음식물을 내리다	노인(老人)에게 옷감과 음식물을 내렸다.	賜老人衣資食物。
고종 31권, 31년 (1894 갑오 / 청 광서(光緖) 20년) 1월 1일 (기묘) 4번째기사 권농 윤음을 팔도와 오도에 내리다	- 권농 윤음(勸農綸音)을 팔도(八道)와 오도(五都)에 내렸다.	下勸農綸音于八道五都。
고종 31권, 31년 (1894 갑오 / 청 광서(光緖) 20년) 1월 11일(기축) 1번째기사 내회연 때 진상하는 절차를 명하다	전교(傳敎)하기를, “이번 내회연(內會宴) 때 제3작(爵)은 좌명부(左命婦) 반수(班首)가 진상(進上)하고 제4작은 우명부(右命婦) 반수가 진상하며, 제5작은 좌명부가 진상하고 제6작은 우명부가 진상하며, 제7작은 의화군(義和君) 이강(李堈)이 진상하고 제8작은 종친(宗親) 반수가 진상하며, 제9작은 척신(戚臣)의 반수가 진상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내회연 때에 좌명부 반수는 군부인(郡夫人) 김씨(金氏)로 하고 우명부 반수는 정경 부인(貞敬夫人) 김씨로 할 것이며, 반화창명기(頒花唱名記)는 모두 수정(修正)하여 들이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十一日。 敎曰:“今番內會宴時, 第三爵左命婦班首進上, 第四爵右命婦班首進上, 第五爵左命婦進上, 第六爵右命婦進上, 第七爵義和君 堈進上, 第八爵宗親班首進上, 第九爵戚臣班首進上。” 又敎曰:“內會宴時, 左命婦班首, 以郡夫人金氏, 右命婦班首貞敬夫人金氏爲之。 頒花唱名記, 竝爲修正以人事, 分付。”

고종 31권, 31년 (1894 갑오 / 청 광서(光緖) 20년) 1월 16일(갑오) 1번째기사 진연, 회연, 세자궁 회연의 진작 재신을 점하하다	진연(進宴), 회연(會宴), 세자궁 회연(世子宮會宴) 때의 진작 재신(進爵宰臣)을 점하(點下)하였다. 의화군(義和君) 이강(李堈), 김홍집(金弘集), 김병시(金炳始), 조병세(趙秉世), 정범조(鄭範朝), 민영상(閔泳商), 김영수(金永壽), 민영준(閔泳駿), 민응식(閔應植)이다.	十六日。 點下進宴、會宴及世子宮會宴時進爵宰臣, 義和君 堈、金弘集、金炳始、趙秉世、鄭範朝、閔泳商、金永壽、閔泳駿、閔應植。
고종 31권, 31년 (1894 갑오 / 청 광서(光緖) 20년) 1월 27일(을사) 1번째기사 제주의 농사 형편이 좋지 못하므로 환곡을 연기시켜 줄 것을 의정부에서 아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제주 목사(濟州牧使) 이규원(李奎遠)이 올린 연분 장계(年分狀啓)를 보건대, ‘세 읍(邑)에 흉년이 든 상황은 전번 장계에서 이미 진술하였는데 구제하는 일이 매우 급합니다. 세 고을에 여름 환곡(還穀)과 가을 환곡 중 정퇴조(停退條)를 제외하고 현재 있는 가을 환곡이 4,127석(石) 남짓, 현재 있는 여름 환곡이 8,958석 남짓입니다. 배순(排巡)에 부족한 부분의 절미(折米)를 5,000석에 한하여 내륙 지방에서 좋은 쌀로 획하(劃下)하라고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그리고 관문(官門)과 진문(鎭門)의 취점(聚鮎)은 정지하고 구환(舊還)은 우선 계속 정지하게 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 섬은 바다 멀리 있으며 척박한 땅이므로 설사 풍년이 들더라도 오히려 식량이 모자라서 걱정하는데 근년에는 농사가 잘 되지 않아 백성들이 매우 위태로우니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구제를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웃 도(道)에서도 실어보낼 곡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찌 굶주리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 보기만 하고 구제할 방도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호남(湖南)의 모양곡(某樣穀) 중에서 1,000석(石)과 전(錢) 5,000냥(兩)을 급히 본주(本州)에 나누어 보내어 계속 구제하게 하라는 뜻으로 해당 도신(道	二十七日。 議政府啓:“卽見濟州牧使李奎遠年分狀啓, 則‘三邑歉荒之狀, 已陳於前啓, 而賑救萬萬切急。 三邑夏秋還停退條外, 秋還時在, 爲四千一百二十七石零, 夏還時在, 爲八千九百五十八石零。 排巡不足條折米限五千石, 以內陸精實米劃下事, 請令廟堂稟處。 官鎭門聚點停止, 舊還姑爲仍停’云矣。 本島以遐澨磽确之地, 雖値康年, 猶患艱食, 而比歲失稔, 民生顚連, 恤窮救乏, 不容少忽。 而現今隣省, 亦無船粟之資, 然而其何可坐視顚頷, 不思拯濟之方乎? 就湖南某樣穀中一千石, 錢五千兩, 星火劃送于本州, 俾爲繼巡賙賑之意, 分付該道臣該牧使, 聚點之停止, 舊還之仍退, 請竝依狀許施。” 允之。

	臣)과 해당 목사(牧使)에게 분부하고, 취점을 정지하는 것과 구환을 계속 정퇴하는 것은 모두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고종 31권, 31년 (1894 갑오 / 청 광서(光緖) 20년) 2월 6일 (계축) 1번째기사 친군영에서 진연과 관련한 반차도를 그려서 바치다	친군영(親軍營)에서, ‘이번이 외진연(外進宴)과 외회연(外會宴) 및 왕세자 회연과 관련하여 어람(御覽)할 반차도(班次圖) 1본(本)을 그려서 들이고 예람(睿覽)할 반차도 1본 또한 그려서 들입니다.’라고 아뢰었다.	初六日。 親軍營以“今此外進宴、外會宴及王世子會宴御覽班次圖一本, 圖寫以入。 而睿覽班次圖一本, 亦爲圖寫以入”啓。
고종 31권, 31년 (1894 갑오 / 청 광서(光緖) 20년) 2월 7일 (갑인) 1번째기사 강녕전에 나아가 외진연을 행하다	강녕전(康寧殿)에 나아가 외진연(外進宴)을 행하였다. 【상(上)이 익선관(翼善冠)에 곤룡포(袞龍袍)를 갖추고 막차(幕次)에서 나와 자리에 오르고 왕세자(王世子) 및 종친(宗親), 문무 백관(文武百官)이 예(禮)를 행하였다. 주기(酒器)를 올리자 헌가(軒架)로는 ‘여민락(與民樂)’을 연주하고, 찬안(饌案)을 올리자 등가(登歌)로는 ‘만유천세지곡(萬有千歲之曲)’을 불렀으며, 무동(舞童)들이 들어와서 ‘헌선도(獻仙桃)’를 추었다. 별행과(別行果)를 올리고 근시(近侍)가 화반(花盤)을 올리자 등가로는 ‘만화신지곡(萬花新之曲)’을 부르고 무동들이 들어와서 ‘심향춘(沈香春)’을 추었으며, 염수(鹽水)를 올리자 등가로는 ‘불록무강(茀祿無疆)’을 노래하고, 소찬(小饌)을 올리자 등가로는 ‘수천명명지곡(受天明命之曲)’을 부르고 무동들이 들어와서 ‘무고(舞鼓)’를 추었다. 악사(樂師)가 섬돌에 올라가서 ‘문덕(文德)’ 악장(樂章)을 부르자 왕세자가 제1작(爵)을 올리고 치사(致詞)를 읽고 나자 상이 술잔을 들었다. 승지(承旨)가 전교(傳敎)를 선포하기를, “술잔을 들어 축하하는 때이니 왕세자와 경사를	初七日。 御康寧殿, 行外進宴。【上具翼善冠、袞龍袍, 出次陞座。 王世子及宗親文武百官行禮訖, 進酒器, 軒架作與民樂, 進饌案, 登歌作萬有千歲之曲, 舞童入作獻仙桃。 進別行果, 近侍進花盤, 登歌作萬花新之曲, 舞童入作沈香春。 進鹽水, 登歌作茀祿無疆。 進小饌, 登歌作受天明命之曲, 舞童入作舞鼓。 樂師陞階唱文德樂章, 王世子進第一爵, 讀致詞訖, 上擧酌。 承旨宣敎曰: “稱觴之辰, 與王世子同慶”, 登歌作海屋添籌之曲, 舞童入作帝壽昌。 進湯、進味數, 登歌作壽延長之曲; 進饅頭, 登歌作萬壽無疆之

	함께 하노라.” 하였다. 등가로는 ‘해옥첨주지곡(海屋添籌之曲)’을 부르고 무동들이 들어와서 ‘제수창(帝壽昌)’을 추었다. 탕(湯)을 올리고 미수(味數)를 올리자 등가로는 ‘수연장지곡(壽延長之曲)’을 부르고, 만두(饅頭)를 올리자 등가로는 ‘만수무강지곡(萬壽無疆之曲)’을 불렀으며, 탕을 올리자 등가로는 ‘요천순일지곡(堯天舜日之曲)’을 부르고 차(茶)를 올리자 등가로는 ‘수제천지곡(壽齊天之曲)’을 불렀다. 반수(班首)인 영의정(領議政) 심순택(沈舜澤)이 제2작을 올리고 치사를 읽고 나자 상이 술잔을 들었다. 승지가 전교를 선포하기를, “삼가 경들의 술잔을 들라.” 하자, 등가로는 ‘풍운경회지곡(風雲慶會之曲)’을 부르고 무동들이 들어와 ‘초무(初舞)’를 추었다. 탕을 올리자 등가로는 ‘만방함녕지곡(萬邦咸寧之曲)’을 불렀다. 왕세자 및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세 번 머리를 조아리며 산호(山呼)와 천세(千歲)를 부르고 다시 산호와 천천세(千千歲)를 부르자, 헌가가 ‘낙양춘(洛陽春)’을 연주하였다. 왕세자 및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국궁(鞠躬)하고 사배(四拜)하였으며, 상례(相禮)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자리에 나가니 가헌이 ‘보허자(步虛子)’를 연주하였다. 찬안과 별행과를 올리자 등가로는 ‘수성요지곡(壽星燿之曲)’을 부르고 화반을 올리자 등가로는 ‘즙희순하지곡(緝熙純嘏之曲)’을 부르고 무동들이 들어와 ‘헌천도(獻天桃)’를 추었다. 염수를 올리자 등가로는 ‘일중광지곡(日重光之曲)’을 부르고, 소찬을 올리자 등가로는 ‘성중휘지곡(星重輝之曲)’을 불렀다. 술을 부어 올리고 왕세자가 술잔을 들자 등가로는 ‘천보구여지곡(天保九如之曲)’을 부르고 무동들이 들어와서 ‘연백복(演百福)’을 추었다. 탕을 올리고 미수를 올리자 등가로는 ‘구오강녕지곡(九五康寧之曲)’을 부르고, 만두를 올리자 등가로는 ‘월중윤지곡(月重輪之曲)’을 불렀으며, 탕을 올리자 등가로는 ‘만수장락지곡(萬壽長樂之曲)’을 부르고, 차를 올리자 등가로는 ‘천록영창지곡(天籙永昌之曲)’을 불렀다. 집사(執事)가 종친과 문무 백관의 찬탁(饌卓)을 차리고 이어 꽃을 뿌리고 나자 등가로는 ‘산하옥력지곡(山河玉曆之曲)’을 부르고 무동들이 들어와서 ‘수연	曲; 進湯, 登歌作堯天舜日之曲; 進茶, 登歌作壽齊天之曲。 班首領議政沈舜澤進第二爵, 讀致詞訖, 上擧酌。 承旨宣敎曰: “敬擧卿等之觴”, 登歌作風雲慶會之樂, 舞童入作初舞。 進湯, 登歌作萬邦咸寧之曲。 王世子及在位者三叩頭山呼千歲, 再山呼千千歲, 軒架作洛陽春。 王世子及在位者, 皆鞠躬四拜, 相禮導王世子就座, 軒架作步虛子。 進饌案別行果, 登歌作壽星燿之曲; 進花盤, 登歌作緝熙純嘏之曲, 舞童入作獻天桃; 進鹽水, 登歌作日重光之曲; 進小饌, 登歌作星重輝之曲。 進酌酒, 王世子擧酌, 登歌作天保九如之曲, 舞童入作演百福之舞。 進湯進味數, 登歌作九五康寧之曲; 進饅頭, 登歌作月重輪之曲; 進湯, 登歌作萬壽長樂之曲; 進茶, 登歌作天籙永昌之曲。 執事者設宗親文武百官饌卓, 仍散花訖, 登歌作山河玉曆之曲, 舞童入作壽延長。 義和君 堈進第三爵, 判府事金弘集進第四爵, 領敦寧金炳始進第五爵, 左議政趙秉世進第六爵, 判府事鄭範朝進第七爵, 知事閔泳商進第八爵, 知事金永壽進第九爵。 竝如上儀

	장(壽延長)'을 추었다. 의화군(義和君) 이강(李堈)이 제3작을 올리고, 판부사(判府事) 김홍집(金弘集)이 제4작을 올렸으며, 영돈녕(領敦寧) 김병시(金炳始)가 제5작을 올리고, 좌의정(左議政) 조병세(趙秉世)가 제6작을 올렸으며, 판부사 정범조(鄭範朝)가 제7작을 올리고, 지사(知事) 민영상(閔泳商)이 제8작을 올렸으며, 지사 김영수(金永壽)가 제9작을 올렸는데 모두 위의 의식과 같이 하고 나자 등가로는 '풍강지곡(豐康之曲)'을 부르고 무동들이 들어와 '포구락(抛毬樂)'을 추었다. 집사가 술을 돌리고 선온(宣醞)하자 등가로는 '여강여릉지곡(如岡如陵之曲)'을 부르고 무동들이 들어와 '장생보연지무(長生寶宴之舞)'을 추었다. 왕세자와 종친, 문무 백관이 다 국궁하고 사배하자 등가로는 '치화평지곡(致和平之曲)'을 부르고 무동들이 들어와 '봉래의(鳳來儀)'를 추고 나자 예가 끝났다.】 치사문(致詞文)에, "높고 넓은 큰 덕으로 인자하게 품어주시고 만물을 기르시면서 우리 신민들을 다같이 사랑하셨습니다. 특히 올해는 스물한 살이 되는 해인데 지극히 인자한 마음으로 생일날을 기념하도록 하셨습니다. 술잔을 올려 조금이나마 성의를 폅니다. 무엇으로 송축하리까? 만년토록 언제나 젊으시기를 기원합니다." 하였다. 악장문(樂章文)에,	訖, 登歌作豐康之曲, 舞童入作抛毬樂。 執事者行酒宣醞, 登歌作如岡如陵之曲, 舞童入作長生實宴之舞。 王世子及宗親文武百官皆鞠躬四拜, 登歌作致和平之曲, 舞童入作鳳來儀之舞。 禮畢。】 致詞文曰: "巍蕩大德, 覆燾至仁, 字育萬品, 同我臣民。 特以今歲, 齡啓三旬, 聖衷至慈, 識喜弧辰。 斗樽恭獻, 忱誠略伸, 善頌維何, 萬歲長春。" 樂章文曰: "文德駿厖, 至治馨香。 道隆三代, 功高百王。 黔黎蕃殖, 年穀登穰。 萬品咸囿, 海隅蒼蒼。 止慈恩篤, 俾我熾昌。 弧辰嘉悅, 錫之瓊觴。 祝報維何, 寶籙靈長。 選吉恭獻, 銅盤玉漿。 斑彩歡侍, 穆臨衣裳。 萬歲聲裏, 來儀鳳凰。" 文德一章。

	“문덕(文德)은 높고도 크며 태평성대는 향기를 풍겨라 도(道)는 3대(三代) 때보다 융성하고 공적은 모든 제왕보다 높다네 백성들은 더더욱 번창하고 곡식은 해마다 풍년일세 만물이 그 혜택 누리거니 온 나라가 길이 창창하여라 지극한 사랑과 두터운 그 은혜 우리를 번영하게 하였으니 생일을 축하하는 기쁨으로 이 술잔을 내려주니 무엇으로 보답하오리까 장구한 운수를 빌 뿐입니다. 좋은 날을 삼가 받아 향기로운 술을 올리고 색동옷 차림으로 기쁨드리니 거룩하게 자리에 나앉았어라 만세 소리 높은 속에 봉황새도 춤을 추네.” 하였다. 〈문덕곡(文德曲)〉 1장(章)이다.	
고종 31권, 31년 (1894 갑오 / 청 광서	강녕전(康寧殿)에 나아가 외회연(外會宴)을 행하였다.【의주(儀注)는 외진연	初八日。 御康寧殿, 行外會宴。【儀注與外進宴同】 致詞文曰: “燾覆一

(光緖) 20년) 2월 8일 (을묘) 1번째기사 강녕전에 나아가 외회연을 행하다	(外進宴)과 같다.】치사문(致詞文)에, “길러준 덕은 하늘땅과 같고 지극한 사랑으로 특별한 은혜를 보여 주셨습니다. 스물한 살이 되는 해를 맞이하여 폐하에게 기쁨을 드리는데 또 생일을 맞이하여 성대한 연회를 차려주셨습니다. 색동옷 차림으로 가까이 모시고 앉으니 한 송이 붉은 구름 같은데 크나큰 은덕에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술잔을 들어 만세를 부를 뿐입니다.” 하였다. 악장문(樂章文)에, “당요(唐堯)나 우순(虞舜)처럼 거룩하고 문왕(文王)이나 무왕(武王)처럼 덕스러워 큰 업적은 선대보다 빛나고 이 나라를 안정시켰어라 온정과 혜택을 크게 베풀어 만백성이 번창하고 좋은 상서 맞추어 나타남에 어엿한 태자를 보았더라 영원 무궁한 복을 내렸는가 아! 우리 영특한 태자여 어진 마음에 어진 명망으로	德, 與天地同, 眷眷止慈, 恩渥偏隆。 歲適望三, 嘉悅聖衷, 又値弧辰, 賜宴飾豐。 彩衣昵陪, 一朶雲紅, 曷以報暉, 擎觴呼嵩。” 樂章文曰: “唐、虞齊聖, 文、武媲德。 駿烈光前, 靖是邦國。 惠渥傍流, 兆民允殖。 符瑞應圖, 弧南斗北。 永錫無疆, 掎我儲極。 仁心仁聞, 壽祿必得。 肇啓三旬, 實基萬億。 聖心悅豫, 豐亨賁飾。 黃封誕宣, 粤有儀式。 臣民蹈舞, 歡雷八域。 齊聖一章。【檢校提學金永壽製】 仍行內會宴。【儀注與內進宴同】”致詞文曰: “體元正位, 萬品涵育, 受遇物誨, 恩感顧復。 年値望三, 期又震夙, 聖眷乃嘉。 舞趨班服, 承命燕敖, 儀文彬郁, 微忱報暉, 籌盈海屋。” 樂章文曰: “日月合明, 於赫照臨。 天地一德, 同和薰琴。 道久化成, 澤廣恩深。 三紀郅隆, 涵育葱林。 睿筭鼎盛, 三旬肇今。 兩殿嘉悅, 止慈聖心。 均沐恩波, 濟濟珮簪。 駝峰紫出, 兕觥碧斟。 雅樂迭奏, 韶頀希音。 慶辰鼓舞, 萬姓同忱。” 合明一章。【檢校提學金永壽製】 仍行夜會宴。【儀注略】

	장수와 복록을 받을 것이니 스물 한 살 되는 나이를 당함은 억만 년 내려갈 터전이어라 즐거움에 휩쌓인 우리 폐하는 연회를 차려 축하하려고 대궐 술을 내려주어 성대한 의식 가지네 신하와 백성들 춤추니 기쁨의 환성은 온 나라에 떨쳐라.” 하였다.〈제성(齊聖)〉 1장(章)이다.【검교 제학(檢校提學) 김영수(金永壽)가 지었다.】이어 내회연(內會宴)을 행하였다.【의주는 내진연(內進宴)과 같다.】 치사문에, “정통을 이어 만물을 길러주고 일마다 가르침을 받으니 돌보아주는 은혜에 감동됩니다. 스물한 살 되는 나이에 또 생일까지 되어 폐하가 기뻐하니 색동옷 차림으로 춤을 추며 명령을 받고 즐겁게 노니 의식이 찬란합니다. 하찮은 정성으로 그 은덕에 어찌 보답하겠습니까? 끝없는 장수를 축원할 뿐입니다.” 하였다. 악장문에,	

	“해와 달이 빛을 합쳐 휘황하게 내리비추고 하늘 땅 같은 하나의 덕 다같이 아름다워라 도(道)가 오래되어 교화가 이루어지니 은혜는 깊고 깊으며 36년 어진 정사로 백성을 길러주었네 태자의 나이 한창이어서 스물한 살이 되었거니 두 폐하는 기쁨에 겨워 자애롭고 인자한 마음으로 은혜를 골고루 입히고 수많은 관리들 함께 모여 풍성한 음식 차리고 술잔을 삼가 올리네 음악을 번갈아 연주하니 소호(韶護)의 희귀한 음악일세 춤추며 경축하니 만백성의 한결같은 심정이어라.” 하였다.〈합명(合明)〉 1장(章)이다.【검교 제학(檢校提學) 김영수(金永壽)가 지었다.】이어 야회연(夜會宴)을 행하였다.【의주는 생략한다.】	
고종 31권, 31년		王世子行會宴于康寧殿。【王世子具

(1894 갑오 / 청 광서(光緖) 20년) 2월 8일(을묘) 2번째기사 왕세자가 강녕전에서 회연을 행하다	왕세자(王世子)가 강녕전(康寧殿)에서 회연(會宴)을 행하였다.【왕세자가 익선관(翼善冠)에 곤룡포(袞龍袍)를 갖추고 자리에 오르자 음악이 연주되고, 종친(宗親)과 문무 백관(文武百官)이 예(禮)를 행하자 음악이 멎었다. 사옹원 부제조(司饔院副提調) 김학진(金鶴鎭)이 주기(酒器)를 올리고 찬안(饌案)과 별행과(別行果)를 올리며 보덕(輔德) 김춘희(金春熙)가 화반(花盤)을 받들자 음악이 연주되고, 염수(鹽水)를 올리고 소찬(小饌)을 올리자 음악이 그쳤다. 악사(樂師)가 '천종(天縱)' 악장(樂章)을 부른 다음에 반수(班首)인 영의정(領議政) 심순택(沈舜澤)이 제1작(爵)을 올리고 치사관(致詞官)이 치사를 읽고 나자 전령관(傳令官)이 영(令)을 선포하기를, "경들의 술잔을 삼가 들라." 하였다. 왕세자가 술잔을 드니 음악이 연주되고, 탕(湯)을 올리고, 미수(味數)를 올리며 만두(饅頭)를 올리고 차(茶)를 올리자 음악이 멎었다.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행하고 나자 음악이 연주되고, 집사(執事)가 종친과 문무 백관의 찬탁(饌卓)을 차리고 꽃을 뿌리자 음악이 그쳤다. 의화군(義和君) 이강(李堈)이 제2작을 올리고, 판부사(判府事) 김홍집(金弘集)이 제3작을 올리고, 영돈녕(領敦寧) 김병시(金炳始)가 제4작을 올리고, 좌의정(左議政) 조병세(趙秉世)가 제5작을 올리고, 판부사 정범조(鄭範朝)가 제6작을 올리고, 지사(知事) 김영수(金永壽)가 제7작을 올리고, 지사 민영준(閔泳駿)이 제8작을 올리고, 독판내무부사(督辦內務府事) 민응식(閔應植)이 제9작을 올리기를 모두 위의 의식대로 하였다. 음악이 연주되고 찬안을 물리자 음악이 그쳤다. 종친과 문무 백관이 예를 행하자, 예가 끝났다.】치사(致詞文)에, "효성은 온 나라에 모범이 되고 학문은 날로 새롭게 발전하며 스물한 살을 여는 생일이 되니	翼善冠、袞龍袍陞座, 樂作; 宗親文武百官, 行禮訖, 樂止。 司饔副提調金鶴鎭進酒器, 進饌案, 別行果, 輔德金春熙奉花盤, 樂作。 進鹽水、進小膳, 樂止。 樂師唱天縱樂章訖, 班首領議政沈舜澤進第一爵, 致詞官讀致詞訖, 傳令官宣令曰: "敬擧卿等之觴", 王世子擧爵, 樂作。 進湯、進味數, 進饅頭、進茶, 樂止。 在位者行禮訖, 樂作; 執事者設宗親、文武百官饌卓, 散花, 樂止。 義和君 堈進第二爵, 判府事金弘集進第三爵, 領敦寧金炳始進第四爵, 左議政趙秉世進第五爵, 判府事鄭範朝進第六爵, 知事金永壽進第七爵, 知事閔泳駿進第八爵, 督辦內務府事閔應植進第九爵, 竝如上儀, 樂作, 散饌案, 樂止, 宗親文武百官行禮。 禮畢。】 致詞文曰: "孝興一國, 學就日新, 啓三旬籌, 屆震夙辰, 宸心嘉悅, 慶飾禮遵。 壽曜增彩, 天祿用申, 龍管夏雲, 兕觥酌春, 呼嵩蹈舞, 八域壽民。" 樂章文曰: "睿姿天縱, 位正離黃。 仁孝恭儉, 日聞四方。 學有光明, 溫文就將。 籌啓三旬, 應祉迎祥。 震夙屆期, 壽曜重光。 宸心乃

	폐하께서 기뻐하시어 예법대로 연회를 차렸습니다. 수명을 맡은 별은 더욱 빛나고 하늘이 준 복이 거듭 내립니다. 음악은 구름 속에 울리고 술잔에 봄철이 무르녹는데 만세를 부르며 춤을 추니 온 나라 백성들이 다 장수할 것입니다.” 하였다. 악장문(樂章文)에, “타고난 슬기로운 자질로 세자의 자리에 올랐어라 어짊과 효성, 공경과 검박은 날마다 사방에 소문나고 밝고 밝은 총명으로 학문은 나날이 발전하네 스물한 살을 여는 나이에 복과 상서를 맞이하고 생일이 되는 이 날에 수명을 맡은 별 더욱 빛나는데 폐하는 기쁨에 겨워 연회를 차려 축하하여라 색동옷 입고 춤추어 은혜에 사례하고 자하주(紫霞酒)는 잔에 가득 신선 복숭아도 봄에 취하니 화기(和氣)는 자리에 차 넘치고 연회의 즐거움과 기쁜 경사에	嘉, 賁飾儀章。 彩舞擎恩, 紫霞盈觴。 仙桃醉春, 和氣一堂。 燕敖覃慶, 壽域八荒。 頌祝維何, 萬億無疆。”天縱一章。

	온 나라 안이 장수하네 무엇이라 축원하랴 억만 년 길이 장수하시라.” 하였다. 〈천종(天縱)〉 1장(章)이다.【검교 제학(檢校提學) 김영수(金永壽)가 지었다.】	
고종 31권, 31년 (1894 갑오 / 청 광서(光緖) 20년) 2월 8일 (을묘) 3번째기사 어제시를 내리고 연회에 참가한 대신들에게 갱진하라고 명하다	어제시(御製詩)에, “학문은 나이 따라 진전하여 새롭고 또 새로워지며 크나큰 복은 강물마냥 흘러들고 또 흘러들어라. 우리의 뭇 신하들과 함께 이 날의 기쁨을 즐김은 스물한 살을 여는 이 해 생일의 경사를 축하함이로다.” 하였다. 이어 연회에 참가한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빈객(賓客),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과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승지(承旨)와 사관(史官), 각신(閣臣)과 옥당(玉堂), 내무부(內務府)의 당상(堂上)과 낭청(郎廳), 회연소(會宴所)의 당상과 낭청에게 갱진(賡進)하라고 명하였다. 【원본】 35책 31권 6장 B면	下御製詩曰: “學隨年進又新新, 方至如川茀祿申。 同我群臣嘉會意, 三旬肇啓慶弧辰。” 仍命參宴時原任大臣、賓客、春桂坊、承史、閣臣、玉堂、內務府堂郎、會宴所堂郎, 賡進。
고종 31권, 31년 (1894 갑오 / 청 광서(光緖) 20년) 2월 9일 (병진) 1번째기사 진연, 회연 및 왕세자	진연(進宴)과 회연(會宴) 및 왕세자 회연(王世子會宴) 때의 각 차비(差備) 이하,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과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에게 차등 있게 시상(施賞)하였다. 장악원 제조(掌樂院提調) 윤용구(尹用求), 사옹원 부제조(司饔院副提調) 김학진(金鶴鎭), 예방 승지(禮房承旨) 이위(李暐), 예모관(禮貌官) 민영	初九日。 進宴會宴及王世子會宴時各差備以下、春柱坊, 施賞有差。 掌樂提調尹用求、司饔副提調金鶴鎭、禮

회연 때의 각 차비 이하에게 시상하다	철(閔泳喆), 상례(相禮) 이정직(李鼎稙), 선전관(宣箋官) 윤기(尹샀)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房承旨李暐、禮貌官閔泳喆、相禮李鼎稙、宣箋官尹샀, 竝加資。
고종 31권, 31년 (1894 갑오 / 청 광서(光緖) 20년) 2월 17일(갑자) 2번째기사 김영수, 민영준 등을 진연과 회연의 의궤 당상으로 임명하라고 명하다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김영수(金永壽)·민영준(閔泳駿), 행 호조 판서(行戶曹判書) 박정양(朴定陽), 내무부 독판(內務府督辦) 민영소(閔泳韶), 대호군(大護軍) 윤용구(尹用求), 예조 판서(禮曹判書) 이재순(李載純)을 모두 진연(進宴)과 회연(會宴)의 의궤 당상(儀軌堂上)으로 차하(差下)하라고 명하였다.	命知中樞府事金永壽·閔泳駿、行戶曹判書朴定陽、督辦內務府事閔泳韶、大護軍尹用求、禮曹判書李載純, 竝進宴會宴儀軌堂上差下。
고종 31권, 31년 (1894 갑오 / 청 광서(光緖) 20년) 2월 20일(정묘) 2번째기사 왕세자가 회연을 행하고 재차 강녕전에서 회작을 행하다	왕세자(王世子)가 회연(會宴)을 행하고 재차 강녕전(康寧殿)에서 회작(會酌)을 행하였다. 자내(自內)의 예(例)로 예(禮)를 행한 것이다.	王世子行會宴, 再會酌于康寧殿。 自內行禮也。
고종 31권, 31년 (1894 갑오 / 청 광서(光緖) 20년) 3월 3일(경진) 1번째기사 여성 부원군, 해령 부부인, 한창 부부인의	전교하기를, “여성 부원군(驪城府院君), 해령 부부인(海寧府夫人), 한창 부부인(韓昌府夫人)의 면례(緬禮)가 다가왔다고 하니, 사모하던 중에 슬픈 생각이 더욱 간절하다. 동원부기(東園副器)를 골라 보내고 돈 1,000냥(兩), 쌀 30석(石), 목(木)과 포(布) 각각 5동(同)씩 호조(戶曹)에서 실어 보내게 하라. 장례지내는 날에	初三日。 敎曰:“驪城府院君、海寧府夫人、韓昌府夫人緬禮在邇云。 嚮慕之中, 尤切愴感。 東園副器擇送, 錢一千兩, 米三十石, 木布各五同, 令度支輸送。 安葬日, 遣道臣致祭。 祭文, 當親撰以下。 宜有藏隧之文, 令

면례에 돈과 쌀을 주고 제문을 지어서 보내주라고 명하다	는 도신을 보내어 치제(致祭)하되 제문(祭文)은 직접 지어 내려 보내겠다. 마땅히 무덤에 묻는 글이 있어야 할 것이니 내각(內閣)에서 지어서 바치게 하라. 세자는 인정과 도리상 마땅히 추모하는 정성을 펴야 하니 궁관(宮官)을 파견하여 치제하되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서 계달(啓達)하게 하여 같은 날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월과시(月課試)는 마땅히 중단해서는 안 되는데 봄철이 다 가도록 아직 설행(設行)한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 그 사유를 승정원(承政院)에서 알아보게 하고 묘당(廟堂)에서도 신칙하게 하라." 하였다.	內閣撰進。 其在東宮情理, 宜伸感慕之誠, 遣宮官致祭, 令春坊啓達, 同日擧行。" 又敎曰: "月課之試, 不宜間斷, 而春序已闌, 尙未聞設行。 其委折, 政院知入, 亦令廟堂提飭。"
고종 31권, 31년 (1894 갑오 / 청 광서(光緖) 20년) 4월 1일 (정미) 1번째기사 근정전에 나아가 진전의 고유제와 별다례, 경모궁의 고유제에 쓸 향축을 친전하다	근정전(勤政殿)에서 나아가 진전(眞殿)의 고유제(告由祭)와 별다례(別茶禮), 경모궁(景慕宮)의 고유제(告由祭)에 쓸 향(香)과 축문(祝文)을 친히 전하였다.	初一日。 丁未。 詣勤政殿, 親傳眞殿告由別茶禮、景慕宮告由祭香祝。
고종 31권, 31년 (1894 갑오 / 청 광서(光緖) 20년) 5월 24일(경자) 2번째기사 6실의 영정을 경복궁	6실(室)의 영정(影幀)을 경복궁(景福宮) 선원전(璿源殿)에 봉안(奉安)하고 나서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였다	六室影幀, 奉安于景福宮之璿源殿。 仍行酌獻禮。

선원전에 봉안하고 작헌례를 행하다		
고종 32권, 31년 (1894 갑오 / 청 광서(光緖) 20년) 7월 10일(갑신) 3번째기사 군국기무처에서 각 도에서 바치는 쌀과 콩, 무명 베를 돈으로 바치게 하는 것 등의 의안을 올리다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올린 의안에, “1. 갑오년(1894) 10월부터 각도(各道)의 각종 부세(賦稅)와 군보(軍保)로 일체 상납(上納)하는 쌀과 콩, 무명과 베를 모두 돈으로 대신 바치도록 정하며 은행(銀行)을 설립하고 공전(公錢)을 나누어 주고 획급하고 미곡(米穀)을 무역하게 하여 기본 자금을 넉넉하게 하되 원금은 기한을 정하여 어김없이 탁지아문(度支衙門)에 갚되 대전(代錢)은 다시 상세히 작량(酌量)한다. 1. 각사(各司)와 부아(府衙)에서 부리는 하례를 나누어 소속시켜서 바로잡아 일치시킨다. 1. 근래에 각 지방관들이 걸핏하면 미곡(米穀)의 무역을 금지하고 있으니 빨리 완화하도록 신칙하여 유통(流通)에 편리하게 하며 수재(水災)와 한재(旱災), 전란이 있어서 임금의 명으로 특별히 금지하는 외에는 무역을 금지하지 말라는 뜻으로 각도에 행회한다. 1. 이번에 의회(議會)를 설치한 것은 나라의 정책과 민사(民事)에 관계되어 각별히 중요하니 여기에 선발된 사람은 절대로 감히 사사로운 이익을 개인의 편리를 취하지 않게 한다. 혹시 공무로 인하여 참가하지 못하거나 또는 병이 있거나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회합하는 시각 전에 회중(會中)에 공개하며 혹시 장정(章程)을 따르지 않거나 시한(時限)을 어겼을 경우에는 그 의원에게 기무처(機務處)에서 초기(草記)하여 논경(論警)한다.”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軍國機務處進議案: “一, 自甲午十月, 各道各樣賦稅、軍保等, 一切上納大小米太、木布, 均以代錢磨鍊。 設立銀行, 劃給公錢, 使之貿遷米穀, 以贍根本之地。 而原錢償納于度支衙門, 定期勿悞, 代錢更爲詳細酌量事。 一, 各司之應隷某府衙者, 分別移屬, 釐正歸一事。 一, 挽近各地方官, 輒行禁阻米穀, 亟應飭弛, 以便流通。 除遇有水旱、兵戎降旨特禁外, 一切勿禁之意, 行會各道事。 一, 此次議會之設, 關係國計、民事, 綦重迥別。 凡與是選者, 固不敢循私占便。 倘因公未參, 又有實病實故, 須於齊會時刻之先, 聲明會中。 如或不遵章程, 違越時限, 該員由機務處草記論警。” 竝允之。
고종 32권, 31년 (1894 갑오 / 청 광서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의안(議案)을 올렸다. 의안은 다음과 같다.	軍國機務處進議案: “一, 官員懲戒例, 載譴責、罰俸、免職三條, 官員公罪另

(光緖) 20년) 8월 10일(갑인) 2번째기사 군국기무처에서 관리 징계 규례에 첨가할 것, 사창을 세우고 쌀과 벼를 저축하는 것 등의 의안을 올리다	1. 관원의 징계 규례에는 견책(譴責), 벌금(罰金), 면직(免職) 세 조목이 올라 있고 관원의 공죄(公罪)에 대해서는 따로 감금(監禁) 한 조목을 더 넣었으나, 가장 엄중한 공죄는 감금에만 그칠 수 없으니 도형(徒刑)과 유형(流刑) 두 조목을 더 넣어 율례(律例)로 정한다. 1. 의안 중에서 각 아문(衙門)의 사무에 관계되는 것을 품결(稟決)하는 것은 의정부(議政府)에서 해당 아문에 통지하여 기한을 정하고서 실시하게 하고 혹시라도 지체시키지 않도록 한다. 1. 각 영읍(營邑)의 구제금이나 염초(鹽硝)의 대전(代錢)을 이미 배정한 것 외에는 일절 없애며, 그 밖에 신설한 명목 중에서 이미 없앤 것은 모두 일일이 장부를 만들어 의정부에 보고하도록 각도(各道)에 행회(行會)한다. 1. 진휼미(賑恤米)를 빨리 형편대로 처리해야 하겠는데, 백성들이 사창(社倉)을 설립하고 쌀이나 벼를 저축하여 기한을 정하여 출납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제도이다. 의정부에서 규례를 정하여 각주(各州)와 각현(各縣)에 나누어 줌으로써 실행하기에 편리하게 한다." 이상에 대해, 모두 윤허하였다. 1. 미국인 르 장드르〔李善得 : Le Gendre, Charles William〕을 해고하고 그에게 지불하지 않은 급료를 탁지부(度支部)에서 명백히 계산하여 내주도록 한다." 이에 대해, 비답하기를, "우선 천천히 하라." 하였다.	添監禁一條, 而公罪最重者, 不宜監禁而止, 增徒流二條, 定爲律例事。 一, 議案內稟決各件之有關各衙門事務者, 由政府知會當該衙門, 定限實施, 毋或稽緩事。 一, 各營邑捐補錢、鹽硝代錢已排定外, 一切革罷, 其他新設名目之已行革罷者, 竝一一修成冊以報政府之意, 行會各道事。 一, 備荒之穀, 亟應籌辦, 令民設立社倉, 蓄積米租, 定期出納, 最爲良制。 由政府定條例頒給各州縣, 以便遵行事。" 竝允之。 "一, 美國人李善得解雇, 其未撥薪金, 由度支核算計給事。" 批曰: "姑徐。"
고종 32권, 31년 (1894 갑오 / 청 광서	-	軍國機務處進議案: "一, 外方進供之規, 一切革罷, 其各地方應供物價, 使

(光緖) 20년) 8월 18일(임술) 2번째기사 군국기무처에서 지방에서 토산물을 바치는 것을 금지하는 것, 관서 선유사를 임명하는 것 등의 의안을 올리다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의안(議案)을 올렸다. 의안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에서 진공(進供)하는 규정은 일체 혁파하고, 각 지방에서 바쳐야 할 물건 값을 탁지아문(度支衙門)에서 타산하여 받아들인 다음 궁내부(宮內府)에 이동하면, 궁내부에서 사서 진배(進排)하게 하는 사안입니다. 1. 외도(外道)와 각 고을의 경저리(京邸吏)와 영저리(營邸吏)들이 빚을 함부로 받는 것과 이자 위에 이자를 더 받는 버릇을 일체 엄격히 금지하고, 만일 찾아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모두 관청에서 규정한 변리대로 시행하는 사안입니다. 1. 지난달 14일의 의안에서, 특별히 재신(宰臣)을 선택하여 황해(黃海), 평안(平安), 강원(江原), 함경(咸鏡) 4개 도(道)에 파견하여 조령(朝令)을 선포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살피며 도신(道臣) 이하 관리들의 선하고 악한 것을 엄격히 조사하게 하는 사안에 대해 이미 계하하셨습니다. 지금 관서(關西)가 난리를 겪어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 떠돌아다니는 것이 더욱 염려되니, 선유사(宣諭使)를 차출하여 해당 지방에 가서 해도(該道) 도신(道臣)과 함께 타산하여 잘 처리하게 함으로써 각각 안착하게 하며, 돌아올 때에 거쳐 오는 해서(海西) 지방에도 마찬가지로 위유(尉諭)하게 한 뒤 두 도(道) 백성들의 고통과 관리의 정사에 대하여 조목별로 등문(登聞)하게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에 대해, 모두 윤허하였다.	度支衙門妥籌收入, 移送宮內府, 以爲貿辦進排事。 一, 外道各邑之京營邸吏邸債濫捧與利上加利之習, 一切嚴禁, 若係不得不刷給者, 一依官邊例施行事。 一, 去月十四日議案中, 另擇宰臣, 分遣黃海、平安、江原、咸鏡四道, 布諭朝令, 洞察民隱, 嚴査道臣以下臧否事, 已經啓下矣。 現今關西經亂民生之仳儷蕩析, 尤屬可念, 宣諭使差出, 前往該地, 會同該道臣妥籌善辦, 俾各安堵, 回還時所經海西地方, 亦令一體慰諭後, 兩道民隱吏治, 條列登聞事。”竝允之。
고종 32권, 31년 (1894 갑오 / 청 광서 (光緖) 20년) 9월 19일(임진) 2번째기사 군국기무처에서 미상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의안(議案)을 올렸다. 의안은 다음과 같다. 1. 7월 24일 회의 안건 중 각도(各道)에서 상납(上納)하는 것을 모두 순돈〔純錢〕으로 바치도록 허락하고, 미상회사(米商會社)를 빨리 설치하지 않을	軍國機務處進議案: “一, 七月二十四日議案中, 各道上納許代純錢, 米商會社不容不亟設, 都下米廛大行首及五江

회사를 설립하는 문제, 비적이 출몰하는 나주, 순창 등에 대한 처리 등 의안을 올리다	수 없으니 도하(都下)의 미전(米廛)의 대행수(大行首)와 오강(五江)의 강주인(江主人)들, 쌀을 사서 장사하는 좌고(坐賈)들에게 모두 합동하여 회사를 차리도록 허락하되 농상아문(農商衙門)에서 증명서를 발급하고 규정을 정하여 공납(公納)에 편리하게 하고 겸하여 상업(商業)을 발전시키도록 계하(啓下)하셨습니다. 지금 가을걷이가 끝났으니 미상회사를 빨리 설립해야 하겠으니 탁지아문(度支衙門)과 농상아문에서 협의하여 결정해 실제 시행하는 데 힘쓰게 할 것입니다. 1. 나주(羅州), 순창(淳昌), 홍주(洪州), 안의(安義) 네 읍의 수령들이 비적(匪賊)들이 창궐할 때에 분발하여 토벌하기도 하고 방도를 세워 막기도 하여 열읍(列邑)이 크게 의지하고 있으니, 부근의 각읍(各邑)에서 비적을 섬멸하고 무마할 방도를 전적으로 해당 수령에게 맡겨서 편리한 대로 일을 행하게 하고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라는 데 대하여 계하한 것이 이미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떻게 품지(稟旨)했는지 듣지 못하고 있으니 매우 의아합니다. 예천(醴泉)에서 아전과 백성들이 힘을 내어 토벌한 것도 가상히 여길 일입니다. 나주, 순창, 홍주, 안의 네 고을의 수령과 예천군(醴泉郡)에서 먼저 나서서 비적을 토벌한 사람들에게 모두 묘당에서 여쭈어 책임을 맡기고 며칠 안으로 토벌하여 요사스러운 기운을 깨끗이 제거해 버리게 할 것입니다. 1. 문관 임명 규정 제2조에서 '칙임관(勅任官)은 모두 임금이 선발한다. 총리대신(總理大臣)이 각 아문(衙門)의 대신(大臣)과 찬성(贊成), 도헌(都憲)과 함께 모여 협의하고 공정하게 추천하여 삼망(三望)을 갖추어 주문(奏聞)한다.'는 데 대하여 계하(啓下)하였는데 '모두 임금이 선발한다.'는 말 아래에 '혹은 임명하기도 한다.'라는 말을 첨가해 넣어 규정을 정하며 이달 11일 회의 안건 중의 칙임관을 차출(差出)한다는 한 가지 조항은 안건에서 취소할 것입니다. 이상에 대해, 모두 윤허하였다.	江主人與貿米坐賈, 竝許合股設社, 由農商衙門給憑定規, 以便公納兼興商務事啓下矣。 現今秋事告成, 米商會社亟應設立, 令度支衙門農商衙門商確妥定, 務圖實施事。 一, 羅州、淳昌、洪州、安義四邑守宰, 當匪徒猖獗, 奮身勦討, 或設法防堵, 列邑倚以爲重, 凡附近各邑匪徒勦撫之方, 專委該倅, 便宜行事之意, 請令廟堂稟處事啓下者, 已屢日。 而尙未聞稟旨之如何, 伏切訝菀。 醴泉吏民之出力勦討, 亦係嘉尙。 羅州、淳昌、洪州、安義四邑守宰及醴泉郡先倡討賊之人, 竝令廟堂稟請委任, 不日招討, 廓淸妖氛事。 一, 文官授任式第二條, '勅任官均由聖簡。 總理大臣會同各衙門大臣及贊成、都憲協議公擧, 備三望奏聞'事啓下矣。 '均由聖簡'下, 添入'或命'二字, 著爲定式, 本月十一日議案中, 勅任官差出一條, 請銷案事。" 竝允之。

고종 32권, 31년 (1894 갑오 / 청 광서(光緖) 20년) 10월 26일(기사) 1번째기사 궁내부에서 경모궁의 제사를 주관하는 곳을 정해달라고 청하다	궁내부(宮內府)에서 아뢰기를, “전날 내병조(內兵曹)에서 관할하던 사무와 결속색(結束色)이 하던 각 항목의 거행을 모두 궁내부에서 처리하라고 이미 칙지(勅旨)를 내렸습니다. 경모궁(景慕宮) 동향 대제(冬享大祭)를 친히 행할 날짜가 가까워오므로 각항의 절목(節目)을 응당 품지하여 거행해야 하는데, 이것은 병조 판서(兵曹判書)가 관할하던 일로서 지금 관직 제도가 바뀌어 규정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직무 분담도 달라졌습니다. 신의 부(府)에서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묘당(廟堂)과 충분히 의논하여 보고하라.” 하였다.	二十六日。 宮內府啓:“前日內兵曹所管事務結束色各項, 擧行均著, 宮內府辦理, 業經降旨。 景慕宮冬享大祭親行日字在邇, 各項節目, 固當稟旨擧行, 而此係本兵所管, 現値官制變通, 規條未定, 職掌亦殊。 自臣府有不敢擅便, 何以爲之?” 敎曰:“與廟堂爛商以聞。”
고종 32권, 31년 (1894 갑오 / 청 광서(光緖) 20년) 10월 29일(임신) 2번째기사 관서의 민란으로 여러 고을에서 받지 못한 군포와 조세를 돈으로 대납하게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금 계하(啓下)된 관서 선유사(關西宣諭使) 조희일(趙熙一)의 장본(狀本)을 보니, 삼가 관서의 여러 고을들이 변란을 겪은 후 지탱하기 어려운 형편을 자세히 진술하고 올해 분의 군전(軍錢)과 결전(結錢)으로서 거두지 못한 얼마간과 내년 분으로 상납할 여러 가지 공납(貢納) 중에서 15만 냥만 면제하여 주도록 묘당(廟堂)에서 품처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한 번 변란을 겪은 후부터 지고 메고서 떠나가는 사람이 길에 잇닿아 있으니 참혹합니다. 이런 때에 보살펴주고 안착시키는 일을 한시도 지체할 수 없고, 고을의 형편과 백성들의 사정으로 보아 원 수량대로 독촉하여 받아내기 어려우니, 장계에서 청한 대로	議政府啓: “卽伏見關西宣諭使趙熙一狀本啓下者, 則‘備陳關西諸邑經亂後, 難支之狀, 軍錢結錢今年條之如干未收及明年條之各樣上納中, 限十五萬兩除給事, 令廟堂稟處’爲辭矣。 一自經亂, 荷擔相續, 道路愁慘。 此時懷綏安集, 不可一時虛徐, 邑勢民情, 亦難如數責捧, 依狀請特爲許施, 使該道臣核實除減, 俾爲安業樂生之地何如?” 允之。

	특별히 시행하게 하며, 해당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사실을 조사하여 감면해 주게 함으로써 생업에 안착하여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고종 32권, 31년 (1894 갑오 / 청 광서(光緖) 20년) 11월 7일(기묘) 1번째기사 헌종이 등극한 지 60돌이 되는 해이니 인릉과 경릉에 치제하도록 명하다	전교하기를, “올해 이 달은 바로 우리 순조 대왕(純祖大王)께서 승하하고 헌종 대왕(憲宗大王)께서 등극하신 지 60년이 되는 때이다. 올해에 능(陵)을 참배하는 것은 인정으로나 예의로나 당연한 일이지만, 이처럼 어려운 시기를 만나 정성을 다할 길이 없으니, 나의 슬픈 감회가 갑절 더 새로워진다. 이달 13일에는 인릉(仁陵), 18일에는 경릉(景陵)에 작헌례(酌獻禮)가 있으니, 대신(大臣)을 보내어 섭행(攝行)하도록 하여 추모하는 정성을 펴도록 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인릉의 작헌례에는 의화군(義和君)이 가고, 경릉의 작헌례에는 중추원(中樞院) 정 영사(鄭領事 : 정범조(鄭範朝))가 가도록 하라.” 하였다.	初七日。 敎曰:“是年是月, 旣我純祖大王禮陟, 憲宗大王御極之回甲也。今年展省, 情禮當然, 而値此多難, 末由遂誠, 予小子愴感之懷, 倍切如新。今十三日仁陵, 十八日景陵酌獻禮, 遣大臣攝行, 庸伸追慕之忱矣。” 又敎曰: “仁陵酌獻禮, 義和君進去; 景陵酌獻禮, 鄭領院事進去。”
고종 32권, 31년 (1894 갑오 / 청 광서(光緖) 20년) 11월 13일(을유) 1번째기사 인릉에 작헌례를 행하	의화군(義和君) 이강(李堈)을 소견(召見)하였다. 인릉(仁陵)의 작헌례(酌獻禮)를 섭행(攝行)한 후 복명(復命)하였기 때문이다.	十三日。 召見義和君 堈。 攝行仁陵酌獻禮後復命也。

고 돌아온 의화군 이강을 소견하다		
고종 32권, 31년 (1894 갑오 / 청 광서(光緖) 20년) 11월 23일(을미) 2번째기사 궁내부에서 종전의 의식 중 형식적인 것은 줄이고 간소하게 할 것을 아뢰다	궁내부(宮內府)에서 아뢰기를, “종전의 의식(儀式) 중에서 조금이라도 형식적인 것은 일체 줄이고 되도록 간소하게 하도록 이미 명을 내렸습니다. 태묘(太廟)에 동가(動駕)할 때의 제반 의식 절차도 따라서 간소하게 하여야 하겠는데, 신의 부(府)에서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성상께서 재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본부(本府)에서 참작하여 마련하라.” 하였다.	宮內府啓: “從前儀式之稍涉浮文者, 一切節省, 務期簡當事, 已有成命矣。 太廟動駕時諸般儀節, 從以裁省, 而自臣府有不敢擅便, 上裁何如?” 敎曰: “自本府參酌磨鍊。”
고종 32권, 31년 (1894 갑오 / 청 광서(光緖) 20년) 12월 20일(임술) 1번째기사 총리대신이 관서, 호서, 서산등 난리를 겪은 여러 고을의 공납을 모두 탕감할 것을 청하다	총리대신(總理大臣)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관서 선유사(關西宣諭使) 조희일(趙熙一)의 장계(狀啓)로 인하여 변란을 겪은 여러 읍(邑)에서 금년과 명년의 공납전(公納錢) 중에서 15만 냥(兩)을 특별히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평안 감사(平安監司) 김만식(金晩植)의 장본(狀本)을 보니, ‘앞서 내린 처분에 대해서는 더없이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밖에 바치지 못한 금년 분 19만 156냥 1전(錢)은 명년 봄에 경사(京司)에 마감해야 할 것인데 7월 이전은 바로 신의 감영(監營)이 혼란한 때로써 전 도신(道臣)이 있을 때에 받아들인 돈은 넘겨받지 못했고 또 문서도 없습니다. 각 고을에 조사한 결과 받지 못한 것은 단지 8만 5,000여 냥뿐이니 전 도신이 받은 몫은 자연히 없어진 것으로 됩니다. 위에서 말한 돈 19만 156냥 1전을 특별히 전부 탕감하고 각읍에서 받지 못한	二十日。 總理大臣奏: “向因關西宣諭使趙熙一狀啓, 經亂諸邑, 今明年公納錢中十五萬兩, 特許除給矣。 今伏見平安監司金晩植狀本, 則以爲: ‘前下處分, 不勝感頌萬萬。 此外今年條未納錢十九萬一百五十六兩一錢, 當於明春磨勘京司者, 而七月以前, 卽臣營之昧爽也, 前道臣在任時, 已捧之數, 旣無傳授, 又無文獻査探。 各邑未收只爲八萬五千餘兩, 則前道臣所捧條, 自歸無麪。 上項錢十九萬一百五十六兩一錢, 特令全數蕩減, 其各邑未收八萬五千餘兩, 爲先量宜均俵, 庶爲兆民之

	8만 5,000여 냥을 우선 적당히 골고루 면제시켜 주는 것이 백성들의 소망입니다.' 하였습니다. 관서(關西)는 변란을 겪어 완전히 쑥밭으로 되었으며 이미 받아들인 공전(公錢)은 따져 물을 곳이 없습니다. 읍의 형편과 백성들의 심정을 참작하여 응당 탕감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니 장계에서 청한 대로 다시 허락함으로써 변란을 겪은 후의 백성들이 도로 모여와서 생업에 안착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호서 위무사(湖西慰撫使) 박제관(朴齊寬)의 장본에 계하(啓下)한 것을 보니, '비적(匪賊)의 소란으로 영락되지 않은 읍이 없지만 괴산(槐山) 한 군(郡)은 더욱 심합니다. 지난번에 내탕고(內帑庫)에서 내려준 돈 1만 냥(兩)을 본도(本道) 감영(監營)에서 나누어 주니 백성들이 모두 기뻐하였는데, 또 해읍(該邑) 창고에서 쌀 100석(石)을 먼저 내서 나누어 구제한 후에 일일이 깨우쳐 주어 각각 판잣집이나 흙집을 짓게 하였으나 변란을 겪은 나머지 마련할 힘이 없습니다. 불에 탄 민호(民戶)가 모두 500호인데 매호를 다섯 칸으로 기준한다면 공사비가 돈으로 1만 8,750냥이 있어야만 토의에 붙일 수 있습니다. 해읍의 토지 면적이 모두 1,300결(結)인데 갑오년(1894) 분 조세의 절반을 탕감하여 작년 값으로 계산하여 주고 집을 지을 비용으로 삼고 모자라는 수는 감영과 고을에서 좋은 쪽으로 마련하며 관청 건물이 파괴된 것은 대략 수리하고 구제미로 내준 환곡(還穀) 100석은 2년 간 기한을 미루어 도로 채워 넣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해읍은 변란을 겪은 후에 이미 내탕고에서 돈을 내어 혜택을 베푸는 은전을 받았지만 이번에 위무사(慰撫使)가 진술한 백성들의 고통은 실로 불쌍한 일이니 장계에서 청한 대로 특별히 허락하고, 이어 감영과 고을에서 타산하여 골고루 면제하게 하여 변란을 겪은 백성들이 제때에 집을 짓고 안착할 수 있게	望'云矣。 關西往刦, 便一滄桑, 已捧公錢, 無處憑問。 參以邑勢民情, 合有蠲蕩之典, 依狀請更爲許施, 俾亂後生靈, 還集安業何如?" 又奏: "卽伏見湖西慰撫使朴齊寬狀本啓下者, 則'匪擾蕩殘, 無邑不然, 而槐山一郡, 尤爲甚焉。 向者內下錢一萬兩, 自本道監營分給, 民情胥悅, 且該邑倉穀米一百石, 先發分賑後, 面面曉諭, 使各版築土广, 而刦灰之餘, 無力可辦矣。 被燒戶擧城數爲五百戶, 每戶以五間爲度, 則工役之費, 有錢一萬八千七百五十兩, 乃可擬議。 而該邑結總一千三百結, 甲午條租稅折半蕩減, 依昨年價計給, 以爲結構之資, 其不足之數, 自營邑從長措備, 公廨之毁破者, 略加修理, 發賑還米一百石, 限二年停退還充'爲辭矣。 該邑經刦之後, 已有頒帑施惠之典, 而今此慰撫使所陳民隱, 寔爲矜悶, 依狀請特爲許施, 仍令營邑籌劃均俵, 俾經亂之民, 趁卽結構奠接之地何如?" 又奏: "瑞山前郡守朴錠基愍恤之典, 待道査稟處事蒙允矣。 卽見'該道臣査啓, 則該郡守遇難, 不避手劍諸賊, 身中四五丸, 顔色無變, 罵不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또 아뢰기를, “서산 전 군수(瑞山前郡守) 박정기(朴錠基)에 대하여 돌보아 주는 은전(恩典)은 도(道)에서 조사한 다음에 품처(稟處)하도록 윤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해당 감사(監司)의 조사 보고를 보니, 해당 군수는 난리를 당하여 피하지 않고 칼을 잡고 적 속에 뛰어 들었다가 4,5발의 탄환을 맞고도 낯색을 변하지 않은 채 계속 꾸짖었으며 총에 맞아 입이 터져서야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의로운 용맹과 매서운 넋은 능히 한 시대의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으니 특별히 군무 참의(軍務參議) 벼슬을 추증할 것입니다. 그 고을 수리(首吏) 송병훈(宋秉勳)은 수령을 호위하다가 자기가 먼저 죽었으니 또한 매우 가상한 일입니다. 특별히 군무 주사(軍務主事)의 벼슬을 추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또 아뢰기를, “태안 전 부사(泰安前府使) 신백희(申百熙)에 대하여 돌보아주는 은전은 도에서 조사한 다음에 품처하도록 윤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해당 도신의 사계를 보니, ‘해당 부사는 적을 만나고도 굴하지 않고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하였습니다. 자기 지방을 지키면서 어려운 때에 몸을 바친 것은 지극히 가상한 일이니, 특별히 군무 협판(軍務協辦) 벼슬을 추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絶口, 至砲決口吻而死’云。 義膽烈魄, 有足風勵一時, 特贈軍務參議。 該郡首吏宋秉勳, 捍衛官長, 先爲致命, 亦極嘉尙。 特贈軍務主事何如?” 又奏: “泰安前府使申百熙愍恤之典, 待道査稟處事, 蒙允矣。 卽見該道臣査啓, 則‘該府使遇賊不屈, 竟至捐軀’云。 守土死難, 極爲嘉尙, 特贈軍務協辦何如?” 竝允之。
고종 32권, 31년 (1894 갑오 / 청 광서(光緖) 20년) 12월 23일(을축) 1번째기사 호남의 대동미를 감면	조칙(詔勅)을 내리기를, “호남(湖南)에서는 비적(匪賊)이 봄부터 겨울까지 소란을 일으켜서 농사철을 놓친데다가 가뭄으로 흉년이 들어 식량이 곤란하게 되었다. 백성들의 형편을 생각하면 비단옷에 쌀밥을 먹은들 어찌 편안하겠는가? 해도(該道)의 갑오년	二十三日。 詔曰: “湖南匪擾, 自春徂冬, 以致農作失時, 旱荒艱食。 言念民情, 錦玉靡安。 該道內甲午條大同米, 特令減半以給, 以示朝家體恤之意。 至於蠲災賑窮之節, 待道臣報來,

해 주라고 명하다	(1894) 분 대동미(大同米)를 특별히 절반을 감면해 주어 조정에서 돌보아 주는 뜻을 보일 것이다. 재해지의 조세를 감면하며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는 문제는 도신(道臣)의 보고가 올라온 다음에 의정부(議政府)에서 품처(稟處)하도록 하라." 하였다.	自政府稟處施行。"
고종 33권, 32년 (1895 을미 / 청 광서(光緖) 21년) 1월 1일 (계유) 2번째기사 노인들에게 옷감과 음식물을 반사하다	노인들에게 옷감과 음식물을 반사(頒賜)하였다.	頒賜老人衣資食物。
고종 33권, 32년 (1895 을미 / 청 광서(光緖) 21년) 3월 12일(계미) 2번째기사 팔도의 환곡 명칭을 사환으로 고쳐 부르고 백성들에게 조적하게 하다	탁지 대신(度支大臣) 어윤중(魚允中)이 아뢰기를, "팔도(八道)에 있는 각종 환곡(還穀)의 명칭을 사환(社還)이라 고치고 지방관이 간섭하지 못하게 하며 백성들에게 조적(糶糴)하게 하면서 그 모곡(耗穀)을 덜어주고 그 조례(條例)를 탁지 아문(度支衙門)에서 정하여 각 도에 분부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度支大臣魚允中奏: "八道所在各樣還穀의 其名目을 社還이라 改稱ᄒᆞ야 地方官이 干涉지 말게 ᄒᆞ고 民으로 ᄒᆞ야곰 糴糶ᄒᆞ야 耗를 除ᄒᆞ고 其條例ᄂᆞᆫ 度支衙門으로 定ᄒᆞ야 各道에 分付ᄒᆞ옴이 何如ᄒᆞ올지?" 允之。
고종 33권, 32년 (1895 을미 / 청 광서(光緖) 21년) 3월 29일(경자) 1번째기사	조령을 내리기를, "은혜에 사례하거나 하직 인사를 하는 등 바깥뜰에서 의식을 행하는 것을 개국(開國) 504년 4월 1일부터 폐지하고 축하하고 문안하는 등의 절차는 따로	二十九日。 詔曰: "謝恩、下直等 外庭行禮를 開國五百四年四月一日로붓터 廢止ᄒᆞ고 陳賀、問安等節은 別定以入ᄒᆞ라。" 又詔曰: "自今公私禮服

사례하고 하직하는 규례를 폐지하고 축하를 올리고 문안하는 등의 절차를 개정하다	정해서 들여오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이제부터 공적인 예복(禮服)과 사적인 예복에서 답호(褡護)를 없애고 대궐로 들어올 때만 모(帽), 화(靴), 사대(絲帶)를 착용하고, 주의(周衣)는 관리와 백성들이 똑같이 검은색 종류로 하라.” 하였다.	中 褡護를 除ᄒᆞ고 進宮時ᄲᅮᆫ 帽靴絲帶를 用ᄒᆞ고 周衣ᄂᆞᆫ 官民이 一體로 黑色類를 從ᄒᆞ라。”
고종 33권, 32년 (1895 을미 / 청 광서(光緖) 21년) 4월 5일(병오) 1번째기사 수입 조규, 지출 조규 등을 반포하다	칙령(勅令) 제71호, 〈수입 조규(收入條規)〉와 칙령 제72호, 〈지출 조규(支出條規)〉와 칙령 제73호, 〈수입 지출 조규를 당분간 각 도(道)와 각 세관(稅關)에 시행하지 않는 안건〉과 칙령 제74호, 〈각읍 부세소 장정(各邑賦稅所章程)〉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初五日。 勅令第七十一號, 收入條規; 第七十二號, 支出條規; 第七十三號, 收入支出條規ᄂᆞᆫ 現今間各道及各稅關에 施行치 아니ᄒᆞᄂᆞᆫ 件; 第七十四號, 各邑賦稅所章程, 竝裁可頒布。
고종 33권, 32년 (1895 을미 / 청 광서(光緖) 21년) 4월 13일(갑인) 1번째기사 벼 1,000석을 대궐에서 내려보내어 평남의 재해를 입은 백성들을 구제하게 하다	조령을 내리기를, “영남(嶺南)의 연해 일대는 지난해에 혹심한 흉년이 들어 겨우 남은 백성들이 10분의 2, 3이 생존하였다. 궁색한 봄철에 밭 갈고 씨 뿌릴 때를 당하였으나 종자(種子)가 떨어져서 해를 이어갈 가망이 전혀 없을 듯하니 내가 백성의 부모가 되어 어찌 차마 앉아서 보기만 하면서 구원하지 않겠는가? 해당 관청에 특별히 명하여 벼 1,000석(石)을 대궐에서 내리니 종자가 없는 가난한 백성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농사일을 살피고 도와주는 뜻을 보이라.” 하였다.	十三日。 詔曰:“嶺南의 沿海一帶가 去年에 歉災를 酷被ᄒᆞ야 孑遺ᄒᆞᆫ 黎民이 十의 二三이 存ᄒᆞᆫ지라 窮春에 耕播ᄒᆞᆯ 時를 奄當ᄒᆞᄆᆡ 種子가 乏絶ᄒᆞ야 嗣歲ᄒᆞᆯ 望이 竝無ᄒᆞᆯ 듯ᄒᆞ니 朕이 民의 父母가 爲ᄒᆞᆫ지라 其何忍坐視ᄒᆞ야 不救ᄒᆞ리오? 所司를 特命ᄒᆞ야 正租一千石을 內下ᄒᆞ니 貧民의 無種ᄒᆞᆫ 者에 分給ᄒᆞ야써 耕을 省ᄒᆞ고 補助ᄒᆞᄂᆞᆫ 意를 示ᄒᆞ라。”

고종 33권, 32년 (1895 을미 / 청 광서 (光緖) 21년) 4월 19일(경신) 4번째기사 종조 3,000석을 영남의 궁민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다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김홍집(金弘集)이 영남(嶺南)의 궁민(窮民)들에게 종조(種租 : 볍씨) 3,000석(石)을 나누어 주기로 의계(議啓)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좋다.” 하였다.	內閣總理大臣金弘集以“嶺南窮民에게 種租三千石頒給ᄒᆞ기로 經議上奏。” 制曰:“可。”
고종 33권, 32년 (1895 을미 / 청 광서 (光緖) 21년) 5월 1일(신미) 1번째기사 탕제는 규례대로 지어 들여올 것을 명하다	조령을 내리기를, “약원(藥院)에서 일차(日次)에 지어 들여오는 탕제(湯劑)인 겨울과 봄의 공진군자탕(拱辰君子湯)과 여름과 가을의 생맥군자탕(生脈君子湯) 같은 것은 규례대로만 거행해야 하는 것이다. 매번 의정(議定)할 때에 입진(入診)하는 것은 모두 형식이고 전혀 성실하지 못하니 이제부터 정지하라. 응당 올려야 할 탕제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여쭈어 승인 받고 만들어 들여오라.” 하였다.	初一日, 辛未。 詔曰:“藥院日次製入之湯劑, 如冬春之拱辰君子湯、夏秋之生脈君子湯, 只是按例擧行。 每於議定時入診, 俱屬文具, 全欠誠實, 自今停止。 遇有當進之湯劑, 隨時稟承製入。”
고종 33권, 32년 (1895 을미 / 청 광서 (光緖) 21년) 5월 14일(갑신) 1번째기사 창덕궁 연경당에서 원유회를 벌이다	창덕궁(昌德宮) 연경당(演慶堂)에서 원유회(園遊會)를 벌였다. 조령을 내리기를, “짐이 생각건대, 오늘의 원유회는 날씨가 매우 좋은데 우리 정부와 각국의 사신(使臣), 신사(紳士), 상인들이 함께 즐기니, 이것은 진실로 세계상의 화평한 복이다. 짐이 매우 기뻐서 특별히 궁내 대신 서리(宮內大臣署理) 김종한(金宗	十四日。 設園遊會于昌德宮 演慶堂。 詔曰:“朕이 惟컨ᄃᆡ 今日園遊嘉會에 天氣가 晴美ᄒᆞ데 我政府與各國使臣及士商으로 ᄒᆞᆫ가지 讌樂ᄒᆞ니 此ᄂᆞᆫ 진실로 世界上의 和平ᄒᆞᆫ 福이라。 朕이 甚히 欣悅ᄒᆞ야 特別이 宮內署理大臣金宗漢을 命ᄒᆞ야 朕의 意

	漢)에게 명하여 짐의 뜻을 선포하게 하니 수많은 반가운 손님들은 짐의 뜻을 반갑게 받아들이기 바란다.” 하였다.	를 宣케 ᄒᆞ노니 其濟濟ᄒᆞᆫ 嘉賓은 朕의 意를 반갑게 領悉ᄒᆞ기를 바라노라。”
고종 33권, 32년 (1895 을미 / 청 광서(光緖) 21년) 윤5월 26일(병인) 2번째기사 팔도 환곡을 사환으로 개칭하는 조례를 공포하다	탁지부령(度支部令) 제3호, 〈팔도 환곡을 사환으로 개칭하는 조례〔八道還穀改稱社還條例〕〉를 공포하였다.	度支部令第三號, 八道還穀을 改稱社還ᄒᆞᄂᆞᆫ 條例, 公布。
고종 33권, 32년 (1895 을미 / 청 광서(光緖) 21년) 6월 8일(정축) 1번째기사 김시제를 농상공부 광산 국장에 임명하다	6품 김시제(金時濟)를 농상공부 광산 국장(農商工部鑛山局長)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5등에 서임하였다.	初八日。 六品金時濟任農商工部鑛山局長, 敍奏任官五等。
고종 33권, 32년 (1895 을미 / 청 광서(光緖) 21년) 6월 18일(정해) 1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다례를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왕태자(王太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十八日。 詣眞殿, 行茶禮。 王太子隨詣, 行禮。

행하다		
고종 33권, 32년 (1895 을미 / 청 광서 (光緖) 21년) 7월 16 일(갑인) 1번째기사 개국 기원절에 즈음하여 각국 공사들과 여러 칙임관들에게 연회를 열어주고 칙어와 축사를 내리다	경회루(慶會樓)에 나아가서 각 국 공사(公使)들과 여러 칙임관(勅任官)들에게 연회를 열어주는 동시에 칙어(勅語)와 축사(祝詞)를 내렸다. 왕태자(王太子)가 모시고 참가하였다.	十六日。 御慶會樓, 讌饗各國公使及各勅任官, 仍降勅語祝詞。 王太子陪參。
고종 33권, 32년 (1895 을미 / 청 광서 (光緖) 21년) 7월 18 일(병진) 1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다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왕태자(王太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十八日。 詣眞殿, 行茶禮。 王太子隨詣, 行禮。
고종 33권, 32년 (1895 을미 / 청 광서 (光緖) 21년) 8월 9일 (정축) 1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다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왕태자(王太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初九日。 詣眞殿, 行茶禮。 王太子隨詣, 行禮。
고종 33권, 32년 (1895 을미 / 청 광서 (光緖) 21년) 11월 15 일(신해) 1번째기사	빈전(殯殿)에 나아가 망전(望奠)을 지냈다. 왕태자(王太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十五日。 詣殯殿, 行望奠。 王子隨詣, 行禮。

빈전에 나아가 망전을 지내다		
고종 33권, 32년 (1895 을미 / 청 광서(光緖) 21년) 11월 16일(임자) 1번째기사 빈전에 나아가 조상식, 주다례, 석상식을 올리다	빈전(殯殿)에 나아가 조상식(朝上食), 주다례(晝茶禮), 석상식(夕上食)을 올렸다. 왕태자(王太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十六日。 詣殯殿, 行朝上食、晝茶禮、夕上食。 王太子隨詣, 行禮。
고종 34권, 33년 (1896 병신 / 대한 건양(建陽) 1년) 1월 1일(양력) 1번째기사 빈전에 나아가 삭전과 주다례를 지내고 석상식을 올리다	【고종 통천 융운 조극 돈륜 정성 광의 명공 대덕 요준 순휘 우모 탕경 응명 입기 지화 신열 외훈 홍업 계기 선력 건행 곤정 영의 홍휴 수강 문헌 무장 인익 정효 태황제 실록(高宗統天隆運肇極敦倫正聖光義明功大德堯峻舜徽禹謨湯敬應命立紀至化神烈巍勳洪業啓基宣曆乾行坤定英毅弘休壽康文憲武章仁翼貞孝太皇帝實錄) 제34권】 【음력(陰曆) 을미년(1895) 11월 17일】 빈전(殯殿)에 나아가 삭전(朔奠)을 행하였다. 이어 주다례(晝茶禮)를 행하고 석상식(夕上食)을 올렸다. 왕태자(王太子)도 따라 나아가 예(禮)를 행하였다.	【高宗太皇帝實錄卷之三十四】 一日。【陰曆乙未十一月十七日】 詣殯殿, 行朔奠。 仍行晝茶禮、夕上食。 王太子隨詣, 行禮。
고종 34권, 33년 (1896 병신 / 대한 건양(建陽) 1년) 1월 5일(양력) 1번째기사 빈전에 나아가 조전과 주다례를 행하다	빈전(殯殿)에 나아가 조전(朝奠)과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왕태자(王太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五日。 詣殯殿, 行朝猷、晝茶禮。 王太子隨詣, 行禮。

고종 34권, 33년 (1896 병신 / 대한 건양(建陽) 1년) 1월 6일(양력) 1번째기사 빈전에 나아가 주다례를 행하다	빈전(殯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왕태자(王太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六日。 詣殯殿, 行晝茶禮。 王太子隨詣, 行禮。
고종 34권, 33년 (1896 병신 / 대한 건양(建陽) 1년) 1월 7일(양력) 1번째기사 빈전에 나아가 주다례를 행하다	빈전(殯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왕태자(王太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七日。 詣殯殿, 行晝茶禮。 王太子隨詣, 行禮。
고종 34권, 33년 (1896 병신 / 대한 건양(建陽) 1년) 2월 1일(양력) 1번째기사 빈전에 나아가 삭전과 주다례를 행하다	빈전(殯殿)에 나아가 삭전(朔奠)과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왕태자(王太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一日。【陰曆乙未十二月十八日】 詣殯殿, 行朔奠, 晝茶禮。 王太子隨詣, 行禮。
고종 34권, 33년 (1896 병신 / 대한 건양(建陽) 1년) 2월 8일(양력) 1번째기사 빈전에 나아가 주다례를 행하다	빈전(殯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왕태자(王太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八日。 詣殯殿, 行晝茶禮。 王太子隨詣, 行禮。
고종 34권, 33년		詔曰: “朕이 祖宗의 付畀ᄒᆞ심을 承ᄒᆞ

(1896 병신 / 대한 건양(建陽) 1년) 2월 13일(양력) 3번째기사 각종 조세를 탕감해 주도록 하다	조령을 내리기를, “짐이 조종(祖宗)들의 부탁을 받들어 우리 팔도(八道)와 만백성의 임금으로 된 지 지금 30여 년이 되었다. 즉위 이래로 밤낮으로 생각하면서 부모 된 도리를 다하고자 하였으나 어려움과 걱정거리가 거듭 생기고 기근이 연거푸 들어 나의 백성들이 꺼꾸러지고 쪼들려 구렁텅이에 굴러 떨어지는 일이 곳곳에서 보고 되고 있다. 말이 여기에 미치면 비단옷에 쌀밥도 편안치 않다. 거듭하여 개국(開國) 503년 6월 이후로는 나라가 문명(文明)하고 진보한다는 명색만 있고 그 실질은 오히려 없으므로, 모든 백성들이 의심을 품는 일이 없지 않다. 아! 짐의 덕이 없어서 그런가, 정부의 믿음이 서지 못하여 그런가, 일을 하는 신하들이 게을러서 그런가? 밤낮으로 두려워함이 범의 꼬리를 밟은 것과 같으니 그 원인을 따져보면 혜택이 아래에 닿지 못해서 그렇다. 일체 중앙과 지방의 공납 장부(公納帳簿)에 올라 있는 이포(吏逋)와 백성들이 미납한 것과 각 공인(貢人)들에게 남아 있는 것이 개국 503년 6월 이전에 기록된 것은 모두 탕감하게 함으로써 조정의 돌보아주는 뜻을 보이노라.” 하였다.	야 我八域萬姓에게 君臨ᄒᆞᆫ지 玆에 三十有餘年이라。 卽位以來로 盡夜思究ᄒᆞ야 父母된 道ᄅᆞᆯ 盡코져 호ᄃᆡ 夫何艱虞가 層生ᄒᆞ고 饑饉이 荐臻ᄒᆞ야 我赤子의 顚連瘁困ᄒᆞ야 宛轉溝壑ᄒᆞᆷ이 在在入聞ᄒᆞ니 興言及此ᄒᆞ면 錦玉이 靡安ᄒᆞ고 重之ᄒᆞ야 開國五百三年六月以後로ᄂᆞᆫ 國家가 文明進步ᄒᆞᄂᆞᆫ 名만 有ᄒᆞ고 其實은 尙無ᄒᆞᆫ 故로 群黎百姓이 疑貳ᄒᆞᄂᆞᆫ 心을 徒懷ᄒᆞᆷ이 不無ᄒᆞ니 嗚呼라! 朕의 德이 薄ᄒᆞ야 然歟아? 政府의 信이 立지 못ᄒᆞ야 然歟아? 治事ᄒᆞᄂᆞᆫ 臣工이 怠惰ᄒᆞᆷ이 有ᄒᆞ야 然歟아? 夙夜에 危懼ᄒᆞᆷ이 虎尾ᄅᆞᆯ 蹈ᄒᆞᆷ과 ᄀᆞᆺ트니 其由ᄅᆞᆯ 究ᄒᆞᆯ진ᄃᆡ 惠澤이 下及지 못ᄒᆞᆷ이라。 凡京外公納帳簿에 吏逋와 民未納과 各貢人處遺在가 開國五百三年六月以前登記에 係ᄒᆞᆫ 者ᄅᆞᆯ 一倂蕩減케 ᄒᆞ야써 朝家의 體恤ᄒᆞᄂᆞᆫ 意ᄅᆞᆯ 示ᄒᆞ노라。”
고종 34권, 33년 (1896 병신 / 대한 건양(建陽) 1년) 4월 2일(양력) 1번째기사	궁내부(宮內府)에서 아뢰기를, “양력(陽曆)을 반포한 후 각 능(陵)과 원(園)·묘(墓)의 한식(寒食) 제사는 청명(淸明)날에 마련하는 것으로 주하(奏下)받았습니다. 빈전(殯殿)의 한식 제사도	

각 능과 원, 묘의 한식 제사를 청명날에 지내도록 개정하다	청명일에 시행하소서.”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이번에는 한식일에 설행하라.” 하였다.	
고종 34권, 33년 (1896 병신 / 대한 건양(建陽) 1년) 7월 24일(양력) 1번째기사 종묘, 전, 궁, 각 능과 원에 지내는 제사와 대, 중, 소사의 날짜는 모두 옛 역서의 예대로 하게 하다	조령을 내리기를, “국가에 있어 사전(祀典)은 더없이 엄하고 더없이 공경스러운 것인데 그때 내각(內閣)의 역신(逆臣)이 명령을 집행함에 있어서 제멋대로 줄인 것부터가 이미 더없이 통탄스럽다. 더구나 새 역서(曆書)와 옛 역서에는 원래 날짜가 차이나니 조심스럽고 신중히 하는 도리로 보아 더더욱 미안하다. 이제부터 종묘(宗廟)와 전궁(殿宮), 각 능원(陵園)에 지내는 제사는 일체 옛 법대로 하며 일체 대사(大祀), 중사(中祀), 소사(小祀)의 날짜는 모두 옛 역서의 날짜대로 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원구단(圜丘壇), 사직단(社稷壇), 여러 산천(山川)과 제묘(諸廟)의 향사(享祀)는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과 장례원 경(掌禮院卿)으로 하여금 현재의 형편을 참작하고 예법(禮法)을 상고하여 바로잡게 하며 또한 장례원으로 하여금 전적으로 주관하여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사전이 이미 옛 법대로 회복된 만큼 고유(告由)의 절차가 없을 수 없다. 대신을 보내서 설행하게 하고 고유문은 마땅히 친히 지어 내리겠다.” 하였다.	二十四日。 詔曰:“有國祀典, 莫嚴莫敬。 而伊時內閣之逆臣執命, 恣意裁減, 已極痛迫。 況又新舊曆日字, 原有差互, 其在誠愼之道, 尤爲未安。 自今太廟、殿、宮、各陵、園祭享, 一遵舊式, 凡大中小祀月日, 竝用舊曆。” 又詔曰: “圜丘、社稷、諸山川、諸廟享祀, 其令宮內大臣掌禮卿, 參酌時宜, 考禮釐正, 亦令掌禮院專管擧行。” 又詔曰: “祀典旣已復舊, 不可無告由之節。 遣大臣設行。 告文當親撰以下矣。”

고종 34권, 33년 (1896 병신 / 대한 건양(建陽) 1년) 8월 4일(양력) 1번째기사 조세 납부 기한을 어기지 않을 것을 명하다	조령을 내리기를, “조세(租稅)는 나라의 정해진 공납으로서 상납(上納)에 기한이 있는 만큼 어겨서는 안 된다. 그런데 혹은 상납하지 않거나 혹은 나머지 수량을 다 상납하지 않고 줄곧 지체하기만 일삼고 있으니 이것이 무슨 사체(事體)인가?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으로 하여금 액수에 비추어 구별하여 적당히 기한을 정한 다음 각 해도(該道)에 엄격히 신칙하도록 하며 만일 다시 세월만 보내고 즉시 청산하지 않는다면 해당 수령(守令)을 먼저 면관(免官)하고 엄격히 징계하여 처리하게 하라.” 하였다.	四日。 詔曰:“租稅爲國家正供, 上納有時, 不當違越。 而或全數不納、或餘數未畢, 一以漫漶愆滯爲主, 是何事體? 其令度支部大臣照額區別, 量宜定限, 嚴飭各該道, 如復玩愒, 不卽淸完, 則該守令爲先免官, 嚴行懲辦。”
고종 34권, 33년 (1896 병신 / 대한 건양(建陽) 1년) 9월 23일(양력) 1번째기사 이재순이 제례 절차에 대하여 아뢰다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재순(李載純)이 아뢰기를, “장례원 경(掌禮院卿) 민종묵(閔種默)이 올린 상소의 비지(批旨)를 받고 예랑(禮郞)을 대신(大臣)과 유현(儒賢)들에게 보내어 의견을 들어 보았는데 봉조하(奉朝賀) 김병국(金炳國), 전 영중추부사(前領中樞府事) 신응조(申應朝), 특진관(特進官) 심순택(沈舜澤)은 모두 병으로 해서 의견을 받지 못하였고, 봉조하 송근수(宋近洙)가 아뢰기를, ‘예당(禮堂)이 진술한 여러 조항은 이미 명백한 근거가 있는 만큼 다시 덧붙여 말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특진관 김병시(金炳始)가 아뢰기를, ‘무릇 초상과 장례가 있어야 우제례(虞祭禮)가 비로소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상례비요(喪禮備要)》의 대상조(大祥條)를 상고하건대, 「개원례(開元禮)」를 인용하여 돌만에 장사지내는 경우에는	二十三日。 宮內府大臣李載純奏:“伏奉掌禮院卿閔種默上疏批旨, 遣禮郞收議於大臣、儒賢, 則奉朝賀金炳國、前領中樞府事申應朝、特進官沈舜澤, 竝病未收議, 奉朝賀宋近洙以爲: ‘禮堂所陳數條, 旣有分明可據, 無容更贅。’ 特進官金炳始以爲: ‘凡有喪, 葬而虞, 祭禮始備。 按《喪禮備要》大祥條, 引《開元禮》, 周而葬者, 葬後月小祥。 《朱子大全》《答曾無疑》書, 練祥之禮, 當計成服月日實數, 其間忌日, 別設祭奠。 是皆士喪禮追行

	장사지낸 다음달에 소상(小祥)을 지낸다고 하였습니다. 《주자대전(朱子大全)》의 증무의(曾無疑)에게 회답한 편지에서는, 연제(練祭)와 상제(祥祭) 예법은 마땅히 상복을 입은 그 날부터 계산하는데 그 사이에 죽은 날이 있으면 따로 간단한 제사를 지낸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사상례(士喪禮)로서 장사와 연제를 추후로 지내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왕조 전례(王朝典禮)는 지극히 신중하므로 감히 정해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조병세(趙秉世), 정범조(鄭範朝), 전 좨주(前祭酒) 송병선(宋秉璿)도 김 특진관의 의견과 대체로 같습니다. 삼가 성재(聖裁)를 바랍니다."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대신과 유현들의 의견이 이와 같은 만큼 직접 지내는 별전(別奠)으로 마련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이번에 대행 왕후(大行王后)의 초기신(初忌辰)에 별전을 직접 지내겠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의주(儀註)를 응당 마련해야 하겠는데 이것은 처음 만드는 예법에 속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제례(祭禮)대로 마련하라." 하였다.	葬練之節, 而王朝典禮, 至愼至重, 不敢質對。' 特進官趙秉世·鄭範朝、前祭酒宋秉璿與金特進, 議略同。 伏候聖裁。" 制曰: "大臣、儒賢之議如此, 以親行別奠磨鍊。" 又奏: "今此大行王后初忌辰親行別奠事, 奉勅矣。 儀註當爲磨鍊, 而係是創有之禮, 何以爲之?" 制曰: "依祭禮磨鍊。"
고종 34권, 33년 (1896 병신 / 대한 건양(建陽) 1년) 9월 25일(양력) 1번째기사 빈전에 나아가 조전,	빈전(殯殿)에 나아가 조전(朝奠), 조상식(朝上食), 주다례(晝茶禮)를 지내고 나서 석상식(夕上食)을 올렸다. 왕태자(王太子)도 배참(陪參)하였다.	二十五日。 詣殯殿, 行朝奠、朝上食、晝茶禮, 仍行夕上食。 王太子陪參。

조상식, 주다례를 지내고 석상식을 올리다		
고종 34권, 33년 (1896 병신 / 대한 건양(建陽) 1년) 10월 15일(양력) 1번째기사 빈전에 나아가 조전과 주다례를 행하다	빈전(殯殿)에 나아가 조전(朝奠)과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十五日。 詣殯殿, 行朝奠、晝茶禮。
고종 34권, 33년 (1896 병신 / 대한 건양(建陽) 1년) 10월 31일(양력) 1번째기사 빈전에 나아가 전작례를 가졌으며 조상식, 주다례를 지내고 석상식도 직접 올리다	빈전(殯殿)에 나아가 전작례(尊酌禮)를 가졌으며 조상식(朝上食)과 주다례(晝茶禮)를 지내고 석상식(夕上食)도 직접 올렸다. 왕세자(王世子)도 따라가서 의식을 가지고 이어 작헌례(酌獻禮)를 가졌다.	三十一日。 詣殯殿, 行奠酌禮、朝上食、晝茶禮、夕上食。 亦爲親行。 王世子隨詣, 行禮。 仍行酌獻禮。
고종 34권, 33년 (1896 병신 / 대한 건양(建陽) 1년) 11월 1일(양력) 1번째기사 빈전에 나아가 별다례를 지내고 조상식을 올렸으며 주다례를 지내고 석상식을 올리다	빈전(殯殿)에 나아가 별다례(別茶禮)와 조상식(朝上食), 주다례(晝茶禮)와 석상식(夕上食)을 행하였다. 왕태자(王太子)도 따라 나아가 예(禮)를 행하였다.	一日【陰曆丙申九月二十六日】 詣殯殿, 行別茶禮、朝上食、晝茶禮、夕上食。 王太子隨詣, 行禮。

고종 34권, 33년 (1896 병신 / 대한 건양(建陽) 1년) 11월 5일(양력) 1번째기사 빈전에 나아가 삭전과 주다례를 행하다	빈전(殯殿)에 나아가 삭전(朔奠)과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五日。 詣殯殿, 行朔奠及晝茶禮。
고종 34권, 33년 (1896 병신 / 대한 건양(建陽) 1년) 11월 14일(양력) 1번째기사 빈전에 나아가 조전과 주다례를 행하다	빈전(殯殿)에 나아가 조전(朝奠)과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十四日。 詣殯殿, 行朝奠、晝茶禮。
고종 34권, 33년 (1896 병신 / 대한 건양(建陽) 1년) 11월 18일(양력) 1번째기사 빈전에 나아가 조전과 주다례를 행하다	빈전(殯殿)에 나아가 조전(朝奠)과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十八日。 詣殯殿, 行朝奠、晝茶禮。
고종 34권, 33년 (1896 병신 / 대한 건양(建陽) 1년) 11월 28일(양력) 1번째기사 빈전에 나아가 삭전과 주다례를 행하다	빈전(殯殿)에 나아가 삭전(朔奠)과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二十八日。 詣殯殿, 行朔奠、晝茶禮。

고종 34권, 33년 (1896 병신 / 대한 건양(建陽) 1년) 12월 5일(양력) 1번째기사 빈전에 나아가 주다례를 행하다	빈전(殯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五日。 詣殯殿, 行晝茶禮。
고종 34권, 33년 (1896 병신 / 대한 건양(建陽) 1년) 12월 8일(양력) 1번째기사 묘와 전, 궁, 능, 원의 대소 향사를 다시 시행할 것을 명하다	조령을 내리기를, “묘(廟), 전(殿), 궁(宮), 능(陵), 원(園)의 대소 향사(享祀)를 모두 정지한 지가 이제 1년이 되었으니 인정과 예법으로 보아 서운한 일이다. 이미 우리 조정에서 거행한 전례가 있으니 장례원(掌禮院)에서 삼가 그대로 시행하게 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비록 인산(因山) 전이지만 사가(私家)의 장례(葬禮), 상제(祥祭), 담제(禫祭)를 금지하지 말라.” 하였다.	八日。 詔曰:“廟殿宮陵園大小享祀之竝停, 今爲周歲, 情禮缺然。 既有我家已行之例, 其令掌禮院, 謹遵擧行。” 又詔曰:“雖因山前, 私家窆葬與祥、禫, 毋禁。”
고종 34권, 33년 (1896 병신 / 대한 건양(建陽) 1년) 12월 19일(양력) 1번째기사 빈전에 나아가 망전과 주다례를 행하다	빈전(殯殿)에 나아가 망전(望奠)과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十九日。 詣殯殿, 行望奠、晝茶禮。

고종 35권, 34년 (1897 정유 / 대한 건양(建陽) 2년) 1월 1일(양력) 2번째기사 조병세가 산릉을 간심할 것을 청하다	총호사(總護使) 조병세(趙秉世)가 아뢰기를, “내일 산릉(山陵)을 다시 간심(看審)하려고 합니다. 신과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재순(李載純), 장례원 경(掌禮院卿) 민영준(閔泳駿), 산릉 제조(山陵提調) 이호익(李鎬翼)이 상지관(相地官)을 인솔하고서 간심하겠습니다. 감히 여쭙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이어 군부 대신(軍部大臣) 민영환(閔泳煥), 특진관(特進官) 이헌직(李憲稙),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심상훈(沈相薰)과 함께 가라고 명하였다.	總護使趙秉世奏: “明日, 山陵再看審次。 臣與宮內府大臣李載純、掌禮院卿閔泳駿、山陵提調李鎬翼, 率相地官出去看審之意, 敢稟。” 允之。 仍命軍部大臣閔泳煥、特進官李憲稙、度支部大臣沈相薰, 同爲進去。
고종 35권, 34년 (1897 정유 / 대한 건양(建陽) 2년) 1월 3일(양력) 1번째기사 빈전에 나아가 주다례를 행하다	빈전(殯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三日。 詣殯殿, 行晝茶禮。
고종 35권, 34년 (1897 정유 / 대한 건양(建陽) 2년) 1월 10일(양력) 2번째기사 능과 관련한 각 행사의 좋은 날을 선택하여 별단에 써서 들이다	총호사(總護使) 조병세(趙秉世)가, ‘능(陵)과 관련한 각 행사의 좋은 날을 빈청(賓廳)에서 회의하여 정밀히 선택하여 별단(別單)에 써서 들입니다.’라고 상주(上奏)하니, 윤허하였다.	總護使趙秉世以山陵各項吉日, 賓廳會議精擇, 別單書入, 上奏。 允之。
고종 35권, 34년		十三日。 總護使趙秉世奏: “國葬物

(1897 정유 / 대한 건양(建陽) 2년) 1월 13일(양력) 1번째기사 국장의 장사 비용 10만원은 예산 외의 지출로 쓰도록 하다	총호사(總護使) 조병세(趙秉世)가 아뢰기를, “국장(國葬)에 드는 물력은 작년 겨울에 이미 떼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으니 떼어 낸 액수도 오히려 모자랄까봐 근심되고 역군(役軍)에 지불할 비용도 많이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부득불 다시 떼 주지 않을 수 없는데 산릉(山陵)의 봉표(封標) 장소를 오늘 다시 옮겨 정하였으니 물력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시 새로 마련하는 것과 같게 되었습니다. 작년의 사례에 의거해서 국장 비용 10만 원(元)은 탁지부(度支部)에 명하여 예산 외의 지출 항목에서 제때에 가져다 쓰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力, 昨冬已有所支劃矣。 今聞所劃之數, 猶患不敷, 役費多未授價云。 不容不更爲劃付, 而山陵封標, 今旣移定, 物力所需, 便同新備。 依昨年例, 國葬費十萬元, 命度支部預算外支出, 以爲及期取用何如?” 允之。
고종 35권, 34년 (1897 정유 / 대한 건양(建陽) 2년) 1월 17일(양력) 1번째기사 빈전에 나아가 주다례를 행하다	빈전(殯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十七日。 詣殯殿, 行晝茶禮。
고종 35권, 34년 (1897 정유 / 대한 건양(建陽) 2년) 1월 17일(양력) 2번째기사 고유제를 지내게 하다	총호사(總護使) 조병세(趙秉世)가 아뢰기를, “이번에 산릉(山陵)의 노역에 드는 물력을 마땅히 차례로 마련해야 하겠으나 지난해 겨울에 숭릉(崇陵)의 오른쪽 강(岡)에 봉표(封標)하는 공사를 했고 거	總護使趙秉世奏: “今此山陵役用物力, 當次第措辦, 而昨冬崇陵右岡, 亦旣封標始役, 石儀材瓦多有準備者。 勢將撤毁運移, 及期入用, 而事在先陵局內, 則禮當先行告由, 亦不可無祀后土

	기에 석물, 재목, 기와도 많이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형세상 철거하고 옮겨다가 시일에 맞춰 써야 하는데 선대 임금들의 능(陵) 구역 안에서 하는 일이니 예의상 고유제(告由祭)를 먼저 지내야 하며 후토신(后土神)에게 제사 지내는 일도 없을 수 없습니다. 장례원(掌禮院)으로 하여금 날을 받아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之擧。 令掌禮院擇日擧行何如?” 允之。
고종 35권, 34년 (1897 정유 / 대한 건양(建陽) 2년) 1월 24일(양력) 1번째기사 빈전에 나아가 주다례를 행하다	빈전(殯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二十四日。 詣殯殿, 行晝茶禮。
고종 35권, 34년 (1897 정유 / 대한 건양(建陽) 2년) 1월 30일(양력) 1번째기사 빈전에 나아가 주다례를 행하다	빈전(殯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三十日。 詣殯殿, 行晝茶禮。
고종 35권, 34년 (1897 정유 / 대한 건양(建陽) 2년) 2월 1	【음력 병신년(1896) 12월 30일】	一日。【陰曆丙申十二月三十日】 詣殯殿, 行朝奠、朝上食、晝茶禮。 王太子陪參。

일(양력) 1번째기사 빈전에 나아가 조전을 지내고 조상식을 올리고 주다례를 행하다	빈전(殯殿)에 나아가 조전(朝奠)을 지내고 조상식(朝上食)을 올렸으며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왕태자(王太子)도 배참(陪參)하였다.	
고종 35권, 34년 (1897 정유 / 대한 건양(建陽) 2년) 2월 2일(양력) 1번째기사 빈전에 나아가 삭제와 주다례를 지내고 석상식을 올리다	빈전(殯殿)에 나아가 삭제(朔祭)와 주다례(晝茶禮)를 지내고 석상식(夕上食)을 올렸다. 왕태자(王太子)도 따라 나아가 예(禮)를 행하였다.	二日。 詣殯殿, 行朔奠、晝茶禮、夕上食。 王太子隨詣, 行禮。
고종 35권, 34년 (1897 정유 / 대한 건양(建陽) 2년) 2월 15일(양력) 1번째기사 빈전에 나아가 주다례를 행하고 석곡을 하다	빈전(殯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고 석곡(夕哭)을 하였다. 【원본】 39책 35권 10장 B면	十五日。 詣殯殿, 行晝茶禮、夕哭。
고종 35권, 34년 (1897 정유 / 대한 건양(建陽) 2년) 2월 16일(양력) 1번째기사 빈전에 나아가 망제를 지내다	빈전(殯殿)에 나아가 망제(望祭)를 지냈다. 뒤이어 조곡(朝哭)을 하고 주다례(晝茶禮)를 지냈으며 석곡(夕哭)을 행하였다.	十六日。 詣殯殿, 行望祭。 仍行朝哭、晝茶禮、夕哭。

고종 35권, 34년 (1897 정유 / 대한 건양(建陽) 2년) 2월 18일(양력) 2번째기사 환궁하는 절차를 날을 받아 거행하도록 하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김종한(金宗漢)이 아뢰기를, “삼가 환궁하겠다는 조칙에 의거하여 천지(天地), 종묘(宗廟), 사직(社稷)에 고하고 조서(詔書)를 반포하며 진하(陳賀)하는 등의 절차는 날을 받아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掌禮院卿金宗漢奏: “謹依還御詔勅, 告天地廟社、頒詔陳賀等節, 擇日擧行何如?” 允之。
고종 35권, 34년 (1897 정유 / 대한 건양(建陽) 2년) 2월 19일(양력) 1번째기사 진전에 환궁을 고유하는 의식을 거행하도록 하다	조령을 내리기를, “진전(眞殿)에 환궁을 고유(告由)하는 의식이 없을 수 없으니 내일 전배(展拜)하고 겸해서 사유를 고하겠다. 고유문(告由文)은 직접 지어서 내려 보낼 것이며 백관들은 들어와 참석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빈전(殯殿)에도 고유별전(告由別奠)을 행해야 하니 주다례(晝茶禮)를 겸해서 지낼 것이다. 백관은 들어와 참석하라. 제문은 직접 지어서 내려 보내겠다.”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동궁(東宮)의 효성스러운 생각에 이번 환궁의 시기를 만났으니 당연히 정성을 표시하는 의식을 거행해야 할 것이다. 내일 빈전(殯殿)에서 별전(別奠)을 거행할 것이니 저녁 상식(上食)을 겸해서 행하라. 백관들은 들어와 참석하라. 제문은 동궁이 지어 내려 보내라.” 하였다.	十九日。 詔曰:“眞殿不可無還御告由之擧, 明日當展拜, 兼告事由, 告文親撰以下矣。 百官入參。”又詔曰:“殯殿亦當行告由別奠。 晝茶禮兼行, 百官入參。 祭文親撰以下矣。”又詔曰:“以東宮孝思, 今當還御之日, 宜伸誠禮。 明日, 將行別奠於殯殿, 夕上食兼行, 百官入參。 祭文東宮製下矣。”
		二十日。 還御于慶運宮。 王太子陪

고종 35권, 34년 (1897 정유 / 대한 건양(建陽) 2년) 2월 20일(양력) 1번째기사 경운궁으로 환어하다	경운궁(慶運宮)으로 환어(還御)하였다. 왕태자(王太子)가 배환(陪還)하였다.	還。
고종 35권, 34년 (1897 정유 / 대한 건양(建陽) 2년) 2월 20일(양력) 2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전알하고 고유제를 지내다	진전(眞殿)에 나아가 전알(展謁)하고 겸해서 고유제(告由祭)를 지냈으며 이어 빈전(殯殿)에 가서 고유 별전(告由別奠)을 지냈다. 이어서 석전(夕奠)을 거행하고 석곡(夕哭)을 하였다. 왕태자(王太子)가 따라 나아가 예(禮)를 행하였으며 이어 별전(別奠)과 석상식(夕上食)을 겸해서 행하였다.	詣眞殿, 展謁, 兼行告由。 仍詣殯殿, 行告由別奠, 仍行夕奠、夕哭。 王太子隨詣, 行禮。 仍行別奠兼夕上食。
고종 35권, 34년 (1897 정유 / 대한 건양(建陽) 2년) 2월 21일(양력) 1번째기사 빈전에 나아가 조전과 주다례를 행하다	빈전(殯殿)에 나아가 조전(朝奠)과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二十一日。 詣殯殿, 行朝奠、晝茶禮。
고종 35권, 34년 (1897 정유 / 대한 건양(建陽) 2년) 2월 26일(양력) 1번째기사	빈전(殯殿)에 나아가 조전(朝奠)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二十六日。 詣殯殿, 行朝奠、晝茶禮。

빈전에 나아가 조전과 주다례를 행하다		
고종 35권, 34년 (1897 정유 / 대한 건양(建陽) 2년) 3월 9일(양력) 2번째기사 가을 추수를 수릉에서 관할하는 것을 윤허하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김종한(金宗漢)이 아뢰기를, “수릉 영(綏陵令) 서상경(徐相璟)이 보고한 것을 보니, ‘본릉(本陵)의 향탄 전답(香炭田畓) 64결(結)이 고양군(高陽郡)에 있는데 감관(監官)이 자주 교체되어 조세 납부가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전답의 형지(形止)는 본 능에서 애초에 답험(踏驗)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햇수가 오래되도록 그대로 따른다면 위토(位土)는 앞으로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니 조사하여 바르게 정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대개 감관이 자주 교체되면 절로 오래 일할 생각을 하지 않고 전적으로 자기 잇속을 채우기 위해 힘썼으며 모두 세금 납부를 지체하여 능에서 사용하는 비용이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전답의 형지(形止)를 두루 살펴보지 않아 묵밭이 된 것을 제때에 수보(修補)하지 않았으며 몰래 팔아 버린 것도 청맹과니가 된 듯 알지 못하고 있으니 이와 같은 일들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마침내 유명무실하게 될 것입니다. 일의 소홀함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으니 본 능의 관리로 하여금 지방관을 안동(眼同)하여 먼저 가서 창고마다 조사하고 양안(量案)을 고쳐 만들어서 이번 가을의 추수부터는 본 능으로 하여금 전적으로 관할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掌禮院卿金宗漢奏: “卽接綏陵令徐相璟所報, 則‘本陵香炭田畓六十四結, 在於高陽郡, 而監官數遞, 稅納多滯。 田畓形止, 本陵初不踏驗。 若年久因循, 則位土將至於名存實無, 請調査歸正’爲辭矣。 蓋監官之遞易無常, 自無久計, 專事肥己, 竝與稅納而愆滯, 以致陵用之苟艱。 田畓形止未能周察, 陳廢者趁不修補, 潛賣者矇不覺悟, 若此不已, 竟至有名無實。 事之疎忽, 莫此爲甚, 令本陵官, 眼同地方官, 使之前往, 逐庫査覈, 改成量案, 自今秋收等節, 令本陵專管何如?” 允之。
고종 35권, 34년 (1897 정유 / 대한 건	장례원 경(掌禮院卿) 김종한(金宗漢)이 아뢰기를,	掌禮院卿金宗漢奏: “各陵園位土, 尙多有未遑劃定者, 齋屬末由奠接, 漸致

양(建陽) 2년) 3월 11일(양력) 2번째기사 각 능과 원 몫의 토지를 부근의 역참토지 중에서 적당히 획부하도록 하다	“각 능(陵)과 원(園)의 위토(位土)를 아직도 미처 획정(劃定)하지 못한 것이 많으며 재궁(齋宮)에 딸린 하인들도 전접(奠接)할 방법이 없어 고장을 떠나 점점 흩어지고 있습니다. 지키고 보호하는 일이 늘 정성스럽게 되지 못할까봐 근심됩니다. 각 재관(齋官)들이 획정을 청하는 보고가 날마다 올라오고 있으니 사세를 참작하여 멀리 앞날까지 고려한다면 전답을 획부하여 그들로 하여금 착실히 뿌리를 내려 신역(身役)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원(本院)에서는 달리 마련할 방도가 없으니 어떻게 하여야겠습니까?”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각 능과 원의 부근에 있는 역토(驛土) 가운데서 적당히 획부(劃付)하라.” 하였다.	渙散。 守護之節, 每患不勤。 各齋官請劃之報, 式日斯至, 參互事勢, 苟求遠圖, 莫如劃付田畓, 使之着根應役。而自臣院無他措辦之道, 何以爲之?” 制曰: “就各陵園附近驛土中, 量宜劃付。”
고종 35권, 34년(1897 정유 / 대한 건양(建陽) 2년) 3월 17일(양력) 1번째기사 빈전에 나아가 삭전을 지내고 조상식, 주다례, 석상식을 행하다	빈전(殯殿)에 나아가 삭전(朔奠)을 지내고 조상식(朝上食), 주다례(晝茶禮), 석상식(夕上食)을 행하였다. 왕태자(王太子)도 따라 나아가 예(禮)를 행하였다.	十七日。 詣殯殿, 行朔奠、朝上食、晝茶禮、夕上食。 王太子隨詣, 行禮。
고종 35권, 34년(1897 정유 / 대한 건양(建陽) 2년) 4월 2일(양력) 1번째기사 빈전에 나아가 주다례	빈전(殯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二日。 詣殯殿, 行晝茶禮。

를 행하다		
고종 35권, 34년 (1897 정유 / 대한 건양(建陽) 2년) 4월 5일(양력) 1번째기사 빈전에 나아가 주다례를 행하다	빈전(殯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五日。 詣殯殿, 行晝茶禮。
고종 35권, 34년 (1897 정유 / 대한 건양(建陽) 2년) 4월 16일(양력) 1번째기사 빈전에 나아가 주다례를 행하다	빈전(殯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十六日。 詣殯殿, 行晝茶禮。
고종 35권, 34년 (1897 정유 / 대한 건양(建陽) 2년) 5월 9일(양력) 1번째기사 빈전에 나아가 주다례를 행하다	빈전(殯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九日。 詣殯殿, 行晝茶禮。
고종 35권, 34년 (1897 정유 / 대한 건양(建陽) 2년) 6월 2	의정부(議政府)에서는 탁지부(度支部)가 청한 의견과 관련하여 산릉(山陵)의 해자(垓字) 안에 있는 전답, 집값으로 1만 612원(元)을 예비금 가운데서 지출	二日。 議政府, 因度支部請議, 山陵垓字內田畓家舍價一萬六百十二元, 豫備金中支出事, 經議上奏。 制曰:

일(양력) 1번째기사 산릉 경계 안에 있는 논과 밭, 집 값을 예비금 가운데서 지출할 것을 명하다	하는 일에 대하여 토의를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좋다.” 하였다.	“可。”
고종 35권, 34년 (1897 정유 / 대한 건양(建陽) 2년) 6월 19일(양력) 1번째기사 여러 어진을 이봉하는 날에 직접 고유제를 지내고 전배를 하며 관리들이 모두 참가할 것을 명하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선원전(璿源殿)은 오늘 공사가 끝나서 여러 어진(御眞)을 이봉할 날이 가까워 왔으니 짐의 슬픈 감회와 기쁜 생각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마땅히 직접 작헌례(酌獻禮)를 거행하여 조금이나마 변변치 못한 나의 정성을 표시해야 하겠으나 나라의 제도로 해서 거행하지 못하니 어찌 섭섭함을 이길 수 있겠는가? 이봉하여 이안(移安)하는 날에 마땅히 직접 고유제(告由祭)를 지내고 뒤이어 전배(展拜)를 하겠다. 고유문(告由文)은 직접 지어서 내려 보내겠다. 모든 관리들이 들어와 참가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친위(親衛) 제1, 2, 3대대(大隊)의 훈련을 모레 융무정(隆武亭)에서 하겠으니 대령하라.” 하였다.	十九日。 詔曰: “璿源殿, 今旣竣役, 列聖御眞, 移奉在邇。 朕小子愴慕喜幸, 曷有其極? 宜有酌獻之禮, 少伸微忱。 而因國制未行, 豈勝缺然? 移奉移安日, 當親告由。 仍行展拜, 告文親撰以下矣。 百官入參。” 又詔曰: “親衛第一二三大隊演操, 再明日隆武亭待令。”
고종 35권, 34년 (1897 정유 / 대한 건양(建陽) 2년) 6월 30일(양력) 1번째기사	빈전(殯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三十日。 詣殯殿, 行晝茶禮。

빈전에 나아가 주다례를 행하다		
고종 35권, 34년 (1897 정유 / 대한 건양(建陽) 2년) 7월 2일(양력) 1번째기사 기우제는 규례대로 설행하도록 하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민영규(閔泳奎)가 아뢰기를, “올봄에는 비오고 햇볕 나는 것이 고르고 적절하였으나 요즘에 와서 줄곧 가뭄이 들어 말랐습니다. 소서(小暑)가 가까워오고 있으나 한 번 큰 비가 오지 않은 관계로 이미 파종한 싹은 말라죽게 되었으며 이앙(移秧)하지 못한 모는 시기를 놓치게 될 것이니 백성들의 일을 생각할 때 참으로 안타깝기 더할 나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규벽(圭璧)하는 거조를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기우제(祈雨祭)는 날을 받지 말고 음력 6월 5일에 삼각산(三角山), 목멱산(木覓山), 한강(漢江)에서 규례대로 낭청(郎廳)을 파견하여 정성껏 설행하라는 내용으로 지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二日。 掌禮院卿閔泳奎奏:“今春雨暘均適, 近者一直旱乾, 小暑將近, 一霈尙遲, 已播之苗, 不免枯損, 未移之秧, 將致愆期。 言念民事, 誠極渴悶。 圭璧之擧, 不容少緩, 初次雩祭, 不卜日, 陰曆六月初五日, 三角山、木覓山、漢江, 依例, 遣堂下官, 虔誠設行事, 知委何如?”允之。
고종 35권, 34년 (1897 정유 / 대한 건양(建陽) 2년) 7월 4일(양력) 1번째기사 첫 번째 기우제를 삼각산, 목멱산, 한강에 지내다	첫 번째 기우제(祈雨祭)를 삼각산(三角山), 목멱산(木覓山), 한강(漢江)에서 지냈다.	四日。 行初次雩祭于三角山、木覓山、漢江。
고종 35권, 34년 (1897 정유 / 대한 건		五日。 命再次雩祭不卜日設行。

양(建陽) 2년) 7월 5일(양력) 1번째기사 두 번째 기우제는 날을 받지 말고 설행하라고 명하다	두 번째 기우제(祈雨祭)는 날을 받지 말고 설행하라고 명하였다.	
고종 35권, 34년(1897 정유 / 대한 건양(建陽) 2년) 7월 15일(양력) 2번째기사 홍삼 증조 폐지 안건을 반포하다	〈홍삼 증조 폐지 안건［紅蔘蒸造規例廢止件］〉을 농상공부령(農商工部令) 제15호로 반포하였다.	紅蔘蒸造規例廢止件, 以農商工部令第十五號, 頒布。
고종 35권, 34년(1897 정유 / 대한 건양(建陽) 2년) 7월 20일(양력) 1번째기사 빈전에 나아가 주다례를 행하다	빈전(殯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二十日。 詣殯殿, 行晝茶禮。
고종 35권, 34년(1897 정유 / 대한 건양(建陽) 2년) 8월 4일(양력) 1번째기사 빈전에 나아가 조전과 주다례를 행하다	빈전(殯殿)에 나아가 조전(朝奠)과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四日。 詣殯殿, 行朝奠、晝茶禮。
고종 35권, 34년(1897 정유 / 대한 건		十二日。 詣殯殿, 行晝茶禮。

양(建陽) 2년) 8월 12일(양력) 1번째기사 빈전에 나아가 주다례를 행하다	빈전(殯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고종 35권, 34년(1897 정유 / 대한 건양(建陽) 2년) 8월 15일(양력) 1번째기사 연호를 정하는 큰 행사를 거행할 것을 명하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나라에서 연호(年號)를 정하는 것은 기년(紀年)하자는 것이고 또한 천하에 신뢰를 세우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높이 부르고 오래도록 밝게 보여야 하는데 이것은 만대가 흘러도 바꿀 수 없는 법이다. 이 해를, ‘광무(光武) 원년(元年)’으로 하되 장례원(掌禮院)에서 받은 길일(吉日)에 의거하여 8월 16일에 조서(詔書)를 반포하는 큰 의식을 거행하라. 각 해당 부(府)와 부(部)의 여러 신하들 가운데서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일체 업무에서 이전의 나쁜 습관을 철저히 제거함으로써 혹시 스스로 죄를 지어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진실한 마음으로 알맞은 직책에서 함께 현재의 곤란을 구제하라.” 하였다. 【고종 통천 융운 조극 돈륜 정성 광의 명공 대덕 요준 순휘 우모 탕경 응명 입기 지화 신열 외훈 홍업 계기 선력 건행 곤정 영의 홍휴 수강 문헌 무장 인익 정효 태황제 실록(高宗統天隆運肇極敦倫正聖光義明功大德堯峻舜徽禹謨湯敬應命立紀至化神烈巍勳洪業啓基宣曆乾行坤定英毅弘休壽康文憲武章仁翼貞孝太皇帝實錄) 제35권 끝】	十五日。 詔曰: “有國建元, 所以紀年, 而亦所以與天下立信也。 必有隆稱, 昭示久遠。 此, 萬世不易之典也。 以是年爲光武元年, 依掌禮院所擇吉日, 於八月十六日, 擧行頒詔鉅典。 各該府部諸臣有其責者, 一切事宜, 痛除前習, 毋或自遠罪戾, 致有後悔, 實心稱職, 共濟時艱。 欽此。”
고종 36권, 34년(1897 정유 / 대한 광		

무(光武) 1년) 8월 22일(양력) 1번째기사 즉조당에서 진하를 행하다	즉조당(卽阼堂)에서 진하(陳賀)를 행하였다. 만수성절(萬壽聖節)이었기 때문이다.	二十二日。 行陳賀于卽阼堂。 以萬壽聖節也。
고종 36권, 34년(1897 정유 / 대한 광무(光武) 1년) 9월 5일(양력) 1번째기사 보사제를 설행하라고 명하다	보사제(報謝祭)를 날을 받아 설행(設行)하라고 명하였다. 장맛비가 멎고 날이 개어 장례원(掌禮院)에서 주품(奏稟)하였기 때문이다.	五日。 命報謝祭擇日設行。 積雨收霽, 有掌禮院奏稟也。
고종 36권, 34년(1897 정유 / 대한 광무(光武) 1년) 9월 11일(양력) 1번째기사 빈전에 나아가 주다례를 행하다	빈전(殯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十一日。 詣殯殿, 行晝茶禮。
고종 36권, 34년(1897 정유 / 대한 광무(光武) 1년) 9월 15일(양력) 1번째기사 빈전에 나아가 석곡을 행하다	빈전(殯殿)에 나아가 석곡(夕哭)을 행하였다.	十五日。 詣殯殿, 行夕哭。
고종 36권, 34년(1897 정유 / 대한 광무(光武) 1년) 9월 21	장례원 경(掌禮院卿) 김규홍(金奎弘)이 아뢰기를, “천지에 합제(合祭)하는 것은 사전(祀典)에서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원구	二十一日。 掌禮院卿金奎弘奏: “合祭天地, 在祀典最鉅。 而圜丘儀制, 尙多未遑。 曾前南郊, 只享風、雲、

일(양력) 1번째기사 원구단의 의제에 대하여 일정한 규례를 만들 것을 명하다	단(圜丘壇)의 의제(儀制)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전에는 남쪽 교외에서 단지 풍운(風雲), 뇌우(雷雨)의 신들에게만 제사지냈는데 단유(壇壝)의 계급(階級)이 법도에 맞지 않았으니 밝게 섬기는 의절에서 볼 때 실로 미안합니다. 동지(冬至)절의 제사를 그대로 거행할 수 없으니 앞으로 고쳐 쌓는 등의 절차에 대하여 폐하(陛下)의 재가를 바랍니다. 호천상제황(昊天上帝皇)과 지기신(地祇神)의 위판과 일월성신(日月星辰), 풍운뇌우(風雲雷雨), 악진(嶽鎭), 해독(海瀆)의 신패를 만드는 것과 제사에 쓰는 희생, 변두(籩豆) 등의 여러 가지 의식에 관한 글들은 역대의 의례를 널리 상고하여 마땅히 일정한 규례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원에서는 감히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시임 의정(時任議政)과 원임 의정(原任議政)들, 지방에 있는 유현(儒賢)에게 하순(下詢)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제사지내는 예절은 어느 것이나 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더구나 천지에 합제하는 일은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지금 아뢴 것이 실로 짐의 뜻에 부합되니 경은 영선사장(營繕司長)과 함께 함께 지형을 보고 날짜를 골라서 제단을 쌓을 것이며 제반 예식에 관한 규정은 아뢴 대로 하되 다만 서울에 있는 시임 의정과 원임 의정들에게서만 수의(收議)하여 들이라." 하였다.	雷、雨，而壇壝陛級，不中尺度，其在昭事之儀，實爲未安。 冬至節享，則不宜因循將事，改築等節，伏候上裁。昊天上帝皇、地祇神位版及從享日、月、星辰、風雲、雷雨、嶽鎭、海瀆神牌造成與特牢籩豆諸般儀文，博稽歷代之禮，宜有一定之制。 自臣院不敢擅便， 下詢于時原任議政、在外儒賢，而處之何如?" 制曰:"享祀之禮，何莫非綦重， 而況合祭天地乎? 今此所奏，實合朕意， 卿其與營繕司長相地擇定，卜日築壇。 諸船儀文，依所奏，只收議於在京時原任議政，以入。"
고종 36권, 34년 (1897 정유 / 대한 광무(光武) 1년) 9월 25일(양력) 2번째기사	장례원 경(掌禮院卿) 김규홍(金奎弘)이 아뢰기를, "원구단(圜丘壇)의 여러 의식 절차에 대하여 서울에 있는 시임 의정(時任議政)과 원임 의정(原任議政)들에게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 대하여 명령하였습	掌禮院卿金奎弘奏: "圜丘諸船儀文，收議於在京時原任議政以入事， 命下

원구단의 여러 의식 절차를 상고하여 비준을 받은 다음 집행하도록 명하다	니다. 당하(堂下)을 보내서 의견을 물었더니 의정 심순택(沈舜澤)이 말하기를, ‘삼가 《예기(禮記)》를 상고하여 보건대, 「천자는 천지에 제사지낸다.〔天子祭天地〕」라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천자의 예로는 하늘을 섬겨 근본에 보답하며 처음을 돌이켜보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땅을 쓸고 제사를 지내는 데서 질그릇, 바가지, 짚, 햇송아지를 쓰는 것은 그 바탕을 숭상하고 정성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인(聖人)은 관천(觀天)하는 도리를 의식 절차의 법칙으로 삼았기 때문에 제사지내는 단유(壇壝)의 계급(階級)은 반드시 그 형상을 살피고 만들었습니다. 호천상제(昊天上帝) 지기지신(地祇之神) 신주와 대명(大明) 야명(夜明), 오성(五星), 28수, 주천성신(周天星辰), 풍운뇌우, 오악(五嶽), 오진(五鎭), 사해사독(四海四瀆) 신들의 신주, 변두(籩豆)의 수와 의식 규정의 정도는 하(夏), 은(殷), 주(周) 삼대(三代) 이후로 제도가 각각 다른데 예가 미비한 것이 오늘과 같은 때는 없었습니다. 사체상 옛날대로 하여서는 안 되니 조성(造成)하는 절차나 진설(陳設)하는 도식은 모두 장례원으로 하여금 고례(古禮)를 참고하여 거행토록 하며 성단(星壇)을 설치하는 경우는 분야(分野)의 별들에게 제사지내는 의리에서 나왔으므로 이제 제사지낼 수 없습니다. 그 밖의 산천단(山川壇)이나 성황당(城隍堂)처럼 사전(祀典)을 상고하여 바로잡을 수 있는 것에 대하여서는 모두 바로잡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신은 원래 예학(禮學)에 어둡다 보니 감히 하나씩 지적하여 대답하지 못하겠으니, 널리 물어서 처리하시옵소서.’고 하였습니다. 특진관(特進官) 김병시(金炳始)와 조병세(趙秉世)는 병으로 의견을 올리지 못하였지만 시임 의정과 원임 의정들의 의견이 이와 같으니 폐하께서 처결하여 주기 바랍니다.” 하니, 조령을 내리기를,	矣。 發遣郎廳問議, 則議政沈舜澤以爲‘謹按禮記,「天子祭天地。」 夫天子之禮, 莫大於事天而報本反始者也。 掃地而祭, 陶匏稾秸牛角繭栗, 皆所以尙質而貴誠也。 聖人觀天之道以爲儀文之則, 故壇壝陛級, 必觀其象而作焉。 昊天上帝·皇地祇之神位版及大明·夜明·五星·二十八宿·周天星辰·風雲雷雨·五嶽五鎭·四海四瀆之神牌、籩豆之多寡、儀文之繁縟, 自三代以後, 制各不同, 而禮之未備, 莫今日若。 其在事體, 不宜仍舊。 造成等節, 陳設圖式, 竝令掌禮院, 參互古禮擧行。 若星壇之設, 旣由於祭分野星之義, 而今不可疊祀, 外他山川城隍之可稽祀典而釐正者, 一體釐正爲宜。 而臣素昧禮學, 不敢指一仰對, 惟願博詢而處之’云。 特進官金炳始、趙秉世, 病未獻議矣。 時原任議政之議如此。 伏候聖裁。” 制曰: “議政之議如此, 令掌禮院博考稟裁, 卽爲擧行。”

	“의정들의 의견이 이와 같다면 장례원으로 하여금 널리 상고하여 재가를 받은 다음 즉시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고종 36권, 34년 (1897 정유 / 대한 광무(光武) 1년) 9월 26일(양력) 1번째기사 빈전에 나아가 주다례를 행하다	빈전(殯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二十六日。 詣殯殿, 行晝茶禮。
고종 36권, 34년 (1897 정유 / 대한 광무(光武) 1년) 10월 11일(양력) 1번째기사 진전에 나가 전알하고 빈전에 나가 전배하다	진전(眞殿)에 나아가 전알(展謁)하고 빈전(殯殿)에 전배(展拜)하였다. 왕태자가 따라서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이러서 원구단(圜丘壇)에 나아가 희생(犧牲)을 살피고 제기(祭器)를 살펴본 다음 그곳에서 밤을 지냈다.	十一日。 詣眞殿, 展謁。 殯殿, 展拜。 王太子隨詣, 行禮。 仍詣圜丘壇, 省牲省器後經宿。
고종 36권, 34년 (1897 정유 / 대한 광무(光武) 1년) 10월 19일(양력) 1번째기사 빈전에 나아가 조전과 주다례, 석전을 지내다	빈전(殯殿)에 나아가 조전(朝奠)과 주다례(晝茶禮), 석전(夕奠)을 지냈다.	十九日。 詣殯殿, 行朝奠、晝茶禮、夕奠。
고종 36권, 34년 (1897 정유 / 대한 광무(光武) 1년) 10월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詔曰: “明日, 親行別奠, 朝奠兼行。 東宮, 親行別奠, 晝茶禮兼行。 殯殿, 爲內外親者, 入參於內哭班, 雖在外

19일(양력) 2번째기사 내일 별전을 지내는 데는 조전과 겸해서 지낼 것을 명하다	“내일 직접 지내는 별전(別奠)을 조전(朝奠)과 겸해서 지내고, 동궁(東宮)이 직접 지내는 별전은 주다례(晝茶禮)와 겸하여 지내라. 빈전(殯殿)의 내외친(內外親)이 되는 자는 내곡반(內哭班)에 입참(入參)하고, 비록 외임(外任)에 있더라도 혹 서울에 올라 왔으면 똑같이 입참하라.” 하였다.	任, 如或上京, 則一體入參。”
고종 36권, 34년(1897 정유 / 대한 광무(光武) 1년) 11월 22일(양력) 4번째기사 경효전에서 주다례를 지내고 석상식을 올렸으며 뒤이어 첫 번째 우제를 지내다	도로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고 석상식(夕上食)을 올리고 나서 첫 번째 우제(虞祭)를 지냈다. 황태자(皇太子)가 아헌례(亞獻禮)를 행하였다.	還詣景孝殿, 行晝茶禮、夕上食。 仍行初虞祭。 皇太子行亞獻禮。
고종 36권, 34년(1897 정유 / 대한 광무(光武) 1년) 11월 26일(양력) 2번째기사 태의원에서 상선을 회복할 것을 청하다	– 태의원(太醫院)에서 올린 구주(口奏)에, 상선(常膳)을 빨리 드시고, 황태자(皇太子)와 황태자비(皇太子妃)에게도 상선을 회복하도록 권유하기를 청하니, 비답하기를, “마땅히 권유하겠으며 짐도 억지로나마 들도록 하겠다.” 하였다.	

고종 36권, 34년 (1897 정유 / 대한 광무(光武) 1년) 11월 26일(양력) 2번째기사 태의원에서 상선을 회복할 것을 청하다	태의원(太醫院)에서 올린 구주(口奏)에, 상선(常膳)을 빨리 드시고, 황태자(皇太子)와 황태자비(皇太子妃)에게도 상선을 회복하도록 권유하기를 청하니, 비답하기를, “마땅히 권유하겠으며 짐도 억지로나마 들도록 하겠다.” 하였다.	太醫院口奏, 請亟進常膳, 皇太子皇太子妃, 勸諭復膳。 批曰: “當勸諭, 而朕亦當强進矣。”
고종 36권, 34년 (1897 정유 / 대한 광무(光武) 1년) 12월 9일(양력) 1번째기사 경효전에 나아가 고동가제를 행하다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고동가제(告動駕祭)를 행하였다. 이어 태묘(太廟)에 나아가 명성 황후(明成皇后)의 부알례(祔謁禮)를 행하였으며, 친제(親祭)를 같이 행하고 돌아왔다. 경효전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와 석상식(夕上食)을 행하였다. 황태자(皇太子)가 함께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九日。 詣景孝殿, 行告動駕祭。 仍詣太廟, 行明成皇后祔謁禮, 兼行親祭。 還詣景孝殿, 行晝茶禮、夕上食。 皇太子竝隨詣, 行禮。
고종 36권, 34년 (1897 정유 / 대한 광무(光武) 1년) 12월 15일(양력) 2번째기사 원구단에 지내는 큰 제사는 섭행하게 하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방금 대신의 차자에 비답을 내렸다. 원구단(圜丘壇)에 지내는 큰 제사는 섭행(攝行)하는 것으로 안(案)을 마련하되, 여러 집사(執事)는 친제(親祭)의 전례대로 가려 차임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시위(侍衛)와, 친위(親衛) 각 부대의 군사를 영솔하는 직임에 대하여 그 수고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휴직되어 본래의 녹봉을 나누어 주기 전이라 하더	詔曰: “才下大臣箚批矣。 圜丘大享攝行磨鍊諸執事, 依親祭例擇差。” 又詔曰: “侍衛、親衛各隊領軍之任, 其勤勞不可不念矣。 休職, 本俸頒給之前, 姑令竝施各部官等俸給。”

	라도 우선 다 각 부(部)의 관리들에게 녹봉을 주게 하라.” 하였다.	
고종 36권, 34년 (1897 정유 / 대한 광무(光武) 1년) 12월 21일(양력) 7번째기사 여형섭이 함경북도 백성들의 실정에 대하여 상소를 올리다	전 사과(前司果) 여형섭(呂衡燮)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함경북도(咸鏡北道) 10개 군의 땅 길이가 천리라고 하더라도, 너비는 수백리에 불과하고, 토지는 4만 결(結)이 차지 못하며, 호구도 4만 호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방대(地方隊)를 설치하여 병정(兵丁) 500명(名)을 두는 것은 실로 변경 방어에 크게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마다 그 월급을 계산하면 합하여 5만 원이 되는데 10개 군의 영락한 역량으로서는 나누어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마땅히 영(營)과 군(郡)의 역참(驛站)과 진(鎭)과 보(堡)의 둔전(屯田)에 본 고을의 백성에게 농사지어 먹고 세를 바치게 한다면, 군사들의 급료와 백성들의 실정이 편리한 데 따라 서로 미더워질 것입니다. 10개 군 안의 연해의 어염(魚鹽), 장시(場市)에 대한 세금 및 공전(公錢)과 미곡을 조목에 따라 실지대로 조사하면 연간 10여만 원의 이익을 볼 것입니다. 역시 지출을 헤아릴 수 있고 군수(軍需)를 편리하게 하여 만전의 은택을 보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백성들의 실정에 관계되는 것이니, 관찰사(觀察使)와 수령(守令)이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前司果呂衡燮疏略: “咸鏡北道十郡之地, 長雖云千里, 廣不過數百里, 結不滿四萬, 戶不過四萬。 而特設地方隊兵丁五百名, 此實爲邊圉之大關也。 其計年月給, 則合爲五萬元, 以十郡之殘力, 萬難劃處之得宜。 營、郡、驛、鎭、堡屯土, 使本民耕食而稅納, 則軍料民情, 從便相孚也。 十郡內沿海魚鹽場市之稅及公錢米穀, 逐條查實, 則年計至十餘萬之利矣。 亦足以量支放而便軍需, 俾垂萬全之恩澤焉。” 批曰: “民情條關, 自有觀察、守令講究者矣。”
고종 36권, 34년 (1897 정유 / 대한 광		二十一日。 詣景孝殿, 行朝上食、晝茶禮。 皇太子隨詣, 行禮。 仍詣眞

무(光武) 1년) 12월 21일(양력) 1번째기사 경효전에 나아가 조상식과 주다례를 행하다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조상식(朝上食)과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황태자(皇太子)가 따라 나아가서 예를 행하였다. 이어 진전(眞殿)에 나가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였다.	殿, 行酌獻禮。
고종 37권, 35년(1898 무술 / 대한 광무(光武) 2년) 1월 2일(양력) 1번째기사 경효전에 나아가 조상식과 주다례, 석상식을 올리다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조상식(朝上食)과 주다례(晝茶禮), 석상식(夕上食)을 올렸다. 황태자(皇太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二日。 詣景孝殿, 行朝上食、晝茶禮、夕上食。 皇太子隨詣, 行禮。
고종 37권, 35년(1898 무술 / 대한 광무(光武) 2년) 1월 2일(양력) 1번째기사 경효전에 나아가 조상식과 주다례, 석상식을 올리다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조상식(朝上食)과 주다례(晝茶禮), 석상식(夕上食)을 올렸다. 황태자(皇太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二日。 詣景孝殿, 行朝上食、晝茶禮、夕上食。 皇太子隨詣, 行禮。
고종 37권, 35년(1898 무술 / 대한 광무(光武) 2년) 1월 4일(양력) 1번째기사 경효전에 나아가 연제를 지내다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연제(練祭)를 행하였다. 황태자(皇太子)가 아헌례(亞獻禮)를 행하였다. 이어 조상식(朝上食)과 주다례(晝茶禮)와 석상식(夕上食)을 행하였다.	四日。 詣景孝殿, 行練祭。 皇太子行亞獻禮。 仍行朝上食、晝茶禮、夕上食。

고종 37권, 35년 (1898 무술 / 대한 광무(光武) 2년) 1월 20일(양력) 1번째기사 경효전에 나아가 납향 대제를 지내다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납향 대제(臘享大祭)를 지냈다. 황태자(皇太子)가 아헌례(亞獻禮)를 행하였다. 이어 조상식(朝上食)을 올리고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二十日。 詣景孝殿, 行臘享大祭。 皇太子行亞獻禮。 仍行朝上食、晝茶禮。
고종 37권, 35년 (1898 무술 / 대한 광무(光武) 2년) 1월 31일(양력) 4번째기사 경효전 산릉의 상제를 지낸 후 조상식과 석상식, 주다례를 3년 동안 계속 지내도록 하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김영목(金永穆)이 아뢰기를, “경효전(景孝殿) 산릉(山陵)의 상제(祥祭)를 지낸 후 조상식(朝上食)과 석상식(夕上食)과 주다례(晝茶禮)를 마땅히 그만두어야 하겠으나, 역대의 전례에는 3년 동안 계속 의식을 행하였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대로 해서 8월 기신일(忌辰日)까지 계속 설행(設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掌禮院卿金永穆奏: “景孝殿山陵祥祭後, 朝·夕上食、晝茶禮, 當爲停罷, 而歷代典禮, 有三周年仍行之禮矣。 今亦依此限八月忌辰日, 仍爲設行何如?” 允之。
고종 37권, 35년 (1898 무술 / 대한 광무(光武) 2년) 2월 6일(양력) 4번째기사 산릉에 부역을 면제한 토지 105결을 획송하게 하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김영목(金永穆)이 아뢰기를, “산릉(山陵)에 부역(賦役)을 면제한 토지 105결을 탁지부(度支部)에서 마련하여 획송(劃送)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掌禮院卿金永穆奏: “山陵復一百五結, 令度支部磨鍊劃送何如?” 允之。
고종 37권, 35년 (1898 무술 / 대한 광		九日。 詣景孝殿, 行朝上食、晝茶禮、夕上食。 皇太子隨詣, 行禮。

무(光武) 2년) 2월 9일(양력) 1번째기사 경효전에 나가 조상식을 올리고 주다례를 지냈으며 석상식을 올리다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조상식(朝上食)을 올리고 주다례(晝茶禮)를 지냈으며 석상식(夕上食)을 올렸다. 황태자(皇太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고종 37권, 35년(1898 무술 / 대한 광무(光武) 2년) 2월 22일(양력) 5번째기사 태의원에서 미음을 올리다	태의원(太醫院)에서 구전(口傳)으로 아뢰기를, “천만 뜻밖에 흥선 대원군(興宣大院君)의 상사(喪事)를 당하였으므로, 옥체(玉體)가 반드시 많이 손상을 받았을 것이니, 신 등은 구구한 우려를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3돈중 속미음(粟米飮)을 오늘부터 1첩씩 4첩만 달여 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옥체의 보호를 조금도 느슨히 해서는 안 되며, 신 등이 의관(醫官)을 거느리고 직숙(直宿)한다는 내용으로 상주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미음을 받들어 올리니, 삼가 바라건대 애써 드소서.” 하니, 봉하여 들이라고 명하였다.	太醫院口奏: “千萬夢寐之外, 遭興宣大院君喪事, 玉度必多受損之節, 臣等不勝區區憂慮之至。 三錢重粟米飮, 自今日一貼式, 限四貼煎入。 而此時保護, 不容少緩, 臣等率醫官直宿”之意上奏。 允之。 又奏: “奉進粥飮, 伏乞勉强頻進。” 命封入。
고종 37권, 35년(1898 무술 / 대한 광무(光武) 2년) 2월 25일(양력) 2번째기사 태의원에서 상선을 회복할 것을 청하다	태의원(太醫院)에서 구전(口傳)으로 아뢰기를, “흥선 대원군(興宣大院君)의 성복(成服)이 어느덧 지나갔으니, 삼가 생각건대, 성상의 마음이 더욱 애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직 상선(常膳)을 회복하지 않고 계신 지가 여러 날이 되었으니 옥체가 반드시 손상이 많을 것입니다. 성상의 몸을 보호하는 일은 조금도 느슨히 해서는 안 되니, 신하와 백성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거느리고 와서 우러러 호소합니다. 빨리 상선을 회복하라는 명을 내리소서.”	太醫院口奏: “興宣大院君成服奄過。 伏惟聖衷彌慟, 未復常膳, 今爲屢日, 玉度必多受損。 保護聖躬, 不宜少緩, 以臣民大同之情, 相率仰籲, 請亟降復膳之命。” 批曰: “成服已過, 痛迫尤切。 此時此請, 未知其可也。” 再奏三奏。 竝不允。

	하니, 비답하기를, “성복이 이미 지나고 보니 애통한 마음이 더욱 간절하다. 이러한 때에 이러한 청을 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하였다. 두 번 아뢰고 세 번 아뢰었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고종 37권, 35년 (1898 무술 / 대한 광무(光武) 2년) 2월 28일(양력) 1번째기사 황태자가 경효전에 나가 주다례와 겸해서 별다례를 지내다	황태자(皇太子)가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와 겸하여 별다례(別茶禮)를 행하였다. 황태자(皇太子)의 탄신일이기 때문이다.	二十八日。 皇太子詣景孝殿, 行晝茶禮兼別茶禮。 以皇太子誕辰也。
고종 37권, 35년 (1898 무술 / 대한 광무(光武) 2년) 3월 7일(양력) 3번째기사 흥선 대원군과 여흥 부대부인의 상사에 우제사를 다섯 번 지내기로 하다	장례원 소경(掌禮院少卿) 조정구(趙鼎九)가 아뢰기를, “이번 흥선 대원군(興宣大院君)과 여흥 부대부인(驪興府大夫人) 상사(喪事)와 관련한 각 제전(祭奠) 축사(祝辭)는 《가례(家禮)》에 의거하여 마련해야 하나, 의절(儀節)이 사가(私家)와 다른 점이 있으니 매일 주다례(晝茶禮)는 나라의 예대로 설행하겠습니다. 우제(虞祭)의 경우 삼우(三虞)만 지내고 말아서는 안 될 것 같고, 또한 순전히 나라의 예만 써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신이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으므로 삼가 성상의 재결을 기다립니다.”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오우(五虞)로 정하라.” 하였다.	而儀節與私家有異, 則每日晝茶禮, 依邦禮設行。 至於虞祭, 似不當三虞而止, 而亦不當純用邦禮。 臣不敢擅便, 伏候聖裁。” 制曰: “五虞爲定。”

고종 37권, 35년 (1898 무술 / 대한 광무(光武) 2년) 4월 5일(양력) 1번째기사 경효전에 나가 망제 겸 한식 제사를 지내고 조상식을 올리고 주다례를 지내다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망제(望祭) 겸 한식(寒食) 제사를 지내고 조상식(朝上食)을 올렸으며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황태자(皇太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五日。 詣景孝殿, 行望祭兼寒食祭, 朝上食、晝茶禮。 皇太子隨詣, 行禮。
고종 37권, 35년 (1898 무술 / 대한 광무(光武) 2년) 4월 10일(양력) 1번째기사 경효전에 나가 조상식을 올리고 주다례를 지냈으며 석상식을 올리다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조상식(朝上食)을 올리고 주다례(晝茶禮)를 지냈으며 석상식(夕上食)을 올렸다. 황태자(皇太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十日。 詣景孝殿, 行朝上食、晝茶禮、夕上食。 皇太子隨詣, 行禮。
고종 37권, 35년 (1898 무술 / 대한 광무(光武) 2년) 4월 10일(양력) 2번째기사 황태자가 특별히 은화 2만 원을 내려보내 각도의 굶주리는 백성들	황태자가 하령(下令)하기를, “세월은 빨리 흘러 우리 모후 폐하(母后陛下)의 담제(禫祭)가 어느덧 다가왔으니, 소자의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이 더욱더 그지없다. 지금 흉년을 만나 백성들의 사정이 황급하니 평소에 백성들을 사랑하고 보살펴 주던 지극한 인과 지극한 덕을 우러러 생각해 볼 때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하다. 몹시 춥거	皇太子令曰: “居諸流駛, 惟我母后陛下禫事奄迫。 小子靡逮之慟, 益復罔極。 而値此歉年, 民情遑汲, 仰念平日所以字恤黎庶之至仁至德, 尤切感慕。 祁寒暑雨, 輒頒金穀, 別爲儲置, 歲以爲常, 都下窮蔀, 加額而望哺。

을 구제하게 하다	나 몹시 더울 때면 문득 돈과 곡식을 나누어 주되 따로 저축하여 해마다 일상적인 일로 삼았는데, 이에 수도성의 궁한 백성들은 공경하는 태도로 황후의 구휼을 바랐었다. 매번 한가할 때면 오직 백성의 생활에 대한 자상한 조령을 내렸다. 일찍이 하교하기를, '나라가 있는 것은 백성이 있기 때문이니,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편안해진다.'라고 하셨다. 그 목소리가 정녕하여 지금도 귓가에 들리는 듯하다. 지금 한창 민생의 식량이 어려워 부황이 들고 쓰러지는 참상을 차마 볼 수 없으니, 하늘에서 오르내리면서 근심하고 탄식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어찌 감히 조금이라도 그 뜻을 우러러 받들어 거의 죽어 가는 목숨을 구원할 것을 빨리 도모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일찍이 백성들을 위하여 저축해 두고 쓰다 남은 것 가운데서 특별히 은(銀) 2만 원(元)을 내려 진자(賑資)에 보태라. 내부(內部)로 하여금 한성부(漢城府), 경무청(警務廳)과 각 해도(該道)의 구제를 실시하는 곳에 신칙하여 정밀하게 굶주린 호구(戶口)를 뽑아서 혹시라도 누락됨이 없도록 함으로써 한 명의 백성도 낙담하는 일이 없게 하라. 적절히 헤아려 골고루 나눠주고 간사하고 탐오하는 것을 막아 반드시 은택이 아래에 미치도록 한다면 거의 나의 백성들을 보전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 모후 폐하의 신령을 위로하고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과 지방에서 이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마땅히 단단히 반성하고 가다듬어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 탓으로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每於燕閒, 諄諄詔之者, 惟是民事, 嘗敎曰: '有國者, 以有民也。 民安而國安矣。' 玉音丁寧, 今猶在耳。 方玆民生艱食, 顚頷顚連之狀, 慘不忍見。 而僾然如有聞憂歎之聲, 於陟降之際, 曷敢不仰體萬一之意, 而亟圖救活近止之命哉? 嘗有爲民儲置而用餘者, 就其中特下銀貳萬元, 補助賑資。 令內部申飭漢城府警務廳及各該道設賑處, 精實抄戶, 無或遺漏, 而致有一民之向隅。 量宜均分, 防其奸濫, 必使惠澤之下究, 庶幾全保我赤子, 慰悅我母后陛下之明靈矣。 凡京外司是責者, 宜其猛省惕厲, 無至溺職而抵罪。"
고종 37권, 35년 (1898 무술 / 대한 광무(光武) 2년) 4월 21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삭제(朔祭)를 지내고 조상식(朝上食)을 올렸으며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황태자(皇太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二十一日。 詣景孝殿, 行朔祭、朝上食、晝茶禮。 皇太子隨詣, 行禮。

일(양력) 1번째기사 경효전에 나가 삭제를 지내고 조상식을 올리고 주다례를 지내다		
고종 37권, 35년(1898 무술 / 대한 광무(光武) 2년) 4월 22일(양력) 1번째기사 민 충정공의 묘를 이장할 때 제수 용품을 지원할 것을 명하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민 충정공(閔忠正公) 【민승호(閔升鎬)】의 온화하고 공손하며 신중하고 한결같은 충성심을 어떻게 다시 얻겠는가? 잠자리에 누웠으나 잠들지 못하고 마음으로 간절히 그리워하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근년 이래로 더욱 상심이 크다. 이제 듣건대, 그 면례(緬禮)가 다가왔다고 하니 제사에 쓰이는 물건을 도와주는 등의 절차를 궁내부(宮內府)로 하여금 넉넉하게 실어 보내도록 하라. 당일에 각신(閣臣)을 보내 치제(致祭)하도록 하라. 제문(祭文)은 직접 지어서 내리겠다.” 하였다.	二十二日。 詔曰: “閔忠正【升鎬】之恂恂愼慤, 斷斷忠款, 何由更得? 丙枕不寐, 未嘗不穎結于懷, 自比年以來, 尤爲傷盡。 今聞其緬期在邇, 助需等節, 令宮內府從優輸送, 當日遣閣臣致祭, 祭文親撰以下矣。”]
고종 37권, 35년(1898 무술 / 대한 광무(光武) 2년) 6월 16일(양력) 1번째기사 함경북도 재해 지역의 토지에 조세를 감해주다	의정부(議政府)에서, ‘탁지부(度支部)가 청의(請議)한 것으로 인하여 함경북도(咸鏡北道) 각군(各郡)의 원전(元田)으로 재해를 입은 144결(結) 남짓과 속전(續田)으로 재해를 입은 127결 남짓에 대하여 조세를 감하는 것을 허락해 주는 문제에 관해 회의를 거쳐 상주(上奏)합니다.’라고 아뢰니, 제칙(制勅)을 내	十六日。 議政府, 因度支部請議“咸鏡北道各郡元田災一百四十四結零, 續田災一百二十七結零, 許減事”, 經議上奏。 制曰: “可。”

	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고종 38권, 35년 (1898 무술 / 대한 광무(光武) 2년) 10월 2일(양력) 1번째기사 8월 20일에 경효전에서 전작례를 거행할 것을 명하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세월이 흘러 3주기 기신제(忌辰祭)가 어느덧 임박하였으니, 슬퍼하는 마음 어찌 그 끝이 있겠는가? 이번 음력 8월 20일에 경효전(景孝殿)에서 전작례(奠酌禮)를 행할 것이다. 제문(祭文)은 직접 지어서 내리겠다. 홍릉(洪陵)에는 대신(大臣)을 보내 전작례를 섭행(攝行)하게 하되, 제문은 또한 직접 짓겠다.”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동궁(東宮)의 효성스러운 마음으로 이번 3주기 기신제를 맞아 슬퍼하는 마음 끝이 없을 것이니, 정리(情理)와 예의(禮義)를 펴야 할 것이다. 이번 음력 8월 20일에 경효전(景孝殿)에서 작헌례(酌獻禮)를 행해야 할 것이다. 제문은 동궁이 직접 지어서 내릴 것이다. 홍릉에는 대신을 보내 작헌례를 섭행하게 하되, 제문은 또한 동궁이 직접 지을 것이다.” 하였다.	二日。 詔曰: “星霜三周, 忌辰奄迫, 悼思曷有其已? 今陰曆八月二十日, 當行奠酌禮于景孝殿, 祭文親撰以下矣。 洪陵遣大臣, 攝行奠酌禮, 祭文亦當親撰矣。” 又詔曰: “以東宮孝思, 當此三周忌辰, 慨廓靡逮, 情禮宜伸。 今陰曆八月二十日, 當行酌獻禮于景孝殿, 祭文東宮親製以下矣。 洪陵遣大臣, 攝行酌獻禮, 祭文亦當親製矣。”
고종 38권, 35년 (1898 무술 / 대한 광무(光武) 2년) 12월 24일(양력) 1번째기사 음력 12월 5일에 홍릉에 가서 친제하겠다고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경효전(景孝殿)의 3주기 제사를 지낸 뒤 어느덧 여러 달이 흘렀다. 능침(陵寢)이 눈에 선한데, 그동안 사세(事勢) 때문에 미처 전배(展拜)할 겨를이 없었으니, 짐(朕)의 슬픔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이번 음력 12월 5일에 홍릉(洪陵)에 나아가 직접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二十四日。 詔曰: “景孝殿三周祭後, 居然日月屢更, 寢岡入望, 而間緣事勢, 未暇展拜, 朕之悼悵, 曷有其已? 今陰曆十二月初五日, 當詣洪陵親祭矣。” 又詔曰: “以東宮孝思, 久未謁

하다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동궁의 효성스럽고 사모하는 마음에 오랫동안 능을 전알(展謁)하지 못하였으니, 그리운 마음과 허전한 생각이 더욱 어떻겠는가? 이번 음력 12월 5일에 홍릉에서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여 정리(情理)와 예의(礼儀)를 펴도록 하라.” 하였다.	陵, 其爲感慕悵缺, 倘復如何? 今陰曆十二月初五日, 當行酌獻于洪陵, 俾伸情禮矣。”
고종 39권, 36년 (1899 기해 / 대한 광무(光武) 3년) 1월 27일(양력) 1번째기사 여흥 부대부인의 첫상기의 망곡례를 거행하다	석어당(昔御堂) 행각(行閣)에 나아가 여흥 부대부인(驪興府大夫人)의 첫 상기(祥朞)의 망곡례(望哭禮)를 행하였다.	二十七日。 詣昔御堂行閣, 行驪興府大夫人祥朞望哭禮。
고종 39권, 36년 (1899 기해 / 대한 광무(光武) 3년) 1월 28일(양력) 1번째기사 광무 3년도의 총 예산액 중 세입액은 도합 647만 3,222원, 세출액은 도합 647만 1,132원으로 할 것을 명하다	탁지부(度支部)에서 광무(光武) 3년도의 총예산액으로서 세입액은 도합 647만 3,222원(元)으로 하고 세출액은 도합 647만 1,132원으로 할 것을 청의(請議)한 일로 인하여, 의정부에서 회의하여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二十八日。 議政府因度支部請, 議光武三年度總豫算歲入合計六百四十七萬三千二百二十二元, 歲出合計六百四十七萬一千一百三十二元, 經政府會議上奏。 制曰:“可。”
고종 39권, 36년 (1899 기해 / 대한 광		九日。 詣景孝殿, 行別茶禮。 仍行省牲省哭。 仍詔曰:“旣有大臣面奏矣。

무(光武) 3년) 2월 9일(양력) 1번째기사 경효전에 가서 별다례를 지내고 계속하여 제사에 쓸 희생과 제기를 살펴보다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별다례(別茶禮)를 지내고 계속하여 제사에 쓸 희생과 제기들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이미 대신이 직접 면대하여 아뢴 것이 있는 만큼 정월 초하룻날 대신을 보내어 섭행(攝行)하는 것은 전부 직접 제사를 지내는 규례대로 마련하라.” 하였다.	正朝祭遣大臣攝行, 一依親祭例磨鍊。”
고종 39권, 36년(1899 기해 / 대한 광무(光武) 3년) 3월 19일(양력) 3번째기사 중화전에서 권정례로 진하를 행하다	중화전(中和殿)에서 권정례(權停例)로 진하(陳賀)를 행하였다.	行權停例陳賀于中和殿。
고종 39권, 36년(1899 기해 / 대한 광무(光武) 3년) 4월 3일(양력) 1번째기사 한식일에 경효전에 가서 직접 전작례를 거행하겠다고 하다	【음력 기해년(己亥年) 2월 21일이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기쁜 일을 만나면 감동을 더하는 것이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에게 어찌 다름이 있겠는가? 한식일(寒食日)에 마땅히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전작례(奠酌禮)를 직접 거행하고 제문(祭文)은 지어 내리겠다.”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동궁(東宮)의 효성스러운 생각에 병이 나은 이후 처음으로 명절을 만났으니 마땅히 인정과 예의를 베풀어야 할 것이고, 또한 한식일에도 마땅히 작헌례(酌獻禮)를 직접 거행할 것이니, 제문은 동궁이 지어 내리도록 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경효전의 3주기(周忌) 제사 후 동궁이 아직도 직접 잔을 올리지 못했으니 비록 사세(事勢)로 인하여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나 그 성의와 효성으로 보	一日。【陰曆己亥二月二十一日】三日。 詔曰: “遇喜增感, 幽明何異? 寒食日, 當詣景孝殿, 親行奠酌禮, 祭文親撰以下矣。” 又詔曰: “以東宮孝思翼瘳之後, 初遇俗節, 宜伸情禮。 亦於寒食日, 當躬行酌獻禮, 祭文東宮製下矣。” 又詔曰: “景孝殿三周祭後, 東宮之尙未躬將祼獻, 雖因事勢, 以其誠孝愴慕何如? 來月朔祭, 皇太子攝行磨鍊, 祭文當親撰以下矣。”

	아 슬프고 그리운 생각이야 어떠하겠는가? 내달 삭제(朔祭)는 황태자(皇太子)가 섭행(攝行)하는 것으로 마련하고 제문은 직접 지어서 내리겠다.”	
고종 39권, 36년 (1899 기해 / 대한 광무(光武) 3년) 4월 6일(양력) 1번째기사 경효전에 가서 전작례를 행하다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전작례(奠酌禮)를 행하였다. 황태자도 따라가 예를 행하고 이어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였다.	六日。 詣景孝殿, 行奠酌禮。 皇太子隨詣, 行禮, 仍行酌獻禮。
고종 39권, 36년 (1899 기해 / 대한 광무(光武) 3년) 4월 11일(양력) 2번째기사 현릉의 한식 제사 제물을 잃어버리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박기양(朴箕陽)이 아뢰기를, “현릉 영(顯陵令) 조중익(趙重翊)의 보고를 받아보니, ‘이번 한식(寒食)의 절향(節享)에 제사를 지낼 때 재관(齋官)과 향관(享官)이 25일 오시(午時) 경에 나와서 신시(申時) 경에 입직관(入直官)과 함께 제물(祭物)을 점검하여 보니 조금도 탈난 것이 없었으므로, 제사를 편안히 지낼 수 있게 된 후에 이어 입직(入直)하였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들으니 24일 밤에 장에 넣어둔 제물 가운데 약과, 황률(黃栗), 대조(大棗), 백미(白米), 점미(粘米), 태(太), 맥말(麥末), 진유(眞油), 저주지(楮注紙) 등 9종(種)을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제물은 경서원(京書員)이 아래에서 배진(排進)하였다고 하므로, 놀랍고 황송함을 이길 수 없어 원역(員役)들을 잡아다가 우선 조사하여 엄하게 다스렸으나, 일이 매우 중대한 문제이므로 대단히 황송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치보(馳報)하고 대죄(待罪)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막중한 제물을 이렇게 도둑맞고 심지어는 경서원이 개인적으로 사다가 진배(進排)하는 형편에 이르게 한 일은 전에 없던 일로 매우 놀랍습니다. 제품(祭	掌禮院卿朴箕陽奏: “卽接顯陵令趙重翊報告, 則以爲: ‘今番寒食節享時, 獻官與齋官, 二十五日午時量出來, 申時量, 與入直官, 照點祭物, 則少無顯頉, 而祭享安寧將事後, 仍爲入直矣。 追後聞之, 則二十四日夜入欌祭物中, 藥果、黃栗、大棗、白米、粘米、太、麥末、眞油、楮注紙以上九種見失而所失祭物, 京書員自下排進云。 故不勝驚悚, 捉致員役等, 爲先査覈嚴治。 而事係至重, 萬萬惶悚。 故玆以馳報待罪云’矣。 莫重祭物, 有此偸失, 至於京書員私貿進排之境, 事未前有, 萬萬驚悚。 祭品守直之節, 所重何如? 而身爲典祀官, 矇未覺察, 致此無前之變, 罪固難逭。 雖以本陵入直官言之,

	品)을 수직(守直)하는 절차가 얼마나 중대합니까? 그런데 자신이 전사관(典祀官)이 되어서는 멍청하게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전에 없던 이런 변고를 초래하였으니 그 죄가 진실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비록 본릉(本陵)의 입직관으로 말하더라도 검칙하지 못한 책임은 면하기 어렵습니다. 전사관이며 본 능의 영(令)인 조중익(趙重翊)과 입직한 참봉(參奉) 이원용(李源鎔)은 모두 법부(法部)로 하여금 조율(照律)하여 감처(勘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경서원 및 본 능의 원역들에 대해서도 또한 법부로 하여금 엄격히 조사하여 징벌하게 하고 도적질한 놈은 경무청(警務廳)과 본군(本郡)에서 기한을 정해 놓고 잡아내어 법조문에 따라 죄를 바루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마땅히 처분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의령원 참봉(懿寧園參奉) 이원승(李源昇)의 보고를 보니, '본관(本官)이 지난달 28일에 재소(齋所)에 도착하여 봉심하니 정자각(丁字閣) 내의 신욕(神褥)과 좌면지(座面紙)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복(守僕)에게 조사하니, 지난 25일 한식(寒食) 절향(節享) 때는 여전히 있었는데 오늘 보니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필시 26일과 27일 이틀 사이에 잃어버린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공경하고 조심히 대해야 할 곳에서 이런 변고가 있었으니 매우 놀랍고 황송한 일입니다. 신욕을 새로 준비하여 다시 배진하는 것은 해사(該司)로 하여금 즉시 거행하게 하고, 당일 입직한 관원 및 수복 등은 모두 다 조심해서 수직하지 못한 죄가 있으니, 다 법부로 하여금 조사하여 감처(勘處)하게 하고 도적질한 놈은 경무청으로 하여금 기한을 정하여 잡아내서 법조문에 따라 죄를 바루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不能檢飭之責, 在所難免。 典祀官本陵令趙重翊、入直參奉李源鎔, 竝令法部, 照律勘處。 京書員及本陵員役等, 亦令法部嚴查懲辦, 偸竊之漢, 令警務廳及本郡, 刻期訶捉, 照法正罪何如?" 制曰: "當有處分矣。" 又奏: "卽接懿寧園參奉李源昇報告, 則以爲: '本官去月二十八日到齋奉審, 則丁字閣內神褥與座面紙無存。 故査問於守僕, 則去二十五日寒食節享時依存, 而今見不在。 此必是六七兩日間見失云'矣。 敬謹之地, 致有此變, 萬萬驚悚。 神褥之新備改排, 令該司卽爲擧行, 當日入直官員及守僕等, 俱有不謹守直之罪, 竝令法部査覈勘處, 偸竊之漢, 令警務廳刻期訶捉, 照法正罪何如?" 制曰: "依奏。" 官員員役, 待結末處之, 偸竊之漢, 令警務廳刻期訶捉。 "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아뢴 대로 하라. 관원과 원역은 결말을 기다려서 처리하고 도적질한 놈은 경무청으로 하여금 기한을 정하여 잡아내게 하라.” 하였다.	
고종 39권, 36년 (1899 기해 / 대한 광무(光武) 3년) 5월 13일(양력) 1번째기사 경효전에 가서 하향 대제를 지내다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하향 대제(夏享大祭)를 행하였다. 황태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十三日。 詣景孝殿, 行夏享大祭。 皇太子隨詣, 行禮。
고종 39권, 36년 (1899 기해 / 대한 광무(光武) 3년) 5월 18일(양력) 2번째기사 정낙용이 정몽주의 묘산에 화전을 일구고 숯을 굽는 일을 금지시킬 것을 청하다	특진관(特進官) 정낙용(鄭洛鎔)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신의 선조(先祖)인 문충공(文忠公) 정몽주(鄭夢周)의 분묘(墳墓)가 용인군(龍仁郡)에 있는데, 그 묘산(墓山)을 봉환(封還)하여 경계를 정하고 표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봉환한 가운데 오윤겸(吳允謙)과 오달제(吳達濟)의 무덤이 있습니다. 일찍이 신의 선조의 외손이 장지(葬地) 한 곳을 허락하고 국내(局內)를 감히 침범하지 못한 지 수백 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초한 후손이 산 아래에 살면서 사사로이 이익을 도모하여 땅을 개간하고 세를 징수하였으며 숯을 구워 이익을 챙겼기 때문에 온 묘역이 벌거숭이가 되었으니, 가슴 아픔을 이기지 못하여 부군(府郡)에 가서 명백히 판결(判決)해 달라고 호소하여 선비들의 논의가 일제히 일어나 중추원(中樞院)에 의견을 제기하였으니, 이것이 공정한 의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뒤이어 예부(禮部)의 신하에게 명하여 묘산을 환봉(環封)하여	特進官鄭洛鎔疏略: “臣先祖文忠公鄭夢周墳墓, 在於龍仁郡, 而封環其墓山, 定界而表之者也。 其封環中, 有吳允謙、吳達濟之墓, 曾以臣先祖之外裔, 許其一葬地, 不敢見侵於局內者, 爲屢百年所。 不肖悖孫, 居在山下, 營私牟利, 蕃畬而收稅, 埋炭而殖利, 全局童濯, 不勝痛迫, 往訴府郡, 明白聽決, 士論齊發, 獻議樞院。 此可見公共之論也。 伏乞仍命禮臣, 墓山環封經界, 一依列聖朝特施之典, 申明之。 又命府郡, 嚴禁火田、埋炭等節, 以幸公私焉。” 批曰: “疏辭令法部裁判後稟處。”

	경계를 정한 것은 전부 열성조(列聖朝)에서 특별히 베푼 은전(恩典)에 의거한 것임을 거듭 밝혀 주시고, 부군에 명하여 화전(火田)을 일구고 숯을 굽는 등의 일을 엄격히 금지시킨다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다행일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상소의 내용은 법부(法部)로 하여금 재판을 한 후 품처(稟處)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고종 39권, 36년 (1899 기해 / 대한 광무(光武) 3년) 5월 25일(양력) 1번째기사 각 관왕묘에 전작례를 거행하도록 명하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남관왕묘(南關王廟)의 묘우(廟宇)가 완공되어 소상(塑像)을 이제 환안(還安)할 것이다. 음력 4월 19일의 전작례(奠酌禮)는 대신을 보내어 섭행(攝行)하고, 동관왕묘(東關王廟)와 북관왕묘(北關王廟)의 전작례는 장신(將臣)을 보내어 모두 섭행하라. 제문(祭文)은 직접 지어서 내려 보내겠다.” 하였다.	二十五日。 詔曰: “南關王廟廟宇告成, 塑像今將還安矣。 陰曆四月十九日奠酌禮, 遣大臣攝行, 東北兩廟奠酌禮, 遣將臣一體攝行。 祭文當親撰以下矣。”
고종 39권, 36년 (1899 기해 / 대한 광무(光武) 3년) 5월 28일(양력) 3번째기사 남관왕묘를 중건할 때와 환안할 때, 전작례를 진행할 때의 여러 관리들에게 시상하다	남관왕묘(南關王廟)를 중건할 때 감동(監董)한 당상(堂上)과 낭청(郎廳) 및 환안(還安)할 때의 각 차비관(差備官)들과 전작례(奠酌禮)를 거행할 때의 헌관(獻官)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비서원 경(祕書院卿) 민영주(閔泳柱), 시강원 첨사(侍講院詹事) 이재현(李載現), 군부 대신서리 협판(軍部大臣署理協辦) 주석면(朱錫冕), 참령(參領) 구영조(具永祖), 정위(正尉) 이덕순(李悳淳)과 이항로(李恒魯), 부위(副尉) 한성진(韓性鎭)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南關王廟重建時監董堂郎及還安時各差備、奠酌禮時獻官以下, 施賞有差。 秘書院卿閔泳柱、侍講院詹事李載現、軍部大臣署理協辦朱錫冕、參領具永祖、正尉李悳淳·李恒魯、副尉韓性鎭, 竝加資。

고종 39권, 36년 (1899 기해 / 대한 광무(光武) 3년) 9월 14일(양력) 1번째기사 종묘 등의 고유제 날짜를 정하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박용대(朴容大)가 아뢰기를, “추숭(追崇)할 때 천지(天地), 종묘(宗廟), 영녕전(永寧殿), 경효전(景孝殿), 사직(社稷), 경모궁(景慕宮)의 고유제(告由祭)는 음력 10월 7일 꼭두새벽에 설행(設行)할 것입니다. 추숭한 후 부묘(祔廟)할 때 종묘, 영녕전, 경모전, 경효전의 예고제(豫告祭)는 음력 10월 20일 정종 대왕(正宗大王), 효의 왕후(孝懿王后)에게 존호(尊號)를 추상(追上)할 때의 고유제(告由祭)와 겸해서 행하고, 천지와 사직의 고유제는 같은 날에 함께 설행하며 축문(祝文)은 시독(侍讀)을 시켜 지어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아뢴 대로 하라. 제문(祭文)은 모두 친히 지어서 내리겠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존호를 추상한 후 진하(陳賀)하고 조서를 반포하는 것은 전례에 의하여 음력 10월 24일에 거행합니까?”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부태묘(祔太廟)를 하고 진하할 때에 겸해서 행하라.” 하였다.	十四日。 掌禮院卿朴容大奏:“追崇時天地、宗廟、永寧殿、景孝殿、社稷、景慕宮告由祭, 陰曆十月初七日曉頭設行。 追崇後祔廟時宗廟、永寧殿、景慕殿、景孝殿豫告祭, 陰曆十月二十日。 正宗大王、孝懿王后追上尊號時告由祭, 兼行天地、社稷告由祭, 同日一體設行, 祝文令侍讀撰出何如?” 制曰:“依奏。 祭文竝親撰以下。” 又奏:“追上遵號後, 陳賀頒詔, 依已例陰曆十月二十四日擧行乎?” 制曰:“兼行於祔太廟陳賀。”
고종 39권, 36년 (1899 기해 / 대한 광무(光武) 3년) 9월 15일(양력) 1번째기사 경효전에 대한 기신제	장례원 경(掌禮院卿) 박용대(朴容大)가 아뢰기를, “경효전(景孝殿)의 기신제(忌辰祭)를 역대 의례에 의거하여 올해부터 설행(設行)하게 하소서.”	十五日。 掌禮院卿朴容大奏:“景孝殿忌辰祭, 依歷代典禮, 請自今年設行。” 允之。

를 역대 의식에 의거하여 올해부터 설행하도록 하다	하니, 윤허하였다.	
고종 39권, 36년(1899 기해 / 대한 광무(光武) 3년) 9월 20일(양력) 1번째기사 음력 8월 20일에 경효전에서 전작례를 거행할 것을 명하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세월이 흘러 기신(忌辰)이 또다시 다가왔으니 슬픈 생각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이번 음력 8월 20일에 경효전(景孝殿)에서 마땅히 전작례(奠酌禮)를 행해야 할 것이니, 제문(祭文)은 친히 지어서 내리겠다. 그리고 홍릉(洪陵)에는 대신을 보내어 전작례를 섭행(攝行)하게 하라. 제문 또한 지어서 내리겠다. 여러 집사(執事)들은 일체 친행(親行)하는 규례대로 채워 차임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동궁(東宮)도 지금 기신을 당하여 효성스러운 생각이 끝이 없을 것이니 인정과 예의를 펴야 할 것이다. 음력 8월 20일에 경효전에서 작헌례(酌獻禮)를 거행하되 제문은 동궁이 직접 지어서 내릴 것이며, 홍릉(洪陵)에는 대신을 보내서 작헌례를 섭행하게 하라. 제문은 역시 지어서 내려보내라. 여러 집사들은 일체 친행하는 규례대로 인원수를 채워 차임하라.” 하였다.	二十日。 詔曰: “居諸易得忌辰又至, 悼思曷已? 今陰曆八月二十日, 當行奠酌禮于景孝殿。 祭文親撰以下, 而洪陵遣大臣攝行奠酌禮, 祭文亦當撰下矣。 諸執事, 一依親行例塡差。” 又詔曰: “東宮今當忌辰, 孝思靡逮, 宜伸情禮。 陰曆八月二十日當行酌獻禮于景孝殿, 祭文, 東宮親製以下, 而洪陵, 遣大臣, 攝行酌獻禮。 祭文亦當製下矣。 諸執事, 一依親行例塡差。”
고종 39권, 36년(1899 기해 / 대한 광무(光武) 3년) 9월 24일(양력) 2번째기사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조상식(朝上食) 겸 전작례(奠酌禮)를 행하였다. 황태자가 따라 나아가서 예를 행한 다음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였다.	詣景孝殿, 行朝上食兼奠酌禮。 皇太子隨詣, 行禮, 仍行酌獻禮。

경효전에 가서 조상식 제사 겸 전작례를 진행하다		
고종 39권, 36년 (1899 기해 / 대한 광무(光武) 3년) 9월 25일(양력) 1번째기사 각 제사를 지낼 때의 관리들에게 시상하다	경효전(景孝殿)에 기신제(忌辰祭)를 지낼 때의 종헌관(終獻官)과 제조(提調) 이하, 홍릉(洪陵)에 기신제를 지낼 때의 헌관(獻官)과 제조 이하, 경효전에 전작례(奠酌禮)와 작헌례(酌獻禮)를 행할 때의 찬례(贊禮)와 각 차비관(差備官) 이하, 홍릉에 전작례와 작헌례를 행할 때의 헌관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찬례 이건하(李乾夏), 집례(執禮) 신필희(申弼熙), 대축(大祝) 오명근(吳明根)·이명직(李明稙), 경효전 제조(景孝殿提調) 윤상연(尹相衍)·심상만(沈相萬)·윤태홍(尹泰興), 비서원승(祕書院丞) 겸장례(兼掌禮) 이만교(李萬敎), 예모관(禮貌官) 윤정구(尹定求), 상례(相禮) 김병식(金炳軾)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二十五日。 景孝殿忌辰祭時終獻官及提調以下、洪陵忌辰祭時獻官及提調以下、景孝殿奠酌禮及酌獻禮時贊禮各差備以下、洪陵奠酌禮及酌獻禮時獻官以下, 施賞有差。 贊禮李乾夏、執禮申弼熙、大祝吳明根·李明稙、景孝殿提調尹相衍·沈相萬·尹泰興、祕書丞兼掌禮李萬敎、禮貌官尹定求、相禮金炳軾, 竝加資。
고종 39권, 36년 (1899 기해 / 대한 광무(光武) 3년) 11월 21일(양력) 1번째기사 종묘에 부제사를 지내고 서계를 받다	중화전(中和殿)에 나아가 종묘(宗廟)에 부제사(祔祭祀)를 지내고 서계(誓戒)를 받았다. 황태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二十一日。 詣中和殿, 行太廟祔享受誓戒。 皇太子隨詣, 行禮。
고종 40권, 37년 (1900 경자 / 대한 광무(光武) 4년) 1월 21	의정부(議政府)에서 탁지부(度支部)에서 청의(請議)한 것으로 인하여 태실(太室)을 추존할 때와 원구단(圜丘壇)에서 배천(配天)할 때의 각 항목 비용	議政府, 因度支部請, 議太室追尊及圜丘配天時各項費三千八百元、濬川費不足額四千五百元、三和港各團租界

일(양력) 3번째기사 태실의 추존, 원구단의 제사 등의 비용을 예비금 중에서 지출하기로 하다	3,800원(元)과 준천(濬川) 비용 부족액 4,500원, 삼화항(三和港) 각국(各國) 조계 구역(租界區域)의 이장(移葬) 비용 240원을 예비금 중에서 지출하는 안건과 함경북도(咸鏡北道) 유생(儒生) 이희한(李熙翰) 등의 상언(上言)에 대해 길주(吉州)와 성진(城津府)을 합치도록 주하(奏下)한 안건을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移葬費二百四十元, 豫備金中支出事; 因咸鏡北道儒生李熙翰等上言奏下之吉州、城津合郡事, 經議上奏。 制曰: “可。”
고종 40권, 37년 (1900 경자 / 대한 광무(光武) 4년) 2월 14일(양력) 2번째기사 일본인 카와기타칸시치에게 포경을 허락하다	일본 원양 어업 회사(日本遠洋漁業會社) 사람인 카와기타칸시치〔河北勘七〕에게 포경(捕鯨)을 허락하였다.【전라(全羅) 한 도(道)를 제외하고 경상(慶尙), 강원(江原), 함경(咸鏡) 3개 도는 바닷가에서 3리 이내에 포경 구역을 긍정(肯定)하였다.】	許日本遠洋漁業會社人河北勘七捕鯨。【除全羅一道外, 慶尙、江原、咸鏡三道海濱三里以內肯定爲捕鯨區城】
고종 40권, 37년 (1900 경자 / 대한 광무(光武) 4년) 5월 1일(양력) 2번째기사 경효전의 제사는 태자가 적접 거행하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경효전(景孝殿)에 나와보니 슬픈 생각이 더욱 간절하다. 동궁이 제사를 섭행하려 하니, 짐이 친히 지켜보다가 제사가 끝나면 환궁(還宮)하려고 한다. 시위(侍衛)는 입직군(入直軍)으로 마련하고 그 밖의 의절(儀節)은 모두 그만두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내일 흥덕전(興德殿)에 나아가 전알(展謁)한 다음 영정(影幀)을 본떠 그린 초본을 봉심(奉審)하겠다. 동궁이 따라가서 참여하는 절차는 규례대로 마련하	詔曰: “來詣景孝殿, 悼感尤切。 而東宮將行攝禋, 朕欲親觀, 侍禮畢還宮矣。 侍衛以入直磨鍊, 其餘儀節, 竝置之。” 又詔曰: “明日當詣興德殿展謁後, 移摹影幀初本奉審矣。 東宮陪參之節, 依例磨鍊, 時原任大臣、閣臣、宗親、參政、贊政、各府部大臣、議長入參。”

	라.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각신(閣臣), 종친(宗親), 참정(參政), 찬정(贊政), 각 부(府)와 부(部)의 대신과 의장(議長)은 찰석하라." 하였다.	
고종 40권, 37년 (1900 경자 / 대한 광무(光武) 4년) 6월 19일(양력) 2번째기사 황태자가 황제의 50세 탄신 축하 연회를 열 것을 아뢰다	황태자(皇太子)가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올해는 바로 우리 아버지 황상 폐하의 보령(寶齡)이 50세에 들어서는 경사스러운 해입니다. 신자(臣子)가 이런 경사를 만난다는 것은 세상에 드문 일인데 다행히 이런 경우를 만났으니, 부모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기쁨을 기념하려는 소원이 과연 어떻겠습니까? 비록 날마다 풍족하고 굉장하게 차려 올린다 해도 어찌 기뻐하고 축원하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겠습니까? 작년 겨울과 금년 초에 번거로울 정도로 상소를 올려 주청(奏請)하였으나 아직까지 윤음을 받지 못하였으니, 소자의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호소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올리는 말은 그전에 간청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의 만수성절(萬壽聖節)은 경사스러운 해의 경사스러운 명절입니다. 조종조(祖宗朝)에서 이미 거행했던 전례를 상고해 보아도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있을 뿐만 아닙니다. 우리 순조조(純祖朝)에 한 분은 40세에 들어서려 하고 한 분은 40세에 찼으므로 축하하고 축수하는 잔치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두 전하에 대한 경사가 연이어 있었는데, 나이 많은 조정의 신하들은 그것을 보고 태평한 시대의 성대한 일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올해의 경사는 응당 행해야 할 의식이므로 소자가 청하기를 기다릴 것도 없으니, 검소하고 겸손하신 우리 아버지 황상 폐하의 큰 덕으로도 나라의 떳떳한 예식을 거행할 수 없도록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올해는 또한 우리 어머니 황후 폐하의 보령이 50세가 된 경사로운 해이지만	皇太子疏曰: "伏以今年卽我父皇陛下寶齡, 將躋五旬之慶年也。 凡爲臣子而遭遇是慶, 不世而有焉, 幸而遭遇, 其願欲賁館而識喜者, 果何如哉? 雖日日而進豐亨豫大之擧, 夫豈足以略伸歡欣忭祝之忱矣? 昨年之冬, 今歲之首, 疏籲而奏請者, 亦至於煩且瀆矣。 而迄未蒙允兪之音, 小子之齎鬱悶隘, 已無所控告。 而至如今日之言, 又有間於前日之懇。 今年萬壽聖節, 乃慶年之慶節也。 稽于祖宗已行之例, 不啻有可援而徵者。 粤我純祖朝, 有將躋四旬、洽滿四旬, 飾喜稱觴之儀, 兩殿之慶, 比歲後先。 朝廷耆舊, 尙有及見, 傳以爲昭世盛事。 竊惟今年之慶, 自有當行之禮, 無待於小子之請, 而雖以我父皇陛下崇儉、謙挹之大德, 亦不可使國家彝典有闕。 今年亦我母后陛下恰滿五旬之慶年, 而瞻望景孝之殿, 無由得舞班彩而供歡愉, 小子今日之

	경효전(景孝殿)을 바라보기만 하면서 색동옷을 입고 춤을 추어 기쁘게 해드릴 길이 없으니, 오늘 이 소자의 심정이 어찌 끝이 있겠으며, 음식과 예의를 갖추어 우리 아버지 황상 폐하의 올해 경사를 축원하여 천수의 끝없는 보령을 누리시고 하늘이 준 복을 받고 더욱 보위(寶位)를 이어가기를 송축하는 마음이 또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어머니 황후 폐하의 신령도 마땅히 울컥 감개무량해서 오늘 같은 날이 있기를 기다렸을 것이니, 술잔을 올리고 만세 부르는 날에 자신이 직접 보는 것처럼 기뻐하실 것입니다. 소자는 차마 이 말을 다하지 못하겠지만 아버지 황상 폐하도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또한 슬프게 생각될 것입니다. 해를 넘기면서 수천 마디의 간곡한 청을 거듭 올렸으나 비답하시기를, '지금은 그렇게 할 때가 아니다.'고 하셨고, 또 '급하지 않은 문제는 서두르고 급한 문제는 뒤로 제쳐 놓는 격이다.' 하셨으니, 소자는 삼가 의혹스럽게 여기는 점이 있습니다. 만약 국가의 재정이나 민생에 관한 급한 일이 있다면 반드시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일은 제쳐두고 서둘러야 할 일은 먼저 할 수 있습니다만, 이는 때와는 절실하지 않은 사안에만 해당합니다. 만약 매우 드물게 만나는 국가적인 큰 경사를 급하지 않다고 해버린다면 무슨 일이 또 이보다 더 중차대한 것이 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감히 지난번에 청하였던 것을 반복하여 다시 이렇게 호소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특별히 윤허하시어 성절일(聖節日)의 진하(陳賀), 내진찬(內進饌)·외진찬(外進饌)의 일을 장례원(掌禮院)으로 하여금 전례대로 마련하도록 해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해를 넘기면서까지 반복하여 간곡히 청한 것이 정성이 지극하고 전례를 따르기 위해서라는 것을 짐(朕)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지만 현재는 재정이 부족하고 백성들이 곤란을 겪으므로 근심만이 눈앞에 가득하고 온갖 정부가 복잡하여 여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한가한 일을 벌인다면 짐의 마	私, 豈有其旣? 而其欲備物盡禮, 慶我父皇陛下今年之慶, 善頌善禱於萬有千歲無疆之寶籙, 受天申休益迓景命者, 又豈有其旣哉? 惟我母后陛下之靈, 宜亦怳也。 興慨有俟於今年, 而其將悅豫於呼嵩擎手之日, 宜其若身親見之矣。 小子不忍畢其辭, 而父皇陛下, 念到于此, 亦惻然有思矣。 跨歲申請, 反覆覼縷者, 數千言, 而聖批有曰'今時則非然', 又有曰: '先其所不急, 後其所可急者, 小子竊有惑焉。 苟有可急於國計、民事者, 則可以捐其所不必急者, 以先其可急, 此謂汗漫不切於時者耳。' 若以國家不世遭遇之大慶, 歸之不急, 則未敢知何件事又有重且大, 而急於此者矣。 玆敢申前請而復此陳籲。 伏願陛下, 特賜開允, 聖節日陳賀, 內外進饌之節, 令掌禮院依已例磨鍊。" 批曰: "跨歲申請, 反覆覼縷者, 忱誠之切摯, 典式之率由, 朕非不諒。 而方財絀, 民困, 艱虞溢目, 萬機叢脞, 惟日不給, 乃爲此雍容閒暇之事, 於朕心其可安乎? 凡事求安於心而已。 所以孝莫大於養志, 爾其勿復煩請, 以安朕心。" 皇太子再疏曰: "伏以今者之

	음이 편안하겠는가? 모든 일은 마음이 편안해야 하는 것이다. 효도는 뜻을 봉양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으니, 너는 더 이상 번거롭게 청하지 말아서 짐의 마음을 편안도록 하라.” 하였다. 황태자가 재차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오늘 호소한 것은 소자의 말이 아니라 조종조(祖宗朝)로부터 내려오는 떳떳한 법이며, 또한 간절한 정치가 있어서 폐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바랐는데, 허락하지 않는다는 성상의 비답을 삼가 받들고는 소자는 어찌 할 바를 몰라 가슴이 답답하여 다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작년 겨울과 금년 세초(歲初)에 청한 것은 경사스러운 해를 만나 경사스러운 해를 경축하자는 것이었는데 이미 윤허 받지 못하였으니, 소자의 정성이 지극하지 못해 응당 행해야 할 국가의 전례를 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 서운하고 한탄스럽습니다. 아버지 황제 폐하의 성덕(聖德)과 겸손한 마음에 대해서는 진실로 흠모하고 칭송하지만 대소 신료들이 장차 소자를 보고 어떤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오늘 청하는 것은 청한 문제들이 한결같이 이전에 청한 것과 같지만 맞이하는 경사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더욱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맞이한 것은 곧 경사스러운 해의 경사스러운 명절이므로 경사에 경사가 거듭된 것이니, 경사치고 이보다 더 큰 경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건대 우리 아버지 황제 폐하께서는 신묘하고 성스런 문무(文武)를 겸비하고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셨습니다. 이에 대덕(大德)을 지니신 성상께 하늘이 복을 거듭 주어 억만년토록 길이 장수하게 할 것입니다. 다가올 경사는 강물이 흘러오듯 하고 둥근 해와 달이 떠오르는 것 같아서 끝간 데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50세에 들어서는 경사스러운 해의 만수성절을 올해에 맞이하십니다. 이는 앞으로 억만 년이 지나도 다시 만날 수 없는 일이니, 소자가 경하드리는 것이 어찌 이보다 더 큰 것이 있겠습니까? 경사가 있으면 반드시 경	籲, 非小子之言, 乃祖宗之彝典也。 又有至切之情理, 庶幾有以感格聰聽者, 而及伏奉聖批靳兪, 小子徊徨抑塞, 復不省何以爲辭矣。 竊以昨年冬與今年歲首之請, 遇慶年而飾慶於慶年也。 旣未克獲準, 小子歉歎忱誠之未至。 國家當行之禮未行, 父皇陛下聖德謙沖, 固欽仰攢頌, 而小大臣庶, 其將謂小子爲何如人也? 今者之請, 所請之事, 一與前同, 而所遇之慶, 與前日所言者, 尤逈有別焉。 今之所遇, 乃慶年之慶節也。 荐慶萃集慶, 豈有大於是者乎? 惟我父皇陛下, 神文聖武, 功業巍蕩, 大德必得。 天申用休, 祈永年於萬億無疆。 將進之慶, 如川之方至, 日之升月之恒, 未有窮旣。 而惟是將躋五旬慶年之萬壽聖節, 在於今年, 萬億年而不可再遇。 小子所稱慶, 豈有大於是者? 此也有慶, 必稱有國不易之規, 而此謂凡慶皆然。 況其罕有而疊臻, 帀域含生之倫, 加額而望賁飾晠擧者哉? 小子又于是而不得准請焉, 則又將爲何如人? 而其於國家之禮, 將何哉? 玆敢冒悚煩陳。 伏願陛下, 亟降允許, 以副臣庶之顒祝焉。” 批曰:

	하하는 것은 바꿀 수 없는 나라의 규례이며, 이는 모든 경사가 모두 그렇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것은 드물게 오는 거듭되는 경사이므로 온 나라 백성들이 잔치를 크게 차려 성대하게 거행할 것을 고대하고 있는 데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소자가 이번에도 윤허를 받지 못한다면 또 장차 사람들이 소자를 어떤 사람이라고 할 것이며 나라의 예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이에 감히 송구스러움을 무릅쓰고 번거롭게 아룁니다. 삼가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속히 윤허를 내리시어 신하와 백성들의 간절한 바람에 부응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앞서 나의 뜻을 보인 것이 서너 번이 아니며 또한 남김없이 모두 말하였으니, 응당 이해할 줄 알맞은데 마치 그만둘 수 없는 거처럼 거듭 상소를 올렸다. 어찌 꼭 이와 같이 거행한 다음에야 옳다고 하겠는가? 짐은 그것이 옳은지 모르겠다. 그러나 인정과 도리에 대해 말한 것은 짐도 묵묵히 생각할 점이 없지 않으므로 청한 것을 마지못해 윤허하다. 여러 가지 의식과 물품은 일체 줄여서 백성들에게 수고를 끼치지 말아서 짐의 뜻을 어기는 일이 없게 하라.” 하였다.	“前此敷示, 不止數四, 亦旣罄佈無餘。 宜其有諒會, 而乃復申複, 有若不可遂已焉者, 豈其必有是擧而後爲可歟? 朕未知其可矣。 然而其言情理處, 朕不無默然以思者, 勉許所請。 諸般儀物, 一從省略, 無煩民力, 無違朕志, 可也。”
고종 40권, 37년 (1900 경자 / 대한 광무(光武) 4년) 6월 21일(양력) 1번째기사 가뭄이 심하므로 황제의 탄신 진찬은 그만두게 하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동궁(東宮)이 정성과 효성으로 진찬(進饌)하는데 대하여 거듭 그치지 않고 청하므로 짐(朕)이 비록 그 정성을 기특하게 여겨 청을 들어주기는 하였으나 지금 가뭄이 날로 심하여 여러 가지로 근심된다. 백성들의 형편을 생각할 때마다 좋은 옷과 좋은 음식이 편안하지가 않다. 풍족하게 차리는 것은 적당한 때가 아니므로 이미 허락하였다가 곧바로 취소하는 것을 혐의쩍게 해서는 안	二十一日。 詔曰: “以東宮之誠孝, 疏請進饌, 至再不已。 朕雖嘉其誠而允其請, 然顧今惜乾日甚, 憂慮多端, 而每念民情, 錦玉靡安。 豐亨豫大, 今非其時, 不可以已許而旋寢爲嫌, 進饌

	되니 진찬하는 의절(儀節)은 그만두게 하라.” 하였다.	儀節, 其令置之。”
고종 40권, 37년 (1900 경자 / 대한 광무(光武) 4년) 9월 13일(양력) 1번째기사 경효전에서 기신제를 지내다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기신제(忌辰祭)를 행하였다. 황태자(皇太子)가 아헌례(亞獻禮)를 행하고, 이어 별다례(別茶禮)를 행하였다.	十三日。 詣景孝殿, 行忌辰祭。 皇太子行亞獻禮, 仍行別茶禮。
고종 40권, 37년 (1900 경자 / 대한 광무(光武) 4년) 9월 24일(양력) 1번째기사 예조의 관리를 보내 경기전과 화녕전의 제사를 거행하게 하다	영정모사도감 도제조(影幀摹寫都監都提調) 윤용선(尹容善)이 아뢰기를, “경기전(慶基殿)에 봉안할 태조 고황제(太祖高皇帝)의 어진 표제(御眞標題)와 화녕전(華寧殿)에 봉안할 정조 선황제(正祖宣皇帝)의 어진 표제는 대내(大內)에서 친히 써서 규장각(奎章閣)에 봉안해 두었습니다. 지금 가을이 깊어가고 있으니 곧 예(禮)를 맡은 신하 보내어 봉안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장례원(掌禮院)으로 하여금 택일하여 거행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二十四日。 影幀摹寫都監都提調尹容善奏: “慶基殿奉安太祖高皇帝御眞標題、華寧殿奉安正祖宣皇帝御眞標題, 自內親書, 奉安于奎章閣矣。 顧今秋序向深, 卽遣禮臣奉安爲宜。 令掌禮院擇日擧行何如?” 允之。
고종 40권, 37년 (1900 경자 / 대한 광무(光武) 4년) 10월 14일(양력) 5번째기사 선원전에 대신을 보내	장례원 경(掌禮院卿) 윤정구(尹定求)가 아뢰기를, “삼가 등록(謄錄)을 상고하여 보니, 영전(影殿)에 불이 나서 영정을 봉출하지 못하였을 때 상은 소복(素服)을 입고 거애(擧哀)하고 정전(正殿)에서 피해 있	掌禮院卿尹定求奏: “謹稽謄錄, 則在前影殿失火, 影幀未及奉出時, 自上有素服擧哀、避正殿、減膳、撤樂, 三日而止之例矣。 今此璿源殿失火, 影幀未及奉出, 亦依此例磨鍊乎?” 制曰:

위안제와 다례를 지내게 하다	으며 감선(減膳)하고 음악을 중지하다가 사흘이 되어서야 그만둔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선원전(璿源殿)에 실화(失火)하여 어진(御眞)을 봉출하지 못한 데 대해서도 이 전례대로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이에 근거해서 마련하되 선원전 문 밖에서 백관을 거느리고 거애하겠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삼가 등록을 상고하여 보니 강릉(江陵) 집경전(集慶殿)에서 실화하여 영정을 봉출하지 못하였을 때 종묘(宗廟) 제1실에 위안제(慰安祭)를 지내고 관리를 강릉에 보내어 신위(神位)를 설치하고 역시 위안제를 지냈습니다. 이번에 선원전에서 실화하여 어진을 봉출하지 못한 데 대하여 마땅히 종묘에 위안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위안제는 날을 받지 않고 음력 윤8월 22일에 진행하되 축문(祝文)은 시독관으로 하여금 찬출(撰出)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아뢴 대로 하라. 선원전에 신위를 설치하고 대신을 보내어 역시 위안제와 다례(茶禮)를 지내도록 하라. 제물(祭物)은 작헌례(酌獻禮)의 예대로 마련하되 친제(親祭)의 규례대로 하고 백관들이 들어와 참여하라.” 하였다.	“依此磨鍊, 當於璿源殿門外, 率百官擧哀矣。” 又奏: “謹稽謄錄, 則江陵集慶殿失火, 影幀未及奉出時, 宗廟第一室, 行慰安祭, 遣官江陵設位, 而亦行慰安祭矣。 今此璿源殿失火, 影幀未及奉出, 宗廟當有慰安之節。 慰安祭不卜日, 陰曆閏八月二十二日設行, 祝文令侍讀撰出何如?” 制曰: “依奏。璿源殿設位, 遣大臣亦行慰安、茶禮。祭品一依酌獻禮例磨鍊, 依親祭例, 百官入參。”
고종 40권, 37년 (1900 경자 / 대한 광무(光武) 4년) 11월 12일(양력) 1번째기사 명성 황후의 탄신일에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올해는 바로 명성 황후(明成皇后)의 나이가 만 50이 되는 해이므로 짐의 슬픈 마음은 다른 해보다 다르다. 탄신일에 경효전(景孝殿)에서 전작례(尊酌禮)	十二日。 詔曰: “今年卽明成皇后恰滿五旬之年也。 朕心興悼, 異於他年。當於誕辰日, 親行奠酌禮于景孝殿, 祭文親撰以下矣。” 又詔曰: “以東宮孝思, 當是年是月, 哀慕罔極, 有不忍言

경효전에서 직접 전작례를 행하기로 하다	를 친행(親行)하겠으며 제문(祭文)은 내가 직접 지어서 내려 보내겠다.”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태자의 효성스러운 생각으로 이해 이 달을 맞이하였으니 끝없이 슬퍼하고 사모하는 데서는 차마 말할 수 없는 점이 있을 것이다. 음력 25일에 경효전에서 작헌례(酌獻禮)를 거행하여 지극한 심정을 펴게 하라. 제문은 태자가 지어서 내려 보내라.” 하였다.	者。 陰曆二十五日, 當行酌獻禮于景孝殿, 俾伸至情。 祭文東宮製下矣。”
고종 40권, 37년(1900 경자 / 대한 광무(光武) 4년) 11월 28일(양력) 1번째기사 태조 고황제의 탄신일에 흥덕전에서 작헌례를 직접 진행할 것을 알리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오는 음력 10월 11일은 곧 우리 태조 고황제(太祖高皇帝)의 탄신일이다. 진전(眞殿)에 영정(影幀)을 봉안(奉安)한 뒤에 불행하게도 화재의 변고가 났으므로 인정과 예절을 펴지 못한 짐의 슬픈 마음은 어찌 끝이 있겠는가? 그날에 흥덕전(興德殿)에 작헌례(酌獻禮)를 친행(親行)하겠으며 제문(祭文)도 직접 지어서 내려 보내겠다.” 하였다.	二十八日。 詔曰: “今陰曆十月十一日, 卽我太祖高皇帝誕辰也。 影幀奉安眞殿後, 不幸有鬱攸之變, 情禮未伸, 朕心愴感, 曷有其已? 當於伊日, 親行酌獻禮于興德殿, 祭文親撰以下矣。”
고종 40권, 37년(1900 경자 / 대한 광무(光武) 4년) 12월 6일(양력) 1번째기사 경효전에서 지내는 별다례를 의정이 진행하게 하다	약원(藥院)에서 올린 구주(口奏)에, “경효전(景孝殿) 별다례(別茶禮)를 친히 지내는 것을 그만두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알았다. 의정(議政)을 보내어 모두 거행하도록 하고 백관(百官)은 들어가 참여하라.”	六日。 藥院口奏:“請寢景孝殿別茶禮親行。” 批曰: “知道。 遣議政進去, 竝爲擧行, 百官入參。”

	하였다.	
고종 40권, 37년 (1900 경자 / 대한 광무(光武) 4년) 12월 27일(양력) 3번째기사 이호영이 황실의 비용을 늘이고, 공물 진상 제도를 회복할 것을 청하다	종2품 이호영(李虎榮)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첫째로, 황실(皇室)의 비용을 늘이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제왕(帝王)들이 절약하여 쓰는 것을 나라를 잘 다스리는 계책으로 삼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예의 절차에서 구차하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물품을 바치는 수량이 매우 박하고 약소하므로 아무리 조절하여 쓴다 해도 배당한 것이 부족하여 모든 일이 군색하게 되니 황실을 받드는 본의에 크게 어긋납니다. 내년도 예산부터 시작하여 액수를 적당히 늘이는 것을 그만둘 수 없습니다. 둘째로, 공물(貢物)을 진상하는 제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라에 공물이 있고 부세(賦稅)가 있는 것은 예로부터 통례로 실시해 오던 제도입니다. 성인(聖人)이 공물 제도를 제정함에 있어서 고동(孤桐)과 기이한 돌, 귤과 유자, 청모(靑茅) 등속을 공물로 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 어찌 그것이 보물이라 해서 그렇게 하였겠습니까? 바로 임금을 받드는 규례로서 토산물을 바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역대의 제왕들도 그대로 따르지 않은 것이 없었으며 우리나라에서 진상(進上)하는 것도 공물 제도가 전해 내려온 법입니다. 개혁 이후로 공물 명목이 일체 폐지되어 써야 할 물건을 사오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으므로 구차하기 그지없습니다. 궁내부(宮內府)에 장공원(掌貢院)을 설치하고 지방에서 나는 물건을 철에 따라 공물로 바치게 하여 나라의 용도에 수응한다면 옛 제도를 보존하는 뜻에도 사실 부합될 것입니다. 셋째로, 결세(結稅)를 늘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결세를 3분의 2의 수량을 더 부가하였지만 개혁 이전에 대비하면 사실상 증가한 것이 없습니다. 당장 숱한 비용이 들어야 하겠는데 이렇게 적은 수량을 증가해 가지고서는 겨우 유지해 가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앞으	從二品李虎榮疏略: 一曰, 增皇室費。 自古帝王靡不以節用爲治安之策, 然亦不至儀度之苟艱。 見今所進之算, 甚涉薄略, 雖撙節以用之, 猶患排之不足, 以致百度窘絀, 殊非所以尊皇室之本意也。 自明年度豫算爲始, 量宜增額, 係是不可已者也。 二曰, 復進貢。 國之有貢、有賦, 古今通行之制也。 聖人之制貢也, 孤桐、怪石、橘柚、靑茅之屬, 無不貢焉, 豈其爲可寶而然哉? 直以奉上之禮, 不可不獻其方物。 歷代帝王, 無不因之。 我國進上, 卽貢之遺法也。 更張以後, 貢之名目, 一切廢之, 需用之物, 非貿不得, 苟且莫甚。 須設置掌貢院于宮內府, 隨地方所産, 隨節序貢獻, 以需公用, 則實合存羊之意。 三曰, 加結稅。 向者結稅之加以三分二數, 較諸更張以前, 則實無所加。 方今經用益衍, 以此加數之無多, 又難捱過, 則必將更加, 曷若一加而增其額乎? 臣愚以爲倍其數加之, 以作永遠之

	로 자꾸 더 부가할 바에는 어찌 한 번 더 부가하여 그 액수를 채우는 것만 하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그 수량을 2배로 증가하여 영원한 법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지금의 형편에 맞을 것이라고 봅니다. 넷째로, 공로가 있는 사람들을 표창하는 것입니다. 벼슬을 올려 주어 그가 살아 나가는 것을 영광스럽게 하고 제사를 지내 주어 그 영혼을 위로해 준다면 한 세상을 고무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갑오년(1894) 이후로 난리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관리들과 일반 백성을 막론하고 의리를 제창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은 모두 폐하의 충신이므로 시상하는 은전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군공(軍功)을 조사한 지 이미 여러 해가 되었는데도 한 사람도 표창하지 않았으니 어찌 돌아서서 원통하다고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다섯째로, 등급을 올려 주는 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각부(各府)와 각부(各部)의 주임관(奏任官)과 판임관(判任官)들에 대하여 해마다 주년(周年)이 되면 등급을 올려 주는 것은 사실상 온당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봉급(俸給) 주는 것은 그 규정을 일정하게 정하여 만약 상을 줄 만한 사람이라면 칙임관(勅任官)인 경우에는 칙령(勅令)으로써 봉급을 더 올려 주고 주임관이나 판임관인 경우에는 관할하는 대신(大臣)이 회의에 제출한 데 따라 보고하여 재결을 받은 다음 봉급을 더 올려 주는 것이 원칙에 알맞을 것 같습니다. 폐하는 특별히 굽어 살피어 의정부에 물어서 그것이 받아들일 만한 것이면 빨리 실시하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진달한 것을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다.” 하였다.	常法，正合今時之事勢也。 四曰，賞有功。 至若陞官而榮其生，侑祭而慰其靈，有可以鼓動一世。 然甲午以後，亂擾不一，而無論搢紳、匹庶，倡義有勞者， 皆陛下之忠臣也， 合有施賞之典。 而軍功調查，已有年所，一未褒奬，安得無向隅抑菀之歎乎？五曰，改定陞等法。 各府部奏判任之每周年陞等，實非穩當。 自今俸給，必一定其規，若或合有賞與者，則勅任官以勅令加俸，奏判任官所管大臣，具由提出於會議，奏裁後加俸，正合事宜。 伏乞皇上特垂淵鑑， 下詢政府， 如其可用，亟令實施焉。 批曰:“所陳極知其不可行矣。”
고종 41권, 38년 (1901 신축 / 대한 광		六日。 詣興德殿，親行酌獻禮。 皇太子隨詣，行禮。

무(光武) 5년) 1월 6일(양력) 1번째기사 흥덕전을 작헌례를 행하다	흥덕전(興德殿)에 나아가 작헌례(酌獻禮)를 친히 행하였다. 황태자가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고종 41권, 38년(1901 신축 / 대한 광무(光武) 5년) 5월 11일(양력) 2번째기사 명헌 태후에게 진작하는 연회의 준비에 대하여 명하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명헌 태후(明憲太后)에게 진작(進爵)하여 경사를 축하할 것을 이미 몇 해 전에 명을 내렸는데, 겸손하게 사양하는 하교를 계속 받아 그동안 즉시 거행하지 못하였다. 지금 보령(寶齡)이 71세가 되는 경사로운 해를 맞이하여 정리와 예의를 펴지 않을 수 없으니, 진찬(進饌)할 날짜를 음력 5월 보름 경으로 추택(推擇)하여 들이고, 여러 가지 거행할 일은 궁내부(宮內府)와 장례원(掌禮院)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게 하되, 명헌태후궁 대부(明憲太后宮大夫)도 똑같이 주관하라.” 하였다. 이어 장례원 경(掌禮院卿) 민영휘(閔泳徽), 명헌태후궁 대부 홍순형(洪淳馨), 궁내부 대신서리(宮內府大臣署理) 윤정구(尹定求)를 모두 진찬소 당상(進饌所堂上)에 차하(差下)하라고 명하였다.	詔曰: “明憲太后殿進爵飾慶, 年前已有成命, 而連承謙挹之敎, 間未卽行矣。 今當寶齡望八之慶年, 情禮不可不伸, 進饌日字, 以陰曆五月望間擇入, 諸般擧行, 令宮內府、掌禮院, 專管爲之, 明憲太后宮大夫, 一體句管。” 仍命掌禮院卿閔泳徽、明憲太后宮大夫洪淳馨、宮內府署理大臣尹定求, 竝進饌所堂上差下。
고종 41권, 38년(1901 신축 / 대한 광무(光武) 5년) 6월 17일(양력) 3번째기사 정청하여 세 번째로	---- 정청(庭請)하여 세 번째 아뢰기를, “삼가 아룁니다. 소자(小子)가 진소(陳疏)와 상주(上奏)로 이미 여러 번 번거롭게 하였으나, 정성이 다다르지 못하여 유음(兪音)을 아직도 내리지 않으니	庭請三奏曰: “伏以小子以疏、以奏, 旣屢瀆矣, 忱誠未格, 兪音尙靳, 跼高蹐厚, 益無所容措矣。 小子之於子職, 曷嘗有絲毫稱塞? 而愛日之誠, 日深一日, 知年之喜, 年加一年。 所萬一之

연회 개최를 청하다	황송하여 더욱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소자가 자식 된 도리를 언제 한 번 조금이나마 다하였겠습니까마는 세월이 흐르는 것을 아쉬워하는 정성은 날이 갈수록 더하고 부모가 장수함을 아는 기쁨은 해가 갈수록 더합니다. 부모의 은혜에 만분의 일이나마 보답하는 길은 오직 폐하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는데 있을 뿐입니다. 아! 우리 부황 폐하의 높고 훌륭한 덕은 이 소자가 감히 찬양할 바가 아니지만, 이전 시대를 두루 보건대 영특하고 명철한 임금들이 사책(史策)에 꼬리를 물고 나오기는 하나 체통을 이어 선대를 훌륭하게 계승하는 임금으로서 왕조를 세워 후대에 물려줄 터전을 굳건히 한 분은 오직 부황 폐하뿐 입니다. 하늘이 성덕(聖德)과 귀중한 나이를 보살펴 주는 것이 더욱 더하여 올해의 경사에 이르렀으니 이야말로 우리 왕조에 드문 일입니다. 설사 달마다 풍성한 연회를 차려 올리고 날마다 만세를 부르더라도 보잘 것 없는 정성을 펴기에는 부족할 것인데, 의례상 응당 해야 할 의전마저 사양하고 받지 않으니 이 소자의 답답하고 실망하는 마음이 과연 어떻겠습니까? 밤낮으로 고대하는 것은 성절(聖節)에나마 축원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표시하려는 것이었는데, 이제 이 명절도 박두하였습니다. 대체로 사람의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경사가 있으면 기쁨을 표시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심정입니다. 보통 사람도 연회를 차려 대접하는데 태자의 자리를 차지한 이 소자로서 이 해 이 날의 경사를 만나고도 나라의 빛나는 영전(令典)을 거행하지 못하여 감히 빠뜨릴 수 없는 일을 빠뜨리고 감히 그르칠 수 없는 일을 그르친다면 자식 된 도리로 보아 어떠하고, 온 백성들의 심정은 어떠하며, 또한 나라의 규례로 보아 어떠하겠습니까? 삼가 보건대 부황 폐하는 하나의 정령(政令)과 하나의 조치(措置)에도 언제나 선대의 법을 따랐습니다. 이번의 성대한 의식은 바로 우리 조종(祖宗)이 이미 시행하여 오던 예법이니 또한 어찌 폐하가 마땅히 본받아야 할 것이 아니겠	報答者, 惟祈祝聖壽無疆耳。 猗! 我父皇陛下, 巍蕩盛德, 非小子所敢讚述, 而歷觀前世英君哲辟, 相望於史策, 若夫以繼體守文之主, 建創業垂統之基, 惟父皇陛下有之。 天眷聖德, 寶算彌加, 迄玆今歲之慶, 是誠國朝之所罕有也。 雖月以進豐亨豫大, 日以陳呼嵩擎斗, 未足以少伸塵露之忱, 而凡係儀文應行之典, 謙而不有, 小子之齎鬱缺望, 顧何如哉? 日夜之所顒竢者, 擬於萬壽聖節, 粗伸歡祝之忱, 今焉是節將屆矣。 夫人子之於其親, 有慶識喜, 恒性同然, 相在小人, 尙有洗腆之養, 小子忝居儲貳, 遇是年是日之慶, 不能擧國家煌煌令典, 闕其所不敢闕, 隳其所不可隳, 則其於子職何? 群情何? 亦於邦禮, 何哉? 竊伏覩父皇陛下, 一政令、一施措, 動遵先憲。 今此盛儀, 卽我祖宗所已行之禮, 則亦豈非陛下所當監法者乎? 衷情益激, 冒悚荐籲, 伏願父皇陛下淵然三思, 勉回謙抑之衷, 亟許進宴之儀, 以副至祝焉。” 批曰: “飾喜者, 暇豫之事也。 今虞憂湏洞, 財益窘絀, 民益困瘁, 朕方中昃勤孜, 遑可議及於此。 而爾之

	습니까? 마음이 더욱 격해져서 황송함을 무릅쓰고 거듭 하소연하니 삼가 바라건대, 부황 폐하는 깊이 재삼 생각하고 억지로라도 겸손한 마음을 돌려 진연(進宴)의 의식을 빨리 허락함으로써 더없는 소원을 풀어주기 바랍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연회를 차리는 것은 한가한 놀음이다. 지금 걱정거리가 차서 넘치고 재물이 더욱 군색하며 백성들이 갈수록 곤궁에 빠져 짐이 밤낮으로 애쓰고 있는 형편에서 무슨 겨를에 이런 것까지 논의하겠는가? 하지만 네가 줄곧 극력 간청하여 마지않으니 착실한 정성에 대해서 고려할 것이다. 그리고 온 조정이 이 일을 이런 때에 급한 것으로 여기는데 대해서는 심히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 번 곰곰이 생각해 보고 부득이 마지못해 허락하니 제반 의식 물건을 되도록 간단히 하여 비용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짐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할 것이다. 너는 그리 알도록 해라.” 하였다.	一直苦懇不已, 忱誠之篤摯, 亦有所可念者。 盈庭之論, 惟以此事爲急於此時者, 甚未可知也。 屢回商量, 不得已勉許。 諸般儀物, 務從省略, 無令煩費, 庶可以少安於朕心矣。 爾其諒之。”
고종 41권, 38년(1901 신축 / 대한 광무(光武) 5년) 6월 28일(양력) 1번째기사 명헌 태후에게 진찬을 행하다	경운당(慶運堂)에 나아가 명헌 태후(明憲太后)에게 진찬(進饌)을 행하였다. 황태자가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임금은 익선관(翼善冠)에 황포(黃袍) 차림, 황태자는 익선관에 곤룡포(袞龍袍) 차림, 황태자비는 적의(翟衣)에 머리꾸밈 차림을 갖추고 배위(拜位)에 들어갔다. 상의(尙儀)가 명헌 태후에게 적의를 갖추고 임시처소에서 나올 것을 청하고 앞에서 인도하여 보좌에 올라갔는데, 이 때 음악이 연주되었다. 임금과 황태자가 사배(四拜)의 예를 올리고, 군부인(郡夫人), 좌우 명부(左右命婦), 종친(宗親), 척신(戚臣), 진찬소 당상(進饌所堂上)과 낭관(郎官)이 사배의 예를 마치자 음악이 멎었다. 찬안(饌案)과 시접	二十八日。 詣慶運堂, 行進饌于明憲太后殿。 皇太子隨詣, 行禮。【上具翼善冠、黃袍, 皇太子具翼善冠、袞龍袍, 皇太子妃具翟衣、加首飾, 入詣拜位。 尙儀請明憲太后具翟衣出次, 前導陞寶座。 樂作。 上及皇太子行四拜禮, 郡夫人、左右命婦、宗親、戚臣、進饌所堂郎行四拜禮, 樂止。 進饌案、匙楪, 樂作, 女執事進花于上及

	(匙楪)을 올릴 때 음악이 연주되었으며, 여집사(女執事)가 임금과 황태자에게, 여관(女官)은 황태자비에게 꽃을 올리고, 전식(典飾)은 군부인 이하에게 꽃을 나누어 주자 음악이 멎었다. 임금이 무릎을 꿇고 첫 번째 술잔을 올릴 때 음악이 연주되고, 안주를 몇 가지 올리자 음악이 멎었으며, 황태자가 무릎을 꿇고 두 번째 술잔을 올릴 때 음악이 연주되고, 안주를 몇 가지 올리자 음악이 멎었으며, 황태자비가 무릎을 꿇고 세 번째 술잔을 올리고 군부인이 무릎을 꿇고 네 번째 술잔을 올리자 그 때 음악이 연주되었으며, 치사(致詞)를 대신 올리는 여관이 앞에 나서서 그것을 읽은 다음 좌우 명부, 종친 반수(班首), 척신 반수가 차례로 진작(進爵)하자 음악이 멎었다. 여집사가 임금과 황태자를, 여관은 황태자비를 인도하여 자리로 가고, 전빈은 군부인, 좌우 명부, 종친·척신, 진찬소의 당상과 낭관을 인도하여 각각 제자리로 갈 때 음악이 연주되고, 찬안을 올리고 여집사가 술을 따르자 명헌 태후가 그 술잔을 받아서 상식(尙食)에게 건네주었으며, 상식은 무릎을 꿇고 임금에게 올린 다음 이어 안주 몇 가지를 올렸으며, 여집사가 황태자와 황태자비에게도 위와 같은 의절대로 진작하자 음악이 멎었다. 전찬(典饌)이 군부인 이하에게 술을 돌릴 때 음악이 연주되고, 상식이 명헌 태후의 찬안을 물리자 음악이 멎었다.】	皇太子, 女官進花于皇太子妃, 典飾頒花于郡夫人以下, 樂止。 上跪進第一爵, 樂作, 進味數, 樂止; 皇太子跪進第二爵, 樂作, 進味數, 樂止; 皇太子妃跪進第三爵, 郡夫人跪進第四爵, 樂作, 代致詞女官進前讀訖, 左右命婦、宗親班首、戚臣班首次次進爵, 樂止。 女執事導上及皇太子, 女官導皇太子妃, 就座, 典賓引郡夫人、左右命婦、宗親、戚臣、進饌所堂郎各就位, 樂作; 進饌案, 女執事酌酒, 明憲太后受之, 仍授尙食, 尙食跪進于上前, 仍進味數, 女執事進爵于皇太子、皇太子妃前, 竝如上儀, 樂止。 典饌行酒于郡夫人以下, 樂作, 尙食退明憲太后殿饌案, 樂止。】
고종 41권, 38년 (1901 신축 / 대한 광무(光武) 5년) 8월 15일(양력) 1번째기사 민영철이 대대의 저치미 농간에 대하여 아뢰다	원수부 검사국 총장(元帥府檢事局總長) 민영철(閔泳喆)이 아뢰기를, “방금 특별 파견 검사관(檢査官)인 원수부 군무국 부장(元帥府軍務局副長) 육군 부령(陸軍副領) 장화식(張華植)의 계본(啓本)에 대한 계하(啓下)를 보니, 그 내용의 대략에, ‘각 대대(大隊)의 저치미(儲置米) 500석(石)은 불의의 사변에 대처하기 위한 군수 물자로서 내탕고(內帑庫)에서 내도록 삼가 특지(特旨)를	十五日。 元帥府檢事局總長閔泳喆奏: 卽伏見特派檢査官元帥府軍務局副長陸軍副領張華植啓本啓下者, 則“內槪各大隊儲置米五百石, 係是軍中陰雨之備而出自內帑, 欽奉特旨矣。 其所緊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느 물건에 비할 바 없이 중한 것인 만큼 모든 석으로 하여 창고에 넣을 때와 석을 풀어 쌀을 바꿀 때에 갑절 신중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侍衛) 제2대대 대대장(大隊長) 전우기(全佑基)는 석으로 만들거나 쌀을 바꾸는 과정에 서슴없이 농간을 부려, 창고에 넣을 때에는 2, 3승(升)씩 덜어 석으로 만들어 국고에 흠결을 냈으며, 쌀을 나누어 줄 때에는 8, 9합(合)씩 깎아 됨으로써 군사들로부터 원망을 샀습니다. 이 과정의 진상이 남김없이 다 드러난 이상 검열 원칙상 한시도 덮어둘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향실(餉室)의 하사(下士)를 잡아 가두고, 손을 댄 쌀 16석 3두(斗) 4승과 종래부터 매 석당 1승씩 떼어낸 몫을 일일이 받아두고 보고하도록 해당 부대에 신칙하라는 유지(有旨)가 있었습니다. 검사국에서 문서에 준하여 처리하게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대대장(大隊長) 전우기가 군수 물자의 중요함을 생각하지 않고 서슴없이 농간질을 하여 축낸 것이 드러나기까지 한 것은 군사 기강에 비추어 볼 때 참으로 더없이 통탄스럽고 놀라운 일입니다. 육군 법원(陸軍法院)에서 그의 죄상을 조율(照律)하여 징판(懲辦)하며 손을 댄 곡식은 일일이 독촉하여 받아 가지고 도로 채워 넣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우선 본 관을 면직하고 법원(法院)에서 조율하여 징판하게 하라." 하였다. 【원본】 45	重, 非比他物, 凡於作石入庫之際, 解石換米之地, 宜其倍加審愼。 而侍衛第二大隊大隊長全佑基, 無難幻弄於作石、換米之間, 入庫則二三升式除減作石, 致欠於國庫, 分米則八九合式劃平解升, 取怨於士卒。 這間情跡, 無遺畢露, 其在行檢事體, 不可晷刻掩置。 故爲先捉囚餉室下士, 該所犯米十六石三斗四升、由來每石頭一升式落置條, 一一捧留報來之意, 訓飭該隊事, 有旨。 令檢査局準章奏裁矣。" 該大隊長全佑基, 罔念軍需所重, 無難幻弄, 至於欠縮之現露, 揆以軍紀, 誠極痛駭。 其罪狀, 令陸軍法院, 照律懲辦, 所犯穀數, 一一督納還充何如? 制曰: "爲先免本官, 令法院照律懲辦。" 【원본】 45책 41권 50장 B면
고종 41권, 38년 (1901 신축 / 대한 광무(光武) 5년) 9월 9일(양력) 2번째기사	외진연(外進宴) 날 예제시(睿製詩)에, "황제의 50세를 경사로 즐기니,	外進宴日睿製詩曰: "寶籙羲籌慶此辰, 五旬基本萬斯春; 廷臣偕與擎遐祝, 日月升恒福祿新。" 內進宴日睿製詩曰:

내진연과 외진연 때에 술잔을 올린 대신 등에게 운보검을 하사하다	천만 년 장수의 길 여기서 펼쳐지네. 조정의 모든 신하 장수를 축원하니, 무궁한 해와 달처럼 만복(萬福)이 새로우리.” 하였다. 내진연(內進宴) 날 예제시에, “나이는 높고 왕업(王業)은 빛나니 좋은 때 연회 벌여 끝없이 축하하네. 오늘처럼 천만 년을 길이 장수하시라, 색동옷 차림으로 춤추며 술을 올리네.” 하였다. 내진연(內進宴) 연회와 외진연(外進宴) 연회 때에 술잔을 올린 대신(大臣), 재상(宰相), 참정(參政), 찬정(贊政), 부(府)와 부(部)의 협판(協辦) 이상, 의장(議長), 판윤(判尹), 규장각(奎章閣), 시강원(侍講院), 익위사(翊衛司)의 관리들, 승지(承旨)와 사관(史官), 홍문관(弘文館) 관리들에게 운보검(雲寶劍)을 하사하였다. 갱진(賡進)하였기 때문이다.	“聖筭齊天帝業光, 令辰嘉讌祝無疆; 萬年長願如今日, 彩服供歡捧壽觴。” 令內外進宴時進爵大臣、宰臣、參政、贊政、參贊府部協辦以上、議長、判尹、閣臣、春桂坊、承史、玉堂, 雲寶劍, 賡進。
고종 41권, 38년 (1901 신축 / 대한 광무(光武) 5년) 12월 12일(양력) 1번째기사 윤용선이 원구단에 지내는 큰 제사를 직접 지내겠다고 한 명령을 취소할 것을 청하다	의정 윤용선(尹容善)이 차자(箚子)를 올려 원구단(圜丘壇)에 지내는 큰 제사를 친행(親行)하겠다는 명을 거둘 것을 청하니, 마지못해 따른다는 비답(批答)을 내렸다.	十二日。 議政尹容善上箚, 請寢圜丘大享親行之命。 賜批勉從。
고종 41권, 38년		十七日。 詔曰:“惟天子祭天下名山大

(1901 신축 / 대한 광무(光武) 5년) 12월 17일(양력) 1번째기사 제사 규례를 완비하도록 명하다	조령을 내리기를, “천자(天子)는 천하의 이름난 산과 큰 강에 제사를 지내는 법이건만 다섯 산〔五嶽〕과 다섯 진〔五鎭〕, 네 바다〔四海〕와 네 강〔四瀆〕을 봉(封)하는 일을 미처 하지 못하였으니, 사전(祀典)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장례원(掌禮院)에서 널리 상고하여 제사를 지낼 곳을 정함으로써 짐(朕)이 예로써 신(神)을 섬기는 뜻에 부합되게 하라.” 하였다.	川, 而五嶽、五鎭、四海、四瀆之封, 尙今未遑, 祀典未備矣。 其令掌禮院博考定祀, 用稱朕以禮事神之意。”
고종 42권, 39년 (1902 임인 / 대한 광무(光武) 6년) 3월 19일(양력) 1번째기사 왕위에 오른 지 40년을 기념하는 예식을 준비하게 하다	조령을 내리기를, “짐(朕)은 하늘과 조종(祖宗)의 도움과 명을 받아 온갖 복을 누렸는데 올해는 짐이 왕위에 오른 지 40년이 되는 해이다. 동궁이 부모가 장수하는 것을 기뻐하고 세월이 흐르는 것을 아쉬워하는 정성으로 나라에 드문 이런 경사를 맞이하여 연회를 차리도록 여러 번 청하였는데 그 성의가 간절하였으며, 대소 신료들도 일치한 목소리로 굳이 청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래서 올 가을에 등극한 지 40년이 된 것을 경축하는 예식을 거행하려고 한다. 응행 의절(應行儀節)을 의정부(議政府), 궁내부(宮內府), 예식원(禮式院), 장례원(掌禮院)에서 서로 의논하여 결정한 다음 마련해서 들이게 하라.” 하였다.	十九日。 詔曰:“朕荷上帝、祖宗垂佑景命, 申之以百福, 今年乃朕御極之四十年也。 東宮, 以知年愛日之忱, 遇玆國家罕有之慶會, 屢請賁飾, 誠意懇摯; 大小廷臣, 一辭同聲, 又固請不已。 玆於本年秋間, 將行御極四十年稱慶禮式矣。 應行儀節, 其令議政府、宮內府、禮式院、掌禮院, 參互議定, 磨鍊以入。”
고종 42권, 39년 (1902 임인 / 대한 광무(光武) 6년) 4월 13	진연청 당상(進宴廳堂上)【김성근(金聲根), 윤정구(尹定求), 김학수(金學洙)이	召見進宴廳堂上【金聲根、尹定求、金學洙】、典膳司提調。【李址鎔】上曰:“外進宴處所, 中和殿爲之; 內

일(양력) 3번째기사 진연청 당상을 소견하다	다.】, 전선사 제조(典膳司提調)를 소견(召見)하였다.【이지용(李址鎔)】 상이 이르기를, “외진연(外進宴) 처소는 중화전(中和殿)으로 하고 내진연(內進宴) 처소는 함녕전(咸寧殿)으로 하며 의식 절차 중 어쩔 수 없이 올리는 주본(奏本) 외에 그 밖의 여러 가지 일은 황태자에게 말하여 시행하라. 이번 진연(進宴)은 황태자의 지극한 효성을 가상히 여겨 이미 마지못해 따른 것이지만 나라의 형편과 백성들의 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으니 제반 의식 절차를 되도록 간략하게 하여 나의 마음을 편안케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이지용이 아뢰기를, “진연 때의 음식 가짓수와 그릇 수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황태자에게 말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進宴處所, 咸寧殿爲之。 儀節中不得不奏本者外, 其他諸事, 則達于東宮後擧行。 今番進宴, 嘉乃東宮誠孝之篤摯, 雖已勉從, 國計民事不可不念。 諸般儀節, 務從省約, 以安朕心可也。” 址鎔曰: “進晏時味數與器數, 何以爲之乎?” 上曰: “達于東宮可也。”
고종 42권, 39년 (1902 임인 / 대한 광무(光武) 6년) 4월 13일(양력) 4번째기사 연회 절차에 대하여 명하다	조령을 내리기를, “이번의 진연 절차는 전례대로 거행하되 장례원(掌禮院)과 교방사(敎坊司)에서 또한 신축년(1901)의 규례대로 마련하게 하라.” 하였다.	詔曰: “今番宴儀, 依舊例擧行。 其令掌禮院敎坊司, 亦遵辛丑年例磨鍊。”
고종 42권, 39년 (1902 임인 / 대한 광무(光武) 6년) 4월 24일(양력) 1번째기사	조령을 내리기를, “짐은 올해 가을 사이에 왕위에 오른 40돌을 경축하는 의식을 가지려고 이미 명령을 내렸다. 짐은 하늘과 조상이 내려준 복을 받고 임금 자리에 오래 있게	二十四日。 詔曰: “朕於本年秋間, 將行御極四十年稱慶禮式, 已有成命。 而朕承上帝祖宗申降茀祿綏以永年, 玆庸修飾天慶, 仰答眷佑之心, 擇定於本

왕위에 오른 40돌을 경축하는 의식을 가지도록 명하다	되었으므로 하늘이 내려준 경사를 축하함으로써 돌보아준 은혜에 보답하려고 올해 음력 9월 17일로 날을 받아 경운궁(慶運宮)에서 왕위에 오른 40돌 경축 의식을 가지겠다. 각 직사(職司)에서 일을 수행하는 관원들은 시행해야 할 의식 절차에 크게 마음을 쏟아서 혹시라도 잘못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年陰曆九月十七日, 在慶運宮, 將行御極四十年稱慶禮式。 凡在各其職司應供人員, 其於合行儀節, 悉心注意, 無或違誤。”
고종 42권, 39년(1902 임인 / 대한 광무(光武) 6년) 5월 25일(양력) 1번째기사 연회 때 영왕이 배참하는 절차를 마련하다	조령을 내리기를, “이번에 연회를 차려줄 때 영왕(英王)이 배참(倍參)하는 절차를 마련하라.” 하였다.	二十五日。 詔曰:“今番錫宴時, 英王陪參之節, 磨鍊。”
고종 42권, 39년(1902 임인 / 대한 광무(光武) 6년) 5월 27일(양력) 1번째기사 기로소 당상들에게 연회를 베풀다	함녕전(咸寧殿)에서 기로소 당상(耆老所堂上)들에게 연회를 차려주었다. 【임금이 익선관(翼善冠)에 황룡포(黃龍袍) 차림으로 임시 처소에서 나오자 좌장례(左掌禮)가 무릎을 꿇고 자리에 오를 것을 청하니 임금이 자리에 올랐으며 장례원 주사(掌禮院主事)가 기로소(耆老所)의 여러 신하들을 인도하여 배위(拜位)에 들어가고 앞에서 인도하는 관리가 영왕(英王)을 인도하여 배위에 들어갔으며 상례(相禮)는 황태자를 인도하여 배위에 들어갔는데 이 때 헌가(軒架)에서 ‘보허자령(步虛子令)’을 연주하였다. 찬의(贊儀)가 외치기를 ‘국궁사배(鞠躬四拜), 흥(興), 평신(平身)’ 이라고 하니 황태자가 사배례(四拜禮)를 하고 친왕(親王)과 기로소의 여러 신하들이 사배례를 진행하니 음악이 멎었다. 상례(相禮)는 황태자를 인도하여 제자리에 나아가고, 앞에서 인도하는 관리는 영왕(英王)을, 주사(主事)는 기로소 여러 신하들을 인도하여 제자리에 가니 이	二十七日。 御咸寧殿, 錫宴耆堂。 【上具翼善冠、黃龍袍出次, 左掌禮跪奏請陞座, 上陞座。 掌禮主事引耆老諸臣, 入就拜位, 前引官引英王, 入就拜位, 相禮導皇太子, 入詣拜位。 軒架作‘步虛子’令, 贊儀唱‘鞠躬’、‘四拜’、‘興’、‘平身’, 皇太子行四拜, 禮親王及耆老諸臣, 行四拜, 禮樂止。 相禮導皇太子就座, 前引官引英王就座, 主事引耆老諸臣就位。 軒架作‘與民樂’, 典膳司提調李址鎔進酒器, 樂止。 軒架作‘與民樂’令, 址鎔捧揮巾函, 詣座前跪, 奉侍跪進, 進楪匙, 典

	때 헌가는 ‘여민락(與民樂)’을 연주하였다. 전선사 제조(典膳司提調) 이지용(李址鎔)이 술그릇을 올리자 음악이 멎었다. 헌가가 ‘여민락’ 령(令)을 연주하니 따라 이지용이 수건함을 받들고 자리 앞에 나가 무릎을 꿇자 봉시(奉侍)가 무릎을 꿇고 받아 올린 다음 접시를 올렸으며 전선사 부제조(典膳司副提調) 윤헌(尹삯)이 수건함을 받들고 황태자 앞에 나가 무릎을 꿇자 봉시가 무릎을 꿇고 받아 올리고 접시를 올리니 이 때 음악이 멎었다. 등가(登歌)에서 ‘순천개운곡(順天開運曲)’을 부르고 노래하는 아이들이 들어와 ‘제수창(帝壽昌)’ 노래를 부르니 그에 맞추어 따라 이지용이 음식상을 올리고 특별히 차린 과일을 올렸고 윤헌은 황태자에게 음식상을 올리고 특별히 차린 과일을 올렸으며 찬위(贊尉) 심상익(沈相翊)은 친왕(親王)에게 음식상을 차려놓고 특별히 차린 과일을 차려놓았고 집사(執事)가 기로소 신하들에게 음식상을 차려놓자 음악이 멎었다. 동가가 ‘장춘불로곡(長春不老曲)’을 부르는데 따라 비서원 경(祕書院卿) 이용직(李容稙)이 화반(花盤)을 받들고 자리 앞에 나가 무릎을 꿇자 봉시(奉侍)가 무릎을 꿇고 받아올리고 부첨사(副詹事) 이상설(李相卨)이 화반을 받들고 황태자 앞에 나가 무릎을 꿇자 봉시가 무릎을 꿇고 받아 올렸으며 심상익이 영왕(英王)에게 꽃을 나누어주고 집사가 기로소의 여러 신하들에게 꽃을 뿌려주자 음악이 멎었다. 이지용이 소금물을 올리고 윤헌이 소금물을 올리자 음악이 멎었으며 등가에서 ‘천년만세지곡(千年萬歲之曲)’을 부르고 춤추는 아이들이 들어와 ‘몽금척(夢金尺)’ 춤을 추는데 따라 이지용이 작은 반찬을 올리고 윤헌이 작은 반찬을 올리자 음악이 멎었다. 두 사람이 전각 앞에 나가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 북쪽을 향해 서서 ‘광운락(廣運樂)’을 부르는데 따라 첫 번째 술잔을 올렸는데 이지용(址鎔)이 술잔을 들어 무릎을 꿇고 올리자 봉시(奉侍)가 받아서 무릎을 꿇고 자리 앞에 놓았다. 이때 등가는 ‘화봉삼축지곡(華封三祝之曲)’을 부르고 춤추는 아이들은 들어와 ‘봉래의(鳳來儀)’ 춤을 추었다. 폐하가 술잔을 들자 이지용이 술잔을 받아서 다시 받침대 위에 놓고	膳司副提調尹삯捧揮巾函, 詣皇太子前跪, 奉侍跪進, 進楪匙, 樂止。 登歌作‘順天開運曲’, 聲童入作‘帝壽昌’。 址鎔進饌案, 進別行果, 삯進皇太子饌案, 進別行果, 贊尉沈相翊設親王饌床, 設別行果, 執事者設耆臣饌卓, 樂止。 登歌作‘長春不老曲’。 秘書卿李容稙奉花盤, 詣座前跪, 奉侍跪進, 副詹事李相卨奉花盤, 詣皇太子前跪, 奉侍跪進, 相翊頒英王花, 執事散耆老諸臣花, 樂止。 址鎔進鹽水삯進鹽水, 樂止。 登歌作‘千年萬歲之曲’, 舞童入作‘夢金尺’。 址鎔進小膳, 삯進小膳, 樂止。 二人詣殿前, 分東西, 北向, 立唱‘廣運樂’。 進第一爵, 址鎔奉爵跪進, 奉侍傳捧跪置于座前。 登歌作‘華封三祝之曲’, 舞童入作‘鳳來儀’。 陛下擧酌, 址鎔受爵, 復于坫, 仍進湯, 樂止。 삯酌酒, 跪進, 奉侍傳捧跪置于皇太子前。 登歌作‘壽曜南極之曲’, 舞童入作‘獻仙桃’。 皇太子受爵擧飮, 삯進受虛爵, 復於酒亭, 仍進湯, 樂止。 相翊行酒于英王, 執事者行耆老諸臣酒, 登歌作‘萬壽永無疆’引, 址鎔進饅頭, 삯進饅頭, 樂止。

	이어 탕을 올리니 음악이 멎었다. 윤헌이 술을 부어 무릎을 꿇고 올리니 봉시가 받아서 무릎을 꿇고 황태자 앞에 놓았는데 이 때 등가에서 '수요남극지곡(壽曜南極之曲)'을 부르고 무동(舞童)들이 들어와 '헌선도(獻仙桃)' 춤을 추었다. 황태자가 잔을 받아 마시자 윤헌이 나서서 빈 술잔을 받아 술그릇상에 도로 놓은 다음 탕을 올리니 음악이 멎었다. 심상익이 영왕(英王)에게 술잔을 돌리고 집사(執事)가 기로소의 여러 신하들에게 술을 돌린 다음 등가에서 '만수영무강(萬壽永無疆)' 인(引)을 부르는데 따라 지용이 만두를 올리고 윤헌이 만두를 올리자 음악이 멎었고 등가에서 '천세귀유지곡(千歲龜遊之曲)'을 부르는데 따라 이지용이 탕을 올리고 윤헌이 탕을 올리자 음악이 멎었으며 등가가 '수여제천지곡(壽與齊天之曲)'에 따라서 따라 이지용이 차를 올리고 윤헌이 차를 올리자 음악이 멎었다. 두 번째 술잔부터 일곱째 술잔을 올리기까지 위와 같은 절차대로 하였다.】 황태자와 영왕(英王), 기로소의 여러 신하들이 의식을 마치자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기로소의 당상들에게 입시(入侍)하라고 명하였다.【의정(議政) 심순택(沈舜澤), 특진관(特進官) 조병세(趙秉世), 영돈녕원사(領敦寧院事) 윤용선(尹容善), 기로소 당상(耆老所堂上) 조병식(趙秉式)·이순익(李淳翼)·서상우(徐相雨)·이용원(李容元)·엄세영(嚴世永)·정해륜(鄭海崙)·김석근(金晳根)·서상조(徐相祖)·송민수(宋敏洙)·한성근(韓聖根)이다.】 심순택이 아뢰기를, "좋은 날 좋은 때에 직접 전(殿)에 나와 잔치를 열었으니 이것은 천고에 드문 경사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기로소의 여러 신하들에게 잔치를 연 뒤에 규례대로 음식을 내리고 음악을 내려주는 법이다. 처용(處容)춤을 추는 사람들과 무동(舞童)들이 앞에서 인도하는 것도 전례가 있으니 이번에도 지금도 규례를 지켜야 한다."	登歌作'千歲龜遊之曲', 址鎔進湯, 삭進湯, 樂止。 登歌作'壽與齊天之曲', 址鎔進茶, 삭進茶, 樂止。 進第二爵至第七爵, 如上儀】皇太子、英王及耆老諸臣行禮訖, 命時原任大臣、耆堂入侍。【議政沈舜澤、特進官趙秉世、領敦寧尹容善、耆堂趙秉式·李淳翼·徐相雨·李容元·嚴世永·鄭海崙·金晳根·徐相祖·宋敏洙·韓聖根】 舜澤曰: "日吉辰良, 臨殿錫宴, 寔千古罕有之慶也。" 上曰: "耆社諸臣錫宴後, 依例賜饌賜樂矣。 處容及舞童之前導, 亦有已例。 今亦遵式可也。" 舜澤曰: "前例在於何聖朝時乎?" 上曰: "肅廟、英廟兩聖朝, 皆已行之矣。 今日耆社諸臣, 使之會宴于本所時, 賜宴在前, 以鼓吹前道, 兼掌禮秘書丞領往, 宮內大臣、掌禮卿、諸耆老之臣在後, 處容及舞童, 在前而去可也。" 又敎曰: "今日之宴, 是喊擧也。 而黃髮耆年, 濟濟班綴, 此又盛事也。 古者宴樂, 必有求言求助。 且讌禮者, 所以通上下之情, 老成諸臣, 其各言志可也。" 特進官趙秉世曰: "臣等之所懷, 陛下亦應先爲洞燭矣。"

	하였다. 심순택이 아뢰기를, “어느 임금 때에 있었던 전례입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숙종(肅宗)과 영조(英祖) 두 임금 때에 모두 시행하였다. 오늘 기로소의 여러 신하들이 기로소에 모여 연회를 할 때 차려준 잔칫상이 앞에 서되 악대가 앞에서 인도하고 겸장례(兼掌禮)인 비서원 승(祕書院丞)이 거느리고 가며 궁내부 대신(內部大臣)들과 장례원 경(掌禮院卿), 기로소의 여러 신하들의 뒤에 서되 처용춤을 추는 사람들과 무동들이 앞에서 가게 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오늘의 연회는 원래 훌륭한 일이거니와 백발의 기로들이 반열에 가득하니 더욱더 훌륭한 일이다. 옛날에는 잔치를 열고 즐길 때 반드시 바른 말과 도움을 요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연회란 상하의 마음을 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니 노숙한 여러 신하들은 각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특진관(特進官) 조병세(趙秉世)가 아뢰기를, “신들의 소회(所懷)에 대해서는 폐하도 먼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였다.	
고종 42권, 39년 (1902 임인 / 대한 광무(光武) 6년) 5월 27일(양력) 2번째기사 기로소에서 연회를 베풀 것을 명하다	조령을 내리기를, “오늘의 연회는 사실 옛 규례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고 연회 후에 전각 앞에서 연주하던 악공(樂工)들을 기로소(耆老所)에 보내주는 것도 역시 시행한 규례인데 이것은 선대의 일을 이어나가기 위한 것이다. 기로소의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나머지 음식을 가지고 가서 기로소에서 연회를 벌이게 하라.”	詔曰: “今日之宴, 宴率由先憲, 宴後仍賜殿前樂於耆社, 亦已行之例, 而所以繼述者也。 令耆社諸臣, 持餘饌, 會宴本所。”
고종 42권, 39년		錫宴時掌禮院堂郎以下、典膳司提調

(1902 임인 / 대한 광무(光武) 6년) 5월 27일(양력) 3번째기사 연회를 차릴 때 장례원의 당상과 낭관 이하와 전선사 제조 이하에게 시상하다	연회를 차려줄 때의 장례원(掌禮院)의 당상(堂上)과 낭관(郎官) 이하와 전선사 제조(典膳司提調)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以下, 施賞有差。
고종 42권, 39년 (1902 임인 / 대한 광무(光武) 6년) 5월 30일(양력) 1번째기사 외진연 연회를 거행하다	함녕전(咸寧殿)에 나아가 외진연(外進宴)을 받았다.【상(上)이 익선관(翼善冠)에 황포(黃袍)를 갖추고 어좌(御座)에 오르자, 헌가(軒架)가 '보허자(步虛子)'를 연주하였다. 황태자(皇太子) 이하 종친과 문무 관리 3품 이상으로 자리에 있던 자들이 국궁(鞠躬)하고 사배(四拜)하였다. 전선사 제조(典膳司提調)가 주기(酒器)를 올리자, 헌가가 '여민락(與民樂)'을 연주하였다. 시접(匙楪)을 올리자, 등가(登歌)가 '순천개운지곡(順天開運之曲)'을 연주하고 무동(舞童)이 들어와 '제수창(帝壽昌)' 을 추었다. 전선사 제조가 대탁(大卓)을 올리고 또 찬안(饌案)을 올린 다음 또 별행과(別行果)를 올리자, 등가가 '천보구여지곡(天保九如之曲)'을 연주하였다. 근시(近侍)가 화반(花盤)을 봉진(奉進)하니, 등가가 '천자만년지곡(天子萬年之曲)'을 연주하였다. 염수(鹽水)를 올리자, 등가가 '구오강녕지곡(九五康寧之曲)'을 연주하고 무동이 들어와 '봉래의(鳳來儀)'를 추었다. 소선(小膳)을 올리자 황태자 이하가 국궁하고 사배하였다. 악사(樂師)가 '천향(天香)' 악장(樂章)을 부르자, 황태자가 제1작(第一爵)을 올리고 이어 사배하였으며 종친과 문무의 관리들이 국궁하고 사배하였다. 치사관(致詞官)이 치사문(致詞文) 읽기를 마치자 승제관(承制官)이 제명(制名)을 선포하기를, "술잔을 들어 축하하는 때이니 황태자와 이 경사를 함께 하리라." 하니, 등가	三十日。 御咸寧殿, 受外進宴。【上具翼善冠、黃袍陞座。 軒架作'步虛子', 皇太子以下、宗親、文武三品以上在位者, 鞠躬四拜, 典膳提調進酒器。 軒架作'與民樂', 進匙楪, 登歌作'順天開運之曲', 舞童入作'帝壽昌', 典膳提調進大卓。 又進饌案, 又進別行果。 登歌作'天保九如之曲', 近侍奉進花盤登, 歌作'天子萬年之曲', 進鹽水, 登歌作'九五康寧之曲', 舞童入作'鳳來儀', 進小膳。 皇太子以下鞠躬四拜, 樂師唱'天香樂章'訖, 皇太子進第一爵, 仍行四拜。 宗親、文武鞠躬四拜, 致詞官讀致詞文訖, 承制官宣制, 曰"稱觴之辰, 與皇太子同慶"。 登歌作'壽曜南極之曲', 舞童入作'獻仙桃', 進湯, 登歌作'萬年長春之曲', 進饅頭, 登歌作'天籙永昌之曲', 進湯,

	가 ‘수요남극지곡(壽曜南極之曲)’을 연주하고 무동이 들어와 ‘헌선도(獻仙桃)’를 추었다. 탕(湯)을 올리자, 등가가 ‘만년장춘지곡(萬年長春之曲)’을 연주하였다. 만두를 올리자, 등가가 ‘천록영창지곡(天籙永昌之曲)’을 연주하였다. 탕을 올리자, 등가가 ‘표정만방지곡(表正萬邦之曲)’을 연주하였다. 차를 올린 다음 황태자 이하가 국궁하고 사배하였다. 반수(班首)인 의정(議政) 심순택(沈舜澤)이 제2작을 올리자, 심순택 이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국궁하고 사배하였다. 승제관(承制官)이 제명을 선포하기를, “경들의 술잔을 공경히 들라.”하자, 등가가 ‘풍운경회지악(風雲慶會之樂)’을 연주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조병세(趙秉世)가 제3작을, 영돈녕원사(領敦寧院事) 윤용선(尹容善)이 제4작을, 완평군(完平君) 이승응(李昇應)이 제5작을, 학부 대신(學部大臣) 민영소(閔泳韶)가 제6작을, 참정(參政) 김성근(金聲根)이 제7작을, 내부 대신(內部大臣) 이건하(李乾夏)가 제8작을, 특진관(特進官) 김영목(金永穆)이 제9작을 올렸는데, 모두 위와 같은 의식으로 하였다. 등가가 ‘오만사년지곡(於萬斯年之曲)’을 연주하고 무동이 들어와 ‘몽금척(夢金尺)’을 추었다. 황태자 이하 종친들과 문무관이 국궁하고 사배하니, 등가가 ‘만수무강지곡(萬壽無疆之曲)’을 연주하고 무동이 들어와 ‘연백복지무(演百福之舞)’를 추었다. 찬의(贊儀)가 ‘산호(山呼)’를 창(唱)하니 황태자 이하가 공수(拱手)하여 이마 위에 올리고는 ‘만세, 만세’를 외치고 다시 산호하니 “만만세”를 외쳤다.】치사문에, “황제의 덕이 매우 밝고 업적이 빛나니 기나긴 운수를 내려주었으며 하늘의 도움으로 좋은 상서가 모여 해와 달처럼 끝없이 장수하고 태산 반석처럼 운수가 장구합니다. 천 년 만에 있는 훌륭한 거사는 선대의 경사를 더욱 빛내고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헌수의(獻壽儀)를 올립니다.” 하였다. 악장문(樂章文)에, “황제의 덕은 밝고 밝아 큰 위업을 거듭 빛내었어라	登歌作‘表正萬邦之曲’, 進茶。 皇太子以下鞠躬四拜。 班首議政沈舜澤進第二爵, 舜澤以下在位者, 鞠躬四拜, 承制官宣制, 曰“敬擧卿等之觴”。 登歌作‘風雲慶會之樂’, 特進官趙秉世進第三爵。 領敦寧尹容善進第四爵, 完平君李昇應進第五爵, 學部大臣閔泳韶進第六爵, 參政金聲根進第七爵, 內部大臣李乾夏進第八爵, 特進官金永穆進第九爵。 皆如上儀。 登歌作‘於萬斯年之曲’, 舞童入作‘夢金尺’, 皇太子以下宗親、文武鞠躬四拜。 登歌作‘萬壽無疆之曲’, 舞童入作‘演百福之舞’, 贊儀唱“山呼”, 皇太子以下拱手加額, 曰“萬歲, 萬歲”, 再“山呼”, “萬萬歲”。】 至詞文: “帝德克明, 駿烈有光, 錫以永年, 天佑吉祥。 日月升恒, 聖壽無疆, 泰山磐石, 寶曆靈長。 千載嘁擧, 先休益彰, 寸草報暉, 萬歲稱觴。” 樂章文: “帝德明明, 重光大業。 舊邦遹受新命, 治理馨香, 比隆三代。 乃文乃武神聖, 綿綿壽祿, 用降佑萬年惟慶, 南極一星湧現, 篷萊殿前輝暎, 西樓仰遵古事, 賁飾休祥再回申請。 大化醇醴似酒, 九區涵泳。 聖

	오랜 나라를 새로 물려받아 정사의 업적은 삼대 때처럼 높아라 문명하고 용감한 거룩한 임금들이 대를 이어 장수의 복을 내렸으니 만년을 내려갈 경사로다 남극성이 대궐 앞에 나타나 봉래전 앞에 빛을 뿌리는데 서루에서는 옛 일을 따라 경사를 축하하려 거듭 청을 올렸더라 크나큰 덕화는 술 마냥 무르녹아 온 누리가 젖어들었구나 성인의 시대에 위엄과 은혜를 베푸니 이 나라에 태평성세가 펼쳐졌거니 울긋불긋 옷차림으로 함께 즐기며 칭송하는 송가(頌歌) 소리 훌륭하여라.” 하였다.	代威露布濩, 見環海無風水如鏡, 彩服供歡, 善頌雅詠。”
고종 42권, 39년 (1902 임인 / 대한 광무(光武) 6년) 5월 31일(양력) 1번째기사 내진연 연회를 행하다	함녕전(咸寧殿)에서 내진연(內進宴) 행하였다. 제1작(第一爵)은 황태자(皇太子)가, 제2작은 황태자비(皇太子妃)가, 제3작은 영왕(英王)이, 제4작은 연원군부인(延原郡夫人)이, 제5작은 정경 부인(貞敬夫人) 한씨(韓氏)가, 제6작은 정부인(貞夫人) 홍씨(洪氏)가, 제7작은 정부인 이씨(李氏)가, 제8작은 종친의 반수(班首)인 완평군(完平君) 이승응(李昇應)이, 제9작은 척신(戚臣)의 반수인	三十一日。 行內進宴于咸寧殿。 第一爵, 皇太子; 第二爵, 皇太子妃; 第三爵, 英王; 第四爵, 延原郡夫人; 第五爵, 貞敬夫人韓氏; 第六爵, 貞夫人洪氏; 第七爵, 貞夫人李氏, 第八爵, 宗親班首完平君李昇應; 第九爵, 戚臣班首特進官金奭鎭。【儀註略】 仍行

	특진관(特進官) 김석진(金奭鎭)이 올렸다.【의주(儀註)는 생략한다.】 이어 야진연(夜進宴)을 행하였다.	夜進宴。
고종 42권, 39년 (1902 임인 / 대한 광무(光武) 6년) 6월 1일(양력) 1번째기사 진연청 당상과 진작할 재신 이하에게 시상하다	【음력 임인년(1902) 4월 25일이다.】 진연청 당상(進宴廳堂上)과 진작(進爵)할 재신(宰臣) 이하와 진연(進宴) 때의 비서원 승(祕書院丞)과 사관(史官), 황태자 시강원(侍講院)과 익위사(翊衛司), 전선사 제조(典膳司提調)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전선사 제조 이지용(李址鎔)에게 가자(加資)하였다.	一日。【陰曆壬寅四月二十五日】進宴廳堂上·進爵宰臣以下、進宴時丞史·春桂坊·典膳司提調以下, 施賞有差。典膳提調李址鎔, 加資。
고종 42권, 39년 (1902 임인 / 대한 광무(光武) 6년) 8월 9일(양력) 1번째기사 연회를 간략하게 치르도록 명하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이번 진연(進宴)의 절차는 황태자가 간절하고 지극한 효성으로 정성스럽게 여러 차례 간청하는 것을 가상히 여겨 마지못해 따른 것이다. 그러나 나라의 형편을 걱정하고 백성을 돌보려는 나의 지극한 뜻을 이해하여 제반 의식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번거롭게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이어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 김성근(金聲根),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윤정구(尹定求), 원수부 기록국 총장(元帥府記錄局總長) 이지용(李址鎔)을 진연청(進宴廳)의 당상(堂上官)으로 삼으라고 명하였다.	九日。 詔曰:“今番進宴之節, 嘉乃東宮誠孝, 肫篤屢懇, 不得已勉從。 而其體朕念國計恤民事之至意, 諸般儀節, 一從省略, 無令煩費。” 仍命議政府參政金聲根、議政府贊政尹定求、元帥府記錄局總長李址鎔, 爲進宴廳堂上。
고종 42권, 39년 (1902 임인 / 대한 광		四日。 宮內府特進官趙秉式疏略:“在

무(光武) 6년) 10월 4일(양력) 1번째기사 조병식이 관우묘의 제사에 대하여 아뢰다	궁내부 특진관(特進官) 조병식(趙秉式)이 상소를 올린 대략에, “옛날 한(漢) 나라 소열 황제(昭烈皇帝)는 왕위에 오르기 전에 마침 나라가 위험한 국면에 처하자 관우(關羽), 장비(張飛) 두 사람과 힘과 마음을 합쳐 한 나라를 도와 적들을 쳤습니다. 충성과 의리가 해와 별처럼 환히 빛나 후세 사람들이 충의를 가진 선비를 말할 때에는 반드시 유비(劉備), 관우, 장비, 세 사람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삼의사(三義祠)를 세우고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일찍이 동묘(東廟)와 남묘(南廟)에서 떠받들었는데, 폐하께서는 다시 북묘(北廟)를 세우고 황제의 칭호를 존숭하였으며 제사 등의 절차까지도 모두 할 수 있는 만큼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함께 맹약을 다진 한 나라 소열 황제와 장 환후(張桓侯)에 대해서는 아직 신령을 모시는 곳이 없으니 이야말로 훌륭한 시대의 흠이 됩니다. 특별히 삼의사를 세워 한 나라 소열 황제에게 주향(圭享)하고 관제(關帝)와 장 환후를 배향함으로써 청(淸) 나라에서 이미 시행하는 규례를 본받는 것이 의리를 내세우는 일단으로 될 듯 합니다. 의정부(議政府)와 장례원(掌禮院)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해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지금 경의 진술을 보니 참으로 평상시에 우러르는 뜻에 부합된다. 마땅한 처분이 있을 것이다.”	昔漢昭烈皇帝龍潛之時, 適當天下傾危之際, 與關、張二人, 同心同力, 扶漢討賊。 忠義炳炳, 耀如日星, 後世之稱忠義, 必曰劉、關、張三人。 此所以三義祠之設享也。 我國曾有東南廟尊奉之所, 而陛下復建北廟, 尊崇帝號, 至於享祀等節, 靡所不用其極。 而獨於同盟之漢昭烈、張桓侯, 尙無妥靈之所, 實爲晩世欠典也。 特設三義祠, 以漢昭烈皇帝爲主享, 以關帝、張桓侯爲配享, 以倣淸國已行之例, 恐爲義起之一端, 請令政府禮院稟處。” 批曰: “今見卿所陳, 允合平昔景仰之意。 當有處分矣。”
고종 42권, 39년(1902 임인 / 대한 광무(光武) 6년) 12월 7일(양력) 1번째기사 관명전에서 내진연을	관명전(觀明殿)에서 내진연(內進宴)을 거행하였다. 일곱 잔의 술을 받았다. 【첫 번째 잔은 황태자가, 두 번째 잔은 황태자비가, 세 번째 잔은 영왕(英王) 이은(李垠)이, 네 번째 잔은 연원 군부인(延原郡夫人)이, 다섯 번째 잔은	七日。 行內進宴于觀明殿, 受七爵。 【第一爵皇太子, 第二爵皇太子妃, 第三爵英王垠, 第四爵延原郡夫人, 第五爵左命婦貞敬夫人徐氏, 第六爵右命婦貞敬夫人郭氏, 第七爵宗親班首完平君

거행하다	좌명부(左命婦)인 정경 부인(貞敬夫人) 서씨(徐氏)가, 여섯 번째 잔은 우명부(右命婦)인 정경 부인 곽씨(郭氏)가, 일곱 번째 잔은 종친의 반수(班首)인 완평군(完平君) 이승응(李昇應)이 올렸다.】황태자 이하 내외명부(內外命婦), 종친 및 응참 인원(應參人員)들이 절차대로 의식을 행하였다.	李昇應】 皇太子以下內外命婦、宗親及應參人員, 行禮如儀。
고종 42권, 39년(1902 임인 / 대한 광무(光武) 6년) 12월 8일(양력) 2번째기사 진연청 당상 이하와 술잔을 올린 재신 이하를 서주하도록 하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황태자가 지극한 효성으로 여러 차례 계속 간절하게 아뢰어 경사를 축하하는 연회를 차렸으니 나의 마음이 기쁘다. 사의를 표하는 조치가 없을 수 없으니, 진연청(進宴廳) 당상(堂上) 이하와 술잔을 올린 재신(宰臣) 이하를 전례대로 서주(書奏)하라.” 하였다.	詔曰: “東宮誠孝篤摯, 屢懇不已, 賁飾慶會, 朕心嘉悅, 不可無示意之擧。進宴廳堂上以下、進爵宰臣以下, 依例書奏。”
고종 43권, 40년(1903 계묘 / 대한 광무(光武) 7년) 1월 4일(양력) 1번째기사 명헌 태후가 국모가 된 60년을 경축하는 제사를 지내는 절차를 마련하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김세기(金世基)가 아뢰기를, “오는 계묘년(1903) 1월 1일은 명헌 태후(明憲太后)께서 국모(國母)로 임한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칭경(稱慶)하고 진하(陳賀)할 때 종묘(宗廟)와 경효전(景孝殿)의 고유제(告由祭)는 정조(正朝)의 절향(節享)과 겸하여 행하고, 원구단(圜丘壇), 영녕전(永寧殿), 사직(社稷)의 고유제도 같은 날 일체 설행하되 축문(祝文)은 시독(侍讀)에게 지어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四日。 掌禮院卿金世基奏: “來癸卯年元朝明憲太后母臨六十年稱慶陳賀時, 宗廟、景孝殿告由祭, 正朝節享兼行, 圜丘、永寧殿、社稷告由祭, 同日一體設行, 祝文令侍讀撰出何如?” 允之。

고종 43권, 40년 (1903 계묘 / 대한 광무(光武) 7년) 1월 29일(양력) 4번째기사 황태자의 보령가 30세가 되는 것을 축하하여 기로연을 베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양로연(養老宴)은 나라의 일상 규례로서 열성조(列聖朝)에서 많이 시행하였다. 이는 곧 사람들에게 효심(孝心)을 일으키게 하려는 뜻이다. 지난해 미처 거행하지 못했던 전례(典禮)를 다시 거행하여 짐이 기로소에 들어가는 예를 행한 것은 백성들과 즐거움을 같이 하려는 뜻이 더욱 간절해서 이다. 또 동궁(東宮)은 장성하여 이제 30이 되었으니 짐의 마음이 여느 해보다 갑절 기쁘고, 늙은이와 아이가 기뻐하며 송축하는 일은 역시 화기(和氣)를 맞이하는 일로써 하늘에 나라의 명이 영원하기를 비는 일이다. 장례원(掌禮院)에서 전례를 참고해서 의절(儀節)을 마련하게 하고 찬품(饌品)은 되도록 간략히 준비하여 낭비가 없게 하라. 날짜는 음력 3월 20일 경으로 택하여 들이도록 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금년은 동궁의 보령이 30세가 되는 경사스런 해이다. 짐의 기쁨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기쁨을 나타내는 거조(擧措)가 없을 수 없다. 오는 음력 2월 8일 편전(便殿)에 나아가 백관에게 선온(宣醞)하고 사찬(賜饌) 할 것이다.”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오는 음력 2월 8일 선온하고 사찬할 때에 동궁이 시좌(侍坐)하는 절차를 전례대로 마련하라.” 하였다.	詔曰: “養老之宴, 國朝彝規, 而列聖朝多有行之, 寔惟及人興孝之義也。 往歲修擧未遑之典, 而自朕之行耆社之禮, 尤眷眷於同樂之意。 且東宮年紀鼎盛, 今屆三旬, 朕心嘉悅, 有倍常年矣。 黃髮兒齒歡欣頌禱, 亦所以導迎和氣, 祈天永命。 令掌禮院參考已例, 磨鍊儀節, 饌品務從省略, 無令煩費。 日字, 陰曆三月念間擇入。” 又詔曰: “今年乃東宮年紀方屆三旬之慶年也。 朕心嘉悅, 容有其已? 不可無識喜之擧。 來陰曆二月初八日, 當御便殿, 百官宣醞、賜饌矣。” 又詔曰: “來陰曆二月初八日宣醞、賜饌時, 東宮侍坐之節, 依例磨鍊。”
고종 43권, 40년 (1903 계묘 / 대한 광무(光武) 7년) 1월 29	장례원 경(掌禮院卿) 윤용식(尹容植)이 아뢰기를, “양로연(養老宴)을 전례를 상고해서 마련하라는 조령을 내렸습니다. 삼가 등	掌禮院卿尹容植奏: “養老宴參考已例磨鍊事, 詔下矣。 謹稽謄錄, 則在前養老宴設行時, 有竝設內、外宴之例,

일(양력) 6번째기사 장례원 경 윤용식이 기로연을 베풀 예식 절차를 의논하다	록(謄錄)을 상고해 보건대, 전에 양로연을 설행할 때에는 내연(內宴)과 외연(外宴)을 아울러 설행한 전례도 있고 외연만 설행한 전례도 있으며 내연만 설행한 전례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외연만 설치하라."	有只設外宴之例, 有只設內宴之例矣。今番則何以爲之乎。" 制曰: "只設外宴。"
고종 43권, 40년(1903 계묘 / 대한 광무(光武) 7년) 1월 30일(양력) 1번째기사 황태자가 상소를 올려 내연과 외연을 할 것을 아뢰다	황태자(皇太子)가 상소하기를, "사람의 자식으로서 어버이에게 원하는 것은 장수와 복록(福祿)을 누리시는 일입니다. 무릇 장수하는 물건에서 소나무·잣나무·거북이·학과 같은 일반 동식물(動植物)의 부류에 대해서는 오히려 보고서 사랑하고 노래하여 찬미하며 송축하면서 비유합니다. 우리나라 백성으로서 장수하는 백발 노인들은 모두 우리 부황 폐하(父皇陛下)의 천지와 같은 큰 덕에 편히 지내며 인수(仁壽)를 누리고 때로 오복(五福)을 거두어 백성들에게 펴시므로 백성들이 사람마다 화봉인(華封人)의 축원117) 과 맥구인(麥邱人)의 헌사118) 를 본받고 있습니다. 억조창생의 소원을 모아 한 사람에게 돌려 우리 부황 폐하께서 끝없는 장수와 복록을 누리실 것입니다. 소자(小子)는 노인을 존경하고 어버이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미루어 사랑할 것입니다. 지난 계사년(1893)에 소자는 안에서 여러 차례 청하였으나 양로연을 금년에 거행함은 본래 시행해야 할 일로서 그만 둘 수 없는 것입니다. 대체로 영수각(靈壽閣)에서 예(禮)를 행함은 국조(國朝) 이래 네 번 있는 큰 경사입니다. 삼가 숙종(肅宗)과 영조(英祖) 두 성조(聖朝)의 고사(故事)를 상고하면 기신(耆臣)들과 같이 즐겨 서민(庶民)에게까지 미치도록 하였고 연회를 크게 벌여 상서로움을 꾸몄던 일이 한 해에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三十日。 皇太子上疏曰: 伏以人子之願乎其親者, 壽考福祿。凡物之壽者, 如松柏龜鶴尋常動植之類, 猶見而愛之, 歌詠而美之, 頌禱以況之。 若其壽域人民黃耇戴白者, 皆我父皇陛下大德如天地, 休養生息, 躋之仁壽。 斂時五福, 敷錫厥庶, 惟厥庶民, 人人效華封之祝、麥邱之獻。會其億兆之願, 歸于一人, 用保我父皇陛下無疆之壽、無疆之祿。 小子敬高年、推愛親之心以愛之, 粤在癸巳, 小子自內屢請而宴耆老。 今年之擧, 自是當行而不可已者。 蓋靈壽閣行禮, 國朝以來, 四有之大慶, 而謹稽肅廟、英廟兩聖朝故事, 與耆臣同樂, 以及庶民, 誕陳豐豫, 賁飾禎祥, 歲而不一焉。 今小子日與之扶携傴僂, 舞綵衣,

	소자는 날마다 나이든 노인들을 부축하여 색동옷을 입고 춤추고 좋은 술을 올리며 즐거움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어찌 정성의 만분의 일이라도 펼 수 있겠습니까? 대체로 이 거조는 예는 소박하나 뜻은 진실하여 상하의 마음을 통하게 하여 여러 사람과 함께 즐기면 됩니다. 이렇듯 천 년에 한 번 만나기 어려운 경사를 맞이해서 하늘의 마음에 보답하고 여러 사람의 말에 부응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대소 신민(臣民)이 소망하는 바는 북두칠성처럼 장수하기를 술잔을 올려 축수하고 남산(南山)처럼 장수하기를 기원하고 성대한 덕을 형용하여 풍류에 실어 봉황(鳳凰)과 온갖 짐승이 춤추는 속에서 환호성을 지르며 기쁨과 조화로 가득한 가운데에서 양양(洋洋)하게 손뼉치고 춤추는 것입니다. 이는 온 나라 사람들의 한결같은 말이요 소자의 사사 소견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황 폐하께서 겸양(謙讓)하여 억제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우리 국가에 이미 시행한 전례가 있으니 의당 따라서 시행하여 전칙(典則)에 흠이 있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임에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조정의 여론을 듣고 고례를 원용(援用)하여 감히 우러러 청하오니 굽어 살펴 내외의 진연(進宴)을 속히 윤허하시어 위로는 떳떳한 법을 준수하고 아래로는 은미한 정성을 따르도록 하소서.” 히니, 비답하기를, “너의 상소를 보고 너의 간절함을 살폈다. 인용한 것은 우리의 예이고 진달한 것은 여러 사람의 여망이다. 짐이 어찌 이해하지 못하겠는가만, 지금 백성들의 일과 나라의 계책을 돌아보면 이렇게 크게 벌일 여유가 없다. 그러나 너의 간절하고 진지한 정성과 효성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되도록 간소하기에 힘써 양로연(養老宴)에 합하여 설행하되 같은 날 설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捧瑤觴, 以供歡愉, 而曷足以伸萬一之忱哉? 夫是擧也, 禮野而意眞, 通上下之情, 與衆共之, 則可矣; 遇有此千載罕覯之事, 而其所以答天心、副輿言, 則未也。 小大之顒望者, 擎北斗之樽, 奉南山之壽, 形容聖德, 被之磬笙, 洋洋抃蹈於鳳儀獸蹌之中、歡聲協氣之內矣。 此乃市域含生大同之言, 非小子之私也, 父皇陛下有未可謙而抑之矣。 矧有我家已行之例, 宜其率而由之, 不可使典則有缺焉者乎? 聽于朝而援於古, 庸敢仰請。 伏願俯垂採察, 內、外進宴之節, 亟降俞音, 仰遵彝章, 俯循微誠焉。 批曰: “覽爾疏, 省爾懇, 所援者我禮也, 所陳者輿願也, 朕豈不諒? 而顧今民事國計, 不暇爲此張大之擧矣。 然而爾之誠孝之切摯, 亦不可不念。 務從省略, 合設於養老宴, 同日行之, 可也。” 【원본】 47책 43권 6장 B면

	---------- [註 117]화봉인(華封人)의 축원 : 요(堯)가 화(華) 땅을 순행할 때에 그 지역을 지키는 봉인이 요를 위하여 수(壽)와 부귀(富貴)와 다남자(多男子) 세 가지를 축원해 준 일을 말한다.《장자(莊子)》〈천지(天地)〉 ☞ [註 118]맥구인(麥邱人)의 헌사 : 춘추 시대 제(齊) 나라 환공(桓公)이 맥구에 이르렀을 때 어떤 노인이 환공에게 금옥(金玉)을 귀하게 여기지 말고 사람을 보배로 여기고 배움을 부끄러워하거나 묻기를 꺼리지 말고, 신하와 백성들에게 죄를 얻지 않도록 하라는 세 가지 일로 기원한 일을 말한다.《신서(新序)》 〈잡서(雜書)〉 ☞	
고종 43권, 40년 (1903 계묘 / 대한 광무(光武) 7년) 2월 5일(양력) 1번째기사 양로연의 의식 절차를 간소하게 하여 비용을 줄이도록 명하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양로연(養老宴)은 나라의 떳떳한 규례로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어진 마음과 효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동궁(東宮)이 또한 우리나라에서 시행했던 규례들을 인용하면서 진연(進宴)하는 절차를 굳이 청하기에 마지못해 합쳐서 설행할 것을 애써 허락은 하였지만, 지금 백성들과 나라의 살림이 어려운 것을 생각하니, 짐(朕)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 제반 의식 절차는 일체 간소하게 하여 될 수 있으면 비용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五日。 詔曰:“養老之宴, 寔惟國朝彝規, 而亦惟興仁、興孝之義也。 東宮又援引我家已行之例, 固請進宴之節, 雖不得已勉許合設, 而顧今民國事計之艱絀, 朕心不無歉然者存。 諸般儀節, 一從商略, 務令省費可也。”
고종 43권, 40년 (1903 계묘 / 대한 광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二十三日。 詔曰:“咸鏡南、北道洊被歉荒, 蔀屋懸磬, 黎庶呼庚、顚連、仳

무(光武) 7년) 2월 23일(양력) 1번째기사 경상, 전라도의 환곡 2만 석을 보내어 함경도의 흉년을 구제하도록 하다	“함경 남북도(咸鏡南北道)에 거듭 흉년이 들어 가난한 집에 식량이 떨어져 백성들이 식량을 구하려다가 못하여 연달아 쓰러지고 유리걸식하는 모양이 눈앞에 보는 듯하니, 백성들을 생각하여 밤낮으로 근심이다. 더구나 봄철이 이미 이르러 농사를 지어야 할 터인데 쌀독이 모두 비어서 못 먹어 부황이 들고 곱사등이처럼 펴지 못하여 생존하지 못할 지경이겠는가? 그들이 어떻게 밭에서 힘써 일하여 추수를 바랄 수 있겠는가? 경상도(慶尙道)·전라도(全羅道) 두 도의 사환미(社還米)119) 가운데 2만 석(石)을 특별히 해당 도로 이획(移劃)하여 죽어가는 목숨을 빨리 구제하게 하고 또한 그것으로 농사지을 양식에 돕게 함으로써 조정에서 불쌍히 여겨 사랑해 주는 지극한 뜻을 보이게 하라.” 하였다.	離之狀, 如在目前, 言念赤子, 宵旰憂勤。 矧玆春序已及, 將有事於耒耜, 而瓶罄旣空, 菜色浮黃, 傴僂圉圉, 不能自存, 其何以服田力作望其有秋乎? 慶尙、全羅兩道社還米中二萬石, 特令移劃該道, 使之亟救近止之命, 亦以助資農糧, 以示朝家矜恤字撫之至意。” 【원본】 47책 43권 10장 B면
고종 43권, 40년(1903 계묘 / 대한 광무(光武) 7년) 4월 5일(양력) 1번째기사 양로연 때 외진연과 겸행할 때의 진작하는 재신을 임명하다	양로연(養老宴)을 외진연(外進宴)과 겸행할 때의 진작하는 재신(宰臣)으로 영돈녕원사(領敦寧院事) 심순택(沈舜澤),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 조병세(趙秉世)·윤용선(尹容善),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이근명(李根命), 완평군(完平君) 이승응(李昇應), 궁내부 특진관 이순익(李淳翼)·김석근(金晳根), 경효전 제조(景孝殿提調) 서상조(徐相祖)를 낙점하였는데, 이순택은 기로(耆老)의 반수(班首)이고, 이근명은 백관의 반수이다.	五日。 點下養老宴兼行外進宴時進酌宰臣: 領敦寧院事沈舜澤、宮內府特進官趙秉世·尹容善、議政府議政李根命·完平君李昇應、宮內府特進官李淳翼·金晳根、景孝殿提調徐相祖。 舜澤, 耆老班首; 根命, 百官班首也。
고종 43권, 40년(1903 계묘 / 대한 광무(光武) 7년) 11월 2	【음력 계묘년(癸卯年) 9월 14일】	一日。【陰曆癸卯九月十三日】 二日。 太醫院口奏: “水剌進御之際, 沙石混入御膳, 齒部受損云。 亟許臣

일(양력) 1번째기사 수라에 모래가 섞여 의관들이 입진할 것을 청하다	태의원(太醫院)에서 구두로 아뢰기를, “수라(水剌)를 드릴 때에 반찬에 모래가 섞여 들어가 치부(齒部)가 손상받았다고 합니다. 빨리 신 등에게 의관(醫官)을 거느리고 입진하도록 허락하시고, 청컨대 전선사장(典膳司長) 이하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심하게 손상받지 않았으니 입진은 그만두라. 죄를 처리하는 일은 마땅히 처분을 내릴 것이다.” 하였다.	等率醫官入診。 典膳司長以下, 請照律嚴勘。” 批曰: “無甚受損, 入診, 置之。 勘罪一事, 當有處分矣。”
고종 43권, 40년(1903 계묘 / 대한 광무(光武) 7년) 11월 2일(양력) 2번째기사 수라상을 차린 전선사장에게 3개월 감봉하도록 하다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의 서리(署理) 성기운(成岐運)이 아뢰기를, “방금 듣건대 폐하(陛下)께 음식을 올릴 때 애당초 신중히 살피지 않아 모래까지 섞여 들어가 치부에 손상이 있었다고 하니, 전에 없던 일로서 대단히 놀랍습니다. 해당 전선사(典膳司)의 관원들과 일을 거행한 하속(下屬)들을 모두 법부(法部)로 하여금 법에 따라 정죄(定罪)해야 할 것입니다. 전선사장(典膳司長)으로 말하면 평소에 깨끗하고 정성스럽게 조심하고 삼가했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우선 본관을 면직시키고, 또한 법부로 하여금 일체 엄중하게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해사(該司)의 장(長)과 같은 경우는 직분이 음식을 진배(進排)하는 것뿐이니 마땅히 참작해야 할 것이다. 3개월간 감봉(減俸)하라.” 하였다.	宮內府大臣署理成岐運奏: “卽伏聞御膳進供之際, 初不審愼, 至於沙石攙入, 以致齒部有損。 事未前有, 萬萬驚悚。 當該典膳司官員與擧行下屬輩, 竝令法部照律定罪。 以典膳司長言之, 苟於平日潔誠操飭, 安有是也? 爲先免本官, 亦令法部一體重勘何如?” 制曰: “依奏。 至如該司長, 職是進排而已, 宜有參酌。 三個月減俸。”

고종 43권, 40년 (1903 계묘 / 대한 광무(光武) 7년) 11월 3일(양력) 1번째기사 의정부 의정 이근명이 어선의 일로 아뢰다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이근명(李根命)이 어선(御膳)의 일로 아뢰니,【내용은 궁내부(宮內府)의 주본(奏本)과 대략 같다.】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조심하고 삼가지 못한 점이 있다. 해사(該司)의 장(長)은 3개월간 감봉(減俸)하라.” 하였다.	三日。 議政府議政李根命奏以御膳事。【措辭與宮內府奏本略同。】 制曰:“不能操飭則有矣。 該司長, 三個月減俸。”
고종 43권, 40년 (1903 계묘 / 대한 광무(光武) 7년) 11월 29일(양력) 1번째기사 날씨가 추워서 진전에 직접 다례를 지내기로 한 명령을 철회하다	태의원(太醫院)에서 구전(口傳)으로 아뢰기를, “날씨가 점점 추워지니 진전(眞殿)의 다례를 친히 행하겠다고 한 명을 거두소서.” 하니, 마지못해 따른다는 비답을 내렸다. 이어 윤 특진관(尹特進官)이 나아가 거행하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二十九日。 太醫院口奏:“日寒轉甚, 請寢眞殿茶禮親行之命。” 賜批勉從。 仍命尹特進進去擧行。
고종 44권, 41년 (1904 갑진 / 대한 광무(光武) 8년) 5월 10일(양력) 2번째기사 경효전에 큰 제사를 지낼 때 음악을 쓰는 여부에 대해 논의하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이근수(李根秀)가 아뢰기를, “효혜전(孝惠殿)에 졸곡(卒哭) 제사를 지낸 뒤, 경효전(景孝殿)에 큰 제사를 지낼 때 음악을 쓸지의 여부에 대하여 원임 대신(原任大臣)들에게 품처(稟處)하도록 주하(奏下)가 있었습니다. 낭청(郎廳)을 파견하여 문의하여 보았는데, 봉조하(奉朝賀) 김병국(金炳國)과 영돈녕원사(領敦寧院事) 심순택(沈舜澤),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 조병세	掌禮院卿李根秀奏: “孝惠殿卒哭後, 景孝殿大享時用樂與否, 問于原任大臣稟處事, 奏下矣。 發遣郎廳問議, 則奉朝賀金炳國、領敦寧院事沈舜澤、宮內府特進官趙秉世, 皆病未獻議。 宮內府特進官尹容善以爲:‘癃病昏昏,

	(趙秉世)는 모두 병 때문에 의견을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궁내부 특진관 윤용선(尹容善)은, '병 때문에 정신이 혼미한데다가 예학(禮學)에 어둡기까지 해서 감히 억측으로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만, 경효전에 제사를 지낼 때의 복색(服色)을 이미 전례대로 포단령(布團領)으로 마련한 이상 큰 제사 때에 음악을 쓰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널리 물어서 결재하여 처분하기를 바랄 뿐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궁내부 특진관 이근명(李根命)은, '졸곡 제사 후의 큰 제사에는 음악을 써야 하는 것이지만, 경효전에 제사할 때 포단령으로 마련한 만큼 음악을 쓰는 것은 마땅하지 않은 일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근거로 삼을 규례가 없는데다가 신은 워낙 예절에 어둡기까지 해서 감히 억측으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널리 물어서 결재하여 처분하기를 바랄 뿐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대신(大臣)들의 의견이 이러하니 폐하(陛下)께서 결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대신들의 의견대로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충목공(忠穆公) 유응부(兪應孚)의 봉사(奉祀)를 해당 문중에서 의정(議定)한 후 다시 품처(稟處)하도록 이미 주하(奏下)가 있었습니다. 양주(楊州) 유학(幼學) 유진국(兪鎭國) 등이 올린 정단(呈單)을 보니, '순묘(純廟) 신미년(1811)에 방계 조상인 충목공 유응부의 양자를 세우는 문제를 가지고 경기(京畿) 유생 이유제(李維濟) 등이 상소를 올려 특별히 윤허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을유년(1825)에 여러 직계 가문의 친척들이 방계 자손인 유대근(兪大根)의 아들 유현문(兪顯文)을 사손(祀孫)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상언(上言)한 것으로 인하여, 예조(禮曹)에서 주달(奏達)한 뒤 입안(立案)하여 성급(成給)하였습니다. 유현문이 지금 또 불행하게 아들이 없어서 제사를 받들	且昧禮學, 未敢臆對。 而景孝殿祭享時服色, 旣已依例, 以布團領磨鍊, 則大享時用樂, 恐涉難安。 惟願博詢而裁處焉。' 云。 宮內府特進官李根命以爲: '卒哭後大祀用樂, 而景孝殿祭享時服色, 以布團領磨鍊, 則用樂恐有所難安。 然而旣無可援之例, 臣又素昧禮節, 未敢臆對。 惟願博詢裁處焉。' 云矣。 大臣之議如此, 上裁何如?" 制曰: "依大臣議爲之。" 又奏: "忠穆公兪應孚奉祀, 令該門中議定後更爲稟處事, 已有奏下矣。 卽接楊州幼學兪鎭國等呈單, 則以爲: '粵在純廟辛未, 以旁祖忠穆公應孚立後事, 有京畿儒生李維濟等疏請, 特蒙允許。 而乙酉因諸宗等上言, 以旁孫大根之子顯文, 定爲祀孫之意, 自禮曹奏稟後, 立案成給矣。 顯文今又不幸無子, 主鬯無人, 故自門中齊會爛議, 以顯文之四從姪鳳在子前掌令鎭三, 繼顯文之後, 定爲忠穆公奉祀孫。 玆敢仰籲, 伏乞奏稟天陛、立案成給。' 仍蒙旌閭之典事爲辭矣。 請依所訴, 以兪鳳在子鎭三, 立繼兪顯文之後, 定爲忠穆公臣兪應孚奉祀孫, 立案成給, 仍施旌閭

	사람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문중이 모여서 충분히 의논하여, 유현문의 5촌 조카인 유봉재(兪鳳在)의 아들 전 장령(前掌令) 유진삼(兪鎭三)으로 유현문의 뒤를 잇게 해서 충목공의 봉사손(奉祀孫)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감히 호소하니, 삼가 바라건대 폐하(陛下)에게 주달하고 입안하여 성급해 주시고, 이어 정문을 세워 주는 은전(恩典)을 베풀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소청대로 유봉재의 아들 유진삼을 유현문의 양자(養子)로 세워 충목공 신(臣) 유응부의 봉사손으로 정하고, 입안하고 성급하는 동시에 정문을 세워 주는 은전을 베푸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이어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이제는 여섯 신하의 사손(祀孫)이 모두 있게 되었으니, 멀리 지나간 옛일을 회고해 보건대 어찌 크나큰 감흥을 이길 수 있겠는가? 충정공(忠正公) 박팽년(朴彭年), 충문공(忠文公) 성삼문(成三問), 충간공(忠簡公) 이개(李塏), 충렬공(忠烈公) 하위지(河緯地), 충경공(忠景公) 유성원(柳誠源), 충목공 유응부의 신주에 예관(禮官)을 보내 치제(致祭)하라. 또 이로 인하여 개연한 생각이 떠오르니, 충의공(忠毅公) 엄흥도(嚴興道)의 신주에도 똑같이 치제하라. 그 사손들은 모두 궁내부(宮內府)에서 초사(初仕)에 등용하되, 이미 사인(仕人)인 경우에는 수령(守令)으로 등용하라." 하였다.	之典何如?" 允之。 仍詔曰: "六臣今皆有祀孫矣。 緬懷往昔, 豈勝曠感? 忠正公朴彭年、忠文公成三問、忠簡公李塏、忠烈公河緯地、忠景公柳誠源、忠穆公兪應孚祠版, 遣禮官致祭。 亦有所因是而興慨者, 忠毅公嚴興道祠版, 一體致祭, 其祀孫, 竝令宮內府初仕調用, 已仕人, 守令調用。"
고종 45권, 42년 (1905 을사 / 대한 광무(光武) 9년) 1월 3일(양력) 1번째기사 빈전에 나가 빈전을	빈전에 나아가 계빈전(啓殯奠)을 행하였다. 황태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三日。 詣殯殿, 行啓殯奠。 皇太子隨詣, 行禮。

여는 제사를 지내다		
고종 45권, 42년 (1905 을사 / 대한 광무(光武) 9년) 1월 5일(양력) 1번째기사 의효전에 나가 조상식을 올리고 주다례를 지내다	의효전(懿孝殿)에 나아가 조상식(朝上食)을 올리고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황태자(皇太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五日。 詣懿孝殿, 行朝上食晝茶禮。 皇太子隨詣, 行禮。
고종 45권, 42년 (1905 을사 / 대한 광무(光武) 9년) 6월 17일(양력) 2번째기사 궁중에서 거행하는 행사에 적극 참여하라고 명하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근래에 궁중에서 거행하는 여러 가지 공고(公故)에 참여하는 일에 게으름을 부리는 일이 버릇으로 되었기에 일찍이 신칙한 바가 있건만 심지어 친행(親行)하는 행사에도 전혀 반열을 이루지 못하고 불과 몇 사람뿐이다. 평소에 예사로 궐참(闕參)한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명분과 의리상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가? 실로 개탄할 노릇이다. 행사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현고(現告)한 여러 사람들을 모두 1개월 감봉(減俸)하라.” 하였다.	詔曰: “邇來諸般公故, 懈弛成習, 亦嘗有所申飭, 而至於親行, 全不成班綴, 不過幾人而已。 平時之無難闕參, 推此可知。 其於分義道理, 寧容若是? 良用慨歎, 捧現告不參諸人, 竝一箇月減俸。”
고종 46권, 42년 (1905 을사 / 대한 광무(光武) 9년) 8월 11일(양력) 1번째기사 완흥군의 환갑을 맞아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완흥군(完興君)의 환갑날이 가까워온다. 이날 비서감(祕書監)의 승(丞)을 보내어 안부를 묻고, 음식물은 궁내부(宮內府)에서 돈 5,000냥(兩), 쌀 30석	十一日。 詔曰: “完興君回甲在邇。 伊日, 遣祕書丞存問, 食物令宮內府, 錢五千兩、米三十石、粘米十五石、眞末五斗、淸蜜五斗、眞油五斗輸送。”

물품을 내려 주다	(石), 찹쌀 15석, 밀가루 5두(斗), 청밀 5말, 참기름 5말을 실어 보내라.” 하였다.	
고종 46권, 42년 (1905 을사 / 대한 광무(光武) 9년) 11월 12일(양력) 1번째기사 종묘에 효혜전의 신주를 모시기 전에 아침저녁으로 상식을 올리도록 하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상기(祥期)가 내달로 다가왔으니, 인정과 도리를 더욱 어떻게 누르겠는가? 우리나라에서 이미 시행한 전례에도 근거할 만한 것이 있을 것이니 태묘(太廟)에 효혜전(孝惠殿)의 신주를 모시기 전에 그대로 아침저녁으로 상식을 올리고 주다례(晝茶禮)를 지냄으로써 추모하는 마음을 펼 것이다.”	十二日。 詔曰:“祥期隔月, 情理尤何可堪抑? 我家已行之例, 亦有可援者, 孝惠殿祔太廟前, 仍行朝·夕上食、晝茶禮, 庶伸寓慕之忱矣。”
고종 46권, 42년 (1905 을사 / 대한 광무(光武) 9년) 11월 30일(양력) 1번째기사 화재가 난 어물전 상인들을 구제해 주도록 하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지난밤에 어물전(魚物廛)이 불탔다는 말을 듣고 매우 놀랐다. 이런 추운 계절에 상인들이 거처할 곳을 잃었으니 몹시 측은한 생각이 든다. 더구나 화폐가 나올 길이 막혀서 그대로 지탱할 수 없던 데다 이렇듯 뜻밖의 재난까지 당했으니, 저들이 비용을 마련해 집을 짓는다는 것은 사실 말할 여지조차 없는 것이다. 특별히 돈 8,000환(圜)을 내려 보내니 내부(內部)와 농상공부(農商工部)에서 별도로 집을 지을 방도를 강구하고 특별히 감독하고 신칙해서 그들을 즉시 살 수 있게 함으로써 조정에서 구휼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三十日。 詔曰:“去夜魚物廛回祿, 聞甚驚駭。 當此寒節, 商民之失所棲遑, 極爲矜憫。 矧玆貨幣壅閼, 自無以支保, 而又有此意外之災, 渠輩之措辦營築, 實未暇言矣。 特下錢八千圜, 令內部、農商工部另究結構之方, 別般董飭, 使得不日奠居, 以示朝家字恤之

		意。”
고종 48권, 44년 (1907 정미 / 대한 광무(光武) 11년) 2월 12일(양력) 1번째기사 경효전, 의효전 등에 별다례를 지내다	경효전(景孝殿), 의효전(懿孝殿)에 나아가 별다례(別茶禮)를 행하였다. 황태자(皇太子)가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十二日。 詣景孝殿、懿孝殿, 行別茶禮。 皇太子隨詣, 行禮。

2. 순 종 실 록 기 사 자 료 집

순종실록 기사자료집

출처	내용	원문
순종 1권, 즉위년(1907 정미 / 대한 융희(隆熙) 1년) 8월 6일(양력) 2번째기사 장례원 경 신기선이 관례에 대하여 상소를 올리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신기선(申箕善)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삼가 생각건대, 거룩한 황제가 자리를 물려주어 폐하가 이어받게 되었으므로 나라의 영원한 복과 경사가 지금부터 시작되었으니 신하들과 백성들은 황제의 자리를 이어받은 폐하를 우러르면서 다같이 기뻐합니다. 신이 이때에 예관(禮官)에 있으면서 예를 상고하고 의논을 결정할 때에는 언제나 서툴거나 잘못될까봐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나라의 예법에 한두 가지 의심스러운 것이 있어서 한 번 진달하려고 생각하였지만 매번 직분을 벗어나는 것을 혐의하여 그만두곤 하였습니다. 지금 성인이 새 교화를 펴는 초기에 마침 유사(有司)의 반열에 있어서 의리상 감히 끝내 침묵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있으니 성명께서는 살펴주소서. 신은 듣건대, 제왕의 가법(家法)에는 의(義)를 은혜보다 중하게 여기므로 비록 부자간의 친한 사이에도 임금과 신하의 분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세자가 임금에 대해서 반드시 자기를 ‘신(臣)’이라고 부르고, 자리를 이은 예묘(禰廟)와 조묘(祖廟)에서 반드시 ‘신’이라고 부르며, 임금 자리를 물려받은 제왕이 상황(上皇)과 상왕(上王) 앞에서 반드시 ‘신’이라고 부릅니다. 역대의 고사(故事)를 명백하게 상고할 수 있으며 우리 왕조 500년간에도 시종 준행하고	掌禮院卿申箕善疏曰: “伏以堯傳舜受, 龍飛御極, 宗祊延萬年之祚, 休恤伊始, 臣民仰重華之始, 歡忭惟均。 臣於此際待罪春官, 考禮定議, 恒懼疎謬。 而嘗於近日國家之禮, 竊有一二抱疑者, 思欲一陳, 每嫌越俎而止。 今値聖人新化之初, 適在有司之列, 義有不敢終默者, 惟聖明垂察焉。 臣聞帝王家法, 義重於恩, 雖父子之親, 而有君臣之分。 故儲君之於至尊, 必稱‘臣’, 嗣君之於禰廟、祖廟, 必稱‘臣’, 受禪帝王之於上皇、上王, 必稱‘臣’, 歷代故事, 灼然可考, 我朝五百年終始遵行, 未之或改也。 自丁酉以後, 忽變是例, 宗廟祝文, 不稱‘臣’, 陛下之在儲宮也, 陳疏稱小子而不稱‘臣’, 臣

	혹시라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유년(1897) 이후로 이 규례를 갑자기 변경하여 종묘(宗廟)의 축문(祝文)에도 '신'을 일컫지 않으며, 폐하가 세자로 있으면서 상소할 때도 '소자(小子)'라고 쓰고 '신'을 일컫지 않았으니, 신은 그것이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로 의리를 가려 임금과 신하의 분의를 드러내지 않았으니, 신은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래되지 않아서 회복하는 것은 군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이제부터 종묘의 축문에도 옛 규례를 준행하여 '신' 자를 쓰고 폐하께서도 또한 태황제 앞에서 반드시 '신'이라고 일컬을 것이며, 이번 덕수궁(德壽宮)에 공손히 올리는 책문(冊文) 가운데서도 전례대로 '신' 자를 쓰소서. 신이 듣건대, 공자(孔子)는 만대 제왕들의 스승인데, 스승의 존귀함은 임금이나 아버지와 같아서 세 사람에게 생장하여 한 사람을 섬기는 의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한(韓)나라 이후로 제왕들이 문묘(文廟)에 제사 지낼 때에 존경을 종묘 사직(宗廟社稷)의 제사 때와 같게 하였고, 그 축문에는 대체로 '감히 밝게 고합니다.〔敢昭告于〕'라는 글자를 써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라(新羅), 고려(高麗) 이후로 본조에 이르기까지 시종 준행하고 혹시라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유년 이후로 갑자기 '감히 밝게 고합니다.〔敢昭告〕'를 '삼가 제사 지냅니다.〔謹祭〕'로 고쳤으니, 이것은 스승을 존경하고 도를 숭상하는 의리가 전혀 아니기에 아주 온당치 않습니다. 지금은 사문(斯文)이 땅에 떨어지고 이단(異端)의 말이 떠들썩한 때인 만큼 비록 그 예를 더하여 높이더라도 오히려 유지해 내지 못할까 두려운데, 더구나 축문 내용에서 전보다 깎아내리는 것처럼 하니 되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올가을 석채(釋菜) 때부터는 빨리 옛 규례를 회복하여 '감히 밝게 고합니다.'라고 쓰도록 하소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공자의 봉작(封爵)도 왕이니 지금 황제의 자리에 오	未知其何由也。 以恩掩義, 不著君臣之分, 臣以爲決不可也。 不遠而復, 君子所貴。 伏願繼自今, 宗廟祝文, 遵舊例書臣字, 陛下亦必稱臣於太皇帝前, 今番德壽宮祗上冊文中, 依例書'臣'字焉。 臣聞孔子, 萬世帝王之師也, 師道之尊, 齊於君父, 有'生三事一'之義。 故自漢以來, 帝王之祀孔廟, 其尊敬, 等於宗社, 其祝文, 大抵書'敢昭告于'字, 而我東自羅、麗以來, 訖于本朝, 終始遵行, 未之或改也。 丁酉以後, 忽'改敢昭告'爲'謹祭', 甚非尊師崇道之義, 萬萬未安。 今當斯文墜地; 異言喧豗之際, 雖增其禮而尊之, 猶懼不能扶植。 況於祝辭, 有若降損於前乎? 伏願自今秋釋菜, 亟返舊例, 以'敢昭告于'書之焉。 或曰, '孔子封爵爲王, 則今於御皇帝位之後, 禮數宜有少異'。 此大不然。 尊孔子者, 尊其道也, 非爲爵也。 況周時之王, 卽今之皇帝, 祝辭句語, 寧有別於爲王、爲皇之時乎? 臣謹按書曰, '黷于祭祀, 時謂弗欽, 禮煩則亂, 事神則難'。 又曰, '典祀無豐于昵'。 禮緣情起, 亦有限節。 三年之內, 不忍死其

	른 뒤에는 예수(禮數)가 의당 좀 달라져야 한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자를 높이는 것은 그 도를 높이는 것이고 작위 때문이 아닙니다. 하물며 주(周)나라 때의 왕은 바로 지금의 황제인 만큼 축문의 어구에 어찌 왕이 된 때와 황제가 된 때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신이 삼가 《상서(尙書)》를 살펴보건대, '제사를 함부로 지내는 것을 이것을 일러 공경하지 않는다 하니, 예는 번거로우면 신을 섬기기 어렵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제사를 주관함에 가까운 사당(祠堂)에만 풍성하게 하지 마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예는 인정으로 말미암아 생겨나지만 또한 한계와 절도가 있는 법입니다. 상사가 난 지 3년 안에는 그 부모를 차마 죽었다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살아 있을 때와 같이 아침저녁으로 음식을 올리며 대상(大祥) 제사를 지내고 빈소를 걷은 다음에는 귀신으로 섬기면서 사계절의 속절(俗節)과 삭제(朔祭), 망제(望祭)만을 지내니, 이것이 삼대 이후로 공사간의 상례(喪禮)와 제례(祭禮)의 공통된 의리이고 큰 법입니다. 지금 삼가 보건대, 경효전(景孝殿)과 의효전(懿孝殿)에 대하여 3년이 지난 후에도 오히려 아침저녁의 상식(上食)과 주다례(晝茶禮)를 지내는데, 이것은 예에 없는 것입니다. 심정은 끝이 없지만 예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복은 3년이 넘도록 입을 수 없는 만큼 상식 제사를 어떻게 3년을 넘길 수 있겠습니까? 국초에 문소전(文昭殿)에 달마다 제사 지내고 날마다 제사 지내는 규례가 있었는데 중세의 유신(儒臣)이 그것이 예가 아니라 극력 말하여 폐지하였습니다. 선왕(先王)이 폐지한 것을 지금 다시 행하되 더욱 심하게 하니, 어찌 아주 온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사를 함부로 지내거나 가까운 사당에만 풍성히 지낸다면 장차 만대의 의논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잘못을 고치기를 꺼리지 말고 경효전과 의효전의 상식과 다례를 빨리 중지하여 선성(先聖)과 선왕의 예에서 벗어나지 마소서.	親, 故象生而朝夕饋奠, 旣祥而靈几遂撤, 則事之以神, 而惟有四時俗節朔望之祭奠焉。 是乃三代以來, 公私喪祭禮之通義大防也。 今伏見景孝殿、懿孝殿, 三年以後, 尙行朝夕上食晝茶禮, 此無於禮也。 情雖無窮, 禮則有限。 服旣不能過三年, 則饋奠何可過三年乎? 國初文昭殿, 有月祭、日祭之例, 中世儒臣, 力言其非禮而廢之。 先王所廢, 今復行之, 而又甚焉。 豈不萬萬未安乎? 黷于祀而豐于昵, 將貽萬世之議。 伏願聖明不憚日月之更, 兩殿上食茶禮, 亟爲停廢, 無踰先聖先王之禮焉。 議者或曰, '是數條者, 皆有明禮之可據'。 臣之該陋, 未習明代典禮。 然明太祖馬上得天下, 率爾定禮, 多不師古, 甚至父母喪, 皆行斬衰, 受天下後世之譏。 我朝則自有我家典禮, 一遵《周禮》之舊, 何可違百王不易經常之禮, 而效明祖一時無稽之典乎? 臣以蔑學, 妄議禮制, 死罪死罪。 然一得之見, 未必無補, 伏乞陛下以臣此言, 博詢廷寮, 不日釐改, 以正邦禮, 千萬幸甚。" 批曰: "疏辭詢問于內閣大臣、原任議政以入。"

	의논하는 자들이 혹 말하기를, '이 몇 가지는 다 명(明)나라의 예에 근거할 만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신은 고루하여 명대의 전례(典禮)를 익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명 나라 태조(太祖)는 말 위에서 천하를 얻은 다음 대번에 예를 정하되 대부분 옛 법대로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부모의 상사도 모두 참최(斬衰)를 행하여 천하 후세의 비방을 받았습니다. 우리 왕조에는 원래 우리의 전례가 있고 한결같이 《주례(周禮)》의 옛 법을 준수하여 왔으니 무엇 때문에 역대 임금이 준수하던 고칠 수 없는 정상적인 예를 어기고 명 나라 태조의 일시적인 근거 없는 전례를 본받겠습니까? 신은 보잘것없는 학식으로 망령되게 예제(禮制)를 의논하였으니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리석은 자도 한 가지는 맞는 의견이 있는 법이니 반드시 보탬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폐하는 신의 이 말을 조정 관리들에게 널리 하문하여 며칠 안으로 고쳐서 나라의 예를 바로잡는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상소 내용을 내각(內閣)의 대신(大臣)과 원임 의정(原任議政)에게 하문하여 들이라." 하였다.	
순종 1권, 즉위년(1907 정미 / 대한 융희(隆熙) 1년) 8월 10일(양력) 1번째기사	장례원 경(掌禮院卿) 신기선(申箕善)이 아뢰기를, "신이 상소함으로 인하여 내각 대신(內閣大臣)들과 원임 의정(原任議政)에게 하문하여 들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장례원(掌禮院)의 낭청을 보내 하문하니,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 내부 대신(內部大臣) 임선준(任善準),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고영희(高永喜), 군부 대신(軍部大臣) 이병무	十日。 掌禮院卿申箕善奏:"以因臣上疏, 詢問于內閣大臣、原任議政以入事, 命下矣。 發遣院郎詢問, 則內閣總理大臣李完用、內部大臣任善準、度支部大臣高永喜、軍部大臣李秉武、法部大臣趙重應、學部大臣李載

경효전과 의효전의 조상식, 석상식 제사에 대해 논의하다	(李秉武), 법부 대신(法部大臣) 조중응(趙重應), 학부 대신(學部大臣) 이재곤(李載崑),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 송병준(宋秉畯) 등은 말하기를, '신들은 본디 예학(禮學)에 어두워 감히 고루한 의견으로 전례(典禮)를 함부로 논할 수는 없으나 예신(禮臣)의 상소를 가져다 보건대, 제왕들의 가법(家法)에는 은정으로 의리를 가리지 않으며 스승의 도리 앞에서는 스스로를 높일 수 없으며 거상 기간이 다 된 이상에는 상식(上食)을 응당 그만두어야 한다는 논의들이 명확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능(陵)과 원(園)에 음식을 올리는 것도 다같이 그만두어야 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그대로 받아들여 빨리 시행함으로써 결함을 바로 고치는 덕을 빛내소서.'라고 하였습니다. 특진관(特進官) 이근명(李根命), 영돈녕사사(領敦寧司事) 민영규(閔泳奎)는 말하기를, '장례원 경이 세 조목으로 진달한 것은 예법에 의거하고 원칙을 지킨 것으로서 실로 타당하니, 청한 바대로 모두 바로잡는 데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특진관 조병호(趙秉鎬)는 지방에 있는 관계로 의견을 수합할 수 없었습니다. 내각 대신과 원임 의정들의 의논이 이와 같으니 성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崐、農商工部大臣宋秉畯等以爲: '臣等素昧禮學, 不敢以謏陋之見, 妄論典禮, 而取見禮臣疏章, 則帝王家法, 恩不掩義, 師道所存, 不宜自尊, 喪期旣盡, 饋奠當廢, 立論明確, 無容異見。 至若陵園饋奠, 亦當一例停罷。 伏願聖明翕受而亟施, 以彰日月之更焉'云。 特進官李根命、領敦寧閔泳奎以爲: '禮卿三條所陳, 據禮守經, 實爲允當, 依所請竝行釐正, 無容更議'云。 特進官趙秉鎬在外, 不得收議矣。 內閣大臣原任議政之議如此, 上裁何如?" 允之。
순종 1권, 즉위년(1907 정미 / 대한 융희(隆熙) 1년) 8월 24일(양력) 1번째기사 황제 즉위식 장소와 규례에 관하여 조서를 내리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황제의 자리에 오르는 예식을 거행할 장소는 돈덕전(惇德殿)으로 정하고 진행해야 할 의식 절차는 신식과 구식을 참고하여 궁내부(宮內府)의 장례원(掌禮院)에서 마련하여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시대의 형편이 달라졌으므로 이제부터 동가(動駕)할 때에는 시위하는 데 마련하는 군사의 인원수를 취품(取稟)하던 것과 같은 구식 규례를 모두 폐지하고 모든 의장물들은 안팎의 사례들을 참작하여 신식으로 별도로 정하여 가지	二十四日。 詔曰: "卽位行禮處所, 以惇德殿爲之, 應行儀節, 參互新舊, 令宮內府、掌禮院, 磨鍊擧行。" 又詔曰: "時措有異, 自今動駕時侍衛磨鍊軍數取稟等舊規, 竝廢止, 凡鹵簿儀仗參酌內外事例, 另定新式以入。"

	고 들여보내라.” 하였다.	
순종 1권, 즉위년 (1907 정미 / 대한 융희(隆熙) 1년) 8월 31일(양력) 1번째기사 각 명절날에 문안하는 것을 모두 폐지하고 서명하는 절차를 규례로 삼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각 명절날과 모든 예식을 거행한 후 문안하는 것을 이제부터는 폐지하고 각국의 통행하는 규례대로 서명(署名)하는 절차를 궁내부(宮內府)에게 마련하도록 하여 정식(定式)으로 삼을 것이다.”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 이근명(李根命)을 황태자로 책봉할 때의 정사(正使)로, 해풍 부원군(海豐府院君) 윤택영(尹澤榮)을 부사(副使)로 임명하라.” 하였다.	三十一日。 詔曰:“各節日及凡干行禮後問安을 從今廢止ᄒᆞ고 依各國通行之規ᄒᆞ야 署名節次를 令宮內府磨鍊ᄒᆞ야 著爲定式ᄒᆞ라。” 又詔曰:“命宮內府特進官李根命爲冊封皇太子時正使, 海豐府院君尹澤榮爲副使。
순종 1권, 즉위년 (1907 정미 / 대한 융희(隆熙) 1년) 9월 4일(양력) 4번째기사 염세, 수산세 등을 모두 폐지하다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이 아뢰기를, “경리원(經理院)에서 관할하는 것 가운데에는 국고(國庫)에서 쓰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이중으로 세를 받아내며 명목 없는 잡세(雜稅)로 백성들에게 폐해를 끼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온갖 제도를 다 새롭게 하는 이때에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옮길 것은 옮겨 소속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내각(內閣)의 의논을 거쳐 개록(開錄)하여 【푸주간세〔庖稅〕·갈세〔蘆說〕·풀세〔草說〕·대밭〔竹田〕·솔밭〔松田〕·뽕나무〔種桑〕·땔나무산〔柴山〕·밤나무〔栗木〕·물가의 토지〔干田〕·산기슭〔山麓〕·장작〔燒木〕·숯〔炭木〕·봉화대〔烽臺〕·동광(銅鑛)·철광(鐵鑛)·유기점〔鍮店〕·무쇠	內閣總理大臣李完用奏:“經理院所管, 多係國庫應用。 一物疊稅, 無名雜稅, 貽弊生民, 不一其端矣。 當此百度俱新之日, 可廢者廢止, 可移者移屬, 恐合妥當, 經閣議開錄【庖稅、蘆稅、草稅、竹田、松田、種桑、柴山、栗木、干田、山麓、燒木、炭木、烽臺、銅鑛、鐵鎭、鍮店、水鐵等諸雜稅, 幷付于國庫。 鹽稅、水産稅、船稅、浦稅、蔘稅、紙稅、洑稅、其他生産營業賦課諸雜稅, 竝廢止。】 上

	〔水鐵〕 등 여러 가지 잡세는 전부 국고에 넘길 것이며. 염세(鹽稅)·수산세(水産稅)·선세(船稅)·포구세(浦說)·삼세(蔘稅)·지세(紙稅)·보세(洑稅) 기타 생산 영업에 부과한 여러 가지 잡세는 전부 폐지한다.】 상주(上奏)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奏。" 允之。
순종 1권, 즉위년 (1907 정미 / 대한 융희(隆熙) 1년) 9월 20일(양력) 1번째기사 진전의 제사에 이 특진관을 보내어 집행하도록 명하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모레 진전(眞殿) 다례(茶禮)를 지낼 때에는 이 특진관(李特進官)을 보내어 거행하게 하고 칙임관(勅任官) 이상은 규장각(奎章閣)에 입참(入參)하도록 하라." 하였다.	二十日。 詔曰:"再明日眞殿茶禮, 遣李特進進去擧行, 勅任官以上, 奎章閣入參。"
순종 1권, 즉위년 (1907 정미 / 대한 융희(隆熙) 1년) 9월 27일(양력) 1번째기사 경효전에 가서 작헌례를 거행하다	태황제를 배봉(陪奉)하고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기신제(忌辰祭)를 지내고 나서 작헌례(酌獻禮)를 거행하였다. 태황제가 전작례(奠酌禮)를 행하였다.	二十七日。 陪奉太皇帝, 詣景孝殿, 行忌辰祭。 仍行酌獻禮。 太皇帝行奠酌禮。
순종 1권, 즉위년 (1907 정미 / 대한 융희(隆熙) 1년) 9월 30일(양력) 1번째기사 경빈의 장사를 지낼 때 수고한 관리들에게	경빈(慶嬪)의 장사를 지내었을 때의 예장소 당상(禮葬所堂上) 이하에게 차등있게 상을 주었으며, 당상 김각현(金珏鉉), 별간역(別看役) 유응렬(劉膺烈), 영선사 장(營繕司長) 심의석(沈宜碩), 6품 김택수(金宅洙)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三十日。 慶嬪禮葬時禮葬所堂上以下, 施賞有差。 堂上金珏鉉、別看役劉膺烈、營繕司長沈宜碩、六品金宅洙, 竝加資。

시상하다		
순종 1권, 즉위년(1907 정미 / 대한 융희(隆熙) 1년) 10월 28일(양력) 1번째기사 진전에 다례를 지내다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二十八日。 詣眞殿, 行茶禮。
순종 1권, 즉위년(1907 정미 / 대한 융희(隆熙) 1년) 11월 3일(양력) 1번째기사 태황제가 의효전에 가서 작헌례를 진행하다	태황제가 의효전(懿孝殿)에 나아가 전작례(奠酌禮)를 행하였다.	三日。 太皇帝詣懿孝殿, 行奠酌禮。
순종 1권, 즉위년(1907 정미 / 대한 융희(隆熙) 1년) 11월 15일(양력) 1번째기사 태황제가 종묘를 전배하고 창덕궁에도 들리다	태황제(太皇帝)가 종묘(宗廟)와 영녕전(永寧殿)에 나아가 전알(展謁)하였다. 황태자(皇太子)도 배참(陪參)하였다. 이어 창덕궁(昌德宮)에 역임(歷臨)하였다.	十五日。 太皇帝詣宗廟、永寧殿, 展謁。 皇太子陪參。 仍歷臨于昌德宮。
순종 1권, 즉위년(1907 정미 / 대한 융희(隆熙) 1년) 11월 20일(양력) 1번째기사 태황제가 운현궁에 가	태황제(太皇帝)가 운현궁(雲峴宮)에 나아가 대원왕(大院王)과 대원비(大院妃)의 사우(祠宇) 및 남연군(南延君)의 사우에 두루 전배하였다.	二十日。 太皇帝臨御雲峴宮, 展拜于大院王、大院妃祠宇, 歷拜南延君祠宇。

서 전배하고 지나는 길에 남연군의 사당도 전배하다		
순종 1권, 즉위년(1907 정미 / 대한 융희(隆熙) 1년) 12월 22일(양력) 1번째기사 원구단으로 행차하다	덕수궁(德壽宮)에 나아가 근알(覲謁)하고, 이어 원구단(圜丘壇)에 나아가 전알(展謁)한 후에 제사에 쓸 희생과 그릇들을 살펴보았으며, 대제(大祭)는 섭행(攝行)할 것을 명하였다.	二十二日。 詣德壽宮覲謁。 仍詣圜丘展謁後, 省牲、省器, 命大祭攝行。
순종 2권, 1년(1908 무신 / 대한 융희(隆熙) 2년) 1월 6일(양력) 1번째기사 태황제가 의왕 이강에게 유릉에 술잔드리는 예식을 대리하게 하다	태황제가 의왕(義王) 이강(李堈)에게 명하여 유릉(裕陵)에 작헌례(酌獻禮)를 섭행(攝行)하게 하였으며, 이어 능 위에 나아가 봉심(奉審)하고 오게 하였다. 신정 황후(神貞皇后)가 탄생한 지 100년이 되는 구갑(舊甲)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승녕부 시종관(承寧府侍從官)들에게 명하여 풍은 부원군(豐恩府院君)의 내외의 사판(祠版)에 치제(致祭)하게 하였다.	六日。 太皇帝命義王堈, 攝行酌獻禮于綏陵, 仍詣陵上奉審以來。 以神貞聖母誕彌之百歲舊甲也。 仍命承寧府侍從, 致祭于豐恩府院君內外祠版。
순종 2권, 1년(1908 무신 / 대한 융희(隆熙) 2년) 1월 20일(양력) 1번째기사 원구단, 종묘, 사직단 치제 때 헌관을 1명으로 줄이다	이제부터 원구단(圜丘壇), 종묘(宗廟), 사직단(社稷壇)에 지내는 대제(大祭) 때에 삼헌관(三獻官)을 1원(員)이 아울러 행하며, 그 아래 여러 집사(執事)들도 혹 아울러 하게 하거나 혹 인원수를 줄여서 적당히 배치하는 문제를 장례원(掌禮院)에 통지하여 거행하라고 명하였다. 관제를 개정한 뒤에 제사와 관련하여 차임할 인원이 적어졌기 때문이었다.	二十日。 命從今圜丘、廟·社大祭三獻官, 以一員兼行, 其下諸執事, 或兼行或減數, 量宜排差事, 知委掌禮院擧行。 因官制改正後差祭人員窠窄也。

순종 2권, 1년(1908 무신 / 대한 융희(隆熙) 2년) 3월 5일(양력) 1번째기사 염업 시험장의 관제를 비준하다	칙령(勅令) 제11호, 〈염업 시험장 관제(鹽業試驗場官制)〉를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五日。 勅令第十一號, 鹽業試驗場官制。 裁可頒布。
종 2권, 1년(1908 무신 / 대한 융희(隆熙) 2년) 3월 11일(양력) 1번째기사 후원에다 원유회를 마련하다	후원(後苑)에 원유회(園遊會)를 마련하도록 명하였다. 칙임관(勅任官) 이상을 불러다가 놀이를 하고 그 자리에서 내각(內閣)과 궁내부(宮內府)와 각 부의 대신들에게 연회를 베풀어 주었다. 어제가 건원절(乾元節)이었기 때문이었다.	十一日。 命設園遊會于後苑。 招勅任官以上遊娛, 仍賜宴于閣府部大臣。 因昨日乾元節也。
순종 2권, 1년(1908 무신 / 대한 융희(隆熙) 2년) 3월 14일(양력) 1번째기사 묘, 사, 전, 궁, 능, 원, 단, 묘의 관제를 개정하다	포달(布達) 제172호, 〈종묘, 사직, 전, 궁, 각 능, 원, 단, 묘의 관제 개정 및 첨입에 관한 안건〔廟社殿宮各陵園壇墓官制改正及添入件〕〉을 반포하였다.	十四日。 布達第一百七十二號, 廟、社、殿、宮各陵、園、壇、墓官制改正及添入件。 頒布。
순종 2권, 1년(1908 무신 / 대한 융희(隆熙) 2년) 5월 5일(양력) 1번째기사	종묘(宗廟)에 나아가 하향 대제(夏享大祭)를 지냈다.	五日。 行宗廟夏享大祭。

종묘에 가서 하향 대제를 지내다		
순종 2권, 1년(1908 무신 / 대한 융희(隆熙) 2년) 6월 10일(양력) 1번째기사 육상궁, 연호궁, 선희궁, 경우궁을 전배하다	육상궁(毓祥宮), 연호궁(延祜宮), 선희궁(宣禧宮), 경우궁(景祐宮)에 나아가 전배(展拜)하였다. 황후(皇后)도 따라가 예를 행하였다.	十日。 詣毓祥宮、延祜宮、宣禧宮、景祐宮, 展拜。 皇后隨詣, 行禮。
순종 2권, 1년(1908 무신 / 대한 융희(隆熙) 2년) 7월 16일(양력) 2번째기사 홍삼 전매법, 삼세법을 모두 비준하다	법률(法律) 제14호, 〈홍삼 전매법(紅蔘專賣法)〉, 법률 제15호, 〈삼세법(蔘稅法)〉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法律第十四號, 紅蔘專賣法。 第十五號, 人蔘稅法。 竝裁可頒布。
순종 2권, 1년(1908 무신 / 대한 융희(隆熙) 2년) 7월 23일(양력) 1번째기사 제사 제도 개정에 대한 것을 발표하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제사는 나라의 예의 제도가 이를 통해 일어나는 만큼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예절이 번잡하면 말류의 폐단은 근본을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옛날의 훌륭한 임금들이 당시의 조건에 맞게 예의를 제정한 것은 번잡한 것을 버리고 간소한 것을 취하자는 것이었다. 예라는 것은 정성과 공경을 근본으로 삼아 그 제도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의가 지나치게 후하면 분수에 지나치고 분수에 지나친 예는 귀신이 싫어하는 법이다.	二十三日。 詔曰: “祭祀ᄂᆞᆫ 一國禮典之所由興也ㅣ니 不可不崇重也ㅣ라。 然이나 若禮節이 繁縟則其末流之弊蛇返失其本ᄒᆞᄂᆞ니 故로 古昔聖王이 因時制宜ᄒᆞ야 以定其禮ᄂᆞᆫ 所以去其繁而就其簡也ㅣ라。 禮也者ᄂᆞᆫ 以誠敬爲本ᄒᆞ야 適用其制度之謂也ㅣ니 禮過於厚則是ᄂᆞᆫ 濫也ㅣ니 濫禮ᄂᆞᆫ 神明之所以厭之者也ㅣ라。 故로 惟我

	그러므로 우리 열성조가 서로 이어가면서 의식을 제정하여 보태거나 덜어 마땅하게 한 것도 이 규례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지금 시운(時運)의 진보가 지난날 옛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신(維新)을 국시로 정하여 종묘 사직에 고하였던 것이다. 모든 제도를 혁신하는 이 때를 당하여 어찌 제례(祭禮)에만 옛 제도를 그대로 지키겠는가. 이제 옛 규례를 참고하고 현재의 조건에 알맞게 하여 공경하는 규범을 드러내고 영원히 지켜야 할 표준을 정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실로 조종(祖宗)이 끼치신 가르침에 근거한 것이오, 짐이 처음으로 내놓은 의견이 아니다. 그러므로 내각과 궁내부(宮內府)에서는 짐의 뜻을 잘 헤아려 공경히 따라 시행하라. 일체 시행하여야 할 조목은 다음과 같다. 제실(帝室)에 관계되지 않는 제사는 궁내부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금지하고 각각 그 소속된 곳에 넘겨 마련하도록 한다. 시의(時宜)에 맞지 않는 제사는 영영 제사의 거행을 폐지한다. 합사(合祀)할만 한 종묘(宗廟), 사직(社稷), 전(殿), 궁(宮)의 신주는 이안(移安)할 장소를 선택하여 봉안하게 한다. 대제(大祭), 별제(別祭), 속제(俗祭), 삭제(朔祭), 망제(望祭) 가운데에서 중요하지 않은 제사는 생략한다. 신당(神堂) 정사보는 날마다 고하는 제사 같은 것은 영원히 폐지한다. 제사에 쓸 짐승과 제물은 재정에 따라 되도록 절약한다. 천신(薦新) 물건의 종류는 지방에서 공물로 바치는 것을 폐지하고 사서 하되 그 지방에 없는 것은 대용물건을 거행하도록 한다. 의식은 허례(虛禮)를 없애고 정성과 공경심으로 기본으로 하여 제사를 숭엄하게 지낸다.” 하였다.	朝列聖이 相承ᄒᆞ사 制定儀式ᄒᆞ사 增損得宜ᄒᆞ심은 亦不外於此規也ㅣ라。 今此時運之進步ㅣ 非復昔時之因循故로 以維新으로 定國是ᄒᆞ야 誓告于宗社者則當此百度革新之時ᄒᆞ야 奚但墨守舊規ᄅᆞᆯ 獨於祭禮哉아。 今에 參考古式ᄒᆞ고 量適時宜ᄒᆞ야 以表崇敬之軌範ᄒᆞ고 乃定永遠之準規ᄒᆞ노니 是ᄂᆞᆫ 實由乎祖宗所以遺訓而非出於朕所以創意也ㅣ라。 內閣과 宮內府ᄂᆞᆫ 克體朕意ᄒᆞ야 欽遵施行哉어다。 所有應行條目을 開列于左ᄒᆞ노라 帝室에 不關ᄒᆞᆫ 祭祀ᄂᆞᆫ 宮內府에서 祀典擧行ᄒᆞᆷ을 止ᄒᆞ고 各其所屬에 移ᄒᆞ야 磨鍊케ᄒᆞᆷ。 時宜에 不叶ᄒᆞᆫ 祭祀ᄂᆞᆫ 永히 祀典擧行을 廢止케ᄒᆞᆷ。 合祀ᄒᆞ기 可ᄒᆞᆫ 廟社殿宮은 移安ᄒᆞᆯ 處所ᄅᆞᆯ 選擇ᄒᆞ야 奉安케ᄒᆞᆷ。 大祭別祭俗祭朔望祭中重要치아니ᄒᆞᆫ 祀典은 省略ᄒᆞᆷ。 神堂衙日告祀의 類ᄂᆞᆫ 永히 廢止케ᄒᆞᆷ。 犧牲과 祭物은 財政을 隨ᄒᆞ야 節約을 務케ᄒᆞᆷ。 薦新物種은 外貢을 廢ᄒᆞ고 貿運케ᄒᆞ되 其地에 不在ᄒᆞᆫ 者ᄂᆞᆫ 代物로써 擧行케ᄒᆞᆷ。 儀式은 虛禮ᄅᆞᆯ 去ᄒᆞ며 誠敬을 本ᄒᆞ

		야 祀典을 崇嚴케홈。”
순종 2권, 1년(1908 무신 / 대한 융희(隆熙) 2년) 7월 23일(양력) 2번째기사 제사 제도를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 비준하다	칙령(勅令) 제50호, 〈향사 이정에 관한 안건〔享祀釐正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勅令第五十號, 享祀釐正件。 裁可頒布。
순종 2권, 1년(1908 무신 / 대한 융희(隆熙) 2년) 7월 23일(양력) 3번째기사 개정한 제사 제도 칙령을 발표하다	〈개정한 제사 제도〔享祀釐正〕〉 원구단(圜丘壇)에는 1년에 두 번, 사직단(社稷壇)에는 1년에 두 번, 종묘(宗廟)에는 1년에 네 번 지내고, 또 두 번 고유제(告由祭)를 지낸다. 영녕전(永寧殿)에는 두 번, 경효전(景孝殿)에는 1년에 네 번, 의효전(懿孝殿)에는 1년에 네 번, 문묘(文廟)에는 1년에 두 번, 계성사(啓聖祠)에는 1년에 두 번, 조경묘(肇慶廟)에는 1년에 두 번, 조경단(肇慶壇)에는 1년에 한 번, 경기전(慶基殿)에는 1년에 두 번, 선원전(璿源殿)에는 1년에 두 번 지낸다. 함흥본궁(咸興本宮)에는 1년에 두 번, 영흥본궁(永興本宮)에는 1년에 두 번, 저경궁(儲慶宮)는 1년에 두 번, 대빈궁(大嬪宮)에는 1년에 두 번, 연호궁(延祜宮)에는 1년에 두 번, 육상궁(毓祥宮)에는 1년에 두 번, 선희궁(宣禧宮)에는 1년에 두 번, 경우궁(景祐宮)에는 1년에 두 번 지내고, 또 기신제(忌辰祭)를 지낸다. 능, 원, 묘에는 1년에 한 번 지내고 또 기신제(忌辰祭)를 지낸다. 다만 체천(遞遷)할 신위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만 지낸다. 연산군묘(燕山君墓)와 광해군묘(光海君墓)도 다같이 적용한다. 독신묘(纛神廟)에는 1년에 한 번 지낸다. 영희전(永禧殿), 목청전(穆淸殿), 화녕전(華寧殿), 냉천정(冷泉亭), 평락정(平樂亭), 성일헌(誠一軒)에 봉안한 수용(晬容)을 선원전(璿源殿)에 이안(移安)하고,	享祀釐正。 圜丘一年二次, 社稷一年二次, 宗廟一年四次及二次告由祭。 永寧殿一年二次, 景孝殿一年四次, 懿孝殿一年四次, 文廟一年二次, 啓聖祠一年二次, 肇慶廟一年二次, 肇慶壇一年一次, 慶基殿一年二次, 璿源殿一年二次, 咸興本宮一年二次, 永興本宮一年二次, 儲慶宮一年二次, 大嬪宮一年二次, 延祜宮一年二次, 毓祥宮一年二次, 宣禧宮一年二次, 景祐宮一年二次及忌辰祭陵園墓一年一次及忌辰祭但祧遷의 位에는 一年一次만 擧行홈。 燕山墓光海墓에도 亦同홈。 纛神廟一年一次。 永禧殿、穆淸殿、華寧殿、冷泉亭、平樂亭、誠一軒에 奉安ᄒᆞᆫ 晬容을 璿源殿에 移安ᄒᆞ고 舊殿

	옛 전각의 경우 냉천정을 제외하고 모두 국유로 이속(移屬)시킨다. 다만 수용을 이안하는 절차는 궁내부에서 따로 이것을 정한다. 저경궁, 대빈궁, 연호궁, 선희궁, 경우궁에 봉안한 신위는 육상궁 안에 각별히 신주의 방을 만들어 합사하고, 폐궁(廢宮)의 경우 연호궁을 제외하고 모두 국유로 이속시킨다. 신위를 이안하는 절차는 궁내부에서 따로 이를 정한다. 의빈궁(宜嬪宮), 경수궁(慶壽宮), 영소묘(永昭廟), 문희묘(文禧廟)에 봉안한 신위는 매안(埋安)하고 해당 궁과 사당은 의빈궁을 제외하고 모두 국유로 이속시킨다. 다만 의빈궁과 경수궁의 묘소에는 영소묘와 문희묘의 원소(園所) 예에 따라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고, 매안 절차는 궁내부에서 따로 이를 정한다. 선농단(先農壇), 선잠단(先蠶壇)의 신위는 사직단(社稷壇)에 배향하고 해당 제단의 터는 국유로 이속시킨다. 산천단(山川壇), 산천 악독단(山川嶽瀆壇), 우사단(雩祀壇), 사한단(司寒壇), 옥추단(玉樞壇), 칠사사현사(七祀四賢祠), 여단(厲壇), 성황단(城隍壇), 마조단(馬祖壇), 무열사(武烈祠), 정충단(旌忠壇), 선무단(宣武壇), 정무단(靖武壇)의 제사는 이제부터 폐지하고 해당 단(壇)과 사(祠)의 터는 국유로 이속시킨다. 대보단(大報壇), 만동묘(萬東廟), 숭의묘(崇義廟), 동관묘(東關廟), 남관묘(南關廟), 북관묘(北關廟) 및 지방 관묘(地方關廟)의 제사를 폐지하고, 대보단의 터는 궁내부에서 관할하며 숭의묘와 북관묘는 국유로 이속시킨다. 만동묘, 동관묘, 남관묘 및 지방 관묘는 해당 지방 관청에 넘겨 백성들의 신앙에 따라 따로 관리할 방법을 정한다. 역대의 묘, 전, 능, 사 및 지방에 설치한 사직단과 문묘는 모두 정부의 소관으로 한다. 이 칙령(勅令)은 반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閣은 冷泉亭을 除ᄒᆞᆫ 外에 竝히 國有에 移屬홈。 但晬容移安의 節次ᄂᆞᆫ 宮內府에셔 別로히 此를 定홈。 儲慶宮、大嬪宮、延祐宮、宣禧宮、景祐宮에 奉安ᄒᆞᆫ 神位ᄂᆞᆫ 毓祥宮內에 各別히 位室을 設ᄒᆞ야 合祀ᄒᆞ고 廢宮은 延祐宮을 除ᄒᆞᆫ 外에 竝히 國有에 移屬홈。 神位移安에 節次ᄂᆞᆫ 宮內府에셔 別로히 此를 定홈。 宜嬪宮、慶壽宮、永昭廟、文禧廟에 奉安ᄒᆞᆫ 神位ᄂᆞᆫ 埋安ᄒᆞ고 該宮廟ᄂᆞᆫ 宜嬪宮을 除ᄒᆞᆫ 外에 竝히 國有에 移屬홈。 但宜嬪宮慶壽宮의 墓所에ᄂᆞᆫ 永昭廟、文禧廟의 園所例에 依ᄒᆞ야 一年一次祭를 設行ᄒᆞ고 埋安의 節次ᄂᆞᆫ 宮內府에셔 別로히 此를 定홈。 先農壇、先蠶壇의 神位ᄂᆞᆫ 社稷에 配享ᄒᆞ고 該壇基址ᄂᆞᆫ 國有에 移屬홈。 山川壇、山川嶽瀆雩祀壇、司寒壇、玉樞壇、七祀四賢祠、厲壇、城隍壇、馬祖壇、武烈祠、旌忠壇、宣武壇、靖武壇의 祭祀ᄂᆞᆫ 自今廢止ᄒᆞ고 該壇祠의 基址ᄂᆞᆫ 國有에 移屬홈。 大報壇、萬東廟、崇義廟、東關廟、南關廟、北關廟及地方關廟의 祭祀를

		廢止ᄒᆞ고 大報壇基址ᄂᆞᆫ 宮內府에셔 保管ᄒᆞ며 崇義廟、北關廟ᄂᆞᆫ 國有에 移屬ᄒᆞ고 萬東廟、東關廟、南關廟及 地方關廟ᄂᆞᆫ 該地方官廳에 下付ᄒᆞ야 써 人民의 信仰ᄒᆞᆷ을 從ᄒᆞ야 別로히 管理ᄒᆞᆯ 方法을 定ᄒᆞᆷ。 歷代廟殿陵祠 及地方에 設置ᄒᆞᆫ 社稷壇、文廟ᄂᆞᆫ 總히 政府에 所管으로ᄒᆞᆷ。 本令은 頒布日로붓터 施行ᄒᆞᆷ。
순종 2권, 1년(1908 무신 / 대한 융희(隆熙) 2년) 8월 26일(양력) 1번째기사 대제 때의 서계와 의식 연습을 모두 그만두게 하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지금 이후로는 단(壇), 묘(廟), 전(殿), 사(社), 궁(宮)에 제사 지낼 때 쓸 희생은 제삿날에 맞추어 봉상사(奉常司) 앞에 모아 장례원(掌禮院)의 관리가 품평을 한 뒤에 곧 그곳에서 도살하여 그대로 제사지내는 데 올리게 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지금 이후로는 단, 묘, 전, 사에 대제(大祭)를 지낼 때에 서계(誓戒)와 의식의 연습을 모두 그만두고, 친제(親祭)인 경우에는 의식 연습만을 하라.” 하였다.	二十六日。 詔曰: “自今以後로 壇廟殿社宮祭享時所用犧牲을 享日趁期ᄒᆞ야 收聚於前奉常司ᄒᆞ야 令掌禮院官으로 看品準尺後卽其地宰殺ᄒᆞ야 仍爲陪進于祭所ᄒᆞ라”又詔曰: “自今以後로 壇廟殿社大祭時誓戒肄儀를 竝以停廢ᄒᆞ고 若値親祭則只行肄儀ᄒᆞ라。”
순종 2권, 1년(1908 무신 / 대한 융희(隆熙) 2년) 9월 1일(양	【음력 무신년(戊申年) 8월 6일】	一日。【陰曆戊申八月初六日】 詔曰: “大祭親行時親臨省牲、省器之節, 自今以後廢止。 省器, 以終獻官擧行。”

력) 1번째기사 대제를 지낼 때 제물로 쓸 짐승과 그릇을 돌아보는 절차를 영구히 폐지하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대제(大祭)를 친히 행할 때에 희생(犧牲)과 제기(祭器)를 살피는 절차를 이제부터 폐지하며 제기를 살피는 일은 종헌관(終獻官)이 거행하라.” 하였다.	
순종 3권, 2년(1909 기유 / 대한 융희(隆熙) 3년) 1월 16일(양력) 1번째기사 인정전에서 통감, 의양군 및 친임관들과 식사를 하다	인정전(仁政殿) 동쪽 행각에 나아가 통감(統監), 의양군(義陽君) 및 친임관(親任官)들에게 배식(陪食)을 하사하였으며, 또한 순행할 때에 호위한 우리나라와 외국의 칙임관(勅任官), 주임관(奏任官), 문무 관리들 100명에게도 오찬을 하사하였다.	十六日。 御仁政殿東行閣, 賜陪食于統監, 義陽君及親任官等, 亦賜午餐于巡幸時, 扈從內外國勅奏任文武官等百人。
순종 3권, 2년(1909 기유 / 대한 융희(隆熙) 3년) 1월 31일(양력) 4번째기사 숭령전, 숭인전, 을지문덕의 사당 등에 치제하도록 하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나온 성인인데 사당의 모습이 고요하다. 숭령전(崇靈殿)에 평안남도 관찰사(平安南道觀察使)를 보내어 치제(致祭)하도록 하라. 듣건대 의복과 신발은 강동(江東)에 보관하고 있으며 지금 그것을 가리켜 단군릉(檀君陵)이라고 하는데, 잡초가 우거진 채로 거두지 않고 있다고 하니 높이 받드는 예차가 전혀 없다. 이제부터 관리하고 수호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어진 성인의 8가지 가르침은 인류의 문화를 열어놓아 만대토록 그 덕을 입게되었다. 숭인전(崇仁殿)에 평안남도 관찰사를 보내어 치제하게 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詔曰: “東方首出之聖, 廟貌有恤。 崇靈殿, 遣平安南道觀察使致祭。 聞衣履之藏, 在江東地, 至今指點謂檀君陵, 而無沒不治, 殊欠崇奉之禮。 其自今封植守護之節, 磨鍊擧行。” 又詔曰: “仁賢八條之敎, 肇啓人文, 萬世永賴。 崇仁殿, 遣平安南道觀察使致祭。” 又詔曰: “此高麗舊疆也。 緬懷乙支文德, 雄圖摧敵, 國威用張, 千載雖遠, 英氣不昧。 其墓地訪問修治, 令地方官致祭。” 又詔曰: “師承旣正,

	“여기는 고구려의 옛 강토이다. 을지문덕(乙支文德)이 웅대한 계책을 써서 적의 공격을 꺾고 나라의 위력을 떨쳤으니 천년이 지난 먼 훗날에도 그 영명한 기개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그의 무덤을 찾아보고 보수하며 지방관을 보내어 치제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스승을 계승한 것이 이미 바르고 학문이 특히 심오하여 평안도 사림(士林)들의 모범이 되었으니 증 판서(贈判書) 선우협(鮮于浹)에게 특별히 시호를 내려주는 은전을 베풀 것이다. 경서를 연구하고 행실이 독실하여 근래 선비들의 모범으로 되었으니 고(故) 집의(執義) 박문일(朴文一)과 고 군수 박문오(朴文五)에게 모두 벼슬을 더 추증하는 은전을 베풀 것이다.”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양의공(襄毅公) 김경서(金景瑞)와 양무공(襄武公) 정봉수(鄭鳳壽)는 충성과 용맹이 특출하여 의연히 평안도	學問尤邃, 爲關西士林之所矜式, 贈判書鮮于浹, 特施節惠之典。 窮經篤行, 爲近來人士之模楷, 故執義朴文一、故郡守朴文五, 竝施贈之典。” 又詔曰: “襄毅公金景瑞、襄武公鄭鳳壽, 忠勇尤著, 毅然爲西山之望, 各其墓, 遣地方官致祭。”
순종 3권, 2년(1909 기유 / 대한 융희(隆熙) 3년) 2월 23일(양력) 2번째기사 칙령 제22호 어업법 시행에 관한 건을 반포하였다.	칙령(勅令) 제22호, 〈어업법 시행에 관한 안건〔漁業法施行所關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勅令第二十二號, 漁業法施行所關件。 裁可頒布。
순종 3권, 2년(1909 기유 / 대한 융희(隆熙) 3년) 3월 8일(양력) 1번째기사 기로소 관제를 폐지하	칙령(勅令) 제24호, 〈기로소 관제를 폐지하고 궁내부 소관으로 소속시키는데 관한 안건〔耆老所官制廢止屬于宮內府所管件〕〉, 칙령 제25호, 〈어업에 관한 수수료 건〔漁業所關手數料件〕〉을 모두 재가하여 반포하였다.	八日。 勅令第二十四號, 耆老所官制廢止屬于宮內府所管件。 第二十五號, 漁業所關手數料件。 竝裁可頒布。

여 어업법에 관한 수수료에 대하여를 비준하다		
순종 3권, 2년(1909 기유 / 대한 융희(隆熙) 3년) 3월 31일(양력) 1번째기사 동적전에서 밭갈이하는 의식을 진행할 것을 발표하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짐이 지난번에 지방을 순행(巡幸)한 본의는 순전히 우리 백성들의 고통을 알아보고 산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었다. 백성들의 산업에서 농사가 근본인데, 이제 봄철을 맞이하여 농사가 시작되니 바로 짐의 본의를 실시할 때이다. 들에 나가 친경(親耕)을 하는 것은 우리 집안의 예법에 이미 있으나 오랫동안 거행하지 못한 것은 법을 결여한 것이다. 그 뿐 아니라 농사를 개량하는 것이 시의(時宜)에 맞으니 4월 상순(上旬) 안에 짐이 동적전(東籍田)에서 친경(親耕)하는 의식을 진행하여 나라의 백성들이 농사에 힘쓰도록 모범을 솔선해 보이고자 한다. 그대들 대소 신민들은 모두 짐의 뜻을 본받으라.” 하였다.	三十一日。 詔曰:“朕이 曩에 地方에 巡幸한 本意는 亶히 我赤子의 疾苦를 詢訪하고 産業을 勸奬코자함이니 民의 産業은 農이 大本이라。 今에 春煦載陽에 東作이 伊始하니 正히 朕의 本意를 實施할 時期라。 郊坰에 親耕함은 我家禮에 已有하나 寢久未擧는 殊屬闕典이요 且稼穡改良이 時宜에 允合한지라。 當於四月上旬內에 朕이 東耤田에 親耕하야써 國民의 懋農하는 模範을 率先코자하노니 惟爾大小臣民은 咸體朕意하라。”
순종 3권, 2년(1909 기유 / 대한 융희(隆熙) 3년) 4월 1일(양력) 1번째기사 5일에 동적전에서 밭갈이하는 의식을 진행하도록 명하다	【음력 기유년(己酉年) 윤2월 11일】 이달 5일에 동적전(東籍田)에서 친경(親耕)하겠다고 명하였다.	一日。【陰曆己酉二月十一日】 命本月五日東耤田親耕。
순종 3권, 2년(1909		

기유 / 대한 융희(隆熙) 3년) 4월 5일(양력) 1번째기사 동적전에 나가 밭을 가는 의식을 진행하다	동적전(東籍田)에 나아가 친경(親耕)한 다음 관경대(觀耕臺)에 나아갔다. 배종(陪從)한 여러 신하들【 의친왕(義親王) 이강(李堈), 완흥군(完興君) 이재면(李載冕), 완순군(完順君) 이재완(李載完), 영선군(永宣君) 이준용(李埈鎔), 의양군(義陽君) 이재각(李載覺), 창산군(昌山君) 이해창(李海昌), 총리대신(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민병석(閔丙奭), 내부 대신(內部大臣) 박제순(朴齊純),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임선준(任善準), 군부 대신(軍部大臣) 이병무(李秉武), 법부 대신(法部大臣) 고영희(高永喜), 학부 대신(學部大臣) 이재곤(李載崑), 경적사(耕籍使)인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 조중응(趙重應), 중추원 의장(中樞院議長) 김윤식(金允植), 궁중 고문(顧問) 이윤용(李允用), 중추원 고문(中樞院顧問) 이지용(李址鎔), 권중현(卷重顯), 이하영(李夏榮), 이근택(李根澤), 승녕부 총관(承寧府總管) 조민희(趙民熙), 시종원 경(侍從院卿) 윤덕영(尹德榮), 내각 서기관장(內閣書記官長) 한창수(韓昌洙), 궁내부 차관(次官) 고미야 미호마쓰〔小宮三保松〕, 내부 차관 오카요시 시치로〔岡喜七郎〕, 탁지부 차관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 군부 차관 한진창(韓鎭昌), 법부 차관 구라토미 유사부로〔倉富勇三郎〕, 학부 차관 다와라 마고이치〔俵孫一〕, 농상공부 차관 기노우치 주시로〔木內重四郎〕, 예의사(禮儀使)인 장례원 경(掌禮院卿) 성기운(成岐運), 중추원 부의장(中樞院副議長) 이근상(李根湘), 표훈원 총재(表勳院總裁) 조희연(趙羲淵), 감사원 경(監査院卿) 장석주(張錫周), 규장각 경(奎章閣卿) 조동희(趙同熙), 농상공부 기사(技師) 권업 모범장 장(勸業模範場長) 혼다 코스케〔本田幸介〕, 각 도 관찰사(觀察使)인 경기 김사묵(金思默), 충남 최정덕(崔廷德), 충북 권봉수(權鳳洙), 전남 신응희(申應熙), 전북 이두황(李斗璜), 경남 황철(黃鐵), 경북 박중양(朴重陽), 평남 이진호(李軫鎬), 평북 유혁로(柳赫魯), 함남 이범래(李範來), 함북 윤갑병(尹甲炳), 황해도 조희문(趙羲聞), 강원도 이규완(李圭完), 말고삐를 잡았던 주마 과장(主馬課長) 이기홍(李起泓), 적전 영(耤田令)인 농상공부 농무 국장 나	五日。 詣東耤田, 親耕, 仍御觀耕臺。 陪從諸臣【義親王堈、完興君李載冕、完順君李載完、永宣君李埈鎔、義陽君李載覺、昌山君李海昌、總理大臣李完用、宮內府大臣閔丙奭、內部大臣朴齊純、度支部大臣任善準、軍部大臣李秉武、法部大臣高永喜、學部大臣李載崑、耕耤使農商工部大臣趙重應、中樞院議長金允植、宮中顧問李允用、中樞院顧問李址鎔·權重顯·李夏榮·李根澤、承寧府總管趙民熙、侍從院卿尹德榮、內閣書記官長韓昌洙、宮內府次官小宮三保松、內部次官岡喜七郎、度支部次官荒井賢太郎、軍部次官韓鎭昌、法部次官倉富勇三郎、學部次官俵孫一、農商工部次官木內重四郎、禮儀使掌禮院卿成岐運、中樞院副議長李根湘、表勳院總裁趙羲淵、監査院卿張錫周、奎章閣卿趙同熙、農商工部技師勸業模範場長本田幸介、各道觀察使京畿金思默、忠南崔廷德、忠北權鳳洙、全南申應熙、全北李斗璜、慶南黃鐵、慶北朴重陽、平南李軫

	카무라 히코〔中村彦〕, 봉책관(奉策官)인 장례원 장전관(掌禮院掌典官) 이강주(李康周), 봉청상관(奉青箱官)인 장례원 전사(掌禮院典祀) 백시용(白時鏞), 봉분관(奉畚官)인 장례원 주사(掌禮院主事) 김기현(金基賢), 봉삽관(奉揷官)인 궁내부 주사(宮內府主事) 김성연(金聲演)이다.】도 따라서 밭갈이하는 예식을 진행하였다. 예식이 끝나자, 서인들이 차례로 1,000묘(畝)의 밭을 갈았다. 밭갈이가 끝나자 70살 이상의 백성들이 관경대 아래에 나와서 네 번 절을 하였다. 장전관(章典官)이 서쪽을 향하여 조령(詔令)을 선포하기를, “70살 이상의 백성들이 수고시켜 적전(耤田)에 올종자와 늦종자를 심게 하였는데, 동적전의 대(臺) 아래에 와서 일이 끝났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친왕(親王) 이하 모든 관리들과 일반 백성들은 네 번 절을 하고, 전선사 장이 술을 부어 무릎을 꿇고 석 잔을 올리면 친왕 이하 참가한 백관(百官)들과 70살 이상 백성들은 모두 술잔을 받으라.” 하였다.	鎬、平北柳赫魯、咸南李範來、咸北尹甲炳、黃海趙羲聞、江原李圭完、執轡主馬課長李起泓、耤田令農商工部農務局長中村彦、奉策官掌禮院掌典官李康周、奉青葙官掌禮院典祀白時鏞、奉畚官掌禮院主事金基賢、奉鍤官宮內府主事金聲演。】 行從耕之禮。 訖, 庶人以次耕于千畝。 耕畢, 耆民進臺下四拜。 掌典官西向宣詔曰: “敬勞耆民, 耤田令播種稑之種, 至臺下奏功畢。 親王以下百官庶民, 四拜。 典膳司長酌酒, 跪進三爵, 親王以下應參百官及耆民, 皆受爵。”
순종 3권, 2년(1909 기유 / 대한 융희(隆熙) 3년) 6월 21일(양력) 1번째기사 황후가 궁중 잠실에서 고치를 따는 의식을 거행하다	황후(皇后)가 여러 명부(命婦)들을 거느리고 궁중 잠실(蠶室)에서 수견식(收繭式)을 행하였다.	二十一日。 皇后率諸命婦, 行收繭式于宮中蠶室。
순종 3권, 2년(1909 기유 / 대한 융희(隆熙) 3년) 6월 27일(양	흥복헌(興福軒)에서 총리대신(總理大臣) 이하를 소견(召見)하였다.【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민병석(閔丙奭),	二十七日。 召見總理大臣以下于興福軒。【內閣總理大臣李完用、宮內大臣閔丙奭、侍從院卿尹德榮、內部大

력) 1번째기사 가뭄이 들었다고 하여 끼니상선을 줄이다	시종원 경(侍從院卿) 윤덕영(尹德榮), 내부 대신(內部大臣) 박제순(朴齊純),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 조중응(趙重應)이다.】 상이 이르기를, “짐(朕)은 요즘 가뭄이 든 것으로 인하여 하교할 것이 있어서 경들을 특별히 불렀다.” 하였다. 이어 내부 대신(內部大臣)을 앞으로 나오게 하고는 상이 이르기를, “요즘 가뭄 피해가 대단히 심한데 지방 백성들의 형편이 어떠한가?” 하니, 박제순(朴齊純)이 아뢰기를, “영남과 호남의 바닷가 지방은 가뭄 피해가 그다지 심하지 않은 듯합니다. 경기 지방이 더욱 심한데 수도에서는 쌀값이 날마다 치솟고 있습니다. 생각건대, 경기 지방에서 작년 가을 흉년이 든 뒤 거듭 이런 재해를 당하였으니 백성들의 형편이 참으로 민망합니다.” 하였다. 농상공부 대신을 앞으로 나오게 하고는 상이 이르기를, “가뭄이 이와 같은데 지방의 농사 형편은 어떠한가?” 하니, 조중응(趙重應)이 아뢰기를, “삼가 각 지방의 우택(雨澤)에 관한 보고에 의거하면, 경기 지방은 가뭄 피해가 매우 심하고, 평안도와 강원도에서도 가뭄 피해에 대한 보고가 계속 이르고 있습니다. 황해도와 함경도 또한 비가 충분히 오지 못하였고 충청도와 전라도도 그러하며, 영남 지방은 비가 어지간히 왔습니다. 신이 이달 20일에 기차로 부산(釜山)에 가서 이틀 밤을 묵고 돌아왔는데 각도(各道)의 관찰사(觀察使)들을 만나보고 그 관하의 농사 형편을 물었더니, 경상남도는 봄보리가 풍년 들었고 논에도 다행히 때마침 비가 내려서 모내기할 물이 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경상북도는 봄보리는 풍년에 가까우나 논에는 물이 충분치 못하고, 충청남도는 봄보리는 흉년을 면하였으나 비가 아직 충분치 못하고, 경기는 봄보리는 흉년을 면하였으나 가뭄이 들어 모내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신이 목격한 것으로 말하여도 길 가의 상황이 각 관찰사들이	臣朴齊純、農商工部大臣趙重應】 上曰: “朕因近日旱憂, 有所下敎, 特召卿等矣。” 仍命內部大臣進前。 上曰: “近日旱災太甚, 地方民情何如?” 齊純奏曰: “兩南沿海地方則旱災似不甚, 京畿尤甚。 而都下穀價, 日來翔高矣。 竊念畿甸昨秋失稔之後, 荐遭此災, 爲民情萬萬可憫矣。” 命農商工部大臣進前。 上曰: “旱災如此, 地方農形何如?” 重應奏曰: “謹據各地方雨澤報告, 則京畿旱災頗甚, 平安、江原兩道旱報續到。 黃海道、咸鏡道, 雨澤未洽, 兩湖亦然。 嶺南雨澤稍優。 臣於本月二十日, 以汽車往釜山, 信宿復路, 而逢見諸道觀察使, 問其管下農形, 則‘慶南春牟大登, 水田幸有時雨頻降, 秧水自足’云。 ‘慶北春牟近豐, 水田則雨澤未洽; 忠南牟麥免歉, 雨澤姑未洽滿; 京畿牟麥免歉, 雨澤惜乾, 移秧漸晩’云。 且以臣目擊言之, 沿路狀況, 一如各觀察使所告。 伏念農政憂悶萬萬, 方與總相與內相, 講究善後之策, 而苦無良筭矣。” 上曰: “朕宵旰一念, 常在於民事。 故年來施措, 期欲實心實政, 躬先導率, 而誠未格

	보고한 것과 같았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농사에 관한 정사가 너무도 걱정스럽고 안타까워 지금 총리대신과 내부 대신이 함께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하여 보았으나 좋은 방법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짐이 밤낮으로 오로지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백성들의 일에 있기 때문에 근년 이래로 조치를 취할 때 기어코 마음을 다하여 실속 있는 정사를 하려고 솔선수범하였으나, 성의가 하늘을 감동시키지 못하여 가뭄이 혹심하게 들어 모내기철도 벌써 늦어졌는데 아직도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러니 짐이 어떻게 비단옷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홀로 편안히 지낼 수 있겠는가? 짐은 이제부터 상선(常膳)을 줄이고 진심으로 하늘에 빌고 자신을 경계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이어서 궁내부 대신에게 명하여 전선사(典膳司)로 하여금 오늘부터 감선(減膳)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이완용(李完用)이 아뢰기를, “순전히 백성들의 일과 농사 형편 때문에 내리신 이러한 간곡한 성지(聖旨)를 받고 보니, 신은 더없이 우러르는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신이 내부 대신, 농상공부 대신과 함께 부름을 받고 특별 접견을 하고서, 유사(有司)에게 오로지 순문(詢問)하시는 성의(聖意)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신이 연석(筵席)에서 물러간 뒤에 각료(閣僚)와 제신(諸臣)들을 불러 모아 놓고 삼가 성지를 선포하겠습니다.” 하고, 박제순이 아뢰기를, “앞서 지방 순찰과 친경(親耕)하시는 성대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 감선한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백성을 위한 성상의 마음 아닌 것이 없으므로, 신들은 지극한 감격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하고, 조중응이 아뢰기를, “가뭄과 큰물의 피해는 물론 날씨에 달려 있지만 물을 저장하거나 빼서 재앙에 대처하는 데 이르러서는 또한 사람들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근	天，暵氣方熾，秧節已晩，甘霈尙靳。 朕何忍錦玉之獨安乎? 朕自今減進常膳，心禱于天，自寓警惕焉。”仍命宮內府大臣，命典膳司自今日減膳。 完用奏曰: “亶爲民事農形，奉此懇惻之聖旨， 臣不勝欽仰萬萬。 今日臣與內、農兩大臣，被召特對，仰認專詢有司之聖意。 而臣於筵退後，召集閣僚諸臣， 謹當宣布聖旨矣。” 齊純曰: “前有巡幸親耕之盛擧， 今下減膳之處分，此莫非爲民聖念，臣等不勝感泣之至。” 重應曰: “旱澇之災，雖緣天候，至於滀泄備災之力，亦由乎人功。 而挽近山林童濯，川澤枯涸，以致頻年旱荒，至勤聖念，臣等不勝惶恐。 謹當益加惕勵，盡力於森林水利等防，旱之策，奉答聖意之萬一矣。”

	래에 산림이 벌거숭이가 되고 시내와 못이 말라붙어서 자주 가뭄이 들어 성상께서 진념(軫念)하시게 되었으니, 신들은 황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삼가 마땅히 더욱더 명심하고 격려하여 삼림과 수리(水利) 등 가뭄을 막는 대책에 힘을 다하여 성상의 뜻에 만분의 일이나마 보답하겠습니다.” 하였다.	
순종 3권, 2년(1909 기유 / 대한 융희(隆熙) 3년) 7월 1일(양력) 1번째기사 인삼업 임시 조사비, 임시 강습회 경비 등을 예비금에서 지출하도록 하다	탁지부(度支部)에서 인삼업 임시 조사비 2,221원(圓)과 임시 강습회 경비 770원을 예비금 가운데서 지출해 줄 것을 청의(請議)한 일로 인하여,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이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一日。【陰曆己酉五月十四日】 內閣總理大臣李完用因度支部請議, “蔘業臨時調査費二千二百二十一圓, 臨時講習會經費七百七十圓, 豫備金中支出”事, 經議上奏。 制曰:“可。”
순종 3권, 2년(1909 기유 / 대한 융희(隆熙) 3년) 7월 2일(양력) 1번째기사 인릉에 이재면을 보내어 작헌례를 거행하도록 하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음력 5월 15일은 바로 순원 숙황후(純元肅皇后)가 출생한 지 두 번째 회갑이 되는 날이다. 지난날을 추모하매 슬프고 그리운 생각이 더욱 간절하다. 인릉(仁陵)에 완흥군(完興君) 이재면(李載冕)을 보내어 작헌례(酌獻禮)를 섭행(攝行)하라.” 하였다.	二日。 詔曰:“陰曆五月十五日, 卽純元肅皇后誕辰再回甲也。 追惟往昔, 愴慕彌切。 仁陵遣完興君李載冕, 攝行酌獻禮。”

순종 3권, 2년(1909 기유 / 대한 융희(隆熙) 3년) 7월 3일(양력) 1번째기사 동적전의 보리베는 의식 후에 홍릉을 전배할 것임을 명하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이달 5일에 동적전(東籍田)에 행행(幸行)하여 친예(親刈)를 행하고 나서 홍릉(洪陵)에 나아가 전알(展謁)하겠다.” 하였다.	三日。 詔曰:“本月五日幸行東耤田親刈, 仍詣洪陵展謁矣。”
순종 3권, 2년(1909 기유 / 대한 융희(隆熙) 3년) 7월 3일(양력) 2번째기사 이강, 이완용, 조중응 등을 동적전의 보리베는 의식에 참여하는 관리에 임명하다	의친왕(義親王) 이강(李堈)과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 경적사(耕籍使)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 조중응(趙重應),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민병석(閔丙奭), 중추원 의장(中樞院議長) 김윤식(金允植), 고문(顧問) 이지용(李址鎔), 승녕부 총관(承寧府總管) 조민희(趙民熙), 시종원 경(侍從院卿) 윤덕영(尹德榮), 예의사(禮意使) 장례원 경(掌禮院卿) 성기운(成岐運), 법부 차관(法部次官) 구라토미 유사부로〔倉富勇三郎〕, 농상공부 차관(農商工部次官) 기노우치 주시로〔木內重四郎〕, 궁내부 차관(宮內府次官) 고미야 미호마쓰〔小宮三保松〕, 적전 영(耤田令) 농무 국장(農務局長) 나카무라 히코〔中村彦〕, 봉상관(奉箱官) 장례원 주사(主事) 윤재병(尹載炳), 봉겸관(奉鎌官) 장례원 주사(主事) 정인환(鄭寅煥), 독시관(督視官) 황궁 경찰계 경시(皇宮警察係警視) 황신태(黃信泰)를 동적전(東籍田) 친예(親刈) 때에 종예(從刈)에 임명하였다.	義親王堈、內閣總理大臣李完用、耕耤使農商工部大臣趙重應、宮內府大臣閔丙奭、中樞院議長金允植、顧問李址鎔、承寧府總管趙民熙、侍從院卿尹德榮、禮儀使掌禮院卿成岐運、法部次官倉富勇三郎、農商工部次官木內重四郎、宮內府次官小宮三保松、耤田令農務局長中村彦、奉箱官掌禮院主事尹載炳、奉鎌官掌禮院主事鄭寅煥、督視官皇宮警察係警視黃信泰, 命東耤田親刈時從刈。
순종 3권, 2년(1909		五日。 詣東耤田, 親刈, 扈從諸臣

기유 / 대한 융희(隆熙) 3년) 7월 5일(양력) 1번째기사 동적전에 나가 친히 보리를 베는 의식을 진행하다	동적전(東籍田)에 나아가 친히 보리를 베는 의식을 행하였다. 호위하고 간 여러 신하들이 뒤따라 벴으며,【 의친왕(義親王),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 경적사(耕籍使)인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 조중응(趙重應),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민병석(閔丙奭), 중추원 의장(中樞院議長) 김윤식(金允植), 고문(顧問) 이지용(李址鎔), 승녕부 총관(承寧府總管) 조민희(趙民熙), 시종원 경(侍從院卿) 윤덕영(尹德榮), 예의사(禮儀使)인 장례원 경(掌禮院卿) 성기운(成岐運), 법부 차관(法部次官) 구라토미 유사부로〔倉富勇三郎〕, 농상공부 차관(農商工部次官) 기노우치 주시로〔木內重四郎〕, 궁내부 차관(宮內府次官) 고미야 미호마쓰〔小宮三保松〕, 적전 영(籍田令)인 농무 국장(農務局長) 나카무라 히코〔中村焉〕, 봉상관(奉箱官)인 장례원 주사(掌禮院主事) 윤재병(尹載炳), 봉겸관(奉鎌官)인 장례원 주사 정인환(鄭寅煥), 독시관(督視官)인 황궁 경찰계 경시(皇宮警察係警視) 황신태(黃信泰)이다.】 서민(庶民)들도 차례로 짝을 지어 보리를 벴다. 의식이 끝나자 경적사(耕籍使)인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 조중응(趙重應)이 벤 보리를 담은 그릇을 어전(御前)에 봉진(奉進)하니 관리들과 백성들이 일제히 만세를 부르며 환호 하였다. 장전관(掌典官)이 조서(詔書)를 선포하기를, “기민(耆民)들을 위로하라.” 하였다. 전선관(典膳官)이 술을 따르며 술잔을 돌리니 기민과 서민들이 부복(俯伏)하여 잔을 받았다.	【義親王內閣總理大臣李完用、耕耤使農商工部大臣趙重應、宮內府大臣閔丙奭、中樞院議長金允植、顧問李址鎔、承寧府總管趙民熙、侍從院卿尹德榮、禮儀使掌禮院卿成岐運、法部次官倉富勇三郎、農商工部次官木內重四郎、宮內府次官小宮三保松、耤田令農商工部農務局長中村彦、奉箱官掌禮院主事尹載炳、奉鎌官掌禮院主事鄭寅煥、督視官皇宮警察係警視黃信泰】 從刈。 庶民以次耦刈麥畢。 耕耤使農商工部大臣趙重應, 奉進刈麥器於御前, 官民一同, 嵩呼萬歲! 掌典官宣詔曰: “敬勞耆民。” 典膳官酌醴酒行爵。 耆民庶人, 俯伏受爵。
순종 3권, 2년(1909 기유 / 대한 융희(隆熙) 3년) 7월 6일(양력) 1번째기사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하를 인견(引見)하였다.【총리대신(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민병석(閔丙奭), 시종원 경(侍從院卿) 윤덕영(尹德榮), 내부 대신(內部大臣) 박제순(朴齊純), 농상공부 대신(農商	六日。 引見內閣總理大臣以下。 請對也。【總理大臣李完用、宮內大臣閔丙奭、侍從院卿尹德榮、內部大臣朴齊純、農商工部大臣趙重應】 上曰:

줄였던 끼니 상선을 회복하다	工部大臣) 조중응(趙重應)이다.】 청대(請對)하였기 때문이다. 상이 이르기를, “경들은 무슨 주청(奏請)을 할 것이 있어서 이렇게 청대하였는가?” 하니, 이완용(李完用)이 아뢰기를, “전번에 감선(減膳)하신다는 처분을 특별히 내리신 것은 바로 백성들을 걱정하는 폐하의 거룩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신들은 감히 저지하는 품신(稟申)을 하지 못하였는데, 지금 마침 단비가 온 데다가 동풍이 불고 구름이 꽉 껴서 계속 비가 올 가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들판의 이앙(移秧)하지 못한 것을 차례로 옮길 수 있고 백성들의 근심도 조금 풀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 날 감선하시는 것은 몸을 조섭하는 방도에 크게 관계되기 때문에 서로 이끌고 와서 청대하여 복선(復膳)하시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때맞게 온 비가 이미 충분하다고 하던가?” 하니, 박제순(朴齊純)이 아뢰기를, “비가 내려 이미 해갈(解渴)된 데다 흡족하게 내릴 가망이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농사형편이 비가 와서 조금 나아졌다고 하던가?” 하니, 조중응(趙重應)이 아뢰기를, “모내기가 좀 늦기는 하였지만 이제부터 비와 햇볕이 순조로우면 풍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들의 말이 이러하니, 마지못해 복선에 따르기는 하겠다.” 하였다.	“卿等因何所奏, 有此請對乎?” 完用奏曰: “曩日減膳處分之特下, 寔由陛下憂民聖念。 故臣等不敢防稟, 現今甘霈適降, 谷風密雲, 連有洽注之望。 四野未移之秧, 次第可移, 民憂庶可稍紓矣。 多日減膳, 大有關於節宣之方, 故相率求對, 敢請復膳矣。” 上曰: “時雨今已洽滿云否?” 齊純曰: “雨已解渴, 且有洽足之望。” 上曰: “農形得雨稍蘇云否?” 重應曰: “移秧雖稍晚, 從此雨暘調順, 則豐穰可期矣。” 上曰: “卿等之言如此, 復膳勉從矣。”
순종 3권, 2년(1909		接見太子太師公爵伊藤博文于仁政

기유 / 대한 융희(隆熙) 3년) 7월 6일(양력) 2번째기사 태자 태사 이토 히로부미를 접견하고 식사를 나누다	인정전(仁政殿)에서 태자 태사(太子太師) 공작(公爵)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접견하고 나서 동쪽 행각(行閣)에 나아가 어배식(御陪食)을 내렸다. 칙유(勅諭)하기를, “짐(朕)이 지난번에 친서를 보내어 짐의 충심을 표명하였다. 대개 모든 정사가 잘 되어 나가고 유신 대업(維新大業)이 점차로 성공할 수 있게 된 것은 본래 귀 천황 폐하(天皇陛下)의 깊은 뜻에 의한 것이지만 귀(貴) 공작의 지도와 유지시킴이 적절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와 같이 될 수 있었겠는가? 상하가 일제히 귀 공작의 정성을 다한 성의에 대하여 감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제 귀 천황 폐하는 귀 공작이 늙은 몸으로 오랫동안 해외에 주재하여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짐도 그 훌륭한 생각에 대하여 우러러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귀 공작의 건강을 기원하는 바이니 이후로 태자를 도와 인도하는 데에 수고할 뿐 아니라 또한 자주 짐과 만나서 짐의 부족한 점을 옳게 이끌어 주기 바란다.” 하였다. 일본 통감(統監) 자작(子爵)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 군사령관(軍司令官) 남작(男爵) 오쿠보 하루노〔大久保春野〕, 내부대신 비서관(內部大臣祕書官) 히다카 지치부〔日高秩夫〕, 궁내대신 비서관(宮內大臣祕書官) 모리 야스지로〔森泰次郎〕, 통감부 기사(統監府技師) 야마고 젠즈키〔山小善附〕, 무관(武官) 도나미 구라키치〔外波內藏吉〕, 비서관(祕書官) 후루야 히사쓰나〔古谷久綱〕, 고쿠분 쇼타로〔國分象太郎〕, 사타케 요시노리〔佐竹義準〕, 사령 부관(司令副官) 도토키 다다타카〔十時惟孝〕, 완흥군(完興君) 이재면(李載冕), 완순군(完順君) 이재완(李載完),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 내부 대신(內部大臣) 박제순(朴齊純),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임선준(任善準), 군부 대신(軍部大臣) 이병무(李秉武), 학부 대신(學部大臣) 이재곤(李載崑), 법부 대신(法部大臣) 고영희(高永喜),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	殿。 仍御東行閣, 賜御陪食。 勅諭曰: “朕이 曩日에 親書를 寄ᄒᆞ야 朕의 衷心을 表明ᄒᆞ얏거니와, 蓋百政이 就緖ᄒᆞ야 維新大業이 漸히 成ᄒᆞᆯ 所以ᄂᆞᆫ 本是貴天皇陛下의 深厚ᄒᆞᆫ 聖旨에 藉ᄒᆞ얏셔도 貴公爵의 指導扶植이 宜를 得ᄒᆞᆷ이아니면 豈能此와 如ᄒᆞ리요。 上下一齊히 貴公爵의 竭精ᄒᆞᆫ 誠意를 感荷ᄒᆞᆷ이 不堪ᄒᆞᆫᄇᆡ라, 今貴天皇陛下ᄂᆞᆫ 貴公爵의 老軀로 永히 闕外에 駐ᄒᆞᆷ을 不許ᄒᆞ시니 朕도 亦其聖慮를 不可不敬仰ᄒᆞᆯ지라。 玆에 貴公爵의 健康을 祈ᄒᆞ노니, 爾後로 太子의 輔導에 勞ᄒᆞᆯ섄아니라 又屢屢히 朕과 相見ᄒᆞᆷ을 得ᄒᆞ야? 朕의 闕漏를 啓沃ᄒᆞᆷ을 望ᄒᆞ노라。” 日本統監子爵曾禰荒助、軍司令官男爵大久保春野、內大臣祕書官日高秩夫、宮內大臣祕書官森泰次郎、統監府技師山小善、附武官外波內藏吉、祕書官古谷久綱·國分象太郎·佐竹義準、司令副官十時惟孝、完興君李載冕·完順君李載完、內閣總理大臣李完用、內部大臣朴齊純、度支部大臣任善準、軍部大臣李秉武、學部大臣李載崑、法部大

	조중응(趙重應),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민병석(閔丙奭), 중추원 의장(中樞院議長) 김윤식(金允植), 고문(顧問) 이지용(李址鎔)·이근택(李根澤)·이하영(李夏榮)·권중현(權重顯), 궁중 고문(宮中顧問) 이윤용(李允用), 시종원 경(侍從院卿) 윤덕영(尹德榮), 승녕부 총관(承寧府總管) 조민희(趙民熙), 대심원장(大審院長) 와타나베 아끼라〔渡邊穰〕, 검사 총장(檢事總長) 고쿠분 산가이〔國分三亥〕, 내각 서기관장(內閣書記官長) 한창수(韓昌洙), 궁내부 차관(宮內府次官) 고미야 미호마쓰〔小宮三保松〕, 내부 차관(內部次官) 오카요시 시치로〔岡喜七郎〕, 탁지부 차관(度支部次官)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 군부 차관(軍部次官) 한진창(韓鎭昌), 학부 차관(學部次官) 표손일(俵孫一), 법부 차관(法部次官) 구라토미 유사부로〔倉富勇三郎〕, 농상공부 차관(農商工部次官) 기노우치 주시로〔木內重四郎〕가 배식(陪食)에 참석하였다. 이토 다로〔伊藤太郎〕는 대궐에서 물러나온 뒤에 덕수궁(德壽宮)에 나아가 폐현(陛見)을 하였다.	臣高永喜、農商工部大臣趙重應、宮內府大臣閔丙奭、中樞院議長金允植、顧問李址鎔·李根澤·李夏榮·權重顯、宮中顧問李允用、侍從院卿尹德榮、承寧府總管趙民熙、大審院長渡邊暢、檢事總長國分三亥、內閣書記官長韓昌洙、宮內府次官小宮三保松、內部次官岡喜七郎、度支部次官荒井賢太郎、軍部次官韓鎭昌、學部次官俵孫一、法部次官倉富勇三郎、農商工部次官木內重四郎, 進參陪食。伊藤太郎退闕後, 詣德壽宮陛見。
순종 3권, 2년(1909 기유 / 대한 융희(隆熙) 3년) 7월 8일(양력) 1번째기사 경회루에서 원유회를 벌이다	경회루(慶會樓)에서 원유회(園遊會)를 설행하였다. 태사 공작(公爵)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통감(統監) 자작(子爵)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가 서로 교체되어 송영(送迎)하는 연회였다. 한국과 일본의 문무 관리 1,800여 인(人)이 연회에 참석하였다.	八日。 設園遊會于慶會樓。 太師公爵伊藤博文, 統監子爵曾禰荒助, 交遞送迎宴也。 韓、日文武官一千八百餘人參宴。
순종 3권, 2년(1909 기유 / 대한 융희(隆熙) 3년) 7월 19일(양력) 2번째기사	인정전(仁政殿)에서 한성 부윤(漢城府尹)과 각도(各道) 관찰사(觀察使)에게 사찬(賜餐)하였다.	賜餐漢城府尹、各道觀察使于仁政殿。

인정전에서 한성 부윤과 각도 관찰사들에게 오찬을 차려 주다		
순종 3권, 2년(1909 기유 / 대한 융희(隆熙) 3년) 7월 21일(양력) 1번째기사 황후와 함께 인정전에서 나시모도노미야 모리사사오 전하와 그의 비 전하와 함께 회식하다	인정전(仁政殿)에 황후(皇后)와 함께 나아가 일본국(日本國) 나시모도노미야 모리사사오［梨本宮守正王］ 전하(殿下)와 그의 비(妃) 전하와 함께 회식(會食)을 행하였다.	二十一日。 御仁政殿, 皇后同御。 與日本國梨本宮守正王同妃兩殿下, 行會食。
순종 3권, 2년(1909 기유 / 대한 융희(隆熙) 3년) 8월 16일(양력) 1번째기사 종묘의 추향 대제를 대신 지내도록 하고 《국조보감》을 올리도록 하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종묘(宗廟)의 추향대제(秋享大祭)에 대신(大臣)을 보내어 섭행하되 하결같이 임금이 친히 제사지내는 예대로 마련하라. 《국조보감(國朝寶鑑)》은 궁내부대신(宮內府大臣)을 보내어 대신 올리라.” 하였다.	十六日。 詔曰:“宗廟秋享大祭, 遣大臣攝行, 一依親祭例磨鍊, 《國朝寶鑑》, 遣宮內府大臣攝上。”
순종 3권, 2년(1909 기유 / 대한 융희(隆熙) 3년) 8월 19일(양력) 1번째기사	법률(法律) 제23호, 〈수출 우 검역법 중 개정에 관한 안건［輸出牛檢疫法中改正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十九日。 法律第二十三號, 輸出牛檢疫法中改正件。 裁可頒布。

수출하는 소의 검역법을 개정하다		
순종 3권, 2년(1909 기유 / 대한 융희(隆熙) 3년) 8월 21일(양력) 1번째기사 짐승 도살 규칙을 비준하다	법률(法律) 제24호, 〈도수 규칙(屠獸規則)〉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二十一日。 法律第二十四號, 屠獸規則。 裁可頒布。
순종 3권, 2년(1909 기유 / 대한 융희(隆熙) 3년) 9월 8일(양력) 3번째기사 돈덕전에서 칙임관, 주임관 이상의 관리들에게 사찬하다	돈덕전(惇德殿)에서 황족(皇族), 각(閣), 부(部), 원(院), 청(廳)의 칙임관(勅任官) 이상과 궁내부(宮內府) 주임관 대우(奏任官待遇) 이상에게 사찬(賜饌)하였다.	賜饌皇族·閣·部·院·廳勅任官以上、宮內府奏任官待遇以上于惇德殿。
순종 3권, 2년(1909 기유 / 대한 융희(隆熙) 3년) 9월 18일(양력) 1번째기사 전염병으로 인하여 황후의 탄신일을 간략히 지내도록 하다	이달 19일 곤원절(坤元節) 진하(陳賀)를 권정례(權停例)로 하고, 궁중에서 연회를 내리고 문안하며 서명(署名)하는 것을 모두 정지하라고 명하였다. 괴질(怪疾)이 돌았기 때문이다.	十八日。 命本月十九日坤元節陳賀權停, 宮中賜宴問安署名, 竝停止。 因怪疾流行也。
순종 3권, 2년(1909 기유 / 대한 융희(隆熙) 3년) 9월 25일(양	경시청령(警視廳令) 제5호는 다음과 같다. 경성(京城) 또는 용산(龍山)에서 흘러나가거나 또는 그 곳을 통과하는 강물에서 야채와 그 밖의 음식물 및 식기를 씻거나 세면하는 것을 금지한다.	警視廳令第五號:“京城又ᄂᆞᆫ 龍山에셔 流出ᄒᆞ거나 又ᄂᆞᆫ 通過ᄒᆞᄂᆞᆫ 水流에셔 蔬菜와 其他食物及食器를 洗ᄒᆞ거나

력) 3번째기사 전염병 때문에 경성, 용산 등의 강물 사용과 불량 음식의 판매를 금지하다	경시청령 제6호는 다음과 같다. 흐르는 물로 씻은 야채류와 익지 않은 과일, 생포도, 불량한 육류, 부패한 음식물 판매를 금지한다. 이상 5호와 6호를 위반한 자는 10원 이하의 벌금이나 10일 이내의 구류에 처한다.	又ᄂᆞᆫ 洗面ᄒᆞᆷ을 禁ᄒᆞᆷ。” 第六號: “流水로 洗ᄒᆞᆫ 蔬菜類, 未熟ᄒᆞᆫ 果實、生葡萄, 不良ᄒᆞᆫ 肉類, 腐敗ᄒᆞᆫ 飮食物販賣를 禁ᄒᆞᆷ。” 右五號、六號를 違反ᄒᆞᆫ 者ᄂᆞᆫ 十圓以下罰金十日以內拘留에 處ᄒᆞᆷ。
순종 3권, 2년(1909 기유 / 대한 융희(隆熙) 3년) 9월 25일(양력) 5번째기사 위험한 우물 사용을 금지하다	경시청 고유(警視廳告諭) 제3호는 다음과 같다. 호열자병(虎列刺病)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만큼 경찰관이 위험하다고 인정하는 우물물은 사용을 금지하고 당분간 대한수도회사(大韓水道會社) 공용 수전(水栓)으로 무료로 급수할 것이다. 누구든지 자유로 이것을 사용하되 금지시킨 우물물을 몰래 사용하여 위험에 빠지는 등의 일이 없도록 각자가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警視廳告諭第三號: “虎列刺病이 益益猖獗ᄒᆞᄂᆞᆫ바 警察官이 危險ᄒᆞᆫ줄노 認ᄒᆞᆫ 井水ᄂᆞᆫ 使用을 禁止ᄒᆞ고 現今間은 大韓水道會社共用水栓으로써 無料給水ᄒᆞᆯ지니 勿論何人ᄒᆞ고 自由로 此를 使用ᄒᆞ되 或禁止ᄒᆞᆫ 井水를 暗用ᄒᆞ야 危險에 陷ᄒᆞᄂᆞᆫ 等事가 無ᄒᆞ도록 各自注意ᄒᆞᆷ이 可ᄒᆞᆷ。”
순종 3권, 2년(1909 기유 / 대한 융희(隆熙) 3년) 12월 24일(양력) 1번째기사 설날에 덕수궁에 축하하는 상소를 올리는 예식 절차를 간략히 하도록 하다	오는 설날에 덕수궁(德壽宮)에 치사(致詞)를 올리고 예를 행하는 절차를 권정례(權停禮)로 하고 종친(宗親)과 문무(文武) 백관(百官)의 치사를 올리고 예를 행하는 절차도 권정례로 하라고 명하였다.	二十四日。 命來一月一日德壽宮進致詞行禮之節, 權停; 宗親、文武百官進致詞行禮之節, 亦爲權停。]
순종 4권, 3년(1910 경술 / 대한 융희(隆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내외 관료들을 소견(召見)하고 칙유(勅諭)하기를,	四日。 御仁政殿。 召見內外官僚勅諭曰: “朕이 新年을 祝賀ᄒᆞ며 在京日

熙) 4년) 1월 4일(양력) 1번째기사 새해를 축하하는 연회를 베풀다	“짐이 새해를 축하하며 경성(京城)에 있는 일본(日本)의 문무 관료 및 여러 신하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하고 이에 연회를 베풀었으니 경들은 함께 즐기는 짐의 뜻을 본받아 한껏 즐길 것이다.” 하였다. 이어서 배식(陪食)을 하사하였다.	本文武官僚及群臣을 會同ᄒᆞ야 玆에 酺宴을 設ᄒᆞ노니 卿等은 朕의 同樂ᄒᆞᄂᆞᆫ 意를 體ᄒᆞ야 克盡其歡ᄒᆞ라。” 仍賜陪食。